

關稅政策의 變遷과 評價

1997. 5.

朴 相 泰

KIPF 한국조세연구원

序 言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는 産業保護政策의 일환으로서 또한 國際收支問題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貿易制限的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모가 작고 교역량의 비중이 낮았던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對外去來를 直接統制方法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규제에 대하여 외국의 반응도 비교적 中立的이었고 당연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진권에서 벗어나 선진 공업국으로 경제적 도전을 줄기차게 수행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종전과 같이 대외거래에 대한 直接規制方法을 타성적으로 추진할 때 이에 대한 선·후진제국의 반응이 중립적일 리도 없으며 또한 對外指向的인 開發戰略을 계속 추구하려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의 반응에 둔감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直接規制(수입자유화율 99%)는 지양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대체될 간접규제하에서는 대외거래기능을 자동적으로 가격기구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國民經濟의 對外去來가 直接規制의 틀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가격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는 여러 産業誘因 政策變數들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關稅政策은 수입과 생산구조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변수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長期的 經濟目標에 부합되는 關稅政策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政策課題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政策當局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關稅政策方向을 마련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關稅政策의 變遷史를 시대별로 상세히 분석하여 그 功過를 살펴보

고 앞으로의 關稅政策方向을 제시하였다. 특히 향후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輸出入通關制度, 基本關稅率制度, 彈力關稅制度, 國際關稅協力制度, 關稅評價制度, 關稅減免制度, 關稅還給制度, 關稅分割納付制度, 保稅制度, 產業被害救濟制度, 關稅審判制度, 關稅士制度, 關稅行政罰制度 등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의 입안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와 보고서 집필을 위하여 수고한 關稅廳 朴相泰 局長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해 자료수집을 도와준 한국관세연구소의 박쾌호 편집부장과 전산처리를 담당한 관세청 감사관실 장인경씨의 수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에 포함된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것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7年 5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第 1 章 序 論	13
第 2 章 關稅政策의 變遷史	15
第 3 章 關稅政策 變化의 內容과 特徵	37
第 1 節 過渡期의 關稅政策(解放~政府 樹立)	37
1. 與件	37
2. 關稅政策의 變化 內容	38
3. 關稅政策 變化의 效果分析	39
第 2 節 戰時關稅行政期(政府 樹立~1950年代)	39
1. 與件	39
2. 關稅政策의 變化 內容	42
3. 關稅政策 變化의 效果分析	52
第 3 節 關稅政策의 跳躍期(1960年代)	58
1. 與件	58
2. 關稅政策의 變化 內容	61
3. 關稅政策 變化의 效果分析	80
第 4 節 關稅政策의 成熟期(1970年代)	98
1. 與件	98
2. 關稅政策의 變化 內容	106
3. 關稅政策 變化의 效果分析	125
第 5 節 關稅政策의 第1次 變革期(1980年代)	151
1. 與件	151

2. 關稅政策 變化의 內容	157
3. 關稅政策 變化의 效果分析	180
第 6 節 關稅政策의 第2次 變革期(1990年代)	192
1. 與件	192
2. 關稅政策의 變化 內容	196
3. 關稅政策 變化의 效果分析	205
第 4 章 綜合評價와 向後 政策方向	209
第 1 節 綜合評價	209
1. 時代區分에 따르는 評價	209
2. 分野別 評價	214
第 2 節 向後 關稅政策 方向	256
1. 與件	256
2. 分野別 關稅政策 運營方向	256
參攷文獻	281

表 目 次

〈表 Ⅱ - 1〉 우리나라의 關稅讓許	36
〈表 Ⅲ - 1〉 輸入關稅率表 分類細目表	47
〈表 Ⅲ - 2〉 關稅率 設定의 原則과 基準	48
〈表 Ⅲ - 3〉 類別 平均稅率表 比較	49
〈表 Ⅲ - 4〉 商品類別 輸入額에 대한 關稅負擔率(1948~1953年)	53
〈表 Ⅲ - 5〉 一般財政 歲入性質別 分析表 I (1948~1953年)	53
〈表 Ⅲ - 6〉 一般財政 歲入性質別 分析表 II (1954~1960年)	54
〈表 Ⅲ - 7〉 外國援助 收入總額	55
〈表 Ⅲ - 8〉 輸入額에 대한 關稅負擔率	56
〈表 Ⅲ - 9〉 密輸檢舉 實績	57
〈表 Ⅲ - 10〉 1960年代 輸入制度의 變化推移(Ⅰ)	59
〈表 Ⅲ - 11〉 1960年代 輸入制度의 變化推移(Ⅱ)	59
〈表 Ⅲ - 12〉 年度別 輸入自由化措置	60
〈表 Ⅲ - 13〉 平均關稅率의 變化(1960年代)	65
〈表 Ⅲ - 14〉 關稅率策定 基準(1967年)	68
〈表 Ⅲ - 15〉 1次產業에 대한 實效支援率(1968年)	81
〈表 Ⅲ - 16〉 製造業에 대한 實效支援率(1968年)	81
〈表 Ⅲ - 17〉 全交易財產業에 대한 實效支援率(1968年)	81
〈表 Ⅲ - 18〉 輸出履行 狀況(1962~1970年)	83
〈表 Ⅲ - 19〉 우리나라의 產業構造別 輸出實績(1962~1971年)	84
〈表 Ⅲ - 20〉 우리나라의 輸出商品 構造(1962~1970年)	85
〈表 Ⅲ - 21〉 GNP에 대한 輸出入依存度(1961~1970年)	86
〈表 Ⅲ - 22〉 年度別 外貨稼得率 推移(1967~1970年)	87

〈表 Ⅲ-23〉 主要製品の 輸入代替 動向	90
〈表 Ⅲ-24〉 一般財政部門 歳入執行 内譯(1961~1970年)	92
〈表 Ⅲ-25〉 主要國 租稅收入 中 關稅收入	93
〈表 Ⅲ-26〉 關稅의 徵收 및 減免 現況(961~1970年)	94
〈表 Ⅲ-27〉 都價表(主要 輸入物品) 時價調査不能 品目數	96
〈表 Ⅲ-28〉 1970年代 輸出制度의 變化 推移	101
〈表 Ⅲ-29〉 1970年代 輸入自由化 推移	102
〈表 Ⅲ-30〉 1970年代 第3段階 輸入自由化 措置	104
〈表 Ⅲ-31〉 우리나라의 換率 推移	105
〈表 Ⅲ-32〉 平均關稅率의 變化(1970年代)	107
〈表 Ⅲ-33〉 關稅率策定基準表(1973年)	108
〈表 Ⅲ-34〉 關稅率策定基準表(1976年)	109
〈表 Ⅲ-35〉 平均關稅率 推移(1970年代)	111
〈表 Ⅲ-36〉 關稅徵收 및 減免實績(1970年代)	113
〈表 Ⅲ-37〉 彈力關稅措置(1970年代)	117
〈表 Ⅲ-38〉 緊急措置 第3號 第8條 關稅率의 特例(1974年 1月 14日)	118
〈表 Ⅲ-39〉 韓國産業의 實效保護率 推移	125
〈表 Ⅲ-40〉 製造業部門別 實效保護率 現況(1978年)	125
〈表 Ⅲ-41〉 重工業의 業種別 生産 및 附加價値	126
〈表 Ⅲ-42〉 輸出의 重工業化率 推移	127
〈表 Ⅲ-43〉 重工業의 業種別 平均輸出 比率	127
〈表 Ⅲ-44〉 重工業製品의 輸出構造 變化 推移	128
〈表 Ⅲ-45〉 韓國의 重工業化 推移(1970~1979年)	129
〈表 Ⅲ-46〉 달러基準 勞動單價指數 國際比較(1975=100)	130
〈表 Ⅲ-47〉 重化學工業部門別 交易收支基準 比較優位指數	131

〈表 Ⅲ-48〉 美貨 1달러 輸出當 支援의 推移	132
〈表 Ⅲ-49〉 投資進陟度(1975年 不變價格 基準)	132
〈表 Ⅲ-50〉 I-318個 部門에 對한 實效保護率 分布現況(1982年)	133
〈表 Ⅲ-51〉 保護政策으로 인한 消費者負擔(1978年)	134
〈表 Ⅲ-52〉 輸入代替 및 外貨稼得率(1975~1981年)	137
〈表 Ⅲ-53〉 平均關稅率 水準(1975~1980年)	138
〈表 Ⅲ-54〉 輸出業界의 資金負擔率(1975~1981年)	138
〈表 Ⅲ-55〉 還給金支給制限 實績(1981年)	141
〈表 Ⅲ-56〉 徵收猶豫期間別 現況	141
〈表 Ⅲ-57〉 外貨價格 差異에 의한 納付稅額	146
〈表 Ⅲ-58〉 定額還給額 및 納付稅額과의 差異	148
〈表 Ⅲ-59〉 輸入自由化 措置(1980年代)	155
〈表 Ⅲ-60〉 元貨의 對美달러換率 推移	156
〈表 Ⅲ-61〉 平均關稅率의 變化(1980年代 以後)	158
〈表 Ⅲ-62〉 關稅率 調整 品目數(1984年)	161
〈表 Ⅲ-63〉 平均關稅率 水準(1983~1988年)	161
〈表 Ⅲ-64〉 農·畜·水產物 關稅率 調整 現況	164
〈表 Ⅲ-65〉 農·畜·水產物 關稅率 調整(農家保護 部門)	165
〈表 Ⅲ-66〉 農·畜·水產物 關稅率 調整(消費者保護 部門)	165
〈表 Ⅲ-67〉 國際慣例 無稅物品	165
〈表 Ⅲ-68〉 有望 幼稚品目 保護	166
〈表 Ⅲ-69〉 加算金率 引下	176
〈表 Ⅲ-70〉 年度別·加工段階別 名目保護率 및 實效保護率 對比表	181
〈表 Ⅲ-71〉 電氣·電子製品 輸出 및 電子部品 輸入 現況 (1988~1992年)	183

〈表 Ⅲ-72〉	部門別 關稅率 引下效果	184
〈表 Ⅲ-73〉	物價引下效果 總量分析(都實物價 基準)	184
〈表 Ⅲ-74〉	部門別 引下效果 例示(1989年 基準)	185
〈表 Ⅲ-75〉	關稅率 改編에 따른 關稅 稅收效果	187
〈表 Ⅲ-76〉	財政寄與率 및 關稅負擔率 變化	187
〈表 Ⅲ-77〉	關稅減免額 推移	189
〈表 Ⅲ-78〉	關稅徵收額 및 減免額 推移	190
〈表 Ⅲ-79〉	輸入自由化 推移(1990年代)	195
〈表 Ⅲ-80〉	關稅率引下 5個年 豫示制 1年 順延 內容	205
〈表 Ⅲ-81〉	制度改善 以後 輸入通關 所要時間 比較	206
〈表 Ⅲ-82〉	輸入申告制에 따른 申告書 處理所要時間 比較	208
〈表 Ⅳ- 1〉	關稅收入의 推移	214
〈表 Ⅳ- 2〉	關稅負擔率 推定 結果	216
〈表 Ⅳ- 3〉	韓國의 關稅率政策 變遷 推移	218
〈表 Ⅳ- 4〉	交易材의 業種別 內外價格差	224
〈表 Ⅳ- 5〉	調查品目의 綜合競爭力 分析	224
〈表 Ⅳ- 6〉	關稅上 支援制度 推移 및 比重	227
〈表 Ⅳ- 7〉	關稅減免支援制度 運營 推移	230
〈表 Ⅳ- 8〉	關稅減免額推移(1980~1995年)	232
〈表 Ⅳ- 9〉	彈力關稅制度 運營現況(品目數 基準)	233
〈表 Ⅳ-10〉	還給申請 所要日數(1995年)	235
〈表 Ⅳ-11〉	保稅制度의 改善	236
〈表 Ⅳ-12〉	關稅關聯 主要 國際機構 및 協定現況	241
〈表 Ⅳ-13〉	雙務間 國際關稅協力 運營 現況	242
〈表 Ⅳ-14〉	關稅評價方法別 運營現況	244
〈表 Ⅳ-15〉	事後評價로 인한 增收 實績	244

〈表 IV-16〉 不誠實業體 指定現況(1991~1995年)	245
〈表 IV-17〉 關稅分割納付 承認 實績	246
〈表 IV-18〉 產業被害 提訴・處理 現況	248
〈表 IV-19〉 不服申請 提起 趨勢	249
〈表 IV-20〉 不服請求 認容率 趨勢	249
〈表 IV-21〉 關稅士 開業 現況(1990~1995年)	251
〈表 IV-22〉 關稅士 年齡別 開業 現況	251
〈表 IV-23〉 最近의 密輸 類型	253
〈表 IV-24〉 密輸事犯 檢舉 實績	255

圖 目 次

[圖 III - 1]	輸入割當制下에서의 價格變化圖	77
[圖 III - 2]	類型別 還給實績	140
[圖 III - 3]	國產原資材 讓受渡節次	144
[圖 III - 4]	關稅率調整 原則(1983年)	160
[圖 III - 5]	關稅率 改編原則(1989~1993年)	162
[圖 III - 6]	關稅 關聯制度 改編 結果 比較(1982年 基準)	188
[圖 III - 7]	輸入免許制下에서의 品目別 通關所要時間	206
[圖 III - 8]	輸入免許制下에서의 用途別 通關所要時間	207
[圖 IV - 1]	關稅政策의 目的이 財政收入일 境遇	220
[圖 IV - 2]	關稅政策의 目的이 產業保護일 境遇	221
[圖 IV - 3]	輸入通關節次圖	239
[圖 IV - 4]	輸出通關節次圖	240

第 1 章 序 論

經濟政策의 目標은 시대의 흐름과 與件의 變化에 따라 變遷하게 마련이다. 또한 經濟政策의 목표가 변하게 되면 그 目標을 實現하기 위한 하위 政策의 내용도 자연히 달라지게 된다.

韓國이 日帝로부터 解放된 이후 오늘날의 經濟的 達成이 있기까지 각 시대에 따른 국가의 政策目標에 맞추어 關稅政策과 制度도 꾸준히 變遷, 改編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關稅政策은 單純加工을 위주로 한 輕工業製品의 輸出 촉진, 重化學工業化, 산업의 균형 발전, 民間주도형 競爭體制의 확립 순으로 전개되어 온 전반적인 產業政策의 전개와 같은 궤적을 따라 변천해 왔다. 輸出增大가 국가의 지상 목표였던 1960년대에는 單純加工型의 경공업 중심인 국내 산업을 강력히 보호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당시 經濟開發計劃의 중점사업이었던 중화학공업에 높은 關稅率을 적용함으로써 產業構造의 고도화를 도모하였다. 그 후 1980년대에는 대내외의 競爭體制를 정착시킴으로써 民間主導型 經濟體制를 확립하고자 均等關稅率制度로의 移行을 도모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輸出入免許制를 폐지하고 수출입신고제를 도입하여 물품이 入港되는 즉시 생산현장에 투입 가능한 체제로 轉換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이처럼 經濟政策의 一環으로 變遷해 온 關稅政策의 발자취를 더듬어 봄으로써 來日의 관세행정 座標를 정립해 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간구분에 따라 關稅政策의 發展過程을 略述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關稅政策은 解放 以後 軍政 및 過渡政府에 이르는 「過渡期의 關稅政策期」로부터 出發하여 政府樹立 以後 6·25動亂까지의 「關稅政策 自主權確立期」, 6·25動亂 以後 1950年代에 걸친 「戰時關稅政策

期」, 5·16革命 以後 1960年代에 걸친 「關稅政策의 跳躍期」로 지난날의 發展過程을 區分할 수 있으며 1970年代를 「關稅政策의 成熟期」, 1980年代를 「關稅政策의 제1차 變革期」, 1990年代를 「關稅政策의 제2차 變革期」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第 2 章 關稅政策의 變遷史

第 1 節 過渡期의 關稅政策(解放~政府 樹立)

過渡期의 關稅政策은 解放 以後 關稅自主權이 確立될 때까지의 空白을 메우기 위하여 美軍政當局 및 過渡政府가 日帝時代의 關稅法規를 그대로 답습하여 適用하던 混亂期의 關稅政策을 말한다.

當初 終戰과 함께 敗退하는 日本人의 不法의 携帶品과 財産搬出을 統制하기 위하여 自發的인 稅關事務所가 일찍이 設置된 바는 있으나 本格的인 稅關機能이 回復된 것은 美軍政當局이 密貿易을 團束하기 위해서는 稅關機能을 早速히 回復시켜야겠다고 判斷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解放 以後 政治的·經濟的 混亂期를 틈타 密貿易이 盛行하자 美軍政當局은 稅關機能의 回復이 무엇보다도 重要함을 認識하고 自主的 法令 不在의 狀態下에서 「軍政法令 21號」를 發動하여 別途措置時까지 日本法을 잠정적으로 운용토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日帝時代의 關稅法, 關稅定率法, 保稅倉庫法을 그대로 施行토록 하였다.

그러나 日帝時代의 諸關稅關係法規는 物資가 귀하고 產業이 마비된 當時의 韓國經濟에 적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3年間의 軍政 및 過政期間中 3차례의 法令改正이 있었다.

즉 1946년 10월에는 法令 第116號에 의하여 關稅定率法 中 輸入關稅率을 全面的으로 引下하는 措置를 시행하였고 1948년 4월에는 法令 第177號에 의하여 모든 輸入物品에 대하여 從價 10%의 均一關稅制度를 채택하였으며 1948년 7월에는 法令 第211號에 의해서 關稅法과 保稅倉庫法을 改正하여 藏置期間과 貨物의 處分에 관한 規定을 改正하였다.

그런데 그 후 10%의 均一關稅制 採擇은 國內產業 復興과 保護를 度外

視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當時의 物資不足과 混亂한 經濟狀態를 安定시키기 위해서는 不可避한 措置였을 것이다.

第 2 節 關稅政策 自主權 確立期(政府 樹立~6·25動亂)

1948년 8월 15일 政府가 樹立되고 모든 機構와 制度가 整備되어 감에 따라 關稅行政面에서도 獨立國家로서 自主的인 關稅法令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課題로 되었다.

이에 1948년 11월 稅關局이 創設되어 關稅法 制定作業에 着手하였는데 法令의 體系는 從前 日帝時代의 多元化된 法體系를 止揚하고 單一法體系로 關稅法을 一元化한다는 것이었다.

약 6個月間의 作業期間을 거쳐 全文 253條의 基本法條文과 756種目的 稅番 및 1,706個의 稅率을 內容으로 하는 法律案을 作成하였으며 이 法律案은 法制處와 國會의 財政經濟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1949년 11월 11일 第5回 國會 第38次 本會議에서 通過되었다.

이에 1949년 11월 23일 法律 第67號로 公布施行됨으로써 大韓民國 最初의 關稅法이 빛을 보게 되었다.

最初의 大韓民國 關稅法은 우리나라의 地理的인 特性을 考慮하여 歐美諸國과 舊滿洲國의 海陸兩面 關稅制度를 包括하고 있으며 稅率表는 自然科學式 分類方式에 따라 15類의 類別番號로 整理되어 있다.

즉 關稅法은 第1章 總則, 第2章 物品, 第3章 運送機關, 第4章 稅關貨物取扱人, 第5章 稅關官吏의 職權, 第6章 罰則, 第7章 調査와 處分, 第8章 雜則으로 되어 있으며 稅率은 商品의 緊要度에 따라 緊要品, 有用品, 奢侈品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加工度에 따라 未製品, 半製品, 完製品의 3段階로 區分하여 緊要品인 半製品은 10%, 有用品인 未製品은 20%, 奢侈品인 完製品은 100% 등으로 策定하였다.

第 3 節 戰時關稅政策期(1950年代)

關稅法の 制定으로 關稅政策 自主權이 確立되고 關稅行政이 本格的으로 發展할 時期에 6·25 動亂이 勃發함에 따라 關稅政策은 戰爭遂行과 인플레이션 수습을 위한 莫大한 戰費調達の 任務를 지게 되었다.

또한 戰爭으로 因하여 國內産業이 파괴되고 物資가 귀하게 됨에 따라 密輸가 盛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關稅政策은 密輸防止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關稅政策의 이러한 現象은 戰爭初期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고 休戰이 成立된 以後에도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戰爭復舊에 莫大한 財政需要가 뒤따랐을 뿐만 아니라 戰後經濟復舊가 지지부진하여 國產品의 量과 質이 현격히 떨어져 密輸가 盛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50年代의 關稅政策은 財政關稅로서 戰費調達 및 戰後復舊資金調達에 主力하는 한편 密輸를 根絶시키기 위하여 行政力이 動員되었던 時期라고 할 수 있다.

이에 1950年의 主要關稅政策과 制度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1. 關稅臨時增徵法の 制定

6·25動亂이 勃發한 1950年 當時의 豫算은 歲出總額의 39%만이 歲入으로 充當되었을 뿐 나머지는 借入金에 依存하는 赤字財政으로 編成되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戰爭이 勃發하자 莫大한 戰費所要를 充當하기 위한 歲入政策이 檢討되었는데 安定的으로 稅收을 확보할 수 있는 土地收益에 대한 地稅法과 輸入物品에 대한 關稅에 依存하기로 하였다.

戰費調達을 위한 關稅收入 확보책으로는 1950년 12월 全文 4個條로 된 「關稅臨時增徵法」이 制定 公布되었는데, 同法의 內容은 輸入稅率表上 無稅品目 中 食糧과 書籍을 除外한 140個品目에 대해서 從價 10%의

關稅를 戰爭이 終了되는 다음해의 12月까지 適用한다는 것이었다.

2. 援助物資의 課稅措置

政府樹立 初期부터 建國財政政策의 一環으로서 ECA 援助物資에 대해서 課稅하는 問題를 檢討해 오던 財務部는 6·25 勃發을 계기로 戰時財政需要에 副應하기 위한 財政關稅의 側面에서 ECA 援助物資에 대해 課稅하기로 決定하고 1950년 10월 이를 國務會議에 上程시켜 可決시켰다.

援助物資에 대한 課稅措置는 그 후 ECA 事業이 CAC로 移讓된 以後에도 계속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當時의 總關稅收入에서 약 半을 원조물자과세가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同 措置는 政府財政의 重要的인 役割을 담당하였다.

3. 市價逆算制의 採擇

6·25動亂이 勃發하였음에도 公定換率이 그대로 據置되고 있어서 輸入物品에 대한 課稅換率이 現實의 實勢換率과 乖離된 매우 不合理한 現象이 나타났다.

이에 一般市場率과 公定換率間의 乖離를 메우기 위하여 輸入物品의 課稅價格評價에 있어 市價逆算制를 一般的으로 採擇(1951년 4월 1일)하게 함으로써 換率의 非現實性을 補完함과 同時에 財政收入의 확보를 꾀하도록 하였다.

4. 關稅率表의 改正과 弗種別 課稅評價

休戰成立으로 戰線이 固着됨에 따라 戰災民의 救護活動과 戰災復舊를 위하여 UNKRA, FAO 등의 援助物資와 民間救護團體 등으로부터의 救護品の 導入이 增加되었고 이에 따라 國內市場과 生産活動은 활기를

떠게 되었다. 그러나 休戰後 密輸가 盛行함에 따라 外來品으로부터 어떻게 國內産業을 保護할 것인가 하는 課題를 關係機關에서 檢討하게 되었고 이의 一環으로서 國內産業의 適正保護를 위한 關稅率의 全面的인 再檢討가 있었다.

이에 從來의 稅率表上 많은 稅目을 대폭 統合하여 간소화함과 아울러 戰時 臨時增徵稅法을 吸收統合하여 稅率間의 差等을 擴大調整하는 內容의 稅率表를 作成하여 1957년 1월부터 施行하였다.

그 후 援助物資의 性格은 戰災復舊보다는 消費需要의 充當을 目的으로 하는 한편 消費財生産품을 탄 資本財 수입의 증가에 따라 일부 物품의 세율을 調整함과 同時에 行政이 複雜한 從來의 市價逆算制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市價逆算制의 폐지에 따라 1959년 1월부터는 關稅의 評價方法으로서 弗種別(KFX資金, ICA資金, 宗教弗, 輸出特惠弗 등) 課稅換率에 따라 課稅標準을 算定하게 되었다.

5. 密輸團束規定의 強化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950年代의 關稅政策의 重點은 密輸防止에 있었다.

따라서 密輸防止 업무를 效率的으로 執行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關稅法을 改正하였는데 이의 主要內容은 稅關員에 대한 司法警察權의 賦與와 罰科金の 引上(1951년 12월 6일)을 비롯하여 市場團束의 法的根據 賦與(1953년 10월), 密輸犯處罰規定의 強化(1957년 1월 1일), 賞與金比率의 引上(1957년 1월 14일) 등이다.

第 4 節 關稅政策의 跳躍期(1960年代)

5·16 革命 以後 1960年代는 우리나라의 關稅政策 運用의 方向을 國際的 水準에서 調和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閉鎖的인 關稅政策을 對外的으로 開放시켜 國際關稅貿易活動에도 積極的으로 參與하는 이른바 「關稅政策의 跳躍期」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對內的으로도 지금까지의 財政關稅的 側面에서 脫皮하여 1962부터 始作된 經濟開發 5個年 計劃에 발맞추어 產業政策的 側面과 貿易政策的 側面을 강하게 나타냈던 時期라고 할 수 있다.

1. BTN의 採擇

우리나라의 關稅政策運用의 方向을 國際化하려는 努力은 일찍이 1960年代 初盤부터 일기 始作하였다.

5·16 以後 우리나라의 經濟政策의 根幹을 「對外指向的인 貿易立國」에 둠에 따라 關稅行政 分野에서는 우선 關稅率表의 根源을 이루고 있는 品目分類方式을 從來의 自然科學的 分類方式에서 脫皮하여 世界的으로 널리 通用되고 있는 「브뤼셀 品目分類(BTN:Brussels Tariff Nomenclature)」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決定에 따라 相當한 期間 동안 이루어진 實務者의 作業結果를 토대로 하여 關稅法을 改正(1961년 12월 30일)하여 BTN을 우리나라의 關稅率表上 品目分類方式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2. GATT 및 CCC에의 加入

世界的인 貿易自由化 추세와 通商擴大 趨勢에 隋伴하여 우리나라의 輸出規模도 확대되어 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海外進出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多國間的 「最惠國特遇協定」을 맺을 必要性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GATT에 加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4일 「關稅와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GATT: General Agreements on Tariff and Trade)의 議定書에 서명절차를 마침으로써 GATT의 會員國이 되었으며 곧 이어서 협상이 전개된 「Kennedy Round」 협정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는 總 78個 品目的 稅率을 GATT에 양허하는 대신 各 GATT 會員國으로부터 總 6만 5천여 개에 대해서 GATT 양허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關稅政策은 對內的인 財政需要 確保나 密輸 防止에 局限되어 있었는데 GATT 加入을 契機로 하여 이제 對外的인 貿易政策에도 積極的으로 作用하는 政策手段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關稅政策運用의 方向을 국제적 수준에 調和시키고 能率化시킴으로써 對外去來에서 非關稅障壁(Non-Tariff Barrier)이라고 불리는 각종 세관절차를 簡素化하고 世界的인 貿易自由化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1968년에는 關稅行政의 國際的인 權威機關인 「關稅協力理事會(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에 加入하게 되었으며 이를 契機로 各種 國際的인 標準制度를 우리나라 관세법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3. 臨時特別關稅法의 制定

世界的인 貿易自由化 趨勢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1964년에는 換率政策面에 있어서도 從前의 非現實的인 「固定換率制度」에서 탈피하여 「單一變動換率制度」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外換政策의 自由化 추세를 관세면에서 補完하기 위하여 1964년 6월 12일 法律 第1644號로 「臨時特別關稅法」을 制定하였다.

이 臨時特別關稅法은 特定輸入物品에 대하여 一般關稅 以外에 臨時關稅를 賦課함으로써 輸入需要를 억제하는 한편 緊要物品에 대해서는 特

關稅를 非課稅함으로써 物資需給의 圓滑化와 物價安定에 기여하도록 規定되어 있었다.

이처럼 臨時特別關稅는 우리나라 經濟의 「現實化 내지 自由化措置」에 대한 保障措置로서 立法化되어 그 施行過程에서 많은 肯定的인 役割을 擔當하였으나 이의 適用過程에서 發生하는 副作用도 없지 않았다.

이리하여 臨時特別關稅法은 關稅率機能의 強化와 關稅行政의 能率化를 目的으로 하는 1973年 關稅制度 改編에서 廢止되었다.

4. 彈力關稅制度의 導入

貿易을 規制하는 方式은 換率과 關稅率에 의한 「間接規制方式」과 貿易計劃에 의한 「直接規制方式」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貿易規制方式은 소위 「輸出入期別公告」에 의한 直接規制方式이었다.

直接的인 貿易規制方式下에서는 價格의 自動的 調節機能에 依存하는 換率이나 關稅率이 제 기능을 發揮할 수 없음은 當然한 論理이다.

그러나 1966年 以後 世界的인 「貿易自由化」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貿易政策面에서는 「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外換政策面에서는 1964년부터 「單一變動換率制度」를 채택하였다.

貿易 및 外換面의 自由化 措置를 關稅政策面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補完해 주기 위하여 소위 「彈力關稅制度」가 導入되었다.

彈力關稅制度는 「租稅法律主義」에 대한 例外的인 措置로서 國內外的 급변하는 경제정세에 따라 行政府가 一定한 要件에 따라 關稅率을 변경할 수 있는 制度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7年 11월 29일 第15次 關稅法 改正에서 처음으로 導入되었다.

1967年에 導入된 彈力關稅制度로서는 「制限的 關稅授權制度」, 「緊急關稅制度」, 「關稅割當制度」, 「相計關稅制度」, 「便益關稅制度」 등이 있다.

5. 韓日國交 正常化와 韓美行政協定

日本은 韓國의 對日國交 正常化 努力을 意識하고 1962년부터 1963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對日主要 輸出商品에 대해서 關稅率을 引上하고 非關稅障壁을 더욱 높임으로써 國交 正常化 以後의 韓日間貿易 交渉에 有利한 高地를 차지하기 위한 一連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1965年 韓日間의 國交 正常化가 이룩된 以後 우리나라는 韓國상품을 목표로 이미 설정한 일본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韓日貿易 會談이나 韓日閣僚會議을 통하여 끈질기게 對日交渉을 벌이게 되었다.

한편 6·25動亂 以後 韓國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과의 地位에 관한 협정을 맺기 위해 장기간의 論難 끝에 1966년 7월 9일 「韓美行政協定」에 署名을 하게 되었으며 1967년 2월 9일부터 發效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軍納品の 免稅問題, PX, APO 物品의 稅關檢査問題, 托送·別送·携帶品の 檢査와 免稅物品의 處分 및 合同團東活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關稅主權이 주둔군에게까지 미치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6. 稅關檢査業務의 科學化

世界貿易의 增加와 科學技術의 급격한 進步로 新規商品이 많이 導入됨으로써 課稅價格決定과 通關密査의 基準이 되는 檢査와 鑑定事務의 科學化가 切實히 要請되었다.

이에 1958~1960年代에 걸쳐서 稅關鑑定 分析을 위한 科學裝備를 마련하게 되었고 1961년 10월 2일에는 財務部 直屬으로 鑑定分析所를 發足시킴으로써 稅關業務 科學化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第 5 節 關稅政策의 成熟期(1970年代)

1960年代를 關稅政策의 跳躍期라 한다면 1970年代는 그동안 導入되었던 各種 制度와 政策方向을 實踐에 옮기는 成熟段階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經濟開發計劃이 成功的으로 遂行되어 貿易關係業務가 重要視됨에 따라 關稅行政組織을 政策機能과 執行機能으로 分離시키게 되었다.

1. 關稅廳의 設立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인 遂行과 輸出獎勵政策의 成功으로 우리나라의 貿易規模는 1970年代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팽창되었다.

貿易規模의 擴大에 따라 이에 부수되는 各種 稅關業務가 확대되는 한편 密輸關係業務를 보다 效率的으로 執行하기 위해서는 執行機能을 專擔할 強力한 機關이 必要하게 되었다.

이에 關稅行政 組織은 1970年 8月 關稅廳이 新設됨으로써 關稅의 賦課徵收, 密輸團束, 一線稅關의 總括 등의 執行業務는 關稅廳이 맡게 되었으며 關稅法令, 關稅率, 國際協力 등의 政策業務는 財務部 關稅局에서 맡기로 되었다.

2. 關稅制度의 整備

1970년 8월 關稅廳이 設立되었으나 그동안 여러가지 事情으로 關聯法規가 整備되지 못했었는데 1972년 12월부터 1973년 3월에 이르는 期間에는 大幅的인 法令整備가 있었다.

즉 『關稅法』을 비롯하여 「關稅法 및 特定外來品 販賣禁止法에 의한 沒收品 및 國庫歸屬物品에 관한 臨時措置法」과 「韓美行政協定施行에 따

르는 關稅法 등의 臨時特例에 관한 法律이 改正되었으며 이미 論述한 「臨時特別關稅法」이 廢止되고 待期法令으로서 「臨時輸入附加稅法」이 制定되었다.

「臨時輸入附加稅法」은 換率에 대한 補完措置로서 制定된 法인데 國際收支가 惡化되었을 때는 課稅價格의 30% 範圍內에서 大統領令으로 一律적으로 임시 수입부가세를 정할 수 있는 법이다.

한편 1973년 3월에 改編된 關稅率은 第3次 經濟開發5開年計劃을 效率적으로 支援하기 위해서 調整된 것으로서 「實效保護理論(principle of effective protection rate)」에 입각하여 關稅率調整作業이 이루어졌다는 데 그 特徵이 있다 하겠다.

3. 1974年 1月 14日 大統領 緊急措置

1973년 10월 石油波動 이래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제수지를 방호하고 庶民生活의 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1974년 1월 14일 「大統領緊急措置 第3號」가 發動되었다.

同 措置에 包括된 主要 關稅政策은 지금까지 放慢하게 運用되어 오던 關稅減免制度를 政策事業 中心의 選別減免으로 轉換하는 한편, 不要不急한 奢侈品의 稅率을 大幅 引上하고 國民大衆의 基礎生活品은 彈力關稅制度에 의해서 根源적으로 稅率을 引下하는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그런데 이 1월 14일 緊急措置는 1974년 11~12월 사이에 立法化되어 平時法令 體系에 吸收되었다.

4. 彈力關稅制度의 發動

이미 論述한 바와 같이 彈力關稅制度는 1967年 우리나라 關稅法에 導入되었으나 發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3년 10월 오일쇼크 以後의 國際資源波動에 적절히 對處하기 위하여 1974년 1월 4일 最初로 彈力關稅

를發動하였다.

그 이후 國內物價의 安定과 産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彈力關稅가 發動되었고 1974년 12월 「원貨의 平價切下」와 1975년 7월 1일 「關稅還給制」의 實施와 함께 彈力關稅가 發動되었으며 1975년 7월 1일 現在 總 8회에 걸쳐 彈力關稅制度에 의해서 關稅率을 변경시킴으로써 激變하는 國內外經濟情勢에 效率的으로 對處하였다.

5. 關稅還給制度의 實施

一般的으로 輸出用輸入原材料에 대한 關稅上의 輸出支援方法은 「事前免稅制度」와 「還給制度」가 있다.

事前免稅制度는 1975년 7월 1일 以前 우리나라에서 實施한 制度로서 1960年代 및 1970年代 初半期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輸出擴大에 크게 寄與한 바 있다.

그러나 貿易規模가 擴大되고 우리나라의 産業이 成長함에 따라 輸入促進型의 事前免稅制度는 外貨 稼得率의 低下, 國內産業의 潛食 등 여러 가지 副作用을 점차 심각하게 露出し켰을 뿐 아니라 關稅行政에 미치는 荷重 또한 甚大하게 作用하였다.

이에 政府에서는 1970년부터 關稅還給制의 實施 可能性 여부를 關係部處間에 檢討하기 始作하였으며 드디어 1974년 11월에는 關稅환급제가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 還給에 관한 特例法」으로 立法化되었으며 이에 따라 1975년 7월 1일부터는 歷史的인 關稅還給制가 實施됨으로써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一大轉機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還給制는 輸入時에는 關稅와 內國消費稅를 부과하되 一定期間(最初年度 4個月) 동안 징수유예를 許容하며 輸出時에는 賦課된 關稅 및 消費稅를 「定額還給率表」에 따라 自動還給하는 制度上의 特徵을 갖고 있는바 이는 制度轉換에 따른 輸出業者의 資金負擔을 덜어 주는 한편 환급절차를 능률화하는 데 그 目的이 있었다.

6. 關稅政策의 機械化

輸出入貿易統計는 그간 經濟企劃院과 中央電子計算所를 轉轉하면서 集計·公表되었으나 1973년부터는 關稅廳에 컴퓨터를 設置·運營함으로써 關稅청에서 體系化하여 公表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통관업무를 비롯하여 保稅貨物管理, 犯則索引 등 모든 稅關事務를 「On Line Real Time Total System」에 의하여 電算處理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갖게 되었다.

7. GSP 受惠

1960年代의 世界經濟는 戰後의 「브레튼우드」體制(IMF, IBRD, GATT)下에서 括目할 만한 安定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先進國들의 經濟成長과 貿易擴大는 顯著하게 向上되었다.

이러한 北半球의 先進國들과는 對照的으로 南半球의 開發途上國들은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올 줄을 모르고 先進國들의 特惠貿易과 開發援助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開發途上國들의 이러한 외침은 마침내 「유엔通商開發會議(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를 창설하였으며 UNCTAD에서는 史上最初로 開發途上國의 무역확대를 위한 「一般特惠關稅制度(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一方的·無差別的·非互惠的으로 實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開發途上國의 一員으로 UNCTAD의 GSP협상에 적극 參與함으로써 1971年 이후 各 先進國들이 實施한 特惠關稅 惠澤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輸出擴大에 크게 寄與하여 왔다.

第 6 節 關稅政策의 第1次 變革期(1980年代)

1980年代 初에는 第5共和國 出帆과 함께 中進國 經濟로서의 變革期를 맞이하여 國內産業을 保護하고 急變하는 經濟動向에 슬기롭게 對處하기 위하여 새 稅關像 定立이 要求되어 內部改革을 斷行하였다.

1980年代 後半期에 들어서 關稅行政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側面的으로 支援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輸出入 物動量이 3千億달러에 달할 것으로 豫想되는 2000年代에 對備하여 關稅政策의 方向을 새롭게 點檢해야 할 必要性이 擡頭됨에 따라 이러한 要求에 副應하기 위하여 ‘찾아서 支援하는 稅關行政’이라는 指標가 登場한 것이다.

1980年代에 새로이 導入된 主要 關稅行政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關稅率 引下와 5個年 豫示制의 實施

우리나라는 1983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前例 없는 대폭적인 關稅政策의 改編을 감행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製品의 加工度에 따라 다른 關稅率을 적용하는 差等關稅率制度(tariff escalation system)에서 탈피하여 均等關稅率制度(uniform tariff system)로 移行한 것과 平均關稅率의 대폭적인 引下라고 할 수 있다. 均等關稅率制度로의 이행은 政府主導型的의 保護와 支援政策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拂拭하고 對內外 競爭體制를 정착시켜 市場經濟原理에 의한 民間主導型 經濟體制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1980年代의 產業政策 方向에 따른 것이며 1970년대에 30.6% 수준을 견지했던 平均관세율이 1980년대에는 21.4%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앞으로 적용될 關稅率을 미리 알림으로써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를 1984년과 1989년에 각각 실시하였다.

2. 調整關稅制度의 新設 · 運用

새로이 輸入自由화된 품목으로서 수입의 급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인상·적용할 수 있는 調整關稅制度를 신설하였다.

3. GATT 新評價制度의 導入

關稅評價에 관한 國際協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68年 7月 CCC 關稅評價協約에 가입한 이래로 16年間 同 CCC 關稅評價協約(BDV)을 關稅法令에 구체화하여 運營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交易對象國인 미국, 캐나다 등이 주도한 GATT 關稅評價協約에 의한 新關稅評價制度가 시행되게 되자 1981年 1月 6日 5年間의 시행유보조건으로(同 協約 제6조는 8年間 유보) 同 協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CCC 關稅評價協約으로부터 新關稅評價體系로 전환하는 데에 따르는 制度 變更의 충격을 당초의 協約上의 의무시행 시기보다 앞당기기 위하여 1984年 7月 1日부터 新關稅評價制度의 내용을 미리 시행하여 오다가 1986年 2月 5日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나아가서 1989年 2月 5日부터는 同 協約 제6조의 규정마저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종전의 CCC 關稅評價協約으로부터 1982年 4月에 탈퇴한 바 있다.

4. HS 制度의 導入實施

1988년 關稅率表上의 關稅品目分類體系는 관세협력이사회 분류방식인 CCCN에서 국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방식인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약칭 Harmonized System)로 전환되었다. HS는 종래 관세품목 분류체계였던 CCCN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새로 마련된 關稅率表上의 상품분류체계이다. CCCN은 관세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제적 통일품목분류표인데 비하여 HS는 관세, 통계, 운송 등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통일된 多目的共通品目分類表이다.

한국은 1985년 HS협약에 가입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관세율표상의 關稅品目分類體系를 이 HS 분류방식으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HS 分類方式은 각국간의 무역통계의 수집,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去來品目이 이 하나의 상품분류표에 포괄적으로 기재되기 어려우므로 이 HS방식에서도 CCCN의 基本原則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5. 輸出入物品 通關節次의 簡素化

가. 品目分類事前回示制度的 導入

세관에 수입신고된 물품을 검사 후 品目分類를 확정하는 종래의 제도를 물품의 수입이전에 품목분류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通關許容與否와 關稅負擔額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品目分類事前回示制를 도입하였다.

나. 自律管理保稅區域制度 新設

自律管理保稅區域制를 新設하여 종래에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의 物品搬出入, 管理, 檢査 등을 세관공무원이 담당함에 따른 불편과 非效率性을 제거하기 위하여 同 節次의 省略 또는 간소한 절차로 이행할 수 있도록 改善하였다.

다. 簡易保稅運送制度의 新設

또한 簡易保稅運送制度를 新設하여 外國物품의 國內 運送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保稅運送物품의 檢査·申告 및 면허의 생략 또는 간소한 절차로의 이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라. 輸出入事前申告制度 導入

通關對象物品이 保稅區域에 반입되기 前에도 輸出入申告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携帶品에 대한 金額基準 單一稅率制度 適用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통관시에 品目別로 적용되는 簡易稅率制度를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금액별로 單一稅率을 적용토록 하여 여행자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바. 關稅支援制度의 整備

1983年 以前에는 產業別 減免制度를 運用하여 產業政策上 保護·育成이 필요한 化學公業·일반기계제조업 등 14개 산업의 施設財에 대하여 關稅를 減免하였다. 그러나 산업별 減免은 산업에 對한 關稅의 增稅성 支해로 특정부문에 對한 과잉투자 유발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기 때문에 1984年 이후 1988년까지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보다 增稅적이고 산업전반에 裨益효과가 있는 機能별 減免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科學 計測 및 調整器機 關稅減免,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 關稅減免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1989年 이후에도 機能별 減免을 강화하기 위하여 企業附設研究所·產

業技術研究所의 연구개발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도입하였으나, 산업별 감면제도의 완전폐지로 인해 次世代産業으로 부상하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전자공업 중 첨단에 속하는 업종에 대하여 1991년 말까지 限時的으로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다.

6. 通關業務의 電算化

1988年 12月 關稅法 개정시에 수출입통관절차 등의 이행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세행정의 전산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輸出入申告 및 免許節次와 保稅貨物 管理節次 등의 電算化 計劃을 國家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行政電算網 構築의 一部事業으로서 第1次的으로 서울·金浦稅關地域의 航空貨物에 대하여 1989년에 施行하였으며 1990年代에는 全國의 海上貨物까지 擴大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第 7 節 關稅政策의 第2次 變革期(1990年代)

1. 輸入分 防衛稅의 廢止에 따라 關稅率 引下 5個年 豫示制 1年씩 順延 適用

종전에 수입물품에 일률적으로 2.5%씩 부과하던 輸入分 防衛稅가 1991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예상되는 稅收缺陷을 일부 보전하되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對外通商摩擦을 최소화하기 위해 關稅率引下 5個年 豫示制를 1년씩 順延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991년에는 이미 예시된 1990년도 관세율을 한번 더 적용하고, 1992년에는 예시된 1991년 관세율을, 1993년에는 예시된 1992년 관세율을, 1994년 이후에는 1993년 이후 적용될 것으로 豫示된 關稅率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 彈力關稅의 國內產業保護機能 強化

탄력관세 중 덤핑防止關稅, 相計關稅, 緊急關稅 및 報復關稅의 경우는 國際協力關稅와 便益關稅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세의 國內산업 보호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여행자 휴대품 등의 신속통관을 위하여 적용되던 간이세율을 그 세율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防衛稅가 폐지됨에 따라 방위세에 해당하는 세율만큼 인하하되, 品目群間的 세율차를 종전에는 10%로 하던 것들 앞으로는 5%로 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어 割當關稅를 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基本關稅率에 40%를 가감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農林畜水産物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에 그 물품의 國內外價格差에 상당하는 비율을 가산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內 零細農林畜水産業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緊急關稅·季節關稅의 부과범위를 보다 탄력화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賦課權者를 財務部 長官으로 조정하고, 외국의 不公正 貿易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 마련을 위하여 발동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報復關稅制度를 보강하였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환급·재심사 요건을 GATT 협정내용과 일치시켰다.

3. 關稅減免制度를 國際競爭力 強化에 重點을 두어 運營

産業構造의 조정, 技術研究開發의 촉진, 輸出競爭力 제고 등을 위하여 관세지원제도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強化에 중점을 두어 운용하도록 하였다.

첫째,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막대한 資金所要를 감안하여 첨단기술에 대한 관세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둘째, 産業廢棄物의 再活用 또는 적절한 처리가 중요한 산업문제에 대

두됨에 따라 이들에 소요되는 機械·器具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80% 감면하도록 하였다.

셋째, 生活環境 改善을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등이 수입하는 公害測定 및 分析用機器 또는 上水道水質 向上을 위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다.

넷째, 賃金引上·勞使紛糾 등으로 제조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 주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工場自動化機器에 대하여는 관세의 60%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4. 輸出入通關節次의 一大轉換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에의 부담이나 장애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출입통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는데, ① 수출입면허제를 수출입신고제로 전환하고 ② 물품이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입항전 후부터 허용하여 ③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을 생략하고 ④ 관세의 사후납부제를 도입하며 ⑤ 보세구역반입 보세운송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를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5. 不公正貿易行爲 團束機能 強化

商標權·著作權 侵害物品에 대한 세관단속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관이 통관심사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함으로써 국내소비자·생산자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통관된 물품이라도 관세법위반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세구역 안으로 반입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절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6. 通關後 事後管理의 強化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되 관세법 위반의 구체적 혐의가 있는 물품,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에 의해 컴퓨터가 선별한 물품 등 우범성이 높은 물품만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7. 國境爲主 密輸團束을 流通市場 遮斷方式으로 轉換

輸入制限品目이 감소하여 밀수품목이 소수품목으로 특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통정보를 토대로 한 시장단속방식으로 전환하여 밀수품 유통시장 파괴에 목표를 두게 되었다.

8. 電算化 推進으로 書類 없는 通關行政의 具現

關稅廳에서는 「바르고 빠른 통관체제구축」으로 輸出入業界의 금융비용 및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EDI방식에 의한 수입통관절차를 추진중(수출의 EDI통관은 1994년 12월부터 시행중임)이며 1996년 7월부터 輸出入申告制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수입 EDI통관시스템에서는 수입화물적재선박의 입항 전에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물품도착 즉시 搬出할 수 있게 하고 우범화물선별, 검사 후 선량하다고 판단된 수입자의 화물은 신속통관되도록 하며 서류, 소액면세물품 등 특급탁송화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특송업체와의 협조로 사전에 검사대상을 선별하는 特別通關體制를 구축하는 등 더욱 신속·편리한 통관제도가 되도록 하였다.

9. UR을 통한 大幅的인 關稅讓許와 特別緊急關稅制度 導入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종결된 關稅協商에서 1986년 평균양허관세율 17.9%를 54% 인하한 평균 8.2% 수준의 관세양허계획을 GATT에 제

출하였는바 양허의 범위는 총 품목수 기준으로 90%로서 관세품목의 거의 대부분을 UR을 통해 관세양허를 한 결과(〈表 II-1〉 참조) 앞으로 UR 規範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關稅의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관세의 자주권이 크게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表 II-1〉 우리나라의 關稅讓許

(單位: 개, %)

	총 품 목 수	양 허 품 목 수	양 허 비 율
공 산 품	8,705	7,990	91.8
수 산 품	338	144	42.6
계	9,043	8,134	90.0

資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출범과 신고역질서』, 1994.

또한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예외없는 關稅化’가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모든 국가의 非關稅障壁이 사라지고 讓許比率이 100%로 높아지게 되었는데, 특히 개도국의 讓許比率 변화는 先進國이나 市場經濟轉換國에 비해 대폭적이었다. 다만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關稅化 예외 조치를 주장하던 일본, 스위스, 북구 등의 입장이 일부 반영되어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特別條項을 신설, 關稅化 猶豫期間을 10년 동안 부여받음으로써 당분간 쌀의 완전개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國際貿易機構 출범을 위한 마라케쉬協定の 농업에 관한 協定文(이하 농업협정문)」은 關稅化對象品目の 수입이 급증하거나 세계시장 가격이 기준가격(trigger price)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特別緊急救濟措置를 인정하고(농업협정문 제5조) 있는 바 이를 特別緊急關稅制度라는 명칭으로 국내법 형태로 수용하여 관세상 적정한 농업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第 3 章 關稅政策 變化의 內容과 特徵

第 1 節 過渡期의 關稅政策(解放~政府 樹立)

1. 與件

가. 産業政策의 基調 : 自主的인 産業政策의 展開 餘地가 없었던 時期

36년 동안 日本經濟의 종속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던 우리나라 經濟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여 일본 경제와의 유대가 끊어지고 설상가상으로 남북한으로 兩斷됨에 따라 外國의 원조 없이는 자주적으로 經濟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따라서 國民경제가 궁핍하여 輸入재원 의 대부분을 차입금 및 國채발행으로 보전하고 있었고 원조물자와 米國의 불하물자 등으로 國民經濟가 순환되고 있었다.

나. 貿易政策의 基調

對外貿易도 關稅무역이 대부분이고 民間무역은 극도로 制限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自由중국 및 香港과의 일부 農산물 및 鑛산물 의 ‘물물교환’이 있었을 뿐 정상적인 貿易이라고는 없었다.

다. 換率政策의 基調

이 당시의 換率은 美國 軍정당국이 軍정청의 對민채무 지급을 위한 米 國달러와 당시 朝鮮은행권인 圓화의 交換比率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의 경제적 기능이 발휘될 수 없었고 또한 換率의 경제수단화도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의 換率은 단순히 美國 군정당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評價될 수 있다.

라. 密輸의 推移

일부 몰지각한 자들에 의해 외국원조물자와 미군부대를 통하여 나온 레이션을 비롯한 식료품과 의류 등 생활필수품 및 각종 미군물자가 암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密輸의 기원이 되었다.

2. 關稅政策의 變化 內容

8·15 解放과 더불어 日本의 支配로부터는 벗어났으나 美軍政이라는 새로운 통치기관이 들어섬에 따라 關稅制度도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軍政法令에 의해 집행되었다.

關稅行政은 舊日本法律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1946년 10월 8일 美軍政法令 第116號로 개정하는 등 3차례에 걸친 關稅法規의 개정이 있었는데 과도기의 관세정책의 특징은 ① 외국무역을 조장하기 위하여 關稅率을 전면적으로 10% 이하로 인하하고 ② 종래 종량세이었던 것(약 60%가 종량세였음)을 모두 종가세 10%로 개정하였으며 ③ 米穀의 해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수출 운반수단을 몰수하고 밀수출범과 밀수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는 한편 관세범의 통보자와 단속 직원에 대하여는 탈세물품(벌금 또는 몰수품)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상여금을 수여하도록 하였고 ④ 밀수방지를 위하여 보세구역의 물품장치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동시에 장치기간 경과 물품은 세관장이 강제 買收하도록 하였으며 ⑤ 면세범위를 확대하여 食糧品을 추가하였다.

3. 關稅政策 變化의 效果分析

필수적인 물자의 부족에 허덕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 재정을 안고서 關稅率 引下와 免稅範圍를 확대한 것이라든지 악성 인플레이션 상태하에서 모든 종량세를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수긍되는 일이나 일률적으로 10%로 세율을 책정한 것은 國內産業을 도외시한 정책으로서 비현실적이며 어떤 정책적인 배려보다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주로 한 것 같다. 더욱이 당시의 밀수가 주로 거래 국가간의 가격차이보다는 수요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며 대외무역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關稅率의 인하나 면세범위의 확대가 수입 촉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關稅政策 高유의 기능은 도외시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무역의 주체가 관영무역이 대부분이고 민간무역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關稅政策도 제구실을 못하고 통제무역에 소속되어 형식적인 관세행정만이 존속할 뿐이었다.

第 2 節 戰時關稅行政期(政府 樹立 ~ 1950年代)

1. 與件

가. 産業政策의 基調 : 獨自의인 産業政策의 展開가 어려운 가운데 破壞된 産業의 再建 努力에 集中

전시경계가 전쟁수요의 충당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금융 동원을 필요로 하였음은 물론 전쟁의 종식과 전후복구도 그에 못지않은 資金需要를 수반하였기 때문에 이의 주역을 담당해 온 것이 미국과 기타 외국의 원조였다. 그와 동시에 내적으로 국내가용자원의 최대한 활용이 요청되었는바, 전후 關稅政策에 부과된 2대과제도 가능한 한 많은 관세수입을 올

리고 파괴된 産業을 빨리 복구·부흥시키는 일이었다.

FOA를 통한 2억달러의 對韓經濟援助가 공표됨을 계기로 폐허화되었던 국내 産業施設의 재건을 위해 본격적으로 부흥사업이 전개되어 1956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전재복구가 이루어져 1957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경제가 戰災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여 중간안정을 이룬 가운데 원조물자를 배경으로 새로운 생산구조와 수입구조의 변모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나. 貿易政策의 基調

輸出入許可品目이 최초로 지정된 것은 1949년이었으며 이는 1955년에 그 요령이 개편되었고 1957년 貿易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시 개편되었다. 1949년 5월 1일 輸出入許可品目は 과도정부에서 적용되었던 수출입품목에 따라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수출입허가품목은 그해 12월 25일 工商部告示에 따라 폐지되어 새로 지정되었다. 輸出許可品目は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 6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지정되었고 輸入許可品目は 이상의 물품 중 수산물을 제외한 5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지정되었다. 분류품목 중 쌀, 중석 등은 정부수출거래에 국한되었고 유연탄은 정부수입거래에 국한되었다.

1955년 輸出許可指定은 외화사용과 관련하여 정상수입품목과 특수수입품목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正常輸入品目は 시설재, 원자재 등으로 이는 정부에서 방출되는 외화로 수입되도록 하였고 特殊輸入品目は 수입채산성이 높은 일반품목으로 이는 수출에서 획득된 외화로 수입되도록 하였다.

수출입허가품목의 지정은 1957년 무역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수출은 법령에 저촉되거나 資源保護에 지장이 있거나 하지 않은 한 적극적으로 장려되었으며 한편 수입은 國內産業의 보호·육성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거나 또는 경제운영에 필요불가결한 품목 이외에는 규제되었다.

다. 換率政策의 基調

1945년부터 1960년까지 援助期 동안의 환율정책은 당시 GARIOA 등 미국의 援助政策에 따라 실시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公定換率이거나 대충자금, UN군대여금상환 등에 적용되는 환율 등은 주로 韓國과 美國간의 합의에 의하여 책정되었다. 즉 해방 후 최초의 단일공정환율인 1달러당 15圓(0.015원)은 GARIOA원조와 미국 군정청의 對民間債務支給에 적용하기 위하여 韓美간에 합의나 공동성명에 의하여 책정되었다. 따라서 원조기 동안에 한국은 독자적인 환율책정권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

라. 密輸의 推移

解放以後 우리 國民은 世界 第2次大戰을 勝利로 이끌고 이 땅에 恩惠國으로 등장한 美合衆國 軍人들로부터 희한한 菓子類와 레이션 食品들을 맛볼 수 있었는데 이들 各種 美軍物資가 國內에 침투되어 은연중에 暗市場을 形成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당시 小規模나마 소위 「마카오」貿易이 이루어짐에 따라 洋服地 등 일부 消費財들이 密輸入되어 「마카오」紳士라는 流行語가 생겨났으나, 극히 小規模의 密輸行爲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建國初期의 密輸樣態는 6·25動亂을 거치면서 2가지 形態로 정리되었는데 그 하나는 소위 美軍物資의 流出로 인한 本格的인 暗市場의 形成이었는데 이 무렵에 서울에서는 南大門市場 內에 속칭 「도깨비市場」이 생겨났고, 釜山에서는 國際市場 內에 「강푹市場」이, 大邱에서는 교동시장 內에 「양키市場」등이 出現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점차 組織的인 密輸輩들이 발호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 6·25動亂의 副産物인 단피와 밍크코트 등을 小型船舶에 실어 日本 對馬島의 嚴原港에 密輸出하였고 그 販賣代金으로 다시 日本에

서 生産되는 사치성 消費財들인 나일론 양말, 화장품, 직물류 등을 같은 船舶들을 이용해서 國內에 密輸入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1950年代의 소위 密輸의 極盛期를 말해 주는 것이었고 우리나라에서 한때 名聲을 날렸던 海上特攻隊密輸로 발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은 小型船舶에 탱크엔진이나 비행기 엔진을 設置하고 南海岸의 島嶼地方과 日本의 對馬島 사이를 불과 4時間 만에 往來하면서 우리나라 南海岸 일대를 密輸基地化하였으며 이들의 活動은 1959年 5月 對日通商 中斷措置로 더욱 盛行하였는데 推算에 의하면 年間 密輸船은 약 1,300여 隻, 그 密輸額은 약 10億원에 이르렀고 당시 對馬島의 嚴原港에는 유명한 山國商事 등 密貿易仲介商社가 약 23個社에 達하였던 것으로 集計되었다.

2. 關稅政策의 變化 內容

戰時經濟가 전쟁수요의 충당을 위하여 막대한 財政金融 動員을 필요로 하였던 것처럼 전쟁의 종식과 복구도 그에 못지않은 資金需要를 수반했음이 전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국가가 당면한 문제는 復舊事業과 生産手段의 조속한 회복 및 악성 인플레이션의 수습이었다. 戰後 復興을 뒷받침하기 위해 戰時稅制를 平時稅制로 전환시킨 시기였다. 國內可用資源의 최대활용이 요청되던 시점에서 關稅政策도 초기에는 가능한 많은 關稅를 徵收하기 위한 財政關稅政策이었고, 후기에는 한국경제의 중간 안정을 바탕으로 產業育成 指向性的의 고조 및 對外援助의 漸減, 密輸의 尙存을 배경으로 保護關稅를 강화하였다.

이 기간에 네 차례(1951년 12월 6일, 1953년 10월 30일, 1957년 1월 1일과 동년 1월 14일)에 걸친 關稅法 개정과 두차례에 걸친 關稅率 조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戰時財政과 關稅輸入 增收을 위한 政策

政府體制가 완전히 정비되기도 전에 6·25동란이 발발하여 정부의 財政政策은 막중한 전쟁수행비용과 피해복구비를 조달하기 위한 財政收入 增大에 역점이 두어졌다. 關稅政策도 財政收入 確保를 위한 戰時關稅措置를 취하였는데 주요 시책은 관세임시증정법의 제정실시, 원조물자과세, 시가역산세의 채택 등이 있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關稅臨時增徵法の 制定實施

關稅臨時增徵法은 6·25동란으로 인한 정부재정 수습당면 방침에 의한 세입증가책으로 관세법 제3조에 의거하여 규정한 關稅率表品目中 비교적 과세부담의 여유가 있는 무세품에 대하여 당시 관세율 중 최저 세율인 증가 10%의 관세를 부과한 시한부(6·25동란 종료 후 익년 12월 31일까지) 법률로서 1950년 11월 24일 국회에 상정되어 호청변경(정부는 臨時關稅增徵法으로 되어 있음)만을 거쳐 확정·실시되었다.

2) 援助物資課稅

6·25動亂이 勃發하자 政府는 「關稅臨時增徵法」의 制定實施와 더불어 緊急財政收拾策의 一環으로서 ECA 援助物資에 대하여 關稅를 賦課하기로 方針을 세웠다. FCA 援助物資에 대한 課稅問題는 6·25動亂 前부터 이미 論議되고 있었다. 즉 政府樹立 直後の 建國財政政策에 공헌하기 위하여 財務部 當局은 1950年 4月부터 新稅源의 確保를 目的으로 ECA 援助物資에 대한 課稅方法을 檢討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初代 稅關局長 姜聲邵를 비롯한 稅關指導層은 이에 대하여 熟議를 거듭한 끝에 다음과 같은 理由를 들어 援助物資에 대한 課稅가 전혀 不當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첫째, 關稅法 第1條에 의하여 모든 輸入物資는 法の 適用을 받아야 한다.

둘째, 援助物資 중 官用物資는 關稅法에 의하여 免稅되나 有償分配의 民間物資는 課稅에서 除外될 하등의 理由가 없다.

셋째, ECA를 통하는 民間物資를 免稅優待하면 同一物品에 대한 正常貿易과의 均衡을 잃게 된다.

넷째, ECA를 통하는 民間物資에 適正課稅함으로써 全國民이 ECA의 惠澤에 均霑할 수 있다.

다섯째, 緊急한 建國初期의 財政需要는 巨大한 稅源을 放置할 수 없다.

以上과 같은 稅關指導層의 主張에 대하여 처음에는 臨時外資管理廳 當局과 支援機關의 美國人들이 極力 反對하였으나 결국에는 당시의 稅關顧問이던 알렌 로렌(Allen Lorren)과 稅關局間에 合意를 보게 되었고, 또 景武臺 外資總局과의 절충도 끝나게 되어 곧 實踐段階에 옮겨질 무렵 6·25動亂이 勃發함으로써 모든 계획이 水泡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3個月間의 第1次 遷都가 끝나고 政府가 서울에 환도하게 되자 南北統一課業을 完遂하기 위한 巨額의 戰費調達, 파괴된 產業 및 文化施設 등의 복구, 國民生活의 保護 등 緊急한 歲出增大가 不可避하게 되었으므로 緊急財政收拾策의 一環으로서 援助物資에 대한 課稅問題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당시의 財務部 長官 崔淳周는 스스로가 外資課稅問題를 全的으로 支持하고 1950年 10月에는 國務會議에 이를 提議하여 可決시키는 데 成功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政府樹立 直後부터 論議되어 오던 外資課稅問題는 遷都後 半月間 만에 實踐에 옮겨지게 되었다. 그러자 다시 第2次 遷都로 政府가 釜山으로 옮겨가자 稅關局도 直接一線에서 釜山港에 도입되는 援助物資를 檢査하여 民需物資에 대한 關稅를 賦課하였으므로 1950年 10月 17日부터 1951年 10月末에 이르기까지 약 65億圓에 달하는 關稅收入의 增加를 가져왔다. 이리하여 이때부터 每日 全關稅收入의 25% 가량을 外資課稅를 통해 增收할 수 있었던 것이다. ECA의 事業이 CAC로 移讓된 후에도 從前의 ECA 物品에 대한 課稅와 同一한 方針下에 CAC

有價分配物資에 대하여 課稅하였다. 그 結果 1951年 4月부터 同年 10月까지의 關稅收入은 總 346億圓에 達하였는데 그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180億圓(石油稅도 包含)이 外資課稅에 의하여 徵收된 것으로서 政府財政의 重要한 一翼을 擔當하게 되었던 것이다.

3) 市價逆算制의 採擇

財政關稅政策의 한 表現으로서 들 수 있는 또 하나의 措置는 이른바 市價逆算制의 採擇이었다. 政府는 1951年 4月을 기하여 당시의 經濟實情과 遊離된 公正換率의 適用이 關稅收入에 미치는 影響을 고려하여 市價逆算制를 採擇·實施하였다. 여기서 市價逆算制를 採擇하게 된 理由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新關稅法 第7條는 “從價稅를 賦課할 輸入外國物品은 輸入할 때의 正常到着價格에 의한다”라고 規定되어 있으므로 稅關은 關稅를 賦課하기에 앞서 우선 正常到着價格의 算出에 正確을 기해야 했음은 물론이다. 到着價格의 算出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方法이 있다. 즉 ① 輸入申告書에 添付된 送狀이 正當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到着外貨價格(CIF)에 法定換算率을 乘하여 算出하는 方法 ② 送狀價格이 不當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同種物品 또는 類似한 物品의 國內主要市場에 있어서의 都賣市價에서 諸般利潤 및 輸入港에 到着한 以後의 諸般費用을 控除한 殘額을 到着價格(課稅價格)으로 定하는 方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解放 直後부터 1951年度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採擇되어 온 方法을 보면 公定換率이 아직 決定되지 못했던 軍政 및 過政時代의 求價制貿易에 있어서는 부득이 市價逆算法을 採擇하였으나 政府樹立 以後에 公定換率이 決定되고 對外貿易도 正常的인 軌道에 오르게 되자 逆算法의 矛盾을 是正하기 위하여 全國稅關鑑定課長會議를 1949年 6월에 열고 그 決議에 따라 送狀價格에 의한 到着價格算出方法으로 變更·實施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不意의 6·25動亂이 勃發하자 인플레이션이 累增하여 諸般物價는 急騰한 데 反하여 公定換率은 그대로 據置되었으

므로 公定換率과 一般市場換率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公定換率을 引上調整하지 않는 가운데 送狀價格에 의한 到着價格算出方法으로는 關稅收入, 즉 財政收入에 莫大한 遺漏가 있게 되어 부득이 市價逆算制로 還元할 것을 決定하였던 것이다.

以上과 같은 理由로 市價逆算制는 1951年 4月 1日부터 採擇·實施되었는데 이때부터 一切의 送狀價格은 다만 參考資料에 不過하게 되고 地方稅關의 市價調查報告를 一括한 中央稅關局의 市價表가 實際의 課稅基準이 되었던 것이다.

4) 財政輸入 및 國內產業保護를 위한 (大幅的인) 關稅率 調整

解放 直後 혼란기의 關稅制度는 均正이라는 특수사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종래의 輸入關稅率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외래의 上業자본의 침투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주독립국가를 지향하던 당시로서는 무엇보다도 외래상업자본의 침투를 방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함과 동시에 國家財政上의 손실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자주적인 關稅政策의 토대가 될 新關稅율의 제정이 艱難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新關稅法에서 新關稅率表를 1949年 11월 23일 제정하여 운용하였고 1950年代의 關稅率 설정은 거의 세수확보를 위한 재정관세적 시각에서 수립되었으며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國內產業保護를 위한 보호관세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가) 1949년 11월 新關稅率表 제정

첫째, 品目の 分類는 自然科學的 分類方式에 따라 有機物·無機物·雜品の 順으로 大分, 15類로 분류하고 이것을 756의 稅番과 1,706의 稅率數로 區分했다(〈表 Ⅲ-1〉 참조).

둘째, 稅率制度는 종래의 協定稅率 내지 植民地 關稅의 性格에서 國定稅率制로 轉換하고 課稅標準도 物價變動이 격심한 實情을 감안하여 擔稅力의 公評을 기하고 稅收確保와 彈力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全品目を

從價制로 정했다.

〈表 Ⅲ-1〉 輸入關稅率表 分類細目表

(單位:개, %)

	分類品目	稅番號	稅番數	稅率數	平均稅率
제 1 류	藥品類·化粧品·爆發物	1~ 129	129	176	15.2
제 2 류	色素 및 塗料	201~ 241	41	61	19.6
제 3 류	油脂蠟 및 同製品	301~ 331	31	53	20.6
제 4 류	食料品·飲料 및 煙草	401~ 456	56	126	44.4
제 5 류	衣類 및 裝身用品	501~ 532	23	100	55.1
제 6 류	布帛 및 同製品	601~ 649	49	160	48.5
제 7 류	紙·紙製品有畫·書籍 및 印刷物	701~ 746	46	54	31.7
제 8 류	纖維 및 同製品	801~ 828	28	75	24.2
제 9 류	動物·動物產品 및 同製品	901~ 974	74	180	29.6
제 10 류	科學機品·藥器 및 銃砲	1001~1038	38	87	36.6
제 11 류	電氣機品·車輛·航空機·機械類	1101~1183	38	186	18.7
제 12 류	鑛·金屬 및 同製品	1201~1273	73	251	20.1
제 13 류	陶磁器·琉璃 및 同製品	1301~1318	18	45	36.5
제 14 류	鑛物·鑛物產藥 및 同製品	1401~1434	34	82	27.3
제 15 류	雜品	1501~1533	33	70	51.4
	計	2,350	756	1,706	26

資料: 財務部 關稅局, 『稅率表와 統計 品目表』, 1952.

셋째, 稅率의 策定은 貿易·産業 및 財政의 實績을 기초로 하여 産業經濟建設計劃의 遂行을 助長하고 消費稅로서 國民의 租稅負擔을 均衡化하며 점차 好轉되어 가는 國民經濟에 迎合하기 위해 基本稅率 30% 最低稅率 10% 最高稅率 100%로 策定하고 稅率의 差等은 10~40%까지는 5%差, 40~60%까지는 10%差, 60~100%까지는 20%差의 11단계로 했다.

넷째,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거나 혹은 生産量이 極小量인 것으로 建設機材인 鑛·金屬 및 金屬製品 그리고 艱요하거나 혹은 缺乏되는 重要物資의 原材料 등에 대해서는 無稅로 策定했다.

이에 따라 平均稅率은 26%에 이르렀는데 關稅率 設定의 具體的 原則과 基準을 보면 다음과 같다(〈表 Ⅲ-2〉 참조).

〈表 Ⅲ-2〉 關稅率 設定의 原則과 基準

(單位: %)

		主 要 品 目	輸入稅率의 基準			
			原材料	半製品	完製品	工業資材인 完製品
緊急 및 必要 物品	국내생산이 없거나 혹은 極少量인 것		無稅	10	15	10
	국내에서 일부 생산 되거나 혹은 생산할 수 있는 것		10	15	25	15
	국내에서 需要量 全 부가 生産되거나 혹 은 생산할 수 있는 것		15	25	35	20
緊急치 않은 物品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20	30	40	30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30	40	50	40
奢 侈 品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혹은 생산되 는 것으로 右記 物品	菓子·化粧品·毛皮 羽·毛製品·기타 下 記 이외의 奢侈品	40	50	60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혹은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右記 物品	貴金屬·寶石·眞珠·象 牙 등을 사용하거나 혹은 장식한 製品·身 邊裝飾用 細化類·酒 類·草·化粧品 등	60	80	100	

資料: 財務部, 『關稅率表와 統計品目表』, 1952.

나) 1957年 11月 關稅率 調整

1957年 11月에는 財政需要의 激增에 對處하고 戰災의 復舊 및 發展段
階에 있던 國內産業의 保護·育成을 도모하고자 財政關稅와 保護關稅를
加一層 強化하여 거의 전부에 가까운 品目の 稅率을 引上調整, 平均稅率
을 1949년의 26%에서 30.89%로 높였다.

첫째, 稅率表를 別表 稅率表로 하면서 稅番은 종래의 756個에서 726
個로 稅率數는 1,706에서 1,229로 크게 縮小했다.

둘째, 保護關稅의 策定基準에 있어서는 ① 原料, 半製品, 完製品 順으

로 高率策定해 加工·組立工業의 發展을 도모하며 ② 國內生産品에 대한 關稅는 外國産業과 競爭할 수 있는 水準까지 引上策定하여 國內産業 保護를 強化하며 ③ 國內生産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奢侈品類나 不要不急品으로 輸入을 抑制할 需要가 있는 物品에 대하여는 高率의 關稅를 策定하였고 ④ 文化財, 科學振興機械, 公益用品, 天然原資材 등은 無稅로 했다.

다) 1958年 12月 關稅率 調整

1957 改定關稅率의 施行後 國內産業基盤이 점차적으로 確立되어 감에 따라 이를 保護·育成하는 見地에서 1958年 12月 關稅率을 調整, 保護 關稅로서의 性格을 한층 強化함으로써 平均 關稅率을 종래의 30.89%에서 35.1%로 引上했다(<表 Ⅲ-3> 참조).

<表 Ⅲ-3> 類別 平均稅率表 比較

(單位: 개, %)

	1949年		1957年		1958年	
	稅率數	平均稅率	稅率數	平均稅率	稅率數	平均稅率
第 1 類	176	15.2	154	18	128	17.3
第 2 類	61	19.6	51	24.7	36	24.4
第 3 類	53	20.6	46	25.2	31	25.5
第 4 類	126	44.4	79	37.1	43	40.4
第 5 類	100	55.1	28	62.8	22	62.7
第 6 類	160	48.5	58	51.8	39	52.9
第 7 類	54	31.7	50	36.7	41	37.7
第 8 類	75	24.2	42	27.1	27	29.8
第 9 類	180	29.6	128	31.0	67	30.4
第 10 類	87	36.6	79	34.0	37	34.2
第 11 類	186	18.7	186	22.4	90	22.1
第 12 類	251	20.1	174	27.4	75	34.8
第 13 類	45	36.5	33	38.4	21	42.3
第 14 類	82	27.3	67	27.7	34	24.7
第 15 類	70	51.4	54	48.0	35	47.7
計	1,706	26	1,229	30.89	726	35.1

資料: 韓國關稅研究所, 『韓國關稅史』, 1985.

그 요旨을 보면 ① 農家의 生産意慾을 고취시키기 위해 農産物 稅率을 5% 引上하고 ② 종래에는 國內生産이 없던 品目으로 一部 生産中에 있거나 이후에 生産이 增加된 것으로서 保護하여야 할 品目에 대하여 5~10% 引上하여 産業保護를 도모하고 ③ 半製品을 輸入하여 完製品을 加工하는 産業의 原料인 半製品稅率을 5~10% 引上하여 國內加工業을 保護·育成하며 ④ 同種物品과의 稅率均衡上 稅率을 引上 또는 引下하여 品目相互間의 均衡을 도모한 것 등이다.

5) 藏置期間 經過物品의 賣却 方法 變更을 통한 國內市場으로의 流出防止

貿易計劃에 違反되는 物品으로서 國內産業을 沮害하거나 國民生活에 直接必要하지 않은 奢侈品 등이 搬入되었을 때, 이 당시 關稅法에 의하면 法定藏置期間이 經過되면 이를 公賣處分토록 되어 있어 結局 이러한 物品이 國內市場에 流出케 되면 國內産業의 保護·育成은 물론 國民의 耐乏情神을 涵養하는 데 적지 않은 惡影響을 招來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物品이 搬入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貨主로 하여금 이를 다시 返送토록 命令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財務部 長官이 商工部 長官과의 協議에 의하여 再輸出을 條件으로 賣却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沒收 또는 國庫歸屬物品의 國內 放出의 阻止

沒收되거나 國庫에 歸屬된 物品에 대하여서도 그 物品이 國內産業을 沮害하거나 國民生活에 不要不急한 物品일 경우에는 財務部 長官이 商工部長官과의 協議에 의하여 再輸出을 條件으로 하여 賣却하거나 燒却處分 또는 減却處分하여 이의 國內放出을 阻止하도록 하였다.

나. 密輸防止를 위한 政策

1) 關稅法違反物品의 一掃 努力 展開

관세미납물품은 무면허물품으로 등록시켜 관세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차후 關稅法違反 物品을 일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2) 密輸犯 處理의 一元化

他機關에서 검거한 關稅犯을 세관에 즉시 인도하도록 하여 관세법의 조사와 처분을 一元化하였다.

3) 罰則의 強化

密輸가 점차적으로 지능화되므로 이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罰則을 조정·강화하였다. 종래 禁止品輸出入罪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原價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罰金, 關稅連脫罪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連脫稅額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罰金, 無免許輸出入罪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原價의 2배 이하의 罰金, 故買犯(密輸品 取得罪 등)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原價 상당액의 罰金を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대폭 강화하여 禁止品輸出入罪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原價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關稅連脫罪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連脫稅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無免許輸出入罪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原價의 5배 이하의 벌금, 故買犯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原價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4) 賞與金의 引上

密輸의 보다 적극적인 방지책으로 관세법을 발각전에 稅關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 상여금률이 100분의 20이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인상하였다.

3. 關稅政策 變化의 效果分析

가. 關稅輸入 效果分析

1) 戰時的 關稅收入

오랫동안 외세의 침범으로 자주적인 정부운영과 산업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新生獨立國으로서 行政體系의 미숙과 財源의 부족은 정상적인 財政運用을 어렵게 하였는데, 특히 政府組織도 제대로 갖추기 전의 전쟁 발발로 막대한 戰費調達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산업의 미발달로 인한 낮은 소득은 財政에서 租稅의 比重을 낮게 하였는데 상대적으로 國債나 借入金 그리고 外國援助에 대한 比重이 높게 나타났다.

즉 1948년은 歲入 3억 1,540만환 중에서 租稅收入은 8,220만환으로 26.1%이었으나 1949년은 14.9% 그리고 6·25동란중인 1950년은 17.2% 이었고 1951년에는 60.1%로 급상승하였다가 1953년에는 다시 30.8%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財政構造가 租稅收入의 比重이 낮은 상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의 租稅收入에서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1949년의 10.6%에서 점점 높아져서 1953년에는 17.1%로 상승하였다.

이때의 輸入物品에 대한 關稅負擔率은 <表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7%에서 37.0%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때 主要輸入物品은 食糧과 非食用燃料, 藥品類이었다. 輸入物品에 대한 關稅負擔率이 높으면서도 財政寄與率이 낮은 것은 건국초기 전쟁중에 租稅收入보다 國債 및 借入金 그리고 外國援助收入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기인한다(<表 Ⅲ-5> 참조).

〈表 Ⅲ-4〉 商品類別 輸入額에 대한 關稅負擔率(1948~1953年)

(單位:百萬元,%)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輸入總額	88.6	147.4	52.1	1,218	7,044	22,370
關稅收入	15.6	30.3	56.9	451	1,468	3,509
關稅負擔率	17.6	20.6	—	37.0	20.8	15.7
食糧	1.1	1.0	0.4	41.2	3,095	9,849
非食用燃料(광물성연료제외)	19.9	22.7	3.6	262.5	263	1,231
鑛物性燃料 潤滑油 吳關聯品	2.3	1.9	0.3	28.8	73	100
動植物性油脂	3.3	1.8	0	7.1	16	317
藥品類	14.8	25.1	8.7	242.3	1,372	3,666
原料別製品	44.6	87.1	30.6	562.0	1,509	5,100
機械類와 運搬用機器	1.0	3.3	5.7	34.1	184	758
其他	1.6	4.5	2.8	40.0	532	1,349

註: 1950년도 輸入額 중에는 서울, 인천의 3~6월분이 산입되지 않아 擔稅率을 계산할 수 없음.

資料: 嚴承煥, 『關稅法解義』, pp. 189~196.

〈表 Ⅲ-5〉 一般財政 歲入性質別 分析表 I (1948~1953年)

(單位:百萬元,%)

	歲入	租稅		專賣 益金	其他 收入 ¹⁾	國債 吳 借入金 ²⁾	外國 援助	
		內國稅	關稅					
1948	315.4	82.2	—	15.6	—	96.9	136.6	—
(1948.10~1949.3)	100	26.1	—	—	—	30.8	43.1	—
1949	911.6	135.5	121.2	14.3	193.5	38.2 ³⁾	542.2	2.2
(1949.4~1950.3)	100	14.9	13.2	1.6(10.6) ³⁾	21.2	4.2	59.5	0.2
1950	2,485.3	427.7	393.6	34.1	155.0	245.4	1,525.7	131.5
(1950.4~1951.3)	100	17.2	15.8	1.4(8.0) ³⁾	6.2	9.9	61.4	5.3
1951	6,525.4	3,924.3	3,472.6	451.7	878.3	1,322.8	400.0	—
(1951.4~1952.3)	100	60.1	53.2	6.9(11.5) ³⁾	13.5	20.3	6.1	—
1952	22,118.0	9,659.9	8,190.2	1,469.7	2,925.4	5,260.3	1,202.9	3,069.5
(1952.4~1953.3)	100	43.7	37.0	6.6(15.2) ³⁾	13.2	23.8	5.4	13.9
1953	66,818.4	20,566.0	17,054.8	3,511.2	4,000.0	7,073.2	27,320.3	7,858.9
(1953.4~1954.3)	100	30.8	25.5	5.3(17.1) ³⁾	6.0	10.6	40.9	11.7

註: 1) 管財收入, 其他特別會計收入, 雜收入(前年度 移越金 包含)

2) 國債, 產業復興國債, 借入金

3) 租稅 中 關稅의 比重

資料: 財務部, 『大韓民國 稅務統計書』
朝鮮銀行, 『朝鮮經濟年鑑』, 1948.

2) 戰後復舊期の 關稅收入

戰後復舊期の 財政의 특색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租稅負擔 比重의 급격한 상승인데 1954년도 歲入豫算 149억 1,900만원 중에서 租稅收入은 52억 7,800만원으로 34.8% 수준이었으나 계속 상승하여 1960년도에는 歲入豫算 484억 5,600만원 중 租稅收入이 272억 7,100만원으로 56.3%에 이르고 있다(〈表 Ⅲ-6〉 참조). 이것은 여러 차례의 稅制改革과 經濟成長에 따른 限界租稅性向이 커진 데 기인한다.

〈表 Ⅲ-6〉 一般財政 歲入性質別 分析表Ⅱ(1954~1960年)

(單位:百萬元,%)

	歲入	租稅	租稅		專賣 益金	其他 收入 ¹⁾	國債 및 借入金 ²⁾	外國 援助
			內國稅	關稅				
1954.4~1955.6	14,919	5,143	41.44	9.98	5.85	7.73	39.47	44.70
	100	34.5	27.8	6.7(10.4) ³⁾	3.9	5.2	26.4	30.0
1955.7~1956.12	32,370	10,938	86.91	22.46	10.00	20.57	33.28	150.53
	100	33.7	26.8	6.9(20.5) ³⁾	3.1	6.4	10.3	46.5
1957	42,454	11,590	92.08	23.80	16.20	13.60	54.37	224.51
	100	27.3	21.7	5.6(20.5) ³⁾	3.8	3.2	12.8	52.9
1958	36,730	12,434	99.5	24.87	19.90	26.81	38.40	157.86
	100	33.9	27.1	6.8(21.2) ³⁾	5.4	7.3	10.5	42.9
1959	45,540	21,598	18,043	3,555	2,270	1,412	1,350	18,910
	100	47.4	39.6	7.8(16.5) ³⁾	5.0	3.1	3.0	41.5
1960	48,456	24,964	19,819	5,145	2,300	2,437	1,992	16,763
	100	51.6	41.0	10.6(20.6) ³⁾	4.7	5.0	4.1	34.6

註: 1) 官財收入, 其他特別會計收入, 雜收入(前年度 移越金 包含)

2) 國債, 產業復興國債, 借入金

3) 租稅 中 關稅의 比重

資料: 財務部, 前掲書.

둘째는, 外國援助財源에 대한 높은 의존인데 1954년도 세입예산 중 30.0%에서 계속 상승하여 1957년에는 52.9%, 1960년에 가서야 34.6%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이 기간동안 外國援助 收入總額은 ICA, PL480, CRIK, UNKRA 등에서 20억달러를 상회하였다(〈表 Ⅲ-7〉 참조).

一般財政에서 關稅收入이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表 Ⅲ-6〉에서와 같이 1954년과 1955년에는 6.7%와 6.9% 수준이었다. 그러나 1957년에는 5.6%로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關稅臨時增徵法の 폐지로 인한 결과이다. 1958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1960년에는 10.6%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關稅가 租稅收入 중에서 20%를 차지함으로써 전쟁으로 파괴된 産業施設의 복구지원과 國內資源調達の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輸入財貨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에 있어서 輸入額에 대한 關稅負擔率을 보면 1954년도와 1955년도에 있어서는 각각 21.1%, 20.2%로서 매우 높은 수준을 시현하고 있으나 1957년과 1958년에는 각각 10.5%, 12.0%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關稅臨時增徵法の 폐지에 주된 원인이 있다(〈表 Ⅲ-8〉 참조). 즉 종전의 免稅輸入品에 대한 10%의 關稅賦課를 내용으로 한 同法の 폐지로 關稅負擔率은 일시적이기는 하나 약 절반으로 떨어졌다.

〈表 Ⅲ-7〉 外國援助 收入總額

(單位: 千달러)

	計	ICA ¹⁾	PL 480	CRIK	UNKRA
1954	153,925	82,437	-	50,191	21,297
1955	236,707	205,815	-	8,711	22,181
1956	326,705	271,049	32,955	331	22,370
1957	328,892	323,267	45,522	-	14,103
1958	321,272	265,629	47,896	-	7,747
1959	222,204	208,297	11,436	-	2,471
1960	245,393	225,236	19,913	-	244
計	1,889,098	1,581,730	157,722	59,233	90,413

註: 1) 1954~1955 FOA 援助 包含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3.

財務部, 『韓國稅制史』, 1979, p. 273에서 再引用

그리고 1959년과 1960년에는 다시 17.0%, 18.0%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1958년 12월 제5차 關稅法改正으로 關稅率을 조정함으로써 平均關稅率이 35.1%로 인상된 데 기인한다.

〈表 III-8〉 輸入額에 대한 關稅負擔率

(單位: 億圓, %)

	輸入額(A)	關稅收入(B)	B/A
1954	47.4	10.0	21.1
1955	111.7	22.5	20.0
1956	192.8	—	—
1957	224.9	23.8	10.5
1958	207.7	29.6	14.2
1959	209.6	35.5	17.0
1960	285.6	51.5	18.0

資料: 財務部, 『우리나라 財政構造와 政策概要』, 1967, pp. 146~148.

나. 關稅率 引上의 效果分析

關稅率이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産業保護 中心으로 改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平面保護的인 性格의 것이지 構造保護的인 性格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保護程度에는 差異가 있으나 모든 産業을 골고루 保護하려고 하였던 것이며, 産業의 發展程度에 立脚한 保護의 優先順位가 明確하게 考慮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當時 우리 經濟의 실정을 理解하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 수가 있다. 즉 첫째로 經濟政策의 基調가 成長보다는 安定爲主였다는 점에서 産業成長의 優先順位를 考慮할 餘地가 없었고, 둘째로는 動亂에 의한 破壞施設을 復舊 再建하는 課題가 急先務였으므로 産業政策的인 考慮가 稀薄하였으며, 셋째로는 産業의 發展이 援助와 密接한 關聯이 있으므로 獨自的인 産業政策을 立案 展開할 수 없었고, 넷째로는 産業復興과 더불어 社會間接資

本의 不足이 顯著하여 特別히 優先順位를 정해서 育成할 만한 餘裕가 없었고, 다섯째로는 缺乏經濟가 直面한 物資不足의 解決이 急先務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다. 密輸檢舉 實績分析

休戰이 成立된 후 경제재건을 위한 총력이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암적 요소인 밀수는 격증되었으므로 세관의 密輸團束을 위해 초강경책을 썼으며 특히 市場團束業務는 상당히 진전을 보았으나 단속직원과 장비의 취약점을 이용한 밀수는 점차 성행하여 國內産業을 저해하고 국민은 더욱 外來品만 선호하는 풍조가 만연해졌다(〈表 Ⅲ-9〉 참조).

〈表 Ⅲ-9〉 密輸檢舉 實績

(單位 : 件, 名, 圓)

	건 수	인 원	금 액
1951	—	—	3,824,700,000
1952	984	—	12,868,100,000
1953	—	—	—
1954	5,927	—	974,000,000
1955	—	—	—
1956	1,711	2,423	2,164,522,923
1957	2,281	3,532	2,614,368,790
1958	1,941	3,065	1,666,024,839
1959	2,172	3,319	1,459,733,232

第 3 節 關稅政策의 跳躍期(1960年代)

1. 與件

가. 産業政策의 基調 : 産業構造 形成政策과 産業構造 維持政策 實施

우리나라 産業政策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1962년에 作成된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으로부터 시작했으며 정부는 기계공업진흥법(1967), 조선공업진흥법(1967), 전자공업진흥법(1969) 등 特別法을 제정하여 특정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産業政策을 사용하였다.

1960年代 전반기에는 그동안 海外輸入에 의존하던 소비재를 가능한 國內에서 생산대체시킨다는 차원에서 輸入代替産業의 육성에 力點을 두었다. 후반기에는 소비대체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輸出을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採擇하고 수출전략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實施하였다.

나. 貿易政策의 基調

1960年代의 우리나라의 무역정책기조는 輸入政策보다 수출정책이 앞서는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을 강력히 推進하였다.

우리나라의 輸入貿易政策과 관련 정부는 경제성장과 국제수지안정에 기본목표를 두어 輸入抑制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經濟開發에 필요한 시설재 또는 수출용원자재 輸入에 대하여는 비교적 제한을 완화하는 선별 수입 抑制政策을 강구하였다.

우리나라의 輸出政策과 관련 정부는 「수출 제일주의 정책의 지속」, 「수출 진흥정책의 다양화」에 입각한 양적인 輸出擴大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금융·세제를 비롯한 각종 輸出支援策을 강화하였다.

〈表 Ⅲ-10〉 1960年代 輸入制度의 變化推移 (I)

	主 要 內 容		主 要 內 容
1946	輸入許可制(4月)		內國輸入유전스制(3月)
1949	輸入割當制(2月)		輸出入링크制(1964.5~1965.3)
	關稅法(11月)	1966	輸出入링크制(1966.1~1967.11)
1952	輸出入링크制(1952.5~1955.8)	1967	Negative List System(7月)
1957	輸入金融(1957.9~1961.2)		輸入金融(7月)
1961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1月)		關稅法全面改正(11月)
1962	延支給輸入許可制(1962.8~1979.1)	1968	先物換制度
1964	輸入代金事前豫置制(1964~1966)	1969	外貨貸付制(3月)
	輸入全面割當制(1月)		

資料：韓國關稅研究所, 『韓國關稅史』, 1985, p. 586.

〈表 Ⅲ-11〉 1960年代 輸入制度의 變化推移 (II)

	主 要 內 容		主 要 內 容
1946	輸入許可制(4月)	1961	外國換管理法(12月)
1948	貸付金融制(1月)	1962	輸出 및 軍納促進 臨時措置法(1月)
1950	保證外換計定制(1月)		輸出振興法(1月)
	韓·日間貿易을 위한 金融協定(6月)		輸出獎勵補助金交付特別措置法(1月)
1951	特惠輸出制度(1951.6~1955.8)		輸出金融規定(2月)
1952	求償貿易制度(5月)		貨幣改革(6月)
1953	輸出優待金融制度(5月)		輸出檢査法(10月)
1954	輸出獎勵補助金制(1954.4~1965.5)		輸出獨占權制度(10月)
1955	評價切下(8月)	1964	輸出產業公開發促進法(9月)
1957	輸出振興 5個年計劃(6月)	1965	單一變動換率制(3月)
	新貿易金融制(9月)		輸出特化產業指定(7月)
	貿易法(12月)	1966	輸出產業에 대한 特別加速減價 償却制(1月)
1958	輸出入業者登錄制(1月)	1967	貿易去來法(1月)
1959	特別外換融資金制(1959.6~1960.4)		GATT 加入(6月)
	輸出振興基金設置(9月)		所得減免制(9月)
1960	外貨表示軍納商品規定(6月)		輸出戰略產業 商品指定(9月)

資料：韓國關稅研究所, 『韓國關稅史』, 1985, p. 585.

〈表 Ⅲ-12〉年度別 輸入自由化措置

(單位: 개, %)

	總輸入品目	輸入禁止品目	輸入制限承認品目	輸入自動承認品目	輸入自由化率
1967	1,312	118	402	792	60.4
1968	1,312	74	503	735	56.0
1969	1,312	74	530	708	54.0
1970	1,312	73	546	693	52.8

다. 換率政策의 基調

外貨의 지급면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종래의 외국환관리체제에서 외화의 수입면도 동시에 관리하는 外國換管理의 정상적인 체제를 確立하였으며, 外國換管理法(1961년 12월 31일), 同法 施行令(1962년 1월 19일)을 제정·공포하는 등 복잡한 법체계를 통합하여 單一化하였다.

이 당시 換率이 고정되어 수입이 촉진되고 수출이 억제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1965년 3월부터는 單一變動換率制度를 實施하였다.

라. 密輸의 推移

5·16革命 後 軍事政府의 과감한 조치는 밀수범들의 발호에 일단 쐈기를 막는 데 어느 정도 成功하였던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것은 1961년 5월 10일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과 同年 6월 22일 「特定犯罪處罰에 관한 特別法」의 制定·公布로 全國적으로 常習密輸犯과 團體組織犯 등 特殊密輸犯을 大量 檢舉하여 軍事裁判에 廻付하였고 한때 密輸輩의 巨頭였던 韓國弼을 死刑에 處하는 등 極刑으로 다스리자 李鎭起 등 몇몇 殘黨들은 日本으로 密航, 逃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政府의 措置로 인하여 한때 小康狀態에 들어가는 듯 하던 密輸도 얼마 안 가서 一般赦免令에 의해 상당수의 密輸輩들이 大學

出獄하고 이들의 再組織에 의하여 새로이 발호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60년대 후반기에 있어 우리 經濟가 고도성장의 단계에 접어들어감에 따라 密輸의 樣態도 새로운 樣相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 經濟가 對外指向的 輸出政策을 追求함에 따라 대외무역이 活潑하여지고 이를 틈탄 밀수범들이 또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컨대 그 特徵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要約할 수 있겠는데 첫째, 輸出用原資材의 導入過程이나 國內物品의 밀수과정에서 合法을 가장한 密貿易 나타났고 둘째, 海上에 있어 活鮮魚輸出船이 密輸運路의 大宗을 이루게 되었으며 셋째, 特攻隊密輸가 高速化·知能化되는 傾向이 나타났고 넷째, 항공기를 이용한 金塊 등의 密輸가 出現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1965년 6월 大統領指示覺書에 의거하여 警察·軍·稅關合同으로 밀수사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이에 對處하게 되었으나 밀수사범은 근절되지 않고 그 양상만 변화하게 되었다.

2. 關稅政策의 變化 內容

가. 關稅上 輸出支援 強化

1) 輸出用原資材·機材의 導入에 대한 關稅事前免稅制度

가) 輸出用原資材에 대한 事前免稅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關稅法의 규정은 1961년 관세법 제6차 개정(法律 제600호 1961년 4월 10일 公布)시에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납할 물품과 수출 또는 군납물품의 제조원료'에 대하여는 財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稅를 면제하는 규정이 新設되었다. 이러한 사전면제제도는 수입되는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免稅를 하고 그 원자재로서 對應輸出을 이행하는가를 사후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소요량(수출품을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원자재가 소요될 것인가를 밝히는 기술적인 계수)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나) 輸出物品 製造轉用機械와 同 部分品에 대한 關稅免除

關稅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重要産業用 기초설비품 機械 및 그 部分品으로서 財務部令으로 정하는 물품을 關稅減免토록 하고 同 部令에서는 수출물품 제조전용기계 및 그 部分品에 대하여는 관세를 全額 免除토록 하였으며 특관세법 제4조에 의거하여 동시에 특관세도 課稅치 않음으로써 시설기재의 도입을 원활히 하여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양산체제의 확립으로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을 도모하였다. 여기서 現制度上的 절차적인 면을 살펴보면, 첫째 기계에 대하여는 財務部告示에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서 商工部長官이 추천토록 하고 동 기계가 상공부고시(제4474호)에 정한 該當額(신규공장 등은 생산제품의 60%, 증설시설재는 그 수입가격의 60%) 이상을 輸出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同 機械部分品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 保稅工場設營特許를 받고 수출만을 하는 업체나 전년도 생산제품의 全量을 수출한 업체 및 外資導入法의 규정에 의하여 認可된 외국인투자 기업체로서 생산제품을 전량 수출하도록 규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상공부장관이 免稅 추천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2) 關稅를 納付한 輸入物品을 使用하여 製造한 物品을 輸出할 境遇 등의 關稅還給制度和 代置免稅制度

가) 關稅還給制度

이미 관세를 납부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이미 徵收한 관세를 반려하는 제도로써 1975년 7월 1일 關稅還給制가 전면 실시되기 전까지는 事前免稅의 보완책으로 이용되었다.

나) 代置免稅制度

1965년 3월 19일 제14차 관세법 개정시 代置免稅制度를 신설하였는 바, 동 제도는 關稅 還給받을 수 있는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하고 소정의 기간내 그 製造原料 등으로 사용한 물품과 同種同質의 물품을 수입한 때

에는 그 사용한 물품과 동일한 수량의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수출진흥과 外貨獲得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이었다.

3) 關稅賦課가 猶豫되는 保稅工場의 設營特許 擴大

1962년에 保稅工場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行政權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設營特許工場의 위치여하에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特許를 장려하는 開放政策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보세공장은 1962년에 52개 공장으로 증가하고 1970년에는 107개로 증가하게 되었다.

4) 輸出自由地域의 設置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수출의 진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서 輸出自由地域을 설치하였다. 1970년 1월 1일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이 법률 제2180호로 制定·公布되었다. 이어 1970년 2월 27일에는 대통령령 제4682호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동년 3월 16일에는 마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었다.

5) 技術所得物品에 대한 諸稅免除

輸出用原資材 및 保稅加工用原資材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후 그에 對應하는 수출을 완료하고 原料所要量證明機關에서 인정하는 平均損耗量과 實際製造加工上의 損耗量과의 差異에서 생기는 잉여물품(기술소득)은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하여 관세를 면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改正 物品稅法에 따라 과거에 징수하던 물품세도 면세토록 함으로써 수출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간접적으로 제조가공 기술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6) 擔保金 提供 義務의 免除

관세법에 의한 特定用途免稅 및 再輸出條件免稅와 輸出用原資材에 대한 관세면제시에는 용도의 사용으로 인한 關稅債權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세액에 상당한 擔保金を 提供케 하는데 일반적으로 輸出用原資材에 대하여는 그 관리상 전액 담보토록 하여야 하나 수출에 공헌도가 크고 신용이 있는 업체 등에 대하여는 關稅와 特關稅 전액(청색업자) 또는 特關稅(백색업자)의 담보제공을 면제함으로써 金利의 부담으로 인한 原價高(cost push)를 덜어 주었다.

7) 關稅行政上의 支援

가) 輸出品 檢査의 適正化

輸出物品 檢査의 목적은 수출품의 품질 및 대외 성가의 유지향상으로 건전한 수출무역을 조성함과 동시에 貿易管理規制에 의한 적정한 물품이 수출신고사항과 동일하게 수출되는지의 여부를 確認함으로써 不正輸出을 방지하여 우리 상품의 聲價 유지와 나아가서 국내산업의 保護를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前者의 品質檢査는 輸出檢査法에 의한 각 검사기관에서 행하고 무역규제 및 관계법규에 의한 최종확인 검사는 통관시 稅關檢査職員이 실시함으로써 수출품 검사에 완벽을 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는 相互 중복되어 包裝費用 등의 經濟的 손실과 통관의 지연을 초래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最小限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 현행 수출검사수량은 위장수출의 위험이 많은 홍콩 등 특수지역으로의 수출품과 소수수량(10c/s) 미만의 수출품을 제외하고는 申告數量의 5% 범위로 한정하였다.

나) 其他 行政節次上의 支援

內陸地稅關에서 수출할 경우 수출면허를 받고 선적하기 위하여 保稅運送을 하고자 할 때에는 關稅法 施行令 제115조에 의한 수출신고와 제110조에 의한 保稅運送申告를 하여야 하나 이를 병합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절차의 簡素化를 꾀하였고, 또한 이에 따른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케 하여 金利 負擔으로 인한 原價高를 방지하였으며 수출신고시 수출품 검사합격증 등 구비서류를 결하였을 때에는 면허시까지 補完條件으로 접수처리토록 하고 결재단계를 가능한 축소하여 신속한 통관의

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輸入代替産業의 保護育成

1) 保護關稅 偏重의 關稅率 調整

1960년대의 關稅率體系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차별관세체계(Tariff Escalation System)를 근간으로 하면서 輸入代替産業 育成을 위한 高率關稅를 지향(1960년대 평균으로 약 40% 수준을 유지, 1958년 : 35.1%, 1961년(1차) : 47.7%, 1961년(2차) : 39.4%, 1963년 : 38.9%, 1967년 : 38.8%)했다는 점이다(〈表 Ⅲ-13〉 참조). 즉 主要産業의 시설재, 공업용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무세 혹은 低率의 關稅가 부과되고 장래발전 가능성이 있는 수출특화산업, 기간산업, 유치산업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高率의 關稅가 부과되도록 하여 關稅行政의 중점이 보호대상품목에 집중(1967년도 관세율개정시 세율분포 : 20%품목이 전체의 33.5%, 50%이상 되는 품목은 전체의 34.7%이며 이 중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關稅率 100% 이상의 禁止品目は 전체품목의 약 10% 점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1960년대의 關稅率 政策이 보호관세에 편중되어 시행되었던 것은 1960년대부터 長期經濟開發計劃이 추진되어 산업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保護關稅政策을 통하여 이를 保護·育成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表 Ⅲ-13〉 平均關稅率의 變化(1960年代)

(單位 : 個, %)

	稅率段階	稅目數	單純平均稅率	加重平均稅率	實效稅率
1961. 4(1차)	18	722	47.7	-	12.9
1961. 12(2차)	18	1,311	39.4	-	12.9
1963	20	1,982	38.9	-	7.7
1967	19	3,174	38.8	-	6.9

가) 1961年 4月 關稅率調整

1961년 4월 종래의 關稅率을 改正, 輕工業 保護에 焦點을 맞추어 평균 관세율을 크게 인상했다.

引上幅이 큰 부분은 第2類(13.3%) 第3類(12.8%) 第4類(26.1%) 第5類(32.3%) 第6類(23.5%) 第7類(15.0%) 第15類(24.4%) 등이었다. 이에 따라 稅番數는 종래의 726개에서 722개로 줄었고 평균관세율도 종전 35.1%에서 47.7%로 무려 12.6%나 인상되었다.

나) 1961년 12월 關稅率調整

이어 1961년 12월에는 종래의 自然科學的 分類方式의 關稅率表를 先進國 추세를 본떠 BTN體系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稅番數는 종전의 726개에서 1,098개로 늘어났고 稅率數도 1,229개에서 1,311개로 늘어났다. 또한 75종의 세율을 조정, 평균세율도 38%로 인상되었다.

다) 1963년 12월 關稅率調整

1962년부터 실시되는 第1次 經濟開發計劃을 뒷받침하기 위한 消費財 輸入을 抑制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며 국내산업 특히 輸入代替産業을 보호하기 위해 ① 主要産業 및 新規産業의 保護育成 ② 輸出增大와 國際收支逆調改善 ③ 財政需要 擴大에 따른 稅收確保라는 3대 원칙하에 관세율이 조정되었다.

즉 ① 重要산업기계, 1차산품, 공업용원재료는 無稅 또는 低率, 半製·完製品은 順次高率 ② 用途上 緊要品은 無稅 혹은 低率, 奢侈品은 高率 ③ 有望 또는 現存 輸出專門産業과 基幹 및 幼稚産業製品은 高率, 同 工業用原資材는 低率 ④ 外國産과 競合되는 國內需要充足物品은 高率 ⑤ 國內生産不能 또는 供給不足이 예견되는 품목은 低率 ⑥ 財政關稅 對象品은 인상 등의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율 隔差는 5~40%까지는 5% 차이, 40~100%까지는 10% 차이, 그 이상은 불규칙으로 나타났고 關稅率構造는 총 2,063품목 중 15% 대상이 277개로 13.6%, 30% 대상이 182개로 8.9%, 나머지 70.8%가 20% 이상의 고율 관세대상이었다.

1963년 관세율조정 결과 평균관세율은 38.9%로서 종래보다 0.5% 포인트가 낮아졌다.

1963년 관세율조정은 일반적인 관세율의 上向 調整으로 관세에 의한 財政 比重을 20% 내외로 시현하여 財政寄與度를 높였고 원료 23% 반제품 34%의 傾斜關稅를 유지하면서 평균 38.9%의 고율관세로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평균관세율이 높은 부문은 대체로 勞動集約의 이고 따라서 부가가치가 큰 경공업 부문이며 이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노린 경공업 확대정책에 상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1967年 11月 關稅率調整

이때는 1次開發計劃의 성공적 수행으로 본격적인 工業化를 추진하려는 시기로서 新規産業이 건설됨에 따라 세율불균형을 是正할 필요성이 있었고 동시에 2次開發計劃의 목표달성을 위한 관세정책상의 지원, 수출증대를 위한 諸般措置의 지원 등을 위하여 조정한 것으로 산업정책적 관세기능이 두드러졌다.

관세율조정의 기본원칙을 보면 ① 韓國의 工業構造를 國際分業의인 관점에서 발전하도록 관세율정책면에서 유도하고 ② 관세율구조를 保護關稅·財政關稅·輸入抑制關稅·無關稅로 多角化하되 관세율정책방향을 보호관세 품목에 集中하며 ③ 재정관세품목은 20%의 均一關稅로 하고 기계공업용원자재·생필품원료는 저율적용하고 ④ 사치품에는 고율 물품세를 책정하고 ⑤ 無稅品은 재정관세로 轉換縮小하고 混合關稅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품목으로 天然製品과 原資材는 25~60%, 中間製品은 40~60%, 完製品에 대해서는 50~150%의 관세율로 인상 책정했고 국민경제상 輸入抑制가 필요한 품목은 60~250%의 고율로 했다.

財政關稅品으로 工業用原資材·産業機材는 10~20% 기타는 20%의 均一關稅로 했다(〈表 Ⅲ-14〉 참조). 그리하여 稅率段階는 0-5-15-20-25-30-35-40-50-60-70-80-100-120-150-180-250+從量+從量從價併課+從量從價擇一로 21단계로 세분됐고 세율분포는 20%가 33.5%, 50%

〈表 Ⅲ-14〉 關稅率策定 基準(1967年)

(單位: %)

保護度	經濟的 用途別 또는 加工度	天然產品과 原資材	中間製品	完 製 品
Ⅰ. 保護對象 品 目	(1) 高率關稅保護品目	60	80	150
	(2) 低率關稅保護品目	25	40	50
Ⅱ. 財政關稅 品 目	(1) 工業用原資材와 重要産業用機械類	10~20	10~20	10~20
	(2) 其他	20	20	20
Ⅲ. 無稅品目	國策上 또는 國際慣例上 特殊 取扱하여야 할 品目	0	0	0
Ⅳ. 輸入抑制 品 目	不要不急한 品目	60~80	100	100~250

- 註: 1. 보호대상품목의 관세율은 第Ⅰ欄에 표시된 上下限(25~60%, 40~80%, 50~150%)의 범위내에서 부가가치내의 가격차 및 긴요도에 의하여 책정한다.
2. 국산품과 직접 競合되는 대체품의 관세율은 당해 국산품과 同稅率로 정한다.
3. 재정관세품목의 관세율은 第Ⅱ欄에 표시된 바와 같이 公업용원자재와 重要산업용 기계는 10~20%, 기타품은 20%의 定率 關稅로 책정한다.
4. 國策상 또는 國際관례상 특수취급품은 第Ⅲ欄에 표시된 바와 같이 無稅로 책정한다.
5. 國民경제상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第Ⅳ欄에 표시된 바와 같이 60~250%로 책정한다.
6.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專用構成材料는 동 제품과 同率로 한다.
7. 現像한 映畫필름, 原糖, 糖密은 重量세율로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세율은 混合關稅率(重量·중가·선택세, 重量·병과세)을 채택한다.

이상의 고율관세가 34.7%이며 이 중 禁止關稅(100% 이상)가 전체의 10.7%를 점유함으로써 總平均稅率은 38.8%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1967년 관세율조정은 수입의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에 따른 開放政策으로의 移行過程에서 극복하여야 할 전반적인 산업문제를 관세면에서 反映하고자 했던 점, 종래의 재정관세체계에서 산업적 관세체계로의 이행을 시도함으로써 세율구조상에 비

로소 보호관세율의 개념이 뚜렷이 정립됐던 점, 貿易自由化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관세율을 설정했다는 점 등으로 이후의 관세율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開放體制로의 移行과 彈力關稅制度 導入

가) 1967년에는 貿易自由化라는 국제적인 조류에 따라 그동안 推進되어 오던 GATT 加入을 실현시켰고 또 이를 계기로 하여 「케네디라운드」協商에도 참여하였으며, 특히 貿易政策의 일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실시하는 등 開放經濟體制로 이행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이와 같이 GATT 加入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採擇으로 不要不急品의 수입억제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제한적 관세수권제, 긴급관세, 관세할당제, 상계관세, 편익관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탄력관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3) 外國人投資와 關稅支援

外資導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함에 있어서 외자도입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新規投資인 경우에는 그 지원이 다양하고 폭이 넓으며, 외자도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일지라도 借款의 경우에는 일반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다.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關稅上 支援은 기본적으로 외자도입법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상의 지원은 關稅減免制度, 保稅制度 및 稅關行政支援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의 법적근거는 외자도입법, 관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등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외자도입의 인가를 받고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對外支拂手段과의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었다.

外國人投資者가 외국인투자의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資本財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데 외국인투자의 인가시에는 主務部 長官이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본재는 도입허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내에서 공급할 수 없는 물품이 되는 것이다. 또한 現物出資되는 자본재의 범위는 산업시설재뿐만 아니라 主務部 長官이 인정하는 試運轉用原料와 예비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본재로 도입이 확정된 경우의 關稅免稅幅은 광범위한 것이었다.

本 制度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인가 당시 자본재로 직접 도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도입하여 이를 外國換管理法상의 居住者計定을 설치하여 도입된 對外支拂手段을 이에 예치한 후, 자본재 도입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자본재를 도입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였다.

外資導入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목적으로 도입허가를 받은 자본재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으로부터 외화로 송금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본재를 제조할 자가 수입하는 원료의 관세를 면제하도록 關係法令에서 규정함으로써 외자도입에 수반하여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품의 생산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4) 密輸根絶에 의한 國內産業保護

가) 特定外來品 販賣禁止法 制定

1961년 5월 10일 「特定外來品 販賣禁止法」이 제정되어 과실류 등 19개종이 지정되어 실시되었다.

나) 關稅法 및 特定外來品 販賣禁止法에 의한 沒收品 및 國庫歸屬物品에 관한 臨時措置法 制定·實施

1961년 12월 19일에 「관세법 및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관세법 및 특정외

래품 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을 타 법령의 規程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處分하도록 하였다.

다) 「特定犯罪處罰에 관한 特別法」制定·實施

1961년 6월 22일에 「特定犯罪處罰에 관한 特別法」을 법률 제623호로 제정·공포하여 공포일로부터 3월 6일까지 소급하여 전국적으로 상습밀수범 및 단체조직범 등 特殊密輸犯(속칭 특별관세사범)을 색출하여 관련자를 대량검거,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밀수를 총지휘하던 韓國弼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5·16혁명 직전까지 남해안에서 최성기를 맞이한 듯 성행하던 특공대밀수를 비롯하여 모든 밀수는 根絶되다시피 하였다.

라) 「特定犯罪加重處罰法」制定·施行

1966년 2월 23일에 特定犯罪加重處罰法을 제정하여 밀수를 5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處罰規程을 강화하였다.

다. 不要不急品の 輸入抑制와 稅收增大

1) 臨時特別關稅法の 制定·施行

가) 第1次 臨時特別關稅法

1960년대 초부터는 經濟開發5個年計劃이 실시되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난제 중의 하나는 국제수지의 慢性的 逆調現象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1961년 7월 29일에는 臨時特別關稅法(제1차)을 제정, 각령으로 정하는 4개류별 수입품에 대하여 각각 10%, 30%, 50%, 100%의 임시특별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수지의 개선을 도모해 왔으나 국제수지개선 추세가 다소 시현되어 가자 1963년 12월 31일부터 동법이 廢止되었다.

나) 第2次 臨時特別關稅法

第1次 臨時特別關稅法이 폐지된 이후 1964년도에는 세계적인 貿易自由化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換率政策面에 있어서 종전의 비현실적인 '고정환율제도'에서 탈피하여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외환정책의 자유화추세를 관세면에서 補完하기 위하여 1964년 6월 12일 법률 제1644호로 「臨時特別關稅法(제2차)」을 제정하였다.

(1) 特關稅法의 制定目的

임시특별관세법은 1964년 단일변동제도를 채택한 데 대한 보완조치로서 特定輸入外國物品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특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輸入需要의 억제를 통한 국제수지의 균형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同年 6月 12日 제정된 것이다. 특관세제도는 국내에서의 輸入商品 가격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든지 수입가격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경우에 정상이윤 이외의 초과이윤을 조세로 吸收함으로써 수입수요를 억제하여 환율의 安定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특관세법 制定의 필요성으로 다음의 이유가 내세워졌다.

(가) 特關稅法은 사치성물품과 인기품목의 시가가 내포하고 있는 초과이윤을 흡수함으로써 外換에 대한 수요의 격증과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따라서 海外部門에 있어서의 적자를 감소시킨다.

(나) 特關稅法은 輸入의 억제 내지 外貨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外貨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여 換率의 격심한 변동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다) 特關稅法은 불요불급품의 수입억제와 긴요한 물품의 輸入 권장으로 국내물자의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

(라) 特關稅法은 희소 輸入品을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發生하는 민간이윤을 제한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輸入物品의 가격을 特關稅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形成함으로써 수입물품이 적정가격을 助長하여 국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마) 特關稅法은 수입업자의 부당한 치부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바) 特關稅法은 국가의 세입수단으로 필요하다.

(사) 特關稅法은 수입외국물품 특히 사치품의 國產品 代替를 촉진시킨다.

이와 관련 『네이산 보고서』에 제출된 고문단 단장 「페이튼 커」씨는 特關稅法의 타당성을 다음 3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환율개정 이전 실질환율이 255원을 초과한 品目の 수입업자 폭리를 방지한다.

둘째, 정부가 환율개정으로 세입이득을 實現하기 위해서 輸入品에 대한 關稅率의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外換시장이 형성되고 직접 통제가 완화된다는 전제하에서 복수 환율로부터 단일환율로의 이행은 輸入構造를 不利하게 변화시킬 것이며 特關稅法은 그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방지하거나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2) 特關稅制度를 採擇하게 된 經濟的 與件 및 動機

特關稅制度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수요의 억제를 통한 국제수지의 균형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으로 이는 1964년 5월 3일 환율개정 조치로 關稅政策의 방향이 외자도입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두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공업화와 輸出産業의 육성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 국제수지의 역조로 인한 外換의 부족, 산업구조의 모순 등의 구조적 결함을 조속히 제거하여 경제적 질서를 확립하고 安定 기반 위에 경제성장을 合理的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 특히 외환부문에 있어서는 1963년과 1964년에는 外換保有高가 격감하여 1억달러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 외환시정은 수입상품의 국내가격을 폭등시키며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현저한 불균형을 形成시켰다. 이에 따라 각종 物資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대하고 시중 외환시세는 급격히 앙등하여 무역업자는 輸入에 의한 초과이익을 획득하는 데 급급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개발의 수행으로 막대한 공업용 시설 원자재 및 긴급소비자의 수요가 증대하여 外資導入이 필요하였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경제 自由化 추세를 같이하면서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4년 5월 3일 실세와 乖離된 고정환율을 유지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貿易自由化에 입각한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외환증서제도를 채택하여 외환관리제도면에서 一大革新을 기하여 외자도입의 촉진, 수출증진을 비롯한 외화획득에의 기여, 저환율에 따르는 수입수요의 억제와 외화자원의 낭비방지, 국제수지의 개선 특혜에 따르는 부정부패의 근절 그리고 외환증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한 환율 현실화와 계속적으로 이를 실세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장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關稅政策의 방향도 국제수지의 개선 및 외자도입의 촉진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환율제도의 개혁을 관세정책면에서 뒷받침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特關稅法인 것이다.

(3) 特關稅法の意義

特關稅法の 목적은, 국내에서의 特定輸入品の 판매가격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든지 輸入價格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경우 여기에서 發生하는 정상이윤의 「초과분」 즉 과당이윤을 조세로 흡수·除去함으로써 輸入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는 데 있다. 特關稅法の 性格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의 用語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가) 외환대수 : 외환대수라 함은 輸入外國物品의 국내도매가격 또는 그 제품이나 유사한 物品을 감안하여 合理的으로 산출하고 가격에서 關稅, 物品稅 및 정상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정상도착외화가격으로 제한 수치이다. 이것은 輸入物品의 國內에서 形成되는 도매가격에서 諸稅와 필요 經費를 제한 원가와 정상적으로 輸入되는 경우 당해물품을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外貨價格(一般的으로 송품장(Invoice)가격과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국내물가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양자의 비율이 一致할 것이다. 사치성품목이나 人氣品目的 경우에는 그 비율에 격심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여기에 特關稅 부과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 정상도착외화가격 : 輸出國에 있어서의 정상도매거래가격(수출

당시의 경감, 면세될 국내세액을 공제한 것)에 당해물품의 輸出國에 있어서의 船積까지에 요하는 정상비용 및 수입항까지의 정상운임과 보험료(단 항공운임제외)를 가산한 미합중국 通貨로 표시된 금액이다. 무환 輸入物品의 정상도착가격의 산출은 별도 明示되어 있었다.

(다) 正常費用 : 정상비용이란 輸入外國物品의 수입항 도착시까지의 보험료 및 諸稅를 제외한 임금, 기타 제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輸入物品의 가격에 따라 4종류로 구별하고 있다. 정상비용은 CIF 가격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15로 한다.

(라) 一定率 : 일정률이란 輸入申告當時의 외국환대고객 매도율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비율이다.

(마) 特定 輸入外國物品 : 외환대수가 一定率을 초과하는 輸入外國物品이 곧 特關稅課稅 대상 품목이다. 관세는 수입 외국물품 全般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特關稅는 特定 輸入外國物品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4) 特關稅의 課稅標準

特關稅의 과세표준은 특정 수입외국물품에 대한 輸入申告時의 외환 대수에서 일정률을 공제한 수치를 전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課稅標準 =

$$\frac{\text{국내도매가격} - (\text{關稅} + \text{諸稅} + \text{費用})}{\text{輸入申告時의 CIF 달러貨 價格}} - (\text{외국환 매도율} \times 1.3)$$

여기서 정상이윤은 정상도착 외화가격(CIF 달러貨價格)의 30%로 規定되어 있으며 세율은 제1종 물품이 90%이고, 제2종 物品이 70%이다. 물품의 종별은 특관세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財務部 長官이 고시하게 되어 있으며 告示한 物品의 종별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 1個月 前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제1종 물품은 關稅法 別 표 세율표상의 40% 이상의 물품과 40% 미만이라도 사치성물품 또는 소

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며 제1종 이외의 물품이다. 그리하여 과세대상전액은 CIF 달러貨價格에서 과세표준을 곱함으로써 산출하며 따라서 관세는 CIF 1달러에 대한 원화표시 도매가격(稅金純額 및 正常費用)과 외환 1달러에 대한 원화비용 130%의 차액에 대해서 과세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CIF 달러貨價格의 30%에 해당하는 정상이윤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輸入業者가 취득할 초과이윤을 미리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업자의 총투자면에서 볼 때 特關稅法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가된 이윤율은 正常關稅率, 內國稅, 荷役費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CIF 기준명목상 30%의 이윤은 CIF, 關稅, 內國稅 및 荷役費 합계의 10% 내지 22% 사이에서 변화한다. 이와 같이 特關稅法은 관세기준을 표시할 수 있으나 법률 제 1644호 제2장에 나타난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B = \left[\frac{P - (T + T' + E)}{P'} \right] - 1.3F$$

여기에서 B는 원貨로 표시된 관세기준,

P는 원貨로 표시된 도매가격,

T는 원貨로 표시된 一般關稅,

T'는 원貨로 표시된 內國稅,

E는 원貨로 표시된 荷役費(사실상 이 비용은 기준율에 의해서 推定한 것임),

P'는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달러貨표시 引渡價格(단 항공운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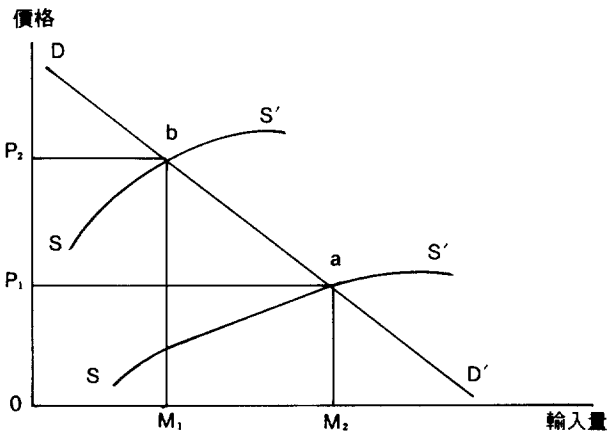
F는 수입업자가 외환 1달러에 대한 원화표시(실제로 支拂하는)이다.

(5) 초과이윤의 성격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特關稅는 輸入商品의 정상이윤의 超過分 즉 초과이윤의 形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다음에는 초과이윤이 어떻게 形成되는가를 보기로 한다. 원래 輸入「쿼터」制는 制限된 외환을 효

을적으로 使用하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量的統制方式인데 外貨需要에 比하여 외貨의 절대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수입상품의 공급이 國內需要를 下廻하기 때문에 해당 수입상품은 國內에서 稀少財價格을 형성하게 된다. 이 稀少價格은 주로 수입 「쿼터」制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것인 만큼 輸入該當利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關係를 도표에서 설명해 보면 DD'는 國內 輸入商品에 대한 需要曲線이고 SS'는 自由貿易에 의한 供給曲線으로서 兩者는 a에 交叉되어 價格 P_1 을 형성한다. 다음에 輸入割當制에 의하여 輸入량이 M_2 로 策定되었을 때 SaSa'는 輸入「쿼터」制에 의한 供給曲線으로 b점에서 交叉되어 P_2 의 價格을 형성한다. 그런데 輸入商品價格 P_1 輸入該當制로 인하여 회소가격점인 P_2 로 上昇하고 一般利潤率이 P_1 에서 이루어진다면 P_2 의 價格은 과당이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圖 III-1] 참조). 이와 같이 特關稅는 이 과당이윤을 稅源으로 捕捉하는 것이며 特關稅는 이미 실현된 이윤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업자가 취득할 초과이윤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圖 III-1] 輸入割當制下의 價格變化圖



(6) 特關稅法의 적용범위

(가) 特關稅法 제4조에 의하면 다음 4가지 항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① 특관세법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財務部 長官이 告示하는 特定輸入物品 中 그 輸入이 國民經濟에 艱요하다고 認定되는 物품
- ② 關稅法 기타 법률의 규정과 외국과의 協定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物品. 단, 관세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特關稅도 따라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 ③ 關稅法 별표 세율표에 규정된 무세품.
- ④ 關稅法 제7조에 의한 과세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영주귀국교포가 搬入하는 物품.

(나) 실수요자에 의하여 수입된 품목 중 도매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최종 生産物 가격으로부터 一般的으로 인정된 諸費用 및 이윤을 포함한 제조 「코스트」를 공제함으로써 成立되는 최종 生産品에 함유되는 전가 가치가 과도할 경우에 한해서 특관세를 부과한다.

(다) 이윤율의 CIF달러當 가격 70%에 미달하는 전품목에 대하여는 免稅된다.

(라) 합성수지, 에탄올, 생고무, 아황산소다, 소다회, 스프건의 6개 공업 기초 원자재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 이하로 販賣하는 條件下에 특관세가 免稅되고 있다.

(마) 정부 또는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納品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納品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인정하므로 특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농약의 경우 지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 ① 서울特別市, 부산직할시 각 도
-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③ 수산협동조합중앙회
- ④ 토지개량조합연합회

⑤ 대한염업주식회사

⑥ 염연초생산조합연합회

(7) 特關稅가 賦課되는 境遇

위에서 언급한 特關稅의 性格으로 볼 때 대체로 특관세는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해 부과된다.

(가) 무역계획상 제한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예 : 분유, 원모, 나일론사, 식품용조합향료 등)

(나) 공급상 독과점 物品(예 : 메탄올 등)

(다) AA 品目으로 特關稅가 그 물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예 : 벤젠, 카본블랙, 완제의약품, 위생도기, 이화학기)

(라) 特關稅가 國內産業의 보호역할을 하는 경우(예 : PVC, 아연괴, 유리, 섬유)

(마) 유통상 마찰이 생기는 物品(예 : 철강대, 비스코스, 인건사)

(8) 特關稅制度의 運營

특관세제도의 운영은 재무부와 특관세심의위원회 및 국내 도매가격사정위원회의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이 두 특별위원회는 특관세 부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財務部에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 특관세심의위원회는 輸入品 분류, 특관세면세 物品의 지정, 기타 특관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국내 도매가격 사정위원회는 국내도매가격의 결정에 책임이 있다(국내 도매가격 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부 세정차관보가 되고 기타위원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재무부 세관국장, 서울세관 조사국장, 서울지방 국세청장, 징세조사국장, 한국은행조사 제2부장,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부장 및 한국무역협회 조사부장으로 한다).

(가) 特關稅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① 과세표준 결정에 적용된 적정 도매가격의 결정 ② 輸入品目的 「주요수입품목」과 「일반수입 품목의 분류」 ③ 실수요자 수입품목에 대한 과세표준의 결정 ④ 도매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稅金 부담 결정 등의 면에 있어서 상당

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나) 特關稅法の 적용은 一般課稅의 적용방법에 준한다. 따라서 特關稅는 一般的으로 稅關員에 의하여 관세와 동시에 부과징수되고 이의와 소원에 관한 사항도 관세소원위원회의 직할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납세의 고지 特關稅未納品の 담보제공,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關稅의 경우와 동일하다.

2) 市價逆算制에 의한 關稅의 賦課制度 撤廢 및 復活

1961년 12월 30일 法律 제933호로 公布된 輸入物品 과세가격 산출이 환을 현실화와 더불어 은행률에 의한 송품장가격인정 방법을 채택하게 됨에 따라 시가역산방식에 의한 과세가격 산출방식이 철폐되었다가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1488호로 공포된 제12차 關稅法 개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시가역산제에 의하여 關稅를 부과하도록 하여 다시 동 제도를 부활시켰다.

3. 關稅政策 變化의 效果分析

가. 輸出支援政策

1) 肯定的 效果

産業政策이 결과적으로 일개산업에 대하여 수출지원 편향을 보였는가 또는 수입대체 지원편향을 보였는가를 판단하려면, 각종 수출유인체제를, 환율의 단일화와 輸入規制의 완화 등을 통한 수입의 상대적 자유화가 일단 완료된 1968년 현재에도 잔존하였던 輸入規制와 행정적 수입장벽 및 관세보호 등으로 구성되는 수입대체 유인체제와 比較하여야 한다. 그 결과 농업을 위주로 하는 1차산업에 있어서는 각종 시책의 수입대체 지원편향이 뚜렷하였으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각종 시책의 수출유인인 수입대체유인을 압도하였다. 1次産業 및 製造業 전체에 걸쳐서는 산업

정책으로 인한 市場偏向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表 Ⅲ-15〉, 〈表 Ⅲ-16〉, 〈表 Ⅲ-17〉 참조).

〈表 Ⅲ-15〉 1次産業에 대한 實效支援率(1968年)

(單位: %)

	國 內 販 賣	輸 出
1 次 産 業		
農 林 水 産 業	23	-10
鑛 業	5	3

註: 實效保護率과 實效補助率의 合計.

實效補助率은 租稅 및 金融利子上的 支援을 附加價値로 나눈 것인바 全産業 補助率, 즉 平均 産業補助는 零이 되도록 정의됨.

資料: 김광석 · L. Westphal, *Development Strategies in Semi-industrial Economies*, Korea, 1982.

〈表 Ⅲ-16〉 製造業에 대한 實效支援率(1968年)

(單位: %)

國 內 販 賣	輸 出
-9	12

註: 國內販賣에 대한 지원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이유는 당시 農業에 대한 所得稅 減免으로 제조업 보조가 마이너스로 나타났기 때문임.

資料: 김광석 · L. Westphal, *Development Strategies in Semi-industrial Economies*, Korea, 1982.

〈表 Ⅲ-17〉 全交易財産業에 대한 實效支援率(1968年)

(單位: %)

國 內 販 賣	輸 出	平 均
10	9	10

資料: 김광석 · L. Westphal, *Development Strategies in Semi-industrial Economies*, Korea, 1982.

이처럼 經濟의 안정화와 價格機能의 활성화 및 經濟의 개방화를 위한 諸經濟施策이 추진되고 정착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輸出은 눈부시게 성장해 왔다. 즉 우리나라의 年間 輸出實績은 經濟開發 제1차 5개년계획이 처음으로 着手된 1962년에만 해도 5,6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그간 官民이 일치하여 輸出振興에 온갖 精力을 기울인 결과 연평균 42%라는 세계에서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높은 成長率을 持續함으로써 1970년에는 10억달러의 實績을 示顯하게 되었다(〈表 Ⅲ-18〉 참조).

이러한 實績의 성장은 주로 2차 產品, 즉 工業製品 수출의 顯著한 증가가 主導해 왔는바 1962년에 公산품의 수출액은 전체의 27%인 1,500만달러에 불과하였던 것이 1970년에는 8억 3,900만달러에 달함으로써 8년 동안에 무려 56배로 增大되었다. 이와 같이 工產品 수출이 대폭 伸張함에 따라 1970년에 公산품 수출은 전체의 83.6%를 차지하게 되어 輸出商品構造는 工産化로의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이룩하게 되었다(〈表 Ⅲ-19〉 및 〈表 Ⅲ-20〉 참조).

이러한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量的 및 構造的 발전과 더불어 시장의 多邊化도 크게 이루어졌는바, 1960년대 초에는 불과 20여개 國家에 불과하던 輸出市場이 1970년 현재 104개 국가로 共産圈을 제외한 거의 자유세계 전역에 걸쳐 수출시장을 確保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多邊化와 더불어 시장구조에 있어서도 變革을 가져오게 되었는바 특히 우리나라 輸出實績增加를 주도해 온 合板을 비롯한 섬유제품 그리고 가발 등 大宗商品 수출이 주로 미국시장을 상대로 급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종래 日本, 홍콩 등 동남아 중심의 수출시장이 1967년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北美 위주의 수출시장 구조로 變貌하게 되었다.

〈表 III - 18〉 輸出履行 狀況(1962~1970年)

(單位：千달리, %)

	輸出目標 (Y)	目 標 增加率	L/C來到額 (A)	輸出實績 (B)	輸出履行率 (B/A)	實 績 增減率	目標達成率 (B/Y)	輸出指數 (1962=100)	平均目標 達成率	平均實績 增 加 率
1962	61,864	-	-	56,702	-	32.0	91.7	100	100.8	43.0
1963	81,900	32.4	120,671	84,368	69.9	48.8	103.1	148.8		
1964	120,000	46.5	143,321	120,851	84.3	43.2	100.7	213.0		
1965	170,000	41.7	213,243	180,450	78.0	49.3	106.1	318.3		
1966	250,000	47.1	292,062	255,751	87.6	41.7	102.3	451.4		
1967	360,000	44.0	379,690	358,592	94.4	40.2	99.6	623.4	100.1	40.7
1968	500,000	38.9	526,497	500,408	95.1	39.5	100.1	882.5		
1969	700,000	40.0	780,996	702,881	90.0	40.4	100.4	1,239.4		
1970	1,000,000	42.9	1,055,053	1,003,808	95.1	42.8	100.4	1,770.3		

資料：商工部

〈表 Ⅲ-19〉 우리나라의 産業構造別 輸出實績(1962~1971年)

(單位 : 千US달러, %)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목표
농 산 물	13,041 (23.0)	11,222 (13.3)	12,562 (10.4)	15,695 (8.7)	24,336 (9.5)	16,971 (4.7)	21,607 (4.3)	29,748 (4.2)	30,056 (3.0)	41,200 (3.0)
수 산 물	12,474 (22.0)	13,090 (15.5)	24,050 (19.9)	24,738 (13.7)	37,536 (14.0)	52,834 (15.0)	50,856 (10.2)	66,052 (9.4)	82,324 (8.2)	95,500 (7.1)
광 산 물	15,877 (28.0)	16,446 (19.5)	21,917 (18.1)	27,654 (15.3)	34,195 (13.4)	40,603 (11.3)	41,005 (8.2)	51,965 (7.4)	52,059 (5.2)	51,500 (3.8)
공 산 물	15,310 (27.0)	43,610 (51.7)	65,322 (51.6)	112,372 (62.4)	159,684 (62.4)	248,184 (69.0)	389,940 (77.3)	555,055 (79.0)	839,369 (83.6)	1,161,800 (86.1)
합 계	56,702 (100.0)	84,368 (100.0)	120,851 (100.0)	255,751 (100.0)	255,751 (100.0)	358,592 (100.0)	500,408 (100.0)	702,811 (100.0)	1,003,808 (100.0)	1,350,000 (100.0)

註 : ()안의 숫자는 構成比率임.

資料 : 商工部

〈表 Ⅲ-20〉 우리나라의 輸出商品 構造 (1962~1970年)

(單位：%)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原料部門系	80.6	54.3	50.9	39.0	38.7	32.8	25.8	23.0	26.4
食料品 및 산 動物	39.9	20.6	22.1	16.1	16.5	11.8	9.8	8.1	10.7
飲料 및 煙草	0.3	0.2	0.2	0.5	2.8	2.2	1.9	2.4	1.7
非食用 原資材	35.3	30.4	26.4	21.2	18.7	18.1	13.5	11.7	11.2
鑛物性燃料, 潤滑油	5.0	3.0	2.1	1.1	0.6	0.6	0.5	0.8	2.8
動植物性油脂類	0.1	0.1	0.1	0.1	0.1	0.1	0.1	0.02	0.02
製品部門系	19.4	45.7	49.1	61.0	61.3	67.2	74.2	77.0	74.6
化學製品	1.8	1.0	0.5	0.2	0.3	0.7	0.7	1.6	2.2
原料別製品	11.3	32.4	35.5	37.9	33.6	31.9	31.5	27.9	30.7
機械類 및 運搬機械	2.6	4.7	1.9	3.1	3.8	4.2	5.4	8.6	6.6
雜製品	3.6	7.4	11.1	19.7	23.7	30.4	36.7	38.9	34.1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商工部

2) 否定的 效果

가) 輸出用 原材料 等에 대한 事前免稅制度는 輸出의 輸入依存度를 지나치게 높임

원래 우리나라는 資源과 資本이 부족하여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유지해 오지 않을 수 없었으나 GNP에 대한 輸入依存度는 1962년만 해도 16.9%에 불과하던 것이 輸出의 增大와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여 1969년에는 28%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表 Ⅲ-21〉 참조) 이를 동남아제국과 비교하여 보면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높은 것이며 1962년 이후 機械 등 施設財인 자본재수입이 본격화되는 한편 수출증진에 의한 輸出用原資材 輸入이 급증한 데 그 주요요인이 있다. 施設財의 수입증가는 우리나라 機械工業의 落後性을 고려할 때 허용될 수 있으나 수출용원자재 수입의 激增은 外貨稼得率의 저하현상과 관련시켜 볼 때 과히 바람직한 현상은 못된다고 생각된다.

1960년 輸出目標 10억달러 달성을 위한 시책에는 國產原資材의 활용을 促進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실적이 미미했던 것도 수출용

〈表 Ⅲ-21〉 GNP에 대한 輸出入依存度(1961~1970年)

(單位: %)

	輸出依存度	輸入依存度	貿易依存度
1961	6.3	14.8	21.1
1962	6.1	16.9	23.0
1963	5.6	16.3	21.9
1964	6.9	13.9	20.8
1965	9.5	16.1	25.6
1966	12.0	20.4	32.4
1967	14.0	23.1	37.1
1968	15.5	27.1	42.6
1969	16.2	27.4	43.6
1970	16.8	26.1	42.9

資料: 韓國銀行

원자재 면세제도로 인하여 외국의 값싼 원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구태여 국산원자재를 써야 할 필요성을 輸出業者들이 실감하지 못하였으며,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對應輸出義務가 所要量制度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었는데 동 제도의 운영이 實勢에 못 따르는 환율로 인한 輸出損을 소위 技術所得分을 과다책정하여 國內販賣를 허용함으로써 補填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공무역의 外貨稼得率이 저하된 이유의 하나는 관세면제물품에 대하여 관세상의 대응 수출기간(1년)과는 별도로 무역계획상의 對應輸出期間(4~6개월)이 있어 수출업자들이 品質改善 등보다는 割當된 수출목표액의 달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低外貨稼得率의 輸出構造

우리나라의 輸出商品 구조가 工業化로 구조적 변화를 이룩하였고 또한 상품의 多樣化가 이루어져 輸出商品數는 약 천 개 품목을 헤아리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纖維製品, 合板, 假髮 等 소수의 상품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이러한 상품들은 그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실적의 증대와 더불어 우리나라 수출산업 전반의 평균 外貨稼得率은 1967년의 66.9%에서 1969년에는 62.9%, 그리고 1970년에는 63.5%로 저하되었다(〈表 Ⅲ-22〉 참조).

또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品質이 일반적으로 低位에 머물러 있어 국제시장에서 저가품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출업계의 採算性 또한

〈表 Ⅲ-22〉 年度別 外貨稼得率 推移(1967~1970年)

(單位: 千달러, %)

	輸 出 額	稼 得 率
1967	358,592	66.9
1968	500,408	65.2
1969	702,811	62.9
1970	1,003,808	63.5

낮아 자체적 수출능력의 향상을 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의 각종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深化되어 가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었다.

다) 關稅還給制度和 代置免稅制度의 運用上 問題點 擡頭

- (1) 輸出用原資材를 면허전 搬出하여 먼저 수출하고 사후에 납부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한 물품은 관세환급이나 대치면세가 困難하다는 점이다. 이는 關稅法 第32條 第2項에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과정에서 조그마한 不注意로 免許前搬出制度를 잊고 무심히 넘어가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면허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運用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성실한 선의의 수출업자에게 相對的으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었다.
- (2) 關稅還給額과 代置免稅額은 수출시점의 과세표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었으므로 關稅事前免稅制度와의 균형을 잃었다.
- (3) 代置免稅制度는 원래 國產原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사실상 국산원자재의 국내에서의 消費時點을 얼마 동안 늦춘다는 의미밖에 없어 효과를 發揮하지 못하였으며 自動代置免稅制度는 오히려 국산원자재 사용가능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악덕 수출업자의 악용 가능성만이 문제점으로 대두하였다.

라) 輸出物品製造專用機械免稅制度의 劃一的인 運營

商工部 長官의 免稅推薦에 의해 면세된 시설재는 도지사의 사후관리에 의하여 對應輸出履行 결과를 보고받아 연간 생산량의 60% 이상을 수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면세된 관세를 전액 追徵하였는데, 이는 59%는 안되고 61%는 좋다는 너무 획일적이고 安逸한 기준이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산량을 적게 하는 것이 생산량이 많도록 稼動시키는 것보다 관세 면에서 유리하다는 경우도 나올 수 있었다.

마) 免稅輸入原材料에 대한 事後管理에 行政上 負擔 加重

輸出·內需를 병행하는 기업에서는 免稅輸入한 원재료를 내수용으로 전용하고 나중에 과세 수입한 원재료로 對應輸出義務를 이행하여 수출

원재료의 관리에 불합리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나. 輸入代替產業政策效果

1) 肯定的 效果

1960년대 우리나라의 輸入代替產業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韓國生産性本部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입대체 산업은 1956년 이후 戰後復舊期에 접어들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미국의 援助가 消費材로부터 원자재 및 시설재로 轉換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였다. 이 기간의 수입대체는 미국의 剩餘農産物의 국내가공 정도에 그쳤으며 생산재산업의 복구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극히 微微한 실정이라서 外貨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수입대체라기보다는 外國원조의 형태변화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제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기간중에는 工業化를 기본 목표로 하고 基幹産業의 수입대체에 중점을 두어 각종 수입소비재의 국내대체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동 기간중에 精油, PVC, 化學纖維, 自動車組立 및 시멘트工業 등이 수입대체산업으로 확충되어 國內自給率이 상당히 제고되었다(〈表 III-23〉 참조).

계속해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중에는 제1차 계획 기간중에 성취된 消費財 輸入代替에서 생산재 수입대체로 전환되어 종합제철 공업, 석유화학공업, 기계공업 등의 基礎工業을 육성함으로써 수입대체를 위한 既存工業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데 주력하여 本格的인 수입대체산업의 整地化作業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동 기간중 2차연도(1966년)까지 刮目하게 성장하였던 업종은 1차계획 기간중에 一部輸入代替가 이루어졌던 PVC 化學肥料, 化學石油工業 등으로 1차계획 기간중에 비해 생산량이나 自給率이 훨씬 提高되었다. 그러나 동 기간중 기초 원자재를 뒷받침할 종합제철공장, 기계공업, 석유화학공업의 건설이 遲延됨으로써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수요 증가 문제는 根本的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表 III-23〉 主要製品の 輸入代替 動向

(單位: %)

	自 給 率			備 考
	1962	1966	1968	
紙 類	88.1	91.3	91.2	1966년부터 生産
苛 性 소 다	16.5	49.2	80.9	
P V C	-	2.6	97.0	
化 學 肥 料	12.9	19.6	76.5	
化 學 纖 維	0.02	6.4	26.8	1964년도
精 油 製 品	64.8	87.7	86.2	
시 멘 트	80.8	99.0	106.1	
디 젤 엔 진	87.6	97.1	50.8	1966년부터 一部 輸出
橫 編 機	-	-	100.0	
電 動 機	-	-	46.6	1968년부터 특수기를 제외하고는 自給
絶 緣 電 線	30.9	74.8	77.1	
鐵 道 客 車	43.6	48.0	22.8	
소 다 灰	-	-	54.1	
抗 生 物 質	-	19.0	0.02	

資料: 한국생산성본부

따라서 이상과 같은 상황을 미루어 볼 때 1960년대의 輸入代替는 基礎消費材에 있어서는 대부분 확충되거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기초공업 부문의 본격적인 건설을 통해 생산재의 輸入代替를 완성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2) 否定的 效果

1960년대 輸入代替의 과정이 진전되어 오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資源의 제약을 경시한 채 확대성장의 一貫政策으로 수입대체산업이 당초에 目標로 삼았던 외화절약 효과를 크게 減少시켜 수입대체정책의 不在狀態를 낳게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국내에서 기

초원료를 自給할 수 있는 경우는 몰라도 어느 정도 수입대체가 진전되기까지는 수입대체산업을 위한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입수요는 不可避하기 때문이다.

둘째, 工業化의 진전과 함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입대체는 오히려 국민의 소비성향을 높여 轉入代替産業의 원자재 輸入依存度가 높은 경우에는 외화절약보다는 외화지출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수입대체상품에 局限하지 않고 기타상품에까지 이러한 展示效果가 과급되어 전반적인 소비성향을 부추겼다.

셋째, 새로운 輸入代替産業建設에 있어서는 막대한 외자수요가 동반되므로 元利金償還 문제는 국제수지를 크게 壓迫하였으며 또한 차관 供與者의 외국원료사용을 제한시키는 조건이 許多하여 외화유출을 誘導시켜 왔다.

넷째, 대상 産業의 엄격한 選定과 한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은 基礎産業과 아무런 관련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경제의 前後方效果를 減少시켰다.

다섯째, 輸入規制는 수입대체를 통한 국산제품의 자급률을 제고시켜야 했음에도 그동안 수출극대화정책이 수출용 원자재수입에 배분 각종의 特惠措置는 건전한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많은 支障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체간 競爭過程에서 過剩施設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급과잉과 자원의 낭비가 나타나 업체들이 덤핑 수출을 恣行하여 輸出缺損을 국내가격의 인상으로 補償하고자 소비자의 負擔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稅收確保效果

1) 肯定的 效果

가) 1960년대 전반, 즉 開發 始動期의 관세수입은 해마다 증가하여 1961년의 53억원에서 1965년에는 126억원, 1966년에는 176억원으로 一般會計歲入의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表 Ⅲ-24〉 참조). 이러한 금액의 증가에서뿐만 아니라 歲入 중 關稅收入의 비중도 1961년의 8.6%에서 1965년에는 11.9%로서 3.1% 포인트나 상승하였으며, 租稅收入 중 관세수입의 비중도 1961년의 23.8%에서 계속 연평균 20%선을 유지함으로써 관세수입이 財政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表 Ⅲ-24〉 一般財政部門 歲入執行 內譯(1961~1970年)

(單位: 億원, %)

	歲入(A)	租稅(B)	關稅(C)		其他 ¹⁾	C/A	C/B
			內國稅	關稅(C)			
1961	614	232	179	53	382	8.6	23.8
1962	789	282	214	68	507	7.2	24.1
1963	759	311	247	64	448	8.4	20.5
1964	794	374	292	82	420	10.3	21.9
1965	1,055	546	421	126	509	11.9	23.0
1966	1,538	876	700	176	662	11.5	20.0
1967	1,990	1,292	1,038	254	698	12.8	19.7
1968	2,757	1,943	1,564	379	814	13.7	19.5
1969	3,760	2,628	2,181	447	1,132	11.8	17.0
1970	4,459	3,347	2,838	509	3,950	11.4	15.2

註: 1) 專賣益金, 不正蓄財還收金, 其他特別會計 轉入.

稅外收入, 豫託金, 國債, 產業復興國債, 借入金 對充資金 등.

資料: 財務部, 『決算概要』, 1969, 1970.

나) 1960년대 후반 高度成長期의 關稅收入은 해마다 증가하였으나 일 반회계세입의 增加率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1967년 歲入 1,990억원

중 關稅收入이 254억원으로 12.8%에 이르렀는데, 1968년에는 13.7%로 다소 비중이 높아졌으나 1969년부터 낮아져서 1970년에는 11.4%로 낮아졌다. 이것은 內國稅의 증가율에 비하여도 상당히 낮은 폭의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1967년은 租稅收入 1,292억원 중에서 19.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계속 낮아져서 1970년에는 15.2% 수준이었다. 그 이유는 內國稅는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기반의 성숙과 국세청의 발족에 따른 세원발굴로 開發租稅의 收入이 크게 늘어난 반면 關稅는 產業支援, 輸出支援을 위한 關稅減免制度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다) 이 기간중의 주요국가의 關稅의 財政寄與率을 살펴보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租稅收入 중 關稅收入이 차지하는 재정기여율이 1.35~7.74%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24.27~62.3%나 되었다. 한국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表 Ⅲ-25> 참조).

<表 Ⅲ-25> 主要國 租稅收入 中 關稅收入

(單位：百萬 自國貨幣, %)

	年度	租稅收入(A)	關稅收入(B)	比重(B/A)
美 國	Fy 65	112,960	1,520	1.35
프 랑 스	Cy 64	87,523	2,882	3.29
스 웨 덴	Fy 66	24,960	1,100	4.41
濠 洲	Fy 65	3,786	268	7.08
오 스트 리 아	Cy 65	62,565	4,840	7.74
필 리 핀	Fy 66	2,161	537	24.86
인 도	Fy 66	16,683	4,050	24.27
泰 國	Fy 66	8,725	3,016	34.57
파 키 스 탄	Fy 66	3,585	1,085	30.26
인 도 네 시 아	Cy 66	183,750	114,480	62.30

資料：韓國關稅協會, 『關稅』, 1971. 6, p. 20.

라) 關稅收入의 요건인 輸入量과 관세의 實質負擔率을 보면 이 기간의 單純平均關稅率은 39% 내외였으나 免稅, 還給, 彈力支援 등을 고려

한 加重平均關稅率은 16% 내외였다. 1961년의 輸入額 3억 1,610만달러에 關稅徵收額은 52억원으로 실질부담률은 12.9%로 비교적 높았으나 1962년부터 과감한 對外指向의 정책전환과 산업육성 시책에 관세측면이 보조를 같이하면서 중요산업용 基礎設備品 및 原資材 기타 特殊用品에 대한 면세 및 감면제도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관세징수액에 비하여 관세감면세액의 비율이 높아져 1965년의 徵收 對 減免比率이 64 對 36에서 1970년에는 41 對 59로 減免稅額이 징수액보다 많아지게 되어 1963년부터 實效稅率은 8.8%로 하락하였고 1965년부터는 6.9% 이하로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表 Ⅲ-26> 참조).

〈表 Ⅲ-26〉 關稅의 徵收 및 減免 現況(1961~1970年)

(單位: 百萬달러, 億圓, %)

	輸入額	關稅			實效稅率
		徵收額 (A)	減免額 (B)	A : B	
1961	316.1	53	미상	—	12.9
1962	421.8	68	미상	—	12.4
1963	560.3	64	미상	—	8.8
1964	404.4	82	60	58:42	7.7
1965	463.4	126	70	64:36	6.9
1966	716.4	176	157	53:47	6.3
1967	996.2	254	251	50:50	6.08
1968	1,462.9	379	499	43:57	6.94
1969	1,823.6	447	638	41:59	6.44
1970	1,984.0	509	718	41:59	6.12

資料: 財務部, 『貿易統計』, 1969.

———, 『關稅統計 및 資料案』, 1985. 6.

이와 같은 實效稅率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관세수입이 증가한 것은 수입상품의 가격양등과 特關稅의 실시 등 關稅行政의 강화에 기인한다.

2) 否定的 效果

가) 臨時特關稅制度의 弊害

(1) 正確한 國內都賣價格 算定의 困難性

輸入物品의 國內 도매가격은 그 품목이 특관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특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基本的 자료가 되므로 품목별 國內도매가격의 조사는 특관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도매가격의 조사가 정확해야만 과세표준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고, 特關稅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一般적으로 國內도매가격은 몇 개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업자가 당해 무역업자로부터 매입하여 國內도매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말한다. 그러나 특관세의 적용을 위해서 조사해야 할 品目은 거의 全輸入品目에 달하는 3,20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그것도 품목에 따라 規格·品質이 다를 뿐 아니라 生産者도 달라 각기 상이한 가격이 形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를 볼 때 도매가격은 여러 가지로 形成되어 있으며 각 상점마다 다르다. 예컨대 1차 도매가격이나, 3차 도매가격이나에 따라 달라지며 후자는 사실상 소매가격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정확한 조사의 곤란성은 國內 도매가격을 조사하는 行政機關의 능력에 의하여도 加重되는데 더구나 固有業務로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정확한 가격포착이 어려울 뿐더러 세무행정상 능률을 저해하여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어 신속한 통관사무의 처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國內 物資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輸入者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염려가 있었다. 또 정확한 都價調査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國內 도매업자끼리의 담합에 의하여 가격을 引下하여 조사에 응할 수 있어서 사실상 정확한 조사가 되지 못하고 마는 수가 있었다. 즉 行政機關이 一定時點을 잡아 조사하고 있었으므로 輸入業者 또는 國內 도매업자가 이 時點을 利用하여 실제거래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호가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의 정확성이 보장될 수 없었다.

여기에 도매가격 산정의 난점이 있는 것이다. <表 Ⅲ-2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가조사를 하나의 업무로 하는 財務部와 釜山稅關을 제외하고는 시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품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1968년 1월 1일부터 11월의 기간중 도매가격 사정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를 보면 매월 300개 내지 400여개 品目에 달하고 있어 정확한 도매가격조사가 극히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表 Ⅲ-27> 참조).

<表 Ⅲ-27> 都價表(主要 輸入物品) 時價調査不能 品目數

(單位: 百萬圓)

	총품목	제품에서 산출품목	조사대상 품목	재무부	부 산 세 관	서울지방 국 세 청	부산지방 국 세 청	한 국 은 행
1968. 1	2,790	188	2,602	212	196	859	245	1,065
2	2,865	182	2,683	237	195	850	297	1,016
3	2,906	180	2,726	264	240	852	276	1,193
4	3,079	177	2,902	306	309	1,014	440	1,333
5	3,079	177	2,902	293	287	1,021	291	1,321
6	3,157	169	2,988	296	372	1,056	433	1,326
7	3,273	172	3,101	330	391	1,251	554	1,539
8	3,298	172	3,126	347	391	981	1,008	1,334
9	3,298	177	3,121	349	390	1,170	743	1,371
10	3,425	181	3,244	397	432	1,562	1,030	1,473
11	3,514	181	3,316	390	397	1,294	984	1,461
計	34,684	1,973	32,711	3,421	3,600	11,710	6,301	14,432

資料: 財務部 稅關局

한편 관세소원위원회에 부의된 特關稅 관련사항의 처리 내용을 살펴 보면 1968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 시가대수에 관련된 것은 모두 36건으로 처리된 것 중 용인이 28건, 90%을 차지하고 도매가격에 관한 것도 55건 중 23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로서도 도매가격조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一面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도매가격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形成되는 것이고 국제경제사정에 수시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조사는 거의 곤란한 것이다.

特關稅法 시행령에도 도매조사 결정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貿易의 다량화, 거래량의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도매가격을 정확히 조사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초과이윤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생산비뿐만 아니라 판매 가격도 정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輸入業者에 의하여 發生하는 諸 不作用

特關稅는 이윤을 포착하는 범위가 너무 넓고 엄격하여 輸入價格이 비쌀수록 과세액이 적어지므로 실제 가격보다 高價로 신고하는 「오버밸류」의 경향을 조장하여 외화의 海外流出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원가를 절약한다고 하여도 그 이윤이 국내 업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게 되므로 보다 유리한 輸入에 노력하지 않고 경쟁적 구매를 하려는 기미가 없이 안이한 생각으로 資金回轉을 빨리 할 수 있는 근거리지역에 편중하여 수입을 추진하여 特定地域과의 무역의 불균형이 컸었다(예 : 對日 무역편중). 또 일부업자가 고의적으로 輸入하려고 하는 物品을 국내시세로 재고 放出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인하하여 과세 표준을 혼란시키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었다.

(3) 換率의 固定化와 輸出振興의 沮害

特關稅는 輸入需要를 억제함으로써 환율의 유동적 조절기능을 억제하고 이로 인하여 輸出振興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964년 同 制度가 실시된 이래 환율은 계속 270원대에서 장기간 동안 거의 固定되었다는 사실에서도 그 理由의 하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에 介入하여 정책적으로 조작하는 등에 그 이유가 있겠지만 特關稅가 수입수요를 억제하는 한 어느 면에서는 환율의 上向 가능성을 저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환율이 인상될수록 외환공급의 원천인 輸出活動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출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환율현실화에 의한 수출의 장애를 제거하려는 단일변동환율 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4) 租稅法律主義와의 關係

헌법 제3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國民의 동의 없이는 課稅할 수 없다는 원칙을 明白히 하고 있다. 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에 의한다”라고 헌법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는 명확하여야 하고 자의적인 것이 되어서 안된다. 그러나 특관세의 경우 과세물품의 기초가 되는 국내도매가격 조사가 정확을 기하기 어렵고 사실상 도매가격은 特關稅 부과 시기가 1개월이 지난 후의 가격이 표준이 되므로 그동안 가격이나 기타의 경제적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극히 자의성이 많았다. 나아가서 特關稅는 輸入業者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기업의욕을 저해하여 헌법상 자유경제의 原則에 어긋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결국 특관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매가격의 책정과 特關稅額을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취급함으로써 行政管理의 재량권이 광범위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점이다.

第 4 節 關稅政策의 成熟期(1970年代)

1. 與件

가. 關稅政策 運用을 위한 對外與件

1971년 8월 15일 美國의 新經濟政策에 의한 美달러의 金兌換 停止는 淸후 세계 通貨體制를 유지해 온 IMF 체제를 붕괴시키고, 이로 인한 물가동요가 진행되는 가운데 1973년의 오일쇼크는 세계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되어 인플레이션과 不況의 同時化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

산되었다. 세계 先進各國은 자국의 인플레이션과 불황 해소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保護主義를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내적인 긴축으로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자원과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대외적으로 전가하려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나. 產業政策의 基調 : 重化學工業의 推進을 통한 工業構造 高度化

1960年代에 이어 1970年代에도 석유화학공업육성법(1970), 비철금속공업진흥법(1971),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1969, 1979) 등의 特別法을 제정하여 특정산업을 집중적으로 育成하려는 產業政策을 계속 시행하였다.

政府는 1960年代의 제1차 및 제2차 계획 기간중에 거의 정착화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의 開發戰略을 1970年代에도 계속 추구하면서 제3차 계획 이후 중화학공업의 중점개발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1970年代의 우리나라의 產業政策은 수출진흥과 중화학공업의 개발이 2대 支柱를 이루고 있었다 하겠다.

1970年代의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개발전략은 제철, 석유화학 등 素材工業과 機械工業을 선도전략산업으로 育成하고 동시에 電子 및 造船을 수출전략산업으로 集中 開發한다는 것으로 집약되었다. 또한 개발체제 면에서는 각 업종별로 大規模 工業團地를 조성하여 集積利益을 추구하고, 소요자본 및 기술은 외국과의 합작 또는 단독투자를 통하여 조달하며, 수입대체적이라기보다는 수출지향적 開發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昌原(기계공업), 龜尾(전자공업), 巨濟島(조선공업), 麗川(석유화학공업), 溫山(비철금속공업) 등에 대규모공업단지를 조성하였다. 또한 철강공업육성법, 전자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비철금속제련사업법 등 일련의 育成法 내지는 振興法을 제정하여 각종 施設材 등의 수입시에 관세감면, 시설투자시에는 법인세감면 등을 통하여 중화학부문에의 投資를 유도하

었다. 이 밖에 기계국산화 지원시책으로 官需用 국산품의 우선구매, 플랜트 등 대형기계류의 輸入에 있어서의 사전신고제, 국산화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이 實施되었다.

다. 貿易政策의 基調

1970年代도 貿易政策의 기본목표가 輸出의 지속적 확대라는 데는 변함이 없었다.

1970年代의 輸出振興政策의 특징은 1960年代의 양적인 수출확대 위주정책에서 질적인 수출진흥정책으로 轉換되었다는 점이라 하겠다. 1970年代 전반기에는 수출진흥정책의 계속적인 추진과 함께 産業의 國際化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중화학공업의 推進을 통한 공업구조의 고도화에 정책의 중점이 두어졌으며, 아울러 수출진흥기반의 구축을 위해 종합무역상사체제를 확립하였다. 하반기에는 중화학공업제품의 輸出振興을 위하여 모든 시책이 동원되었는데 해외원자재의 안정확보와 수출산업의 기반정비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表 Ⅲ-28〉참조).

1970年代의 輸入政策은 초반기·중반기에는 1960年代 후반기의 政策基調가 그대로 지속되었다. 즉 국제수지전망과 수입규모에 따라 不要不急한 품목의 수입을 규제하고 輸入擔保金積立率을 인상하거나 또는 短期延拂輸入의 규제 등을 통하여 輸入貿易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1978年度에 들어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經濟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수출규모도 100억달러를 超過하게 되자 종전의 수입규제정책을 緩和하여 개방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政府는 1978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數次에 걸쳐 輸入自由化措置를 단행하였다. 우선 제1차 수입자유화의 기본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Ⅲ-28〉 1970年代 輸出制度의 變化 推移

	主 要 內 容
1970	輸出用原資材 技術所得分 所得稅 減免制(1月)
1971	延拂輸出 支援金融資制(1月)
1972	8·3 緊急經濟措置 (私債凍結 8月)
1973	輸出業體 外貨豫置制(1月) 輸出産業 設備金融(2月) 輸出準備金制(3月)
1974	租稅徵收豫備措置(4月) 特別設備金融(12月) 信用保證基金法(12月) 換率 484원 固定(1974.12.7~1980.1.11)
1975	綜合貿易商社 指定(5月)
1976	輸出金融 商社別 限度去來制(1月) 完製品 備蓄去來制(3月) 輸出入銀行 發足(7月)
1977	輸出保險制(1月) 輸出金融制度 全面 改編(4月) 國產化率 公告(2月) 輸出所得零稅率 附加價值制(7月)
1978	外貨貸出制度 整備(1月) 中長期延拂輸出金融制(4月) 重工業部門 專門工場 指定(6月) 産業設備輸出促進法(12月)
1979	纖維産業近代化促進法(12月)

資料：韓國關稅研究所, 『韓國關稅史』, 1985, p. 608.

첫째, 輸入制限要因의 除去로 圓滑한 수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輸入推薦制, 輸出入링크制, 實需要者制 등 행정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둘째, 國內産業에 대한 過保護體制에서 탈피하여 산업합리화를 통한 업계 스스로의 체질개선으로 국내산업의 國際化를 유도한다.

셋째, 國內産業의 체질개선과 병행하여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과의 자유경쟁에 의한 자동조정기능을 부여하여 物資需給의 圓滑化와 국내물가 수준의 안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增大시킨다.

넷째, 輸入開放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輸入을 허용하되 輸入활동을 면밀히 주시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輸入을 統制, 調整하는 輸入감시제를 채택한다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1970年代에 취해진 단계별 輸入자유화조치의 내용을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表 Ⅲ-29〉 참조).

〈表 Ⅲ-29〉 1970年代의 輸入自由化 推移

(單位: 個, %)

	總輸入 品目數	輸入禁止 品目	輸入制限 承認品目	輸入自動 承認品目	輸 入 自由化率
1971	1,312	73	570	669	51.0
1972	1,312	73	590	649	49.5
1973	1,312	73	556	683	52.1
1974	1,312	73	574	665	50.7
1975	1,312	66	602	644	50.6
1976	1,342	64	579	699	52.0
1977	1,312		621	691	52.7
1978	1,097		385	712	64.9
1979	1,010		327	683	67.6
1980	1,010		327	693	68.6

註: 1. 各年度 下半年 기준임.

2. 總輸入品目數의 기본품목기준은 다음과 같다.

1977년: SITC 1,312개 품목

1978년: CCCN Heading(4단위) 1,097개 품목

1979~1980년: CCCN Heading(4단위) 1,010개 품목

3. 1978년 輸入自由化率 64.9%는 1978년 9월 18일 제2차 輸入자유화조치 당시의 輸入자유화율임.

1978년 12월 18일 제3차 輸入자유화조치 당시의 輸入자유화율은 68.6%로 증가되었음.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號.

商工部, 『輸入自由化推進과 輸入管理』, 1985. 6. 10.

_____, 『輸入自由化推進 現況』, 1987. 6.

韓國貿易協會, 『무역연감』, 1993.

1977년 4/4分期의 두 차례에 걸친 小幅的인 輸入자유화에 이어 취해진 제1단계의 輸入자유화조치는 한국경제의 國際化에 접근하려는 정책

전환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커다란 경제적 意義를 갖는 조치였다. 同 措置는 基礎素材의 국내공급이 獨寡占狀態에 있는 품목 그리고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진 품목을 선정대상으로 하여 CCCN 4단위 기준으로 75개 품목을 自由化하였다.

그런데 同 措置에서는 수입자유화품목 중 46개 품목 (CCCN 4단위 기준 28개 품목과 4단위 이하 기준 18개 품목)을 監視品目으로 별도 선정하여,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輸入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第2段階의 수입자유화조치는 1978年度 하반기 輸出入期別公告의 개정형식을 취하여 발표되었는데, 국내물가안정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조치는 국내물량이 부족했던 鐵鋼을 비롯한 원자재와 화학섬유원료 등 수출용원자재 그리고 전자제품 등 일부 소비재를 포함하여 CCCN 分類 4단위 기준으로 약 39개 품목을 수입개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內需供給이 원활하지 못한 당밀, 합성고무 등 6개 품목의 수입한도를 增額했으며, 나일론 F絲, 나일론 등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輸入比率을 상향조정하였다.

第3段階의 수입자유화조치에 있어서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推進되어 온 수입자유화정책을 1979年度中에도 폭넓게 수행할 수 있도록 輸入自由化의 대상품목을 크게 擴大하였다. 그리고 同 年度 상반기의 期別公告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류 및 일반소비재를 포함하여 356개 품목 (CCCN 8단위 기준)을 자유화함으로써 全體적으로는 CCCN 4단위 기준 41개 품목, 8단위 기준 349개 품목이 자유화품목으로 追加되었다(〈表 Ⅲ-30〉 참조).

그러나 1979年度 하반기의 期別公告에서는 원유가인상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국내수요증대 등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수입자유화품목이 CCCN 4단위 기준으로 8개 품목, 8단위 기준으로는 46개 품목에 그침으로써 輸入自由化의 템포는 둔화되었다.

〈表 Ⅲ-30〉 1970年代 第3段階 輸入自由化 措置

(單位: 個, %)

		禁止品目	制限品目	A・A品目	計	自由化率
1978年(上)	當 初	50	456	591	1,097	53.9
	改 正(5月)	-	431	666	1,097	60.7
1978年(下)	當 初	-	424	673	1,097	61.4
	改 正(9月)	-	335	712	1,097	64.9
1979年(上)		-	344	753	1,097	68.6
		-	336	674	1,010	66.7
1979年(下)		-	326	682	1,010	67.5

註: 1. () 안은 CCCN 8단위 기준, 그 외는 4단위 기준.

2. 上은 상반기, 下는 하반기를 뜻함.

3. 1979年(上)의 下段은 1979年 1月 1日 한국표준무역분류개정의 CCCN 체계에 의한 것임.

資料: 商工部

라. 換率政策의 基調

1970年代를 통한 우리나라의 換率制度는 명목상으로는 달러貨 중심의 변동환율제였으나 사실상 固定換率制로 운영되었고 필요에 따라 일시에 조정하는 방식이 취해지고 있었다. 1970年代의 우리나라 換率推移를 보면 1970年末의 달러當 316.65원에서 1981年末에는 700.50원으로 두배 이상이나 상승되었다.

이를 연평균 상승률로 換算한다면 매년 7.5%씩 오른 셈이 된다. 同 기간중의 환율은 1971년 상반기, 1972년 상반기 등 극히 짧은 기간에만 流動되었을 뿐 거의 全期間에 걸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고정화기간 중에 발생된 實勢換率과 名目換率과의 乖離를 시정하기 위하여 1971년 6월 28일에 13%, 1974년 12월 7일에 21.3%, 1980년 1월 12월에 19.8% 등 3차에 걸쳐 對美換率을 일시에 인상조정하였다(〈表 Ⅲ-31〉 참조).

〈表 Ⅲ-31〉 우리나라의 換率 推移

(單位: 달러當 圓, %)

	換 率 變 動	引 上 幅
1971. 6. 28	328.15 → 370.80	13.0
1974. 12. 7	399.00 → 484.00	21.3
1980. 1. 12	484.00 → 580.00	19.8
1980. 12. 31	659.90	36.3 ¹⁾

註: 1) 前年度 引上率

資料: 韓國銀行

그런데 당시의 환율인상 조정요인을 분석해 본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그 변동요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첫째,國內外 인플레이션의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 통화의 교역상대국통화와와의 실질구매력의變動, 즉 교역상대국과의 인플레이션差에 의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발생되었으며 둘째, 우리의 교역다변화와 아울러 국제통화체제의 변동환율제로의移行에 따른 교역상대국통화간의 가치변동을反映하기 위해서도 조정의 必要性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70年代 前半에는 비교적 實勢에 맞추어 조정되어 왔으나, 1970年代 後半에는 장기고정화로 高評價되는 傾向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年代 후반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換率이 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외화시장에서 달러貨가 계속 弱勢를 보임으로써 元貨의 高評價 程度는 다소 緩和될 수 있었다.

마. 密輸의 推移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합법을 가장한 밀수입이 더욱 지능화되었고, 그 밀수품목도 그 전까지의 생필품 위주에서 벗어나 機械類(30%), 施設材, 原資材, 電子製品, 貴金屬, 鹿茸 등을 주로 밀수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밀수수법도 活鮮漁船을 통하여 밀수자금으로 골동품, 히로뽕,

外貨 등을 密搬出하고 海上分船 또는 島嶼地方으로 密輸品을 揚陸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APO(美軍事郵便) 밀수와 월남 파병에 따른 군인밀수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밀수수법의 지능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70년 6월 22일에 南海岸 監視船團을 조직하여 남해안을 집중감시하기 시작하였고, 1974년에는 공항에 X레이 투시기 등 과학장비를 도입하여 활동하였다.

2. 關稅政策의 變化 內容

가.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위한 關稅上 支援 및 保護

1) 産業構造 高度化와 關稅率 調整

1970년대의 關稅率體系는 다소 변화가 심했었는데 1970년대 초반에는 1960년대처럼 차등관세율체계(Tariff Escalation System)를 계속 堅持하면서 소비재에 대한 과다보호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되, 신규개발 중간재산업을 적정보호하여 産業構造의 고도화를 促進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와서는 그동안 採擇해 온 차등관세율체계는 개개의 物品을 원료, 반제품, 완제품으로 구분하여 차등세율을 책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산업간 보호수준의 격차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가능한 한 關稅의 기능을 중립화시키기 위하여 20% 균등관세율체계(Uniform Tariff System)를 指向하기로 하고 20%보다 높은 세율을 이에 수렴시키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關稅率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세율인하예시제를 導入하였다. 그러나 다시 1970년대 후반기에는 수입자유화추진과 함께 産業의 국제경쟁력 함양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관세의 산업관세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차등관세율체제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관세율체계면에서 다소 變化가 있었지만 관세율체계개편의 기초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산

업구조의 고도화 및 균형화정책에 따라 중화학공업 및 관련중요산업을 育成·支援하고 경공업에 대해서는 보호도를 낮추려는 것이었다.

한편 관세율수준은 1960년대보다 평균 10% 포인트가 낮은 30.6% 수준을 견지하였으나 1970년 중반기에는 20% 균일관세율 지향의 전면관세율조정으로 36.5%로 다소 높아졌고 1970년대 하반기에 와서는 24.9%로 대폭 引下되었는바 이는 대외적으로는 關稅障壁의 완화로 국제무역의 확대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이룩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過剩保護關稅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산업합리화를 유도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表 III-32〉 참조).

〈表 III-32〉 平均關稅率의 變化(1970年代)

(單位: 個, %)

	稅率段階	稅目數	單純平均稅率	加重平均稅率	實效稅率
1973	17	1,985	31.3	18.8	4.9
1977	11	2,521	35.7	14.4	6.1
1979	14	2,209	24.9	16.0	7.4

資料: 財務部, 『관세율구조의 현황』, 1977.

가) 1973年 3月 關稅率 調整

1973년 3월 關稅率 調整이 있었는데 이는 ① 中間財 및 資本材 등 新規開發品の 過少保護 是正 ② 산업기반이 확립된 최종소비재의 稅率引下 ③ 第3次 開發計劃의 優先順位事業支援 ④ 생활필수품, 重要산업용 기자재 등 과다세율의 引下 ⑤ 品目分類表의 개편 ⑥ 物價安定을 위한 일부품목의 관세부담수준 유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세율 책정기준은 〈表 III-33〉과 같으며 이와 같은 조정으로 食料·織物 등 경공업제품은 150~100%에서 80%로 引下되었고 國産化가 된 中間材인 고탄소강대 무수프탈산 등은 10~20%에서 15~50%로 인상되었으며 또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原料

〈表 Ⅲ-33〉 關稅率 策定基準表(1973年)

(單位: %)

		天然產品 또는 基礎原資材와 産業用 機械	中間製品	完 製 品
保護 關稅 品 目	1) 高率保護品目	50~60 60 30~40 25	60~70 80 40~50 40	80~100 150 50~ 70 50
輸入 規制 關稅 品目	1) 國產不能品目	60~80	80~100	100 (100~150)
	2) 煙草·酒類·高級승용차 등	(60~80)	(100)	150
財 政 關稅 品目	1) 主要産業用機械 및 基礎 原資材	5~10 (5~15)	5~15 (5~15)	5~15 (5~15)
	2) 農水産用 緊要品目	5~10 (5~15)	5~15 (5~15)	5~15 (5~15)
	3) 其他	20 (20)	20 (20)	20 (20)
無稅 品目	國際慣例 또는 國策上 특수 취 급하여야 할 品目	0	0	0

註: 1. 150%의 稅率은 煙草率·酒類·高級乘用車 등 國際的인 高級消費 규제品에 限하여 적용한다.

2. 從量稅만으로 保護 목적을 기하기 곤란한 物品은 從量, 從價, 選擇稅로 策定한다.

3. 映畫用 필름은 從量稅로 策定한다.

4. () 안은 종래기준임.

資料: 財務部, 「1973 關稅法 改正案」.

및 施設機資材가 5~10%로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관세율 조정의 결과 品目數는 3,174개에서 3,985개 품목으로 細分되었으며 稅率 引上 440개, 引下 1,068개, 據置 2,477개로 조정됨에 따라 20% 이하는 종래의 50%에서 58%로 20% 이상은 종래의 50%에서 42%로 平均稅率은 종래의 38.8%에서 31.3%로 크게 調整되었다.

나) 1976年 12月 關稅率 調整

1976 關稅率 調整은 稅制 全面改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기본 방향을 ① 第4次 計劃에 따른 産業구조의 고도화 지원 ② 實效關稅率 提高 ③ 關稅機能의 中立化 指向 ④ 關稅率構造의 單純化에 두었다.

첫째, 財政關稅品目은 20% 均一稅率로 통합하고 差等稅率을 10%로 設定, 財政收入의 확보를 기함은 물론 主要 原料재 및 자본재의 해외의 존을 止揚하기 위해 이의 減免稅를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했고 둘째, 例示稅率制度를 채택, 급격한 關稅率의 인상 또는 이하로 국내 업계나 물가에 주는 충격에 대비하도록 했으며 셋째, 資源節約型 · 勞動集約型 · 高附加價值型 등 重化學産業을 40~60%로 高率保護하고 輸入誘發型 · 資本集約型 · 長期支援에 따른 基礎構造型의 産業은 중심균일세율로 통합하기 위해 中間세율(15%, 35%, 50%)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재정관세는 10% · 20%에 두고 보호관세는 8단계에서 30% · 40% · 50%로 축소조정하고 80~100%는 60%로 이하하여 과다 高율보호를 지양했다(〈表 Ⅲ-34〉 참조).

〈表 Ⅲ-34〉 關稅率策定基準表(1976年)

(單位: %)

		天然產品 및 原資材	半製品	完製品
保護關稅 品目	高率保護	40 (40~69)	40 (50~70)	60 (80~100)
	低率保護	30 (25~35)	30 (40~50)	40 (80~70)
規制關稅 品目	輸入禁止	100 (60~80)	100 (80~100)	150 (150)
	輸入規制	80 (40~60)	80 (50~70)	100 (80~100)
財政關稅 品目	均一財政	20 (15~25)	20 (15~25)	20 (15~25)
	差等財政	10 (0~10)	10 (0~10)	10 (0~10)
特殊取扱 品目	國際慣例	0 (0)	0 (0)	0 (0)
	資本財	産業機械	機能別機械	機械要素
20 (0~40)		30 (0~50)	30 (0~60)	

註: () 안은 中건 關稅率임.

資料: 財務部, 「1976 關稅法 改正案」.

결국 총 2,521개 품목 중 1,125개 품목은 不變하고, 616개 품목은 인상되었으나 중간 세율의 폐지(5%, 15%, 25%, 35%, 50%, 70%)로 약간씩 자동인상된 것이고 780개 품목이 인하된 것도 中間稅率 폐지·保護關稅 및 輸入規制關稅의 전반적인 稅率水準 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總平均關稅率은 종래의 31.3%에서 29.5%로 낮아졌다.

다) 1978年 12月 關稅率 調整

1978 關稅率 調整의 基本方向은, ① 輸入自由化에 부응하기 위해 관세율의 수입규제적 요인을 最少化하고 ②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며 過當保護部分의 산업합리화를 추진하며 ③ 産業間의 관세상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모든 輸入物品에 대한 최소한의 관세부담원칙을 확립하며 ④ 物價安定을 위한 생필품의 관세율인하 및 정부중점시책을 지원하고 ⑤ 分類上 新CCCN을 도입하는 것 등으로 集約된다.

이에 따른 關稅率 調整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關稅率體系를 改編하여 종래의 豫示稅率制를 폐지하고 기본관세율과 잠정관세율만을 存置시키되 후자도 759개에서 62개로 축소함으로써 전자의 實質的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둘째, 稅率段階도 조정하여 종래의 11단계에서 選擇稅를 폐지하고 5%, 15%, 25%, 50%의 從價稅를 追加 0-5-15-20-25-30-40-50-60-80-100-150-從量稅의 14단계로 확대했다. 30% 이하에서 5% 단위로 細分化한 것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생산물품이 多樣化·多段化되고 가격기능에 의한 무역조정기능의 강화추세를 감안하여 수입비중이 큰 저율세부분을 현실화한 것이다.

셋째, 品目分類에 있어 新CCCN을 도입, CCCN Heading을 1,079개에서 1,010개로 축소했고 類似品目的 稅目數도 2,519개에서 2,209개로 간소화했다.

넷째, 稅率變更을 보면 주요부문별 관세율은 原油·鑛物 등 기초원자재는 無稅, 鐵鋼·섬유·고무 등 중간재는 10~20%, 樹脂製品·일반

공업용최종재는 30~40%, 소비재는 60% 기타 사치성물품은 80~150%로 策定되었으나 자본재만은 이러한 諸 原則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國內生産이 곤란한 것은 10~15%, 國內生産이 일부 가능한 것은 20~30%, 특히 항공기·船舶·車輻 등은 無稅 혹은 5%의 아주 낮은 세율을 책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율구조별 稅目數는 고세율품목(80~150%) 및 중간세율품목(40~60%)이 전반적으로 減少됐고 종래의 획일적인 20% 균일세율품목은 물품의 성질, 가공도에 따라 25%-15%-10%-0%로 均衡分布되어 현실성을 반영토록 했다.

그리하여 1978년 關稅率調整에 따른 평균관세율은 종래 35.7%에서 24.9%로 대폭 인하됐는데(〈表 Ⅲ-35〉 참조) 이는 주로 형식적인 高關

〈表 Ⅲ-35〉 平均關稅率 推移(1970年代)

(單位: %)

	1973	1976	1978
1部	29.3	34	
2部	32.1	39	
3部	45.1	43.3	
4部	67.1	81.9	
5部	16.5	20.2	
6部	26.3	38.9	
7部	39.1		
8部	62.7		
9部	33.8		
10部	38.4	33.9	
11部	58.2	65.1	
12部	73.3	75.6	
13部	46.0	52.3	
14部	36.0	29.4	
15部	33.4	38.8	
16部	22.4	34.3	
17部	23.2	30.3	
18部	33.0	54.4	
19部	28.6	34.4	
20部	76.1	79.6	
21部	0.0	0.0	
計	31.3	35.7	24.9

稅品目を 크게 축소하고 금속, 자본재, 생필품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한 데 기인한다.

2) 輸入自由化에 대비한 관세상 보호장치 마련

국제적인 불공정거래로부터 國內産業을 보호하기 위한 措置로서 「부당영매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요건을 실제 발동할 수 있도록 補強하였는가 하면 현저히 저렴한 외국물품으로부터 國內産業을 保護하기 위해서 차액관세까지 신설하여 輸入自由化가 되어도 關稅率制度에 의하여 國內産業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3) 關稅減免에 의한 産業構造 高度化 支援

제3차 및 제4차 5개년계획 기간중 자본집약적인 산업구조를 構築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關稅面에서는 그 세부담을 경감시켜 산업설비투자를 支援하여 왔다. 이 당시 資本材의 관세율 수준은 투자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普遍的으로 20% 중심 세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의 대규모 기간 산업 및 중화학설비산업에 대하여서는 선별적인 關稅負擔을 완화시켜 줄 조치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設備投資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중요산업, 국민경제긴요물품 및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광범위한 減免稅惠澤을 부여하였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관세징수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관세감면지원을 하였고 1970년대 중반에는 종래의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감면지원방법으로부터 보다 선별적 지원체제를 確立하기 위하여 업종별·품목별 경감률을 따로 財務部長官이 정하도록 하여 종래의 전액면세제도로부터 부분경감제도로 轉換하였고 아울러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減免稅가 關稅還給制로 전환되고 국민경제긴요물품면세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세징수액의 20%~30% 수준으로 관세감면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表 Ⅲ-36〉 참조).

〈表 Ⅲ-36〉 關稅徵收 및 減免實績(1970年代)

(單位: 億圓,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徵收額(A)	522	591	824	1,276	1,810	2,755	3,859	6,464	7,323	7,660
總減免額(B)	1,430	1,855	2,469	2,078	1,296	719	1,059	1,733	2,128	1,863
産業減免額(C) ¹⁾	1,194	1,631	2,245	1,867	1,010	335	559	1,255	1,614	1,174
B/A	274	314	300	164	72	26	27	27	29	24
C/A	229	278	272	147	56	12	15	19	22	15

註: 1) 1976년까지는 중요산업시설재, 제조용원료품, 국민경제긴요물품 및 수출용원자재를, 1976년 이후에는 중요산업시설재, 제조용원료품, 자원개발산업에 대한 감면을 의미함.

資料: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72 및 1982.

가) 全面的이고 包括的인 關稅減免에서 限定的이고 選別的인 關稅減免으로 轉換

① 重要産業에 대한 관세감면은 행정부 위임에서 입법조치사항으로 격상하였고 중요산업감면대상은 機械工業 등 14개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同 대상업종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관세감률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1980년에는 모두 없앤다는 것이다(제20차 관세법개정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97호).

② 제조원료품 감면세는 선박·항공기·배합사료에 국한하고 特定用度減免稅에서는 감면대상에서 종래의 국민경제상 緊要物品을 폐지하였다(제20차 관세법개정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97호).

③ 종래의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減免支援方法으로부터 보다 선별적 지원체제를 確立하기 위하여 업종별·물품별 경감률을 따로 財務部長官이 정하도록 하여 종래의 전액면제제도로부터 부분경감제도로 轉換하였다(제21차 관세법개정 1975년 12월 12일 법률 제2793호).

나) 徵收猶豫制度를 廢止하여 分割納付制度로 一元化

① 重要産業用機械 및 基礎設備品 中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

한정수유예제를 폐지하여 분할납부제로 일원화하였다(제18차 관세법개정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2423호).

② 관세분할납부제도를 擴大하여 중요산업의 業種에서 소요되는 기계 및 기초설비품에 대하여는 그 투자규모의 대형화에 따르는 資本의 회입 기간 장기화를 고려하여 분납기간을 종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제21차 관세법개정, 1975년 12월 12일 법률 제2793호).

나. 關稅上 輸出支援의 持續

1) 輸出用原資材에 대한 關稅還給制 施行

關稅還給制度는 1974년 12월 12일 법률 제2675호로 공포된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 還給에 관한 特例法」을 근거로 하여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輸出用原資材를 수입할 때 일단 關稅를 납부하고 그 原資材로 제조·가공된 제품이 수출되면 당초에 납부된 관세를 환급토록 하는 제도이다. 종래에는 輸出用原資材에 대하여 關稅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내 對應輸出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免稅를 하고 만약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면 免稅된 關稅를 추징하였다. 또한 同 關稅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관세를 납부한 물품으로 輸出을 하고, 그 原資材와 동종·동질·동량의 원자재를 새로이 免稅하는, 이른바 代置免稅制度를 시행하였으며, 한편 이미 關稅를 납부한 물품으로 수출하게 되면 還給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종래에는 輸出用原資材에 대하여 條件附事前免稅制度, 代置免稅制度, 還給制度가 있어 輸出業者가 임의로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75년 7월 1일 關稅還給特例法이 시행되면서 종래의 事前免稅制度和 代置免稅制度 및 還給制度는 사실상 모두 폐지되고, 새로운 關稅還給制度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輸出支援을 받도록 되었다.

2) 徵收猶豫制 導入

징수유예제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輸出用原材料의 수입시에 부과되는 關稅 등의 徵收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징수유예기간 만료일을 납기로 하여 납세고지함과 동시에 수입통관을 허용하였다.

이 制度는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면세제도에서 환급제도로 轉換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에서 일시에 부과되는 자금부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1975~197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導入된 제도이다.

그러나 同 制度가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에 부과되는 關稅 등의 부담을 없애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출업체에서는 계속 同 制度의 연장시행을 주장하여 1988년 9월 30일까지 시행하게 되었다.

3) 保稅工場의 特許要件 強化

保稅工場制의 적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還給制의 적용범위가 좁아지므로 還給制의 시행효과가 그만큼 상쇄될 것이다. 그리하여 關稅還給制 시행과 더불어 보세공장의 특허요건·기준·대상을 종전보다 強化하였다.

4) 特別保稅工場制度 新設

保稅工場에서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稅關의 실물관리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다만 原材料의 손모음이 안정되어 있고, 보세물품관리상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關稅廳이 정하는 외국물품인 원재료 제품만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保稅工場을 특별 보세공장이라 하여 물품반출입절차 등의 특권을 賦與하였다.

5) 代置免稅制度의 廢止(1972년 12월 30일)

1961년 7월 29일 제8차 關稅法에서 도입된 代置免稅制度는 1972년 12월 30일 제18차 관세법개정시 폐지되었다.

6) 裡里輸出自由地域 指定(1973年 10月 8日)과 稅關支援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80호로 제정·공포된 輸出自由地域設置法에 의거하여 이리를 제2의 수출자유지역으로 指定하였는바, 이리는 주로 귀금속류의 가공단지로 造成되었고 群山稅關 산하로 이리출장소를 新設하여 수출입을 지원토록 하였다.

7) 輸出物品製造用機械에 대한 關稅分割納付 對象의 擴大

1974년 1월 14일 緊急措置에 의하여 減價대상 업종을 대폭적으로 縮小하였으나 政府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수출물품제조용기계에 대한 관세분할납부대상을 擴大(기계의 구체적인 품목은 재무부고시로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하였다.

다. 物資需給의 圓滑化를 통한 國內物價 水準의 安定

1) 物資需給의 圓滑化를 통한 國內物價 水準의 安定 등을 위한 彈力關稅 制度 施行

1967년 제15차 관세법 개정시에 제한적 관세수권제도를 비롯한 彈力關稅制度를 입법화한 이후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 하여 신중을 기한 나머지 그 시행이 금기시되어 오다 1973년 10월 오일쇼크 이후의 국제 자원과동을 계기로 1974년 1월 4일을 기하여 대통령령에 의한 行政稅率로 첫 시행된 彈力關稅는 원유·소맥·원면·원목·유지 등 국내생산이 없는 천연산품 또는 공업용원료 등 26개 품목에 대한 關稅引下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였으며 物資需給의 圓滑化와 물가안정에 목적을 두고 발동되었다. 그 후 국내물가의 안정과 산업을 支援하기 위하여 수차례 걸쳐 발동되었고 1974년 12월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彈力關稅 措置까지 5차에 걸쳐 추가로 조치된 바 있고 1975년에도 1975년 7월 1일 關稅還給制의 실시와 함께 4차에 걸쳐 무려 643개 품목에 대해, 1976년부터 1980년도까지 매년 50~70여개 품목에 대한 彈力關稅가 발동(〈表 Ⅲ

-37> 참조)되었는데 그 후부터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정세에 효율적으로 對處해 오고 있다.

〈表 Ⅲ-37〉 彈力關稅措置¹⁾(1970年代)

(單位: 個)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상	하	상	하	상	하
156	643	57	70	52	9	72	20	69	66

註: 1) 제한적 관세수권제도(1977년까지)와 할당관세(1978년 이후)에 의한 조치.

2) 制度的인 物價調節制度 마련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物價의 안정화제도로는 「활척관세제도」, 「계절관세제도」, 「할당관세제도」를 新設 또는 補完함으로써 물자수급의 원활화와 國內物價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자동조절제도를 마련하였다.

라. 國際收支 惡化에 對備하기 위한 關稅上 措置

1) 資源波動과 1974년 1월 14일 大統領 緊急措置 第3號에 의한 不要不急品の 關稅率 引上

1973년 말 石油波動으로 國際原資材價格이 앙등하였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原資材를 비롯하여 많은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輸入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여기에 價格마저 상승하자 外換需要는 급증하였다. 國際收支의 방어를 위하여 輸入을 가능한 한 억제하여야 하였으므로 우선 不要不急한 사치성물품부터 수입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들 품목에 대하여 關稅率을 〈表 Ⅲ-38〉과 같이 인상하였다.

〈表 Ⅲ-38〉 緊急措置 第3號 第8條 關稅率의 特例(1974年 1月 14日)

關稅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別표 稅率表 중 다음 物品에 대하여는 그 稅率을 다음과 같이 한다.

	품 명	세 율
0509	1. 鹿茸(粉과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120% 그러나 1kg당 8만원 이상
	2. 鹿角(粉과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120% 그러나 1kg당 8만원 이상
	가. 유모角 등 鹿茸과 유사한 것	8만원 이상
	나. 기타	60%
2203	麥 酒	250%
2204	葡萄汁	250%
2205	葡萄酒	250%
2206	베르뭇 술과 기타 이와 유사한 葡萄酒	250%
2207	사과술, 배술, 미드 기타 이와 유사한 釀酒	250%
2209	에틸알코올, 리큐르 기타의 알코올 飲料 및 飲料調製用의 調製品(농축액스)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것	250%
8702	1. 乘用自動車(이 호의 2의 것을 제외한다)	
	가. 소형 승용자동차	250%
	나. 기타의 승용자동차	250%
	다. 기 타	250%
8704	원동기를 갖춘 새시(제8701호, 제8702호 또는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1. 제8702호 1의 자동차용의 것	
	가. 小型乘用自動車の 것	250%
	나. 기 타	250%
9101	懷中시계, 팔목시계 기타의 携帶時計(스톱워치를 포함한다)	
	2. 기타의 휴대용 시계	
	가. 1개의 課稅價格이 1만원 미만의 것	50% 그러나 개당 3 천원 이상
	나. 1개의 課稅價格이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의 것	60% 그러나 개당 6 천원 이상
	다. 1개의 과세가격이 2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의 것	80% 그러나 개당 1 만 6천원 이상
	라. 기 타	100% 그러나 개당 4 만원 이상

2) 特關稅法에 대한 非難과 同 法의 廢止

特關稅의 목적은 초과이윤을 國庫에 흡수함으로써, 輸入需要를 억제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많은 부조리가 드러났다. ① 特關稅는 市場價格機構에 대한 간섭이 심하여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방해하였다. 特關稅를 부과하기 위한 國內都賣價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을 인상토록 강요하게 되었다. ② 特關稅를 부과하기 위한 國內都賣價格의 조사과정에서 많은 부조리가 있었으며, 따라서 공평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③ 特關稅는 輸入物品을 기왕 수입하여 놓고 부과되기 때문에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特關稅額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장차의 이윤을 예측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거래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④ 特關稅는 기본세율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하였다. 간혹 기본세율에 의한 관세액보다 더 많은 特關稅가 부과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特關稅法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폐지하기에 이르렀고(法律 제2569호 1973년 3월 3일), 이에 대신하여 待期法令으로 臨時輸入附加稅法을 제정하게 되었다.

3) 待期法令으로서 臨時輸入附加稅法의 制定

1973년 2월 23일 새로 마련된 輸入附加稅制度는 臨時特別關稅法의 廢止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제정되었다. 特關稅는 1964년 6월 單一變動換率制의 실시에 따른 보완조치로 마련되었으나 特關稅는 그 賦課過程에서의 모순 내지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으며 더욱이나 物價의 下向調整 구실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輸入物品의 價格에 한몫을 차지함으로써 物價의 上向調整을 조장하는 경향을 나타낼 가능성마저 있게 되어 特關稅法 폐지 자체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특관세법을 폐지하게 됨에 이르러서는 특관세 부과와 당초 目的과 국내 가격의 상승을 통한 輸入需要抑制效果를 무시할 수 없

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적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輸出의 증대와 아울러 輸入需要를 억제해야만 되었다. 여기서 特關稅法이 폐지됨으로써 수입수요의急增에 제동적 역할을 맡게 될 어떤 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수입부가세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마. 輸出入物量 增加에 對備한 通關體制의 改善

1) 關稅組織을 政策機能과 執行機能으로 分離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과 수출진흥정책의 성공으로 우리나라의 貿易規模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擴大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貿易業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1970년 8월 21일에 關稅廳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의 부과 징수, 밀수단속, 일선세관의 총괄 등 관세집행업무는 관세청이 맡게 되고, 관세법령, 관세율, 국제관세협력 등의 政策業務는 재무부 관세국이 맡아 관세정책과 행정의 양대기능을 效率的으로 분산시켰다.

財務部の 관세담당조직은 세정차관보 산하에 관세국을 두고 관세국에는 관세제도과, 관세조정과와 관세협력담당관을 두었고 關稅廳에는 세무국 및 감시국 등 2국 7과 5담당관에서 출발하여 1980년에는 통관관리국, 지도국, 관세조사국 등 3국 12과 4담당관으로 擴大·改編되었다.

한편 세관관서의 조직도 1970년 8월 21일에 서울, 인천, 부산, 김포, 마산, 여수, 목포, 군산, 제주, 목호, 울산, 대구, 구로, 수영 등 14개 세관 9출장소 2감시서에서 1980년에는 서울, 구로, 대전, 수원, 동해, 부산, 김해, 제주, 대구, 마산, 울산, 장승포, 광주, 여수, 목포, 군산, 군산, 인천, 부평, 김포 등 19개 세관 18개 출장소, 15개 감시서로 關稅廳組織과 마찬가지로 擴大·改編되었다.

아울러 1977년 6월 3일 대통령령 제8590호로 관세공무원교육원의 직제가 공포되었고 1980년 6월 14일 관세중앙분석소도 新設되었다.

2) 關稅關聯法令 및 通關制度의 整備

가) 各種 法令의 整備 · 擴充

① 특정의래품판매금지법과 한·미 행정협정실시에 따른 關稅法 등의 臨時 特例에 관한 법률개정

② 임시특별관세법 廢止

③ 임시수입부가세법 제정 : 이 법은 待期法令으로서 환율에 대한 보완조치로 마련된 法인데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課稅價格의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일률적으로 임시수입부가세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附加價値稅法 實施에 따른 임시조치법 제정

나) 賦課 및 徵收制度 改善

① 화주신고납부제도의 導入 : 納稅에 있어서 화주의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物品에 대해서는 통관후 사후평가,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체 사후조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② 지정세관등록업체제도의 導入 : 기업체별로 관할세관에 登錄하게 하여 통관시에는 검사생략, 통관절차의 생략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에 사후에 관할세관이 당해업체에 대하여 관련서류는 물론 장부에 이르기까지 챙겨 보게 하여 通關의 신속화와 아울러 성실·정직한 신고풍토의 造成과 調和를 이루게 하였다.

③ 관세검사제도의 彈力化 : 關稅法 제정 이래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없다고 하지 않는 이상 모든 물품이 검사대상이었으나 제8차 關稅法 개정으로 관세공무원이 檢査하고 싶은 물품만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關稅檢査制度를 단력화하였다.

④ 가산세제도의 新設(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28호)

⑤ 합의세율적용기준 新設 : 일괄하여 輸入 신고된 物品으로서 상이하고 그 물품별로 과세가격이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 화주의 신청에 의거하여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關稅審判制度

종래의 이의신청 - 소원 - 행정소송의 節次를 개정하여 이의신청과 소원의 제기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원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국세심판소에 審判請求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保稅制度

특허보세구역에 보세판매장을 追加시켰고, 타소 장치물품에 대한 수수료 징구, 물품장치기간의 연장, 특별보세공장 운영확대 등 保稅制度를 개선하였다.

마) 關稅土制度

관세사의 업무내용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고, 관세사의 특수법인제를 新設하였으며, 관세사의 義務規程을 新設하였다.

바. 能動的인 關稅協力 活動의 展開

1) GATT를 통한 關稅協力活動

가) GATT/開途國間貿易協商(TNDC)의 타결과 國內法에의 수용

1967년 10월 設置된 개도국간 무역협상위원회는 1967년 11월 제1차 회의 이후 10여 차례의 협상을 전개한 후 1971년 11월 제27차 GATT 총회의 承認을 얻어 1973년 2월 11일 協定이 발효되었다. 당초 同 協定의 발효를 위해 國內法에 수용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유고, 터키,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등 8개국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회원국의 추가 가입으로 현재는 회원국이 16개국(1980년 그리스 탈퇴)에 이르고 있다.

나) GATT/MTN 多者間貿易協商參與(Tokyo Round)

1967년에 Kennedy Round가 타결된 후 국제자유무역환경은 美國의 국제수지 악화, 日本의 경제부흥, EU의 블록 強化 등으로 서서히 잠식되어 가자 이를 타개하고 새로운 자유무역환경을 定立하고자 1973년 9월 GATT 동경 각료회의에서 이른바 「Tokyo Declaration」을 採擇

한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978년 7월 서방 7개국의 Bonn 정상 회담을 계기로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는 1979년 4월에 관세의정서, 보조금·상계관세협정, 관세평가협정, 반덤핑관세협정, 무역기술협정 등 12개 Code가 수록된 합의의사록을 採擇하였고 이어 1979년 11월 28일 제35차 GATT 총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총 143개(인하 : 38개, 거처 : 98개, 인상 한계점제시 : 7개 품목)를 양허하였고 1980년 6월 10일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의 加入을 필두로 하여 1980년 9월 3일 貿易技術協定(일명 : 상품표준협정)에 가입하였다.

2) CCC를 통한 關稅協力活動

1968년 CCC 加入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關稅行政의 국제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CCC 品目分類의 도입과 평가체제의 합리화 이외에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CCC에서 物品의 유통을 촉진할 目的으로 표준적인 통관제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① 직업용구의 일시 수입에 관한 協約 ② 物品의 일시 수입을 위한 ATA Carnet制度 등 각종 기술협약과 ①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권고 ② 關稅犯에 관한 정보집적에 관한 권고 ③ 관세율표의 형식 및 배열에 관한 권고 등 각종 권고에 加入하여 國內法에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걸쳐 CCC와 우리나라와의 관세협력활동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으로 1977년 3월 CCC 제38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인삼제품의 품목분류를 재조정할 것을 정식 상정, 표결에 의거하여 관철한 바 있다.

3) ESCAP을 통한 關稅協力活動

1960년대에 들어와 일기 시작한 개도국들의 자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고무되어 ESCAP(1974년 3월 종래의 ECAFE를 개칭)을 중심으로 檢討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 12월 16일 Kabul선언을 시발점으로 하여 방콕에서 貿易擴大計劃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4차의 예비협상 끝에 1975년 7월 31일 방콕 제5차 무역협상단회의에서 우

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7개국이 가맹하여 ESCAP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정(방콕협정)이 1976년 6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태국과 필리핀은 1996년 10월 현재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 이 방콕협정의 부속서에는 국별양허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양허 12개 품목, 라오스와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별양허 6개 품목 등 모두 18개 품목을 양허하였다.

4) UNCTAD를 통한 關稅協力活動

1964년초 Prebisch 박사의 ‘원조보다는 무역’이라는 이른바 ‘개발을 위한 신무역정책’을 效率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창안된 GSP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공산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1971년부터 시행되었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GSP의 수혜를 가장 적절히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77년 6월 개최된 UNCTAD 회의에서 ① 모든 77그룹국가를 특혜수혜국으로 포함시킬 것 ② GSP制度는 국제무역제도의 영속적인 요소로 존속시킬 것 등을 촉구하였다.

5) 關稅法上 國際關稅協力の 章 新設

1978년 12월 관세법 개정시 ① 政府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關稅에 관한 協商을 할 수 있으며 ② 제①항의 協商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範圍안에서 관세의 양허를 할 수 있다는 國際關稅協力の 章을 신설함으로써 국제관세협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 관세법의 國際化에 큰 계기가 되었다.

사. 密輸의 防止

밀수상여금제도를 보상제로 개정하였다(제20차 관세법 개정,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97호).

3. 關稅政策 變化의 效果分析

가. 重化學工業 育成政策

1) 肯定的 效果

輸入規制의 강화에 따라 산업부가가치 보호효과는 1970년대에 크게 強化되어 1978년 현재 실효보호율은 농림수산업의 경우 57%, 제조업의 경우 32%에 달하였다(〈表 Ⅲ-39〉 참조). 특히 1978년 현재 關稅 및 輸入制限으로 인한 제조업 실효보호 효과는 重化學部門에 치중되었으며 중화학부문에 대한 실효보호율은 71%, 경공업에 대한 실효보호율은 -2%의 수준에 머물렀다(〈表 Ⅲ-40〉 참조).

〈表 Ⅲ-39〉 韓國產業의 實效保護率 推移

(單位 : %)

	1968	1978	1982
農 林 水 產 業	19	57.1	74.3
鑛 業	4	-1.5	-1.7
製 造 業	-1	31.7	28.2
全 產 業	11	43.1	48.9

註 : 本 報告書에서 인용되는 1968년 실효보호율은 金光錫 · L. Westphal의 推定值이고 1978년과 1982년의 실효보호율은 한국개발연구원의 暫定值임.

資料 : 金光錫 · L. Westphal, 『한국의 외환 · 무역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76.

〈表 Ⅲ-40〉 製造業部門別 實效保護率 現況(1978年)

(單位 : 10億원, %)

	國內價格基準 附加價值	國際價格基準 附加價值	實效保護額	實效保護率
輕 工 業	1,286.6	1,316.7	-30.1	-2.3
重 化 學 工 業	1,937.7	1,131.8	805.9	71.2
製 造 業	3,224.3	2,448.5	775.8	31.7

資料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보호정책의 개편방안』, 1982. 12, p. 49.

重工業의 업종별 구성은 1978년 기준으로 전기기기가 총생산액의 28.0%를 차지하였고, 운수장비가 24.2%, 철강이 13.4%, 일반기계, 비철금속 및 금속부문이 각각 10%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表 Ⅲ-41〉 참조).

〈表 Ⅲ-41〉 重工業의 業種別 生産 및 附加價値

(單位: 百萬元, %)

	總 生 産 額		年 平 均 成 長 率 (1973~1978)	附 加 價 値		年 平 均 成 長 率 (1973~1978)
	1972	1978		1972	1978	
第1次 金屬	137,344	1,648,173	52.0	35,138	543,576	58.0
鐵 鋼	116,618	910,782 (13.4)	40.9	29,858	300,262 (11.9)	46.9
非鐵金屬	20,726	737,391 (10.9)	81.0	5,280	243,314 (9.6)	89.0
金屬機械裝置	287,918	5,119,946	61.0	115,022	1,985,021	61.0
金 屬	44,745	674,947 (10.0)	57.0	17,358	297,940 (11.8)	61.0
一般機械	32,917	710,257 (10.5)	67.0	13,637	319,205 (12.0)	69.0
運輸裝備	85,093	1,635,789 (24.2)	64.0	34,618	557,379 (22.0)	59.0
精密機械	9,675	201,217 (3.0)	66.0	4,331	84,813 (3.4)	64.0
電氣機械	115,488	1,897,736 (28.0)	59.0	45,078	725,684 (28.7)	59.0
重工業計	425,262	6,768,119 (100.0)	59.0	150,160	2,528,597 (100.0)	60.0
製造業計	2,241,608	21,159,446	45.4	899,407	8,192,442	44.5

註: () 안은 構成比.

資料: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1972 및 1978.

한편 1980년도 중공업제품 수출액은, 총수출액 175억달러의 34%, 공산품 수출의 37%에 해당하는 60억달러에 달하였다. 공산품 중 중공업수출이 차지하는 比重은 1972년 대비 16% 포인트 增加하였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5% 포인트가 늘어났다(〈表 Ⅲ-42〉 참조).

〈表 Ⅲ-42〉 輸出의 重工業化率 推移

(單位: 百萬달러, %)

	1972	1978	1979	1980
總 輸 出 (A)	1,624	12,711	15,055	17,505
工 產 品 (B)	1,427	11,420	13,570	16,151
輕 工 業 (C)	301	3,824	4,818	6,014
C/A	18.5	30.0	32.0	34.4
C/B	21.1	33.5	35.5	37.2

資料: 商工部 統計(通關 基準)

아래 〈表 Ⅲ-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重工業 제품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增加한 것은 重工業의 輸出産業化 전략이 어느 정도 主要한 結果라고 하겠으나 總賣出額에 대한 輸出額의 비율, 즉 수출률을 보면 重工業은 해외보다 국내 시장에 더욱 의존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1979년 1/4분기 기준 업종별 수출률은 철강 24%, 비철금속 20%, 조립금속 36%, 기계 17%, 전기기구 59%, 운수장비 7% 등으로 전기기구가 전자 제품의 輸出增加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이외에 여타 部門은 국

〈表 Ⅲ-43〉 重工業의 業種別 平均輸出 比率

(單位: %)

	1978. 7~9	1978. 10~12	1979. 1~3
製 造 業	38	39	36
第 1 次 鐵 鋼	30	27	24
第 1 次 非 鐵 金 屬	14	31	20
組 立 金 屬 製 品	40	39	36
機 械	7	12	17
電 氣 機 器	50	55	59
運 輸 裝 備	8	11	7
精 密 機 器	63	61	28

註: 1. 輸出額은 총매출액에 대한 수출액의 비율.

내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해외수요의 급격한 증가 없이 투자 및 생산을 단기간내에 擴大시킬 경우 過剩投資 및 過剩生産을 초래하기 쉬운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業種別 중공업수출은, 국내외 경기의 浮沈에 따라 연도별로 그 順位와 비중이 변화하고 있으나 198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철강제품이 총수출의 31%를 차지하였으며, 전기전자기기가 18%, 선박 등 운수장비가 13%, 금속제품 14%의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는바, 수출이 선진국형으로 서서히 이행되어 가고 있다(〈表 III-44〉 참조).

〈表 III-44〉 重工業製品의 輸出構造 變化 推移

(單位: 百萬달러)

	1977	1978	1979	1980
重工業全體輸出	2,898 (100)	3,824 (100)	4,818 (100)	6,014 (100)
一般機械	145 (5.0)	375 (9.8)	596 (12.4)	606 (10.0)
電氣電子機器	925 (31.5)	776 (20.3)	1,026 (21.3)	1,100 (18.3)
運輸裝備	674 (23.2)	938 (24.5)	674 (13.9)	806 (13.4)
精密機器	146 (5.0)	152 (4.0)	223 (4.6)	312 (5.2)
鐵鋼	392 (13.5)	670 (17.5)	1,260 (26.1)	1,854 (30.8)
非鐵金屬	33 (1.2)	45 (1.2)	26 (1.3)	114 (1.9)
金屬製品	569 (19.6)	527 (13.8)	655 (13.8)	837 (13.9)
其他	14 (0.6)	341 (8.9)	322 (6.6)	385 (6.4)

資料: 商工部 統計(通關基準)

이상과 같이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 노력의 결과 1970年代에 우리나라 重工業은 飛躍的인 발전을 이룩하였는바, 製造業에서 重工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중공업화율은 1979년 기준 29.8%로서 1970년의 12.5%보다 17.3%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業種別로는 비철금속, 일반기계, 정밀기계, 전기기계 등이 연평균 60% 이상 80%(1972년~1978년)까지의 높은 伸張率을 나타내어, 중공업 전체는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表 Ⅲ-45〉 참조).

〈表 Ⅲ-45〉 韓國의 重工業化 推移(1970~1979年)

(單位 : %)

	工 業 化 率	重 工 業 化 率
1970	17.9	12.5
1971	19.6	12.1
1972	21.1	13.5
1973	23.7	17.1
1974	25.5	20.7
1975	26.9	20.4
1976	28.8	23.2
1977	29.8	24.8
1978	31.6	28.3
1979	32.7	29.8

註 : 1. 工業化率 = 製造業附加價值 / GNP

2. 重工業化率 = 重工業附加價值 / 製造業附加價值

資料 : 商工部

2) 否定的 效果

政府는 이처럼 1970年代에 產業構造의 고도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市場介入을 試圖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시장기능을 보완하기보다는 抑壓하였으며 대내지향적 중화학공업화에 그친 동시에 한국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全般的으로 弱화시키고 말았다고 평가된다.

가) 成長主導產業의 持續的 發展을 阻害

국제경쟁력 취약부문 전반에 걸친 投資促進과 이에 따른 경공업 투자 부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부진 그리고 인플레이적 경제운용으로 인한 勞

動單價의 급상승(〈表 Ⅲ-46〉 참조)은 韓國經濟의 성장을 주도하는 국제 경쟁력 보유산업의 지속적 發展을 저해하였다.

〈表 Ⅲ-46〉 달리基準 勞動單價指數¹⁾ 國際比較(1975=100)

	1976	1977	1978	1979	1976~1979 平均增加率(%)
韓 國	131.8	161.6	194.8	273.3	23.6
臺 灣	104.0	116.8	122.1	136.2	8.0
싱 가 포 르	89.3	88.9	102.1	100.1	0.0
日 本	104.6	123.2	166.3	155.7	11.7
美 國	101.8	106.5	115.7	123.6	5.4

註: 1) 製造業에 한하며 생산지수에 의하여 계산한 생산성을 기준으로 삼았음.
資料: 各國 統計資料

나) 重化學工業部門內的 潛在的 比較優位業種의 比較優位顯示마저 遲延

제조업내 전비교열위업종을 대상으로 한 重化學工業育成戰略은 업종별 지원효과의 박약화를 초래하였고 또한 산업육성 노력을 산만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중화학공업부문의 잠재적 비교우위업종의 비교우위 현시마저 지연시켰다(〈表 Ⅲ-47〉 참조).

① 철강, 전기기기 및 수송장비(船舶)의 비교우위는 1970年代 전반에 걸쳐서 크게 增進되었다.

② 조립금속 및 기타 전문기기는 1970年代 후반에 비교우위 약화경향을 보였다.

③ 석유화학, 제1차 비철금속 및 일반기계 부문에서만은 1970年代 전반에 걸쳐서 비교우위개발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 輸入規制에 無期限의으로 依存하는 重化學工業 構造 造成 直間接 수입규제에 의한 國產化政策은 중화학공업투자가들을 국제 경쟁으로부터 保護하여 준 결과 輸入規制의 無期限의 存續에 의존하는 중

〈表 Ⅲ-47〉 重化學工業部門別 交易收支基準 比較優位指數¹⁾

	1966	1970	1975	1979
産業用化學物	0.00	0.15	0.07	0.28
其他石油化學	0.03	0.11	0.12	0.10
石油精製	0.00	1.15	1.27	0.05
其他石油石炭	0.00	0.04	1.47	3.29
第1次鐵鋼	0.66	0.28	0.61	0.88
第1次非鐵金屬	0.72	0.54	0.11	0.12
組立金屬	0.69	0.35	1.30	1.21
機械	0.09	0.04	0.09	0.08
電氣機器	0.63	0.61	0.83	0.94
運輸裝備	0.13	0.13	0.27	0.76
其他專門機器	0.34	0.26	0.82	0.65

註: 1) 「(부문의 輸出/輸入)/(제조업 輸出/輸入)」은 일종의 顯示의 比較우위지수로서 교역수지기준 比較우위지수라 부르기로 함.

資料: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보호정책의 개편방안』, 1982. 12, p. 49.

화학공업 구조를 造成하였다.

라) 輸出誘因의 持續的 弱화

1973년 이후에는 輸出支援이 점차 弱化되었다(〈表 Ⅲ-48〉 참조).

- ① 輸出用原資材 減耗許容 점진적 축소(1973~)
- ② 輸出 및 其他 외화소득에 대한 직접감면 폐지(1973)
- ③ 輸出用 生産을 위한 原資材 輸入에 대한 關稅減免을 관세환급제도로 代置(1975)
- ④ 公共料金割引制 廢止(1975년 이후)

마) 輕工業投資의 不振

重化學工業 爲主의 투자추진으로 인하여 輕공업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등한시 되었던바 이에 따라 輕工業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발이 圓滑하지 못하게 되었다(〈表 Ⅲ-49〉 참조).

〈表 III-48〉美貨 1달러 輸出當 支援의 推移

(單位 : 원/달러, %)

	1970	1973	1974	1975	1978
公定換率	310.4	398.5	406.0	484.0	484.0
輸出補助額					
· 金利 支援	16.6	8.6	7.2	10.1	11.0
· 直接稅 減免	3.6	1.4	—	—	—
· 關稅 減免	42.6	65.4	55.8	33.8	30.0
· 間接稅 減免	28.5	21.3	22.8	33.3	42.7
總 補 助					
· 金額	91.3	96.7	85.8	77.2	83.7
· 輸出對比	27.4	24.2	21.2	16.0	17.3
純粹補助					
· 金額	20.2	10.0	7.2	10.1	11.0
· 輸出對比	6.5	2.5	1.8	2.1	2.3

資料 : 南宗鉉, *Trade, Industrial Policies and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Korea*, 1981.

〈表 III-49〉投資進陟度(1975年 不變價格 基準)

(單位 : 10億圓, %)

	4次 5個年計劃 期間目標(A)	1977~1979年 (B)	進 陟 度 (B/A)
重 化 學 工 業	2,893	2,806	97.0
輕 工 業	1,621	749	46.2
製 造 業	4,514	3,515	78.8

資料 : 經濟企劃院

바) 製造業內 實效保護構造의 不合理性

部門間 品目間 實效보호율 隔差가 심하여 품목수준에서는 實效보호율 이 -50% 이하부터 +300% 이상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마이너스 實效보호를 받는 부문은 전부문수의 40%에 달하고 있다(〈表 III-50〉 참조).

〈表 Ⅲ-50〉 I - 318個 部門에 대한 實效保護率¹⁾ 分布現況 (1982年)

(單位 : %, 個)

實效保護率	部門數	構成比	該 當 部 門
國際價格基準 附加價值 < 0 ²⁾	4	1.3	66. 製粉, 95. 麵子, 175. 磷酸質肥料, 157. 메탄올
300 以上	5	1.6	94. 其他酒類, 74. 精製鹽, 180. PVC, 200. 燃料 油, 202. 其他 石油製品
200~300	12	3.8	1. 米穀, 5. 豆類, 6. 雜穀, 17. 韓牛, 111. 毛織物, 159. 其他非還式中間體, 171. 암모니아, 201. 潤 滑油, 215. 시멘트, 238. 金·銀, 302. 버스, 303. 트럭 및 其他自動車
100~200	12	3.8	3. 乳, 20. 養蜂, 57. 고기加工製品, 112. 麻織物, 124. 傘, 160. 無水프탈酸, 174. 窒素質肥料, 229. 冷延鋼板, 270. 機械一般部分品, 280. 電池, 284. 錄音器, 301. 乘用車
50~100	32	10.1	
20~ 50	56	17.6	
10~ 20	33	10.4	
0~ 10	33	10.4	
-5~ 0	49	15.4	
-50~ 5	75	23.6	
-59 未滿	7	2.2	50. 양송이통조림, 73. 간장 및 된장, 81. 澱粉, 82. 豆腐, 86. 配合飼料, 117. 其他化學纖維製品, 199. 揮發油

註 : 1) Corden 方式基準

2) 國際價格基準 附加價值가 마이너스인 것은 원칙적으로 해외시장가격으로 원재
료를 購入하고 제품을 판매하면 원재료비용도 回收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생산이 매우 비효율적임을 나타냄. 이 境遇의 실효보호는 국제가격기
준 부가가치가 플러스인 어느 경우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음.

資料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보호정책의 개편방향』, 1982. 12, p. 84.

① 마이너스保護 및 고율의 플러스保護는 정부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② 中間帶의 실효보호율의 분포도 산업정책적 構想에 의한 구조를 갖
추었다기보다는 정책의지와 無關한 歷史的 結果라고 보인다.

사) 保護政策으로 인한 消費者負擔 加重(1978年)

特定産業保護에 대한 비용은 國內消費者(購買者)에게 가격상승의 형태로 轉嫁된다. 保護政策으로 인한 이러한 소비자 부담은 일반적으로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1978년 현재 직접적 소비자부담 保護政策 비용은 국민소득의 13%에 달하였다(〈表 Ⅲ-51〉 참조).

〈表 Ⅲ-51〉 保護政策으로 인한 消費者負擔(1978年)

(單位: 10億원, %)

	附 加 價 值		消費者負擔 (A-B)	對國民所得 比率
	國內價格基準(A)	國際價格基準(B)		
農林水產業	4,607.5	2,932.6	1,674.9	9.0
鑛業	288.7	293.0	-4.3	-0.0
製造業	3,224.3	2,448.5	775.8	4.2
全產業	8,120.4	5,674.1	2,446.4	13.1

資料: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보호정책의 개편방향』, 1982. 12, p. 92.

아) 産業支援用 關稅減免의 不合理性

몇몇 特定産業을 위한 關稅減免으로 內需用輸入에 대한 實績關稅率이 1980년 기준으로 1.2% 포인트 정도 인하되고 있다. 一部 産業을 위한 關稅減免措置는 餘他の 산업 및 소비자의 재정관세 부담을 늘려 주어 産業誘因構造를 歪曲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衡平을 阻害하였다.

나. 關稅還給制度的 施行效果

1) 肯定的 效果

가) 原資材 輸入代替促進

輸出用 원자재에 대한 事前免稅制度를 환급제도로 전환하게 된 주요 배경은 關稅機能의 회복으로 원자재수입 대체를 촉진시켜 산업구조의

深化로 원자재 국산화를 촉진하고, 國際收支의 逆調現狀을 개선하려는 데 있었다.

事前免稅制度下에서는 관세가 갖는 국내산업보호 및 개발기능이 전적으로 상실되어 단순한 관세부담 면제라는 지원역할만을 하였기 때문에 物量爲主의 수출규모 확대에 그치고 수출의 質的인 內實化를 기하지 못하였다. 국내 부가가치의 제고로 國際收支를 개선하고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원자재 생산이 迂廻化, 多邊化 및 深化가 되도록 정책유도를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유도책은 관세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輸出用 원자재에 대하여 輸入時에 일단 관세 등을 징수하고 이를 사용하여 製造, 加工한 제품을 수출 용도에 供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還付하면, 원자재 수입시부터 輸出할 때까지 관세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부담을 廻避하기 위해서도 국산원자재를 開發하게 되고 부득이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도 관세부담이 적은 低稅率의 기초원자재를 수입하고 관세부담이 큰 고가공 원자재의 수입을 忌避하게 된다. 한편, 外貨稼得率 提高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관세환급제도로 말미암아 원자재의 수입이 純化되면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 국내에서의 工程이 늘게 되어 생산이 迂廻化, 多邊化, 深化되어 外화가득률이 크게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關稅機能에 의한 원자재 수입대체는 徵收猶豫制度로 말미암아 크게 制約되었다. 징수유예제도는 사전면세제도에서 환급제도로 轉換함에 따라 받게 되는 일시적인 急激한 관세부담을 緩和하기 위하여 1978년 6월 30일까지 年次的으로 유예기간을 축소하되, 그 이후부터는 전면 폐지하려는 暫定的 조치였으나,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5차에 걸쳐 연장시행됨으로써 關稅還給에 의한 수입대체기능은 그만큼 寄與를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關稅還給에 의한 원자재 수입대체수단은 國產化가 가능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國產化比率」에 해당되는 납부세액을 환급금에서 控除하는 제도이다. 「國產化比率」이란 원자재의 총수요량에서 국산공급가능량과 수입량의 구성비

울을 말하느바, 정액환급률표 작성시 國産化 比率 해당 납부세액을 還給 金에서 공제하여 책정함으로써 수입원자재를 많이 사용한 수출업체는 실제납부한 세액보다 적게 還給받고, 반대로 국산원자재를 많이 사용한 업체는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이 還給받게 되어 全體的으로는 納付稅額을 전부 還付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국산원자재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산가능 원자재에 대한 還給制限도 수출업계의 자금사정과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徵收猶豫制度의 存續, 國産化 比率의 제한적 적용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제도는 원자재 輸入代替와 원자재 國産化 촉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表 III-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還給制度가 시행된 1975년부터 1977년까지는 원자재의 수입량이 국내에서 제조, 가공된 Local 공급량보다 많았으나, 1978년부터는 Local 공급 원자재의 사용비율이 수입보다 上廻하고, 점차 증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수출물품 제조, 가공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수입의존에서 國內購買 依存으로 전환하여 원자재 산업구조의 多邊化와 深化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화가득률이 제고되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한편 수출규모에 비하여 수출비중은 年次的으로 감소되어 환급대상은 점차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70년에서 1975년까지 6년간 輸出規模는 연평균 40.2%,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은 연평균 39.4% 증가하였으나, 還給制度 실시 翌年인 1976년부터 1981년까지의 수출규모는 연평균 29.6% 증가한 데 비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輸入은 연평균 19.3% 증가함으로써 關稅還給制度 실시 이후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은 純化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 輸出業界의 關稅負擔 輕減

輸出用 原資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내의 供給能力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품질저하, 內外價格差 때문이다. 1970년대

〈表 Ⅲ-52〉 輸入代替 및 外貨稼得率(1975~1981年)

(單位: 百萬달러, %)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輸	出	5,081	7,715	10,046	12,710	15,055	17,505	21,254
原 資 材	輸 入	2,174	3,204	3,681	4,324	5,096	5,762	6,247
	Local 供給	1,043	2,497	3,447	4,370	5,844	6,069	7,746
Local 供給 率		32	44	48	50	53	51	55
稼 得 額		2,907	4,511	6,365	8,386	9,959	11,743	15,007
稼 得 率		57	58	63	66	66	67	70

의 우리나라의 수출용 원자재의 연평균 稅率은 원재료의 평균 關稅率 21.1%보다 低率이지만 원자재의 평균 세율이 15%라는 것은 수출경쟁력의 측면에서 볼 때 높다고 할 수 있다(〈表 Ⅲ-53〉 참조). 原資材에 대한 關稅率이 높으면 그만큼 資金負擔을 초래하게 되고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關稅還給制度의 도입취지는 원자재 국내 제조업에 대한 높은 保護率을 제공함으로써 원자재 輸入代替를 촉진하는 데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전략이 수출주도형에 根幹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계에 대한 負의 保護率을 가급적 相殺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을 거의 환부하였으며, 1978년 6월말까지 시행하려던 관세징수유예제도를 5차 延長하여 1983년 6월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하여 원자재 수입시부터 납부세액 환급시까지의 租稅에 대한 利子負擔을 경감시켜 수출에 대한 관세부담을 零으로 還元하였다. 즉 〈表 Ⅲ-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수입액의 16.8%에 해당되는 조세부담에 대한 이자부담은 불과 0.17%에 불과하였다.

다) 定額還給比率 提高

종래 事前免稅制度下에서는 면세원자재에 대한 對應輸出 履行與否를

〈表 III-53〉 平均關稅率 水準(1975~1980年)

(單位: %)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原資材 平均 稅率	26	24.6	24.7	23.1	21.1	21.1
輸出用原資材 平均 稅率	17.1	17.4	18	18	15.7	15.2

〈表 III-54〉 輸出業界의 資金負擔率(1975~1981年)

(單位: 百萬달리, 億圓, %)

	原資材輸入額 (A)	徵收猶豫額 (B)	徵收額 (C)	還給額 (D)	負擔率	
					平均稅率 (B/A)	實效稅率 (C-D/A)
1975(7~12)	1,174	975	265	356	17	-1.6
1976	3,204	2,713	2,822	2,580	17	1.6
1977	3,681	3,226	3,317	3,085	18	1.3
1978	4,324	3,770	3,662	3,558	18	0.5
1979	5,096	3,879	3,755	3,887	16	-0.8
1980	5,762	5,337	5,240	5,178	15	0.1
1981	6,247	7,762	7,158	7,088	17	0.1
合計	29,488	27,662	26,219	25,732	16.8	0.17

確證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하였는데, 사후관리는 수입자가 원재료를 수입할 때 關稅相當額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면세통관한 다음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대외수출이행 기간내에 수출을 履行한 후 輸入免狀, 輸出免狀, 所要量證明으로 수출이행보고를 하고 담보해제신청을 하면, 稅關에서는 輸入地稅關에서 송부된 사후관리카드와 대조확인하고 담보를 解除하는데 원재료의 종류규격별로 소요량과 수출물품을 일일이 連繫確證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였다.

그러나 還給制度下에서는 환급방법을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으로 구분하는데, 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단위당 납부 세액을 평균식 개념에 입각하여 算出한 일정금액을 수출면장에 의거 종량 還給하므로 그 절차가 극히 簡便하고, 개별환급은 事前免稅制度下에서의 사후관리절차와 동일하게 수출물품에 소요된 수입원자재에 대한 納付稅額을 일일이 산출하여 全額 還給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행정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행정절차 簡素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액환급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정액환급비율을 제고하고 정액환급이 곤란한 수출물품에 한하여 例外的으로 개별환급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還給制度의 근본취지에 符合되는 것이나 還給額을 定額化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어 일부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定額還給品目은 환급제도 시행당시인 1975년도에는 977개 품목이었으나, 1981년 말 현재는 3,937개 품목으로서 약 4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定額還給比率는 1976년 26%에서 1980년도에는 14%까지 점차 하락하다가 1981년도에 29%로 제고되었으나, 定額品目 확대에 비하여 정액환급률이 제고되지 못한 이유는 수출물품의 多樣化와 신규개발 상품의 수출증가, 원자재 국제가격의 激甚한 변동으로 인한 정액환급액과 실제납부세액과의 차이로 업계에서 기피하는 데 있었다([圖 III-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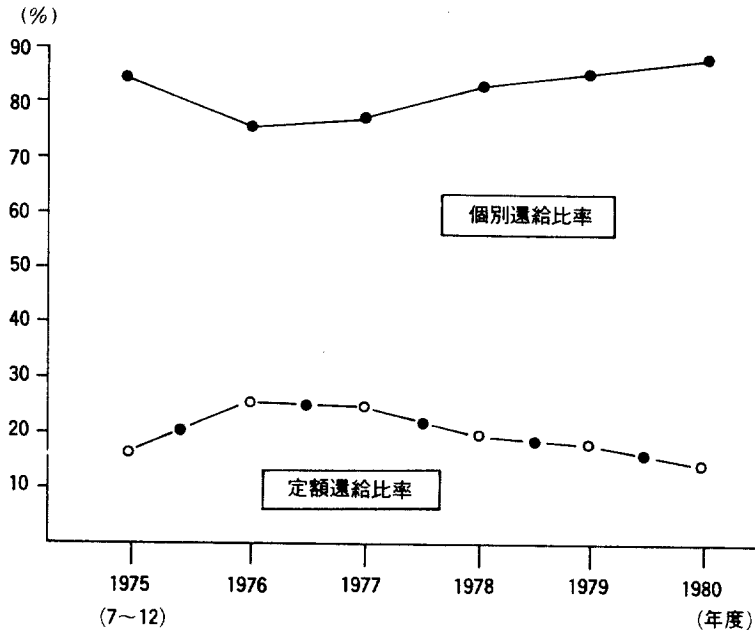
2) 否定的 效果

關稅還給制度는 수출원자재 수입대체 촉진으로 국제수지개선과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圖謀하는 동시에 행정절차 簡素化로 人力 및 費用負擔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還給制度의 구조적 불합리성과 제도가 추구하려는 이상인 정책목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 여건과의 乖離로 制度運用上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가) Local 輸出支援의 未洽

輸出用原資材 輸入代替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기능으로 Local 공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Local 공급물

[圖 III-2] 類型別 還給實績



(單位：億圓, %)

	1975 (7~12)		1976		1977		1978		1979		1980	
	金額	비율	金額	비율	金額	비율	金額	비율	金額	비율	金額	비율
定 額	100	16	1,083	26	1,118	25	804	19	784	17	838	14
個 別	514	84	3,132	74	3,312	75	3,358	81	3,818	83	5,153	86
合 計	614	100	4,215	100	4,430	100	4,162	100	4,603	100	5,991	100

품과 동종인 원자재의 수입은 억제하고 Local 공급물품제조용 기초원자재는 그 輸入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곧 국내수출업체의 생산원자재와 경쟁적인 원자재에 대해서는 徵收猶豫의 증지, 환금제한보호관세율의 책정 및 수입가격 심사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의 輸入을 억제해야 하는데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징수유예제도가 존속되었고 환금금제한도 일부 부자재에 한정 운용하였다(〈表 III-55〉 참조). 한편 국내수출물품 제조용 기초원자재에 대

해서는 장기징수유보, 세율인하 등 수입지원조치를 講究하여야 하는데도 별도의 조치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Local 수출 지원의 未洽으로 事前免稅制와 같이 원자재 수입선호를 유도하게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수유예기간내에 수출되는 單純加工 수출품목 또는 高加工 原資材는 관세환급금을 受領한 후에 세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기초원자재보다도 高加工 原資材의 수입을 더욱 유발시켜 中間材 國產化開發이 부진하였다(〈表 III-56〉 참조).

〈表 III-55〉 選給金支給制限 實績(1981年)

(單位: 個, 百萬元)

	全部制限	一部制限	計	備考
品目數	96	56	152	全體選給金の
制限金額	613	200	813	0.1%

〈表 III-56〉 徵收猶豫期間別 現況

(單位: 件, 백만달러, 백만원, %)

	件數	비율	輸入金額		徵收猶豫額	
			비율	비율		
中 止	19,732	10.3	556	10.8	295	0.06
1 月	708	0.4	5	0.2	997	0.14
2 月	77,005	40.2	1,664	32.5	266,446	38.2
3 月	57,293	29.9	1,794	35	296,936	42.5
4 月	36,852	19.2	1,103	21.5	133,635	19.1
합 계	191,590	100	5,122	100	698,309	100

나) 選給業務의 複雜性

關稅選給은 課稅輸入 原資材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용도에 供할 때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소요된 원자재, 즉 수출물품 구성원재료에 대한 關稅 등 納付稅額을 國庫稅入計定에서 환부하는 것인바 원

자재 종류의 尙大 및 規格의 다양성, 원자재거래관계의 복잡다양성, 환급금 산정변수의 유동성, 수출입 및 환급과정의 소요량연계 확인, 국고금지급에 따른 精密性과 정확성의 요구, 환급관련기관의 다양화 등으로 환급업무가 複雜化되었다.

(1) 原資材 種類의 多樣性

輸出物品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수입원자재는 그 종류가 多樣할 뿐 아니라 產地, 形式, 純度, 色相 등 규격에 따라 국제거래가격이 相異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을 還付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종류·규격별로 일일이 소요량을 算出하여 환급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1981年度 수출상품의 품목수가 약 2만여종이므로 이에 소요된 원자재의 규격별 종류는 약 50여만종으로 추정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82年度 關稅廳 수입물품 표준가격자료에 의하면 합성유기색소 409종, 계면활성제 59종, 수지 269종, 합성고무 70종, 원피 180종, 원목 80종, IC 120종, 단추 15종, 지퍼 70종이며 전자제품류는 수천 種類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과세수입원자재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 거래방법, 거래시기, 거래수량 등에 따라 價格과 稅額의 차이가 激甚하여 微視의 次元에서 규격별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데 따른 업무의 煩雜性은 불가피한 것이다. 환급업무의 간편화를 위해서는 환급대상인 원자재의 輸入依存度を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결단과 원자재의 품목 표준화 및 품목별 固定 價格制實施가 바람직하지만 납부세액 전액환부를 기대하는 현실여건에서는 어려운 문제였다.

2) 所要量 告示의 複雜多樣性

關稅還給金은 수출면장상의 수출물량에 소요량을 적용하여 수출용도에 供하여진 원자재의 소요물량을 산출하고 원자재별 소요물량에 해당되는 납부세액을 輸入免狀(또는 納稅證明)에 따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량 적용업무는 관세환급업무의 核心的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소요량은 工業振興廳 등 각 생산주관부서에서 특정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原資材의 종류 및 재질별 기준수량을 책정·고시하고 있는바

제조 공법, 상태, 재질 등 多樣한 규격에 상응한 소요량을 산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소요량 산출에 따른 업무가 상당히 煩雜하다. 스위터의 所, 要量告示의 경우 수출물품의 표시사항, 원자재의 표시사항, 기타 확인사항으로 나누어 수출입물품의 실제상태에 따라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策定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품목은 정액환급화가 곤란할 뿐 아니라 個別還給의 경우에도 업무의 複雜性이 隋伴된다.

(3) 原資材 去來關係의 多樣性

원자재 수입자와 수출물품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비교적 容易한 방법으로 還給額을 산정할 수 있으나 兩 당사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內國 信用狀, 購買承認書, 輸入免狀分割證明, 賣買契約書 등으로 거래관계를 입증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산원자재 讓渡時에는 기초수입원자재에 대한 납부세액을 가공단계별로 증명하여야 還給額 산출이 가능하다. 특히 Local 讓受渡 物품인 경우에는 수입면장과 소요량 증명서에 의거, 환급액산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세증명을 하여야 하며 高加工 국산 원자재에 대한 납세증명은 前 加工 국산원자재에 대한 납부세액 轉嫁狀況을 가공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多段階 Local 讓受渡 物품에 대한 납세증명 업무는 상당히 번잡하였다.

原資材에 대한 國內去來秩序가 일반적으로 定型化되지 않고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多樣하게 거래되는 원자재를 관계증빙서류에 의거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므로 국산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업무는 복잡성이 더욱 深化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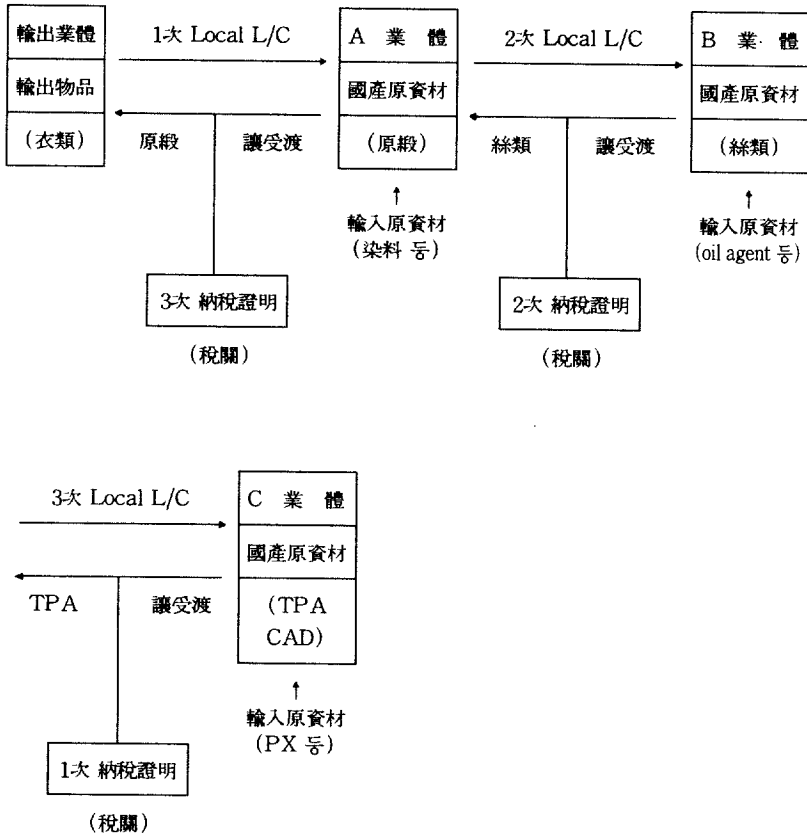
(4) 國庫金支給의 正確性에 따른 確認事項의 過多

關稅還給은 국고에 납입된 세액을 지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屬性上 정확성이 요구되며 소요량고시의 복잡성, 원자재종류의 다양성, 거래관계의 다양성 등으로 관계서류의 檢討 및 確認事項이 과다하여 환급처리가 복잡하였다.

還給處理時의 必須確認事項은 다음과 같다.

① 還給申請權者의 正當性 여부

[圖 III-3] 國產原資材 讓受渡節次



② 수출입면장 및 소요량증명상의 原資材 同一性 與否

③ 定額還給對象 與否

- 定額率表 적용시점 확인
- 中間定額 與否
- 納付稅額과 20% 차이 여부 등

④ 輸出入免狀 유효성 여부

- 有效期間
- 船積確認

- ⑤ 先輸入 後輸出 時差確認
- ⑥ 一括還給申請 與否
- ⑦ 還給申請機關 適正 與否
- ⑧ 去來關係證明 徵求 與否
- ⑨ 所要量證明書 外形要件確認
- ⑩ 輸入免狀 分割記錄書項의 確認
- ⑪ 副產物 發生 與否
- ⑫ 內需原資材 赤字輸出 與否
- ⑬ 個別還給 支給制限對象物品 與否
- ⑭ 還給申請權者의 滯納 與否
- ⑮ 還給額 算出 錯誤 與否
- ⑯ 還給申請權者의 委任狀 提出 與否

다) 定額還給 擴大의 限界性

定額還給은 수입물품에 소요된 수입원자재의 단위당 평균 납부세액을 關稅廳長이 정액환급률표에 揭記하여 고시하면 해당품목을 輸出할 때 수출품목 單位當 정액을 從量 또는 從價還給하는 것을 말한다.

定額還給은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바로 還給金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關稅廳長이 환급신청권자나 환급기관 모두 便利할 뿐 아니라 國產化 比率를 적용하여 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원자재 國產化促進으로 국제수지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어 정액환급 대상범위를 대폭 擴大하는 것이 關稅還給制度 정착화의 捷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액환급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限界性과 문제점이 있어 1981년 현재 정액환급 비율은 29%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定額還給額을 책정하는 기본요소는 수출물품별, 소요원자재별, 외화 가격, 세율(關稅率, 防衛稅率, 內國稅率), 소요량, 과세환율 및 국산화 비율이다.

$$\text{定額} = \frac{\text{外貨價格}}{(V_1 \sim n)} \times \frac{\text{稅 率}}{(T_1 \sim n)} \times \frac{\text{換 率}}{(E_1 \sim n)} \times \frac{\text{所要量}}{(N_1 \sim n)} \times \frac{\text{國產化 比率}}{(D_1 \sim n)}$$

(1) 外貨價格 調査上の 問題點

定額還給金を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수입원자재에 대한 규격별 국제가격을 빠짐 없이 調査해야 되는데 가격자료로서는 關稅廳에서 작성한 「輸入物品 標準價格資料」와 送品狀寫本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원자재에 대한 가격자료를 규격별로 완비하기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국제가격이 항상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4월간의 수입가격을 把握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기간의 외화가격을 조사파악한다 하여도 외화가격의 차이가 격심하여 어떤 가격을 적용 가격으로 선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원래 국제거래가격은 거래수량, 거래시기, 거래방법, 거래조건, 거래당사자간 關係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상가격을 捕捉하는 데는 극히 어려움이 많고 정상가격을 포착하여 還給金を 산정한다 하여도 수출업체마다 납부세액의 차이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메리야스를 수출할 경우 A 수출업체에서는 原線 상품규격인 Strict Middling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B 수출업체에서는 중품규격인 Middling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메리야스 단위당 납부세액이 A업체는 10만 1천원, B업체는 7만 2천원으로 그 차이가 격심하기 때문에 어떤 규격품과 외화가격으로 정액을 책정하느냐에 따라 過多·過少還給이 발생한다(〈表 Ⅲ-57〉 참조).

〈表 Ⅲ-57〉 外貨價格 差異에 의한 納付稅額

(單位 : kg, 원)

輸 出 物 品	所 要 原 資 材		所 要 量	納 付 稅 額	
	品 名	規 格		A 業 體	B 業 體
메리야스(M/T)	原 綿	SM, M (A) (B)	1,378	92,000	63,000
	染 料			9,000	9,000
			合 計	101,000	72,000

(2) 所要量 反映上의 問題點

前述한 바 있는 소요량고시는 그 내용이 복잡다양하고 상품명을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원자재가 많기 때문에 代表值를 선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安定劑, 顔料, 可塑劑, 接着劑, 各種 原緞, 各種 原絲, 「部品으로서 數로 표시되는 것」, 「材料로서 量으로 표시되는 것」 등을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染料인 경우에는 直接染料, 鹽基性 染料, 反應性 染料 등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어 어떤 품목과 규격을 代表值로 선정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없다. 소요량고시 기관에서는 소요량의 단순화 및 간소화를 위하여 또한 소요량 책정기술상 구체적인 品名과 규격은 표시할 수 없으나 정액환급화하는 데는 큰 沮害要因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품목을 정액환급화하려면 가중평균 외화가격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데 가중평균 외화 가격으로 정액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過多·過少還給 要因이 발생하여 국고의 損失과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

(3) 國產化 比率 調査 및 適用上의 問題點

國產化 比率는 총수요량(輸出, 內需) 중에서 국내생산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國產化 比率를 정액환급액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규격별로 정확한 국산화 비율을 調査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자재규격별 國產化 調査는 사실상 곤란하고 품목별·상품별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품목별 國產化 比率도 일정기간 동안의 총수요량(輸出物量, 內需物量)과 국내생산량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많은 隘路를 겪었다.

또한 同種同質 국산원자재도 어떤 수출물품 제조·가공에는 사용 가능하나 어떤 수출물품 제조·가공에는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모든 수출물품에 國產化 比率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한편 수출물품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수입원자재와 국산원자재의 사용비율이 수출업체마다, 수출물품 제조 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國產化 比率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원자재 사용비율이

높은 수출물품은 過少還給이 되고 국산원자재 사용비율이 높은 수출물품은 過多還給되는 요인이 된다.

巨視的 차원에서 볼 때에는 還給制度의 근본취지가 원자재 국산화 촉진에 있고 정액환급액은 평균치 개념에 입각하여 책정하고 있으므로 정액환급제도 운용상 당연한 결과이지만 微視的 차원에서 볼 때에는 過少還給에 따른 수출업계의 反撥과 過多還給에 따른 국고손실에 대하여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정액환급하는 데 애로가 많다.

다음 <表 III-58>과 같이 수출물품인 메리야스衣類를 國産化 比率(50%)을 곱하여 정액환급액을 책정하였을 경우 수입원단을 사용하여 생산한 A業體와 原綿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원단으로 생산한 B業體의 정액환급액은 다같이 M/T 57만 5천원인바 실제납부세액과 대비하면 A業體는 57만 5천원이 과소환급되고 B業體는 51만 2천원이 과다환급된다.

<表 III-58> 定額還給額 및 納付稅額과의 差異

輸 出 物 品	原 資 材	納 付 稅 額	國 産 化 比 率	定 額 還 給 額
메리야스衣類 M/T	原 緞	1,150,000	50%	575,000
	原 資 材	納 付 稅 額	定 額 還 給 額	差 額
A 業 體	輸入原緞	1,150,000	575,000	-575,000
B 業 體	國産原緞(原綿輸入)	63,000	575,000	512,000

定額 比率을 제고하지 못하는 요인은 前述한 바와 같은 定額算定上의 애로나 구조적 矛盾性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액환급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결여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액환급제는 납부세액에도 불구하고 國産化 比率의 적용, 정액산정 요소의 평균치 개념 도입으로 일정금액을 還給金으로 책정하고 책정된 금액을 법규상 납

부세액으로 看倣하는 擬制納付稅額이므로 정액환급금에는 필연적으로 실제납부세액과 대비할 때 過多·過少還給 要素가 내포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액환급제도의 特殊性을 외면한 채 實納付稅額과 대비하여 과다환급분은 국고손실, 과소환급분은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이라는 이유로 그 是正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납부세액과 차이가 없는 정액환급제도가 이론상 성립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절차간소화를 위한 정액품목 확대와 수출지원을 위한 납부세액전 還付라는 矛盾된 양면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환급 주관기관에서는 정액환급률표 작성업무가 자연히 硬直化되어 세액비중이 큰 主資材는 납부세액 전액을 환부하는 개별환급, 세액비중이 적은 副資材는 정액환급으로 變態運用하면서 과다·과소환급 요인을 극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부여로 절차만 복잡해졌다.

(4) 還給業務 關聯機關의 多元化

關稅還給制度 운용의 確立성·기술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의 일치에 의한 責任行政體制를 확립하여 행정의 유기성과 종합성을 기하여야 하는데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同質機能의 分散, 異質機能의 混在로 책임한계가 不明確化하여 능률행정의 저해요인으로 부각되었다.

上述한 바와 같이 소요량 증명은 관세환급금 지급범위를 결정하는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관세환급절차의 難易性을 左右하는 환급업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소요량제도의 주관부서는 商工部, 소요량 책정기관은 工業振興廳 등 각 생산주관부서와 위임된 산하기관 그리고 각 시도지사, 자유지역관리소장, 군납기관의 契約官 등에 분산되어 있고 기준소요량증명은 각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輸出用 원자재에 대한 소요량 책정 및 증명이 관세환급 업무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소요량 책정기관은 환급업무 주관기관과 협조체제를 堅持하여 업무의 유기성과 종합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소요량

책정 및 증명기관이 전국에 다원화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惹起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급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소요량을 책정·고시할 때에는 이로 인한弊端이 바로 관세환급업무의 문제점으로浮刻되었다.

정액환급률표는 前述한 바와 같이 기준소요량을 기초로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품목을 定額化하는 데는 소요량 고시상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게 되는데 소요량 고시기관에서는 소요량 그 자체의 차원에서 책정·고시하므로 定額化가 사실상 가능한 품목도 소요량 고시내용 때문에 定額化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또한 소요량 고시상 정액화가 가능하여 정액환급품으로 고시하면 정액률표의 適用停止 개정 소요량 고시에 의한 정액률표의 개정 등으로 정액환급절차는 번잡성을 띠게 된다. 1981년 7월 정액환급률표를 전면 개정하였는바 6개월간에 정액환급품목에 해당되는 기준소요량 고시가 개정되어 8회나 정액환급률의 一部改正이 있어 各 還給機關에서는 기본정액환급률표 외에 8종의 개정 정액률표를 보고 환급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별환급에 있어서도 頻繁한 소요량 고시개정으로 소요량 적용 착오사례가 야기되어 이에 따른 還給金 錯誤支給으로 추가환급 환급금추징 등 세관업무의 번잡성이 뒤따랐다. 이와 같이 소요량 업무와 관세 환급업무는 밀접한 有機性이 있을 뿐 아니라 환급제도의 운용과 개선도 소요량제도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성질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散在되어 있는 다원화된 기관에서 소요량업무를 管掌하는 문제가 있었다.

徵收猶豫制度 운용에 있어서도 장기유예와 단기유예가 財務部와 關稅廳으로 二元化되어 同質機能을 분산 운용하였고 정액환급률표는 關稅廳長이 작성·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액환급금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소요량과 國產化 比率는 각 생산주관부서에서 조사하고, 率表를 고시할 때에는 工業振興廳長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관세환급업무 취급기관도 세관 외에 모든 金融機關으로 확대·분산되어 환급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을 제고하는 데 애로를 겪었을 뿐 아니라 통일적인 업무지침에 의한 一貫된 업무집행을 어렵게 하였다.

第 5 節 關稅政策의 第 1 次 變革期 (1980年代)

1. 與件

가. 對外與件

先進國들은 高인플레이와 高실업, 섬유·철강 등 특정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로 保護貿易主義를 강화하고 자원보유국들은 자원 'Nationalism'을 제창하며 원자재가격을 인상하는 등 불확실성이 增大하는 한편, 中共 등 후발개도국들의 新市場 參與 및 先進國의 기술이전 기피 등으로 기술경쟁이 가열화되었다.

나. 産業政策의 與件

1980年代 産業政策의 과제는 연 40~50만명의 고용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의 이룩, 物價의 안정 및 外債의 증가 없는 성장의 달성, 生産的인 노력이 보상받는 經濟秩序를 확립하고 國民福祉의 向上 및 새로운 수요의 充足 등이었다.

이상과 같은 産業政策課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이 협소하므로 수출을 통한 經濟成長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對外與件은 과거와 같이 쉽게 輸出을 증대시켜 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상에서 언급한 國際貿易環境 속에서 자원이 빈곤한 우리 經濟가 수출을 통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難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經濟의 전반적인 效率을 제고하고, 技術革新, 原價節減, 品質改善 등으로 生産性 向上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強化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경제체질을 培養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內需産業에 대한 과잉보호 축소와 대내외 競爭體制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는데 대내적으로는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民間主導型 經濟運用으로 시장기능을 통한 자원배분의 합理化를 기하여 경제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했다. 그리고 상품시장에서 公正去來의 제도적 보장, 금융시장에서의 競爭體制의 擴充 및 租稅上의 公平성 제고가 요청되었으며, 對外的으로는 輸入自由化를 촉진하고 관세제도상의 경쟁제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外國物品과의 경쟁촉진 기반을 조성하여야 했다. 經濟體質의 강화는 公正한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정립하여야 우리 經濟의 第2의 跳躍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副應하여 관세제도도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全面改編을 하게 되었다.

이상의 基本方向에 따라 정부는 1979년 제2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장개입에 대한 政府의 역할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중화학부문의 經營不實과 과잉투자로 인한 不實化를 막기 위해 1980년 발전설비 및 건설중장비, 자동차, 중전기, 전자교환기, 디젤엔진, 동제련산업에 대한 重化學工業投資調整方案을 발표함으로써 產業政策의 방향은 產業構造形成政策과 產業構造維持政策에서 產業構造調整政策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조정후에도 여전히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의 투자자원조달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후속조치의 부족으로 構造不況產業이 발생하였다. 이후 政府는 1986년에 工業發展法을 제정하여 자동차·건설중장비·디젤엔진·중전기기산업을 競爭力補完分野로 지정하고, 직물·합금철·염색가공업·무기질화합비료산업을 競爭力喪失分野로 지정하여 金融과 租稅面에서 각각 필요한 지원을 하였다. 이와 아울러 企業의 대형화, 독점화 현상에 따라 經濟力集中問題 특히 財閥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1980)을 제정하게 되면서 產業組織政策도 중요한 產業政策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 貿易政策의 基調

1986년 12월에 對外貿易法이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수출입관리체제는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의 이원체제로 整備되어 輸出을 통한 경제성장정책이 지속적으로 推進되었다.

1980年代의 輸出振興政策은 輸出商品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개선에 역점이 두어졌다. 즉 國內産業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상품의 경쟁력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 수출산업의 질적개선을 위한 노력이 擴大되었다. 특히 기계류·산업설비 등 자본재의 생산촉진·수출기반확충 등을 위하여 중공업제품의 수출촉진시책이 強化되었고 아울러 선진수출기반의 조성, 수출의 지속적 증대 등을 통하여 수출공급능력 확대시책이 實施되었다.

1980年代의 輸入政策을 살펴보면, 1979년부터 1980년까지 후퇴하거나 또는 담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輸入自由化 措置는 1981년 하반기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하반기 및 1981년 상반기 동안 CCCN 4단위 기준으로 68.6%, 8단위 기준으로 69.4%에 불과했던 수입자유화율은 1981년 하반기 및 1982년 상반기 동안에는 CCCN 8단위 기준으로 74.7%로 증가되었고 더욱 1982년 하반기 및 1983년 상반기 동안에는 76.6%로 증가되었다.

輸入自由化率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제2차 石油波動이 진정되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어느 정도 강화되어 수출이 증대됨으로써 국제수지가 개선되었고 한편 국내외의 경제환경에 비추어 輸入自由化의 확대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981년부터 진전되기 시작했던 輸入自由化措置는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 76.6%였던 수입자유화율은 1983년 하반기 및 1984년 상반기 동안에는 80.4%로 확대되었고 1984년 하반기 및 1985년 상반기 동안에는 84.4%, 1985년 하반기 및 1986년 상반기 동안에는 87.7%, 1986년 하반기 및 1987년 상반기 동안에는 91.5%, 1987

년 하반기 및 1988년 상반기 동안에는 93.6%, 1988년 하반기 및 1989년 상반기에는 95.3%로 각각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0년에는 96.3%, 1991년에는 97.2%로 각각 확대되었다.

1984년부터 輸入自由化措置가 급진적으로 확대된 것은 당시 정부가 수입자유화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輸入自由化措置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은 長期經濟開發計劃에 의하여 산업구조가 개선되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배양되고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국제수지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자유화에 의한 대외경쟁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對外市場開放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市場開放壓力과 통상마찰에 대비하여 수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함이었다(〈表 III-59〉 참조).

라. 換率政策의 基調

1980년 2월 27일 復數通貨바스켓制度가 채택되어 환율이 유동화됨에 따라 원貨의 對美달러換率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여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원화의 對美달러換率은 현저히 상승하였다. 그리고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원유, 원자재 등의 국제가격이 폭등하여 국내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원화의 對美달러換率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즉 1980년 復數通貨바스켓制度가 채택될 당시 1달러당 580원 50전이던 환율이 그해 12월 31일에는 1달러당 659원 90전으로 상승하여 前年末에 비하여 36.3%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1981년부터 국제석유파동과 국제원자재파동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한편 국내에서는 이러한 파동의 충격을 흡수하여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동시킨 결과 1981년부터 1985년까지 환율은 연중 대체로 4~7%로 상승하여 실제 수준에 접근하였다. 1985년에는 미국의 경제성장이 촉진되어 主要先進諸國의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강세로 말미암아 환율은

〈表 Ⅲ-59〉 輸入自由化措置(1980年代)

(單位: 個, %)

	총수입품목수	수입제한승인품목	수입자동승인품목	수입자유화율
1981	7,465	1,886	5,579	74.7
1982	7,560	1,769	5,791	76.6
1983	7,560	1,482	6,078	80.4
1984	7,915	1,203	6,712	84.8
1985	7,915	970	6,945	87.7
1986	7,915	670	7,245	91.5
1987	7,911	503	7,408	93.6
1988	7,911	370	7,541	95.3
1989	10,241	461	9,776	95.5
1990	10,241	376	9,898	96.3

註: 總輸入品目數의 基本品目 基準은 다음과 같다.

1981년: CCCN Heading(8단위)	7,465개품목
1982~1983년: CCCN Heading(8단위)	7,560개품목
1984년: CCCN Heading(8단위)	7,915개품목
1989년: HS(10단위)	10,241개품목

각 연도 하반기 기준임.

資料: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各 年度.

상공부, 『수입자유화추진과 수입관리』, 1985. 6.

———, 『수입자유화추진현황』, 1987. 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93.

1달러당 888원 40전으로 상승되었다. 이 환율은 한국의 換率史上 가장 높았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1981년 復數通貨바스켓制度가 채택된 이래 198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환율은 1986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즉 1986년 12월 31일 원貨의 對美달러換率은 1달러당 857원 90전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3.5%나 하락하였으며 1987년 12월 31일의 환율은 1달러당 789원 10전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8%나 하락하였다. 특히 1989년 원貨의 對美달러換率은 1달러당 679원 60전으로서 198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처럼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한 것은 1986년에 난데없이 불어닥친 소위 3低現象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外換收入이 현저히 증가하여 國際收支가 흑자로 반전된 데다가 그 흑자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데 기인한다.

復數通貨바스켓制度가 채택된 이후부터 1990년 3월 2일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채택될 때까지 환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체로 實勢換率水準에 접근하면서 국내산업의 국제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였다(〈表 Ⅲ-60〉 참조).

〈表 Ⅲ-60〉 원貨의 對美달러換率 推移

	1달러當 換率	備 考
	원	
1980. 2. 27	580.50	환율제도개편(復數通貨바스켓制度)으로 환율 유동화 실시
12. 31	659.90	
1981. 3. 31	672.80	
6. 30	685.10	
9. 30	685.50	
10. 31	687.20	
11. 30	689.90	

資料：韓國銀行

마. 密輸의 推移

1980년대 들어서는 그동안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으나, 國內産業保護로 일부 품목의 輸入制限이 계속되자 외국과 국내의 價格差異에 따라 귀금속 및 약품류, 참깨(국내마진 560%) 등의 密輸入이 성행하였고, 合法을 假裝한 無免許輸入, 古物을 가장한 中古品輸入 등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輸入線多邊化品目 등 수입제한을 회피한 偽裝輸入, 여행자의 급증에 따른 携帶品 密輸, 비밀창고를 이용한 船舶密輸 등 밀수사범이 고도로 知能化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밀수사범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70년 8월 關稅廳을 발족하게 되었고, 1983년 3월 서울, 부산 등 本部稅關에 廣域搜查體系를 확립시켰다.

2. 關稅政策 變化의 內容

가. 國際競爭力을 培養하기 위한 競爭促進的 關稅率體系의 確立

우리나라는 1983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前例 없는 대폭적인 關稅政策의 改編을 감행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製品의 加工度에 따라 다른 關稅率을 적용하는 差等關稅率制度(tariff escalation system)에서 탈피하여 均等關稅率制度(uniform tariff system)로 移行한 것과 平均關稅率의 대폭적인 引下라고 할 수 있다. 均等關稅率制度로의 이행은 政府主導型的 保護와 支援政策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拂拭하고 對內外 競爭體制를 정착시켜 市場經濟原理에 의한 民間主導型 經濟體制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1980年代의 產業政策方向에 따른 것이며 平均關稅率의 인하는 그동안 國內產業發展에 따른 產業의 競爭力 向上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30.6% 수준을 견지했던 平均關稅率이 1980년대에는 21.4% 수준으로 떨어졌고 1990년대에는 7.9% 수준으로 크게 인하되었다(<表 III-61> 참조).

1) 1981年 12月의 關稅率調整

1981년 關稅率調整의 원칙은 ① 關稅率의 急激한 引下로 인한 衝擊을 완화하고 海外競爭 導入을 위한 準備態勢를 갖추도록 部分的·漸進的·

〈表 Ⅲ-61〉 平均關稅率의 變化(1980年代 以後)

(單位: 個, %)

	稅率段階	稅目數	單純平均稅率	加重平均稅率	實效稅率
1981	11	2,280	23.7	11.49	4.96
1983	12	2,301	22.5	15.0	7.17
1988	9	2,301	18.1	14.56	6.77
1990	18	2,718	11.4	9.76	5.57

豫示的 調整方式을 導入하고 ② 關稅의 財政寄與率을 12%, 實效關稅率을 5.3% 정도 유지하면서 ③ 品目別 關稅率 不均衡을 是定하고 保護水準을 調整하는 것이었다.

첫째, 保護關稅率의 水準을 調整하여 종래 過多保護된 60%·80%·150%의 품목을 一律 引下의 방식에 의해 60%→50%, 80%→50%, 150%→100%로 引下했다.

이는 60% 이상의 高關稅率品目이 대부분 競爭力이 갖추어져 있는 輕工業製品이므로 이들을 引下 調整함으로써 資源配分의 效率化와 産業間 均衡의 發展을 기하고 消費者를 保護하려는 목적이 있다.

둘째, 經濟開發에 따른 財政需要 增加를 감안하여 財政寄與率을 종래의 水準인 11.5%, 實效稅率 5.3%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關稅財政機能을 보완하여 인플레이 및 換率變動에 따라 他 類似物品의 稅負擔보다 낮아진 從量稅品目を 그와 동일수준의 종가세로 전환(20~40%)하고 일반적으로 종량세를 적용하는 품목의 종량세액을 현실화함으로써 稅負擔의 公平성을 도모했다.

셋째, 關稅率體系를 정비, 高率段階를 축소하여 稅率段階를 14단계에서 11단계로 단순화하고 加工段階別 關稅率의 逆進 및 類似物品關稅率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만성적 할당 關稅品目의 세율을 현실화했다.

넷째, 重點施策에 대한 關稅支援을 확대, 重要산업에 소요되는 원자재, 수출용원자재, 의료용 기초원료 및 의약품 開發輸入을 위한 西洋材 등의 세율을 引下 支援했다.

部別로 보면 1部 24.6%, 2部 25.8%, 3部 27.1%, 4部 44.5%, 5部 8.5%, 6部 21.6%, 7部 33.3%, 8部 36.6%, 9部 21.7%, 10部 24.9%, 11部 33.7%, 12部 48.5%, 13部 32.8%, 14部 31.2%, 15部 21.2%, 16部 19.4%, 17部 25.2%, 18部 27.0%, 19部 16.7%, 20部 47.4%, 21部 0%로 되어 있다.

2) 1983年 12月 關稅率 調整

1983년 關稅率 調整의 기본방향은 ① 高稅率體系에 의한 過保護를 축소하고 ② 差等稅率과 累進稅率體系도 20% 중심세율로 단계적으로 收斂縮小하며 ③ 稅率負擔 偏重을 시정하여 課稅底邊을 확대하고 ④ 豫示制를 도입하여 구조 개편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하며 ⑤ 輸入自由化에 따른 수입급증품은 조정관세로 時限保護한다는 것 등이다.

部門別로 보면 [圖 III-4]에서와 같이 첫째, 全產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원료의 關稅率을 인하했다. 國內生産 不可品이거나 물량이 부족한 非競爭原資材의 세율은 1984년에 5%로 인하하여 1988년까지 유지하며 국내생산 경쟁원자재는 10%로 인하했다.

둘째, 過保護 投入財·生産材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가격경쟁력을 제고했다. 獨寡占品이거나 前方產業의 투입비중이 큰 품목은 종래의 30~40%에서 20%로 하고 중소기업제품, 신규개발품목 및 후방산업에 문제가 있는 산업은 1984~1985년 30%, 1986~1987년 25%, 1988년 20%로 인하했다.

셋째, 消費者에 대한 高保護稅率을 인하하여 내수위주 산업보호를 지양했다. 신발 등 경쟁력확보 일반소비재는 종래의 50~60%에서 1984년 40% 인하 후 단계적으로 20% 수준에 收斂하고 醫藥品도 40%에서 1984년 30% 인하 후 20% 수준에 收斂接近시켰다.

그리고 화장품·주방용품 등 輸入選好度가 큰 소비재는 종래의 50%에서 1984년 40% 인하 후 30%로 인하조정했다.

넷째, 農産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工産品과 차등을 두지 않고 인하

[圖 III-4] 關稅率調整 原則(1983年)

		1983年	1984年	1985年	
工 產 品	原 料	無稅 - 30%	5% - 5%		非競爭原資材, 生產財產業原資材
			10% - 10%		競爭原資材, 消費財產業原資材
	中 生 間 產 財 財	15 - 50%	20% - 20%		競爭力確立 中間財, 生產財
			20% - 20%		競爭力微弱 中間財, 生產財
	消 費 財	40 - 80%	40% - 20%		一般消費財
			50% - 30%		輸入選好도가 큰 物品, 不要不急한 奢侈性 消費財
	例 外	無稅 - 150%	無稅 - 無稅		國際慣例 · 國際協定物品, 武器類
			別途 稅率		國際的高關稅品目
農 產 物	主 穀	5% —————	5% - 5%		國際的高關稅品目
	飼 料	20% —————	7% - 7%		國際的高關稅品目
	所 作 得 物	20 - 50% —	30% - 50%		國際的高關稅品目

하여 過保護를 지양했다.

다섯째, 國際的高關稅品 및 國際的 無關稅品 등 特別考慮가 필요한 품목은 例外稅率을 적용했다.

여섯째, 慢性的 할당관세 해당품목의 세율현실화 · 투입재 · 완제품간 逆進是正 · 유사물품간 稅率隔差 축소 등의 관세율조정이 이루어졌다. 결국 <表 III-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294개의 稅目 中 729개를

1984년부터 인하하고 300개는 인상하되 1988년까지는 977개를 인하고 평균관세율은 종래의 22.6%에서 1984년 20.6% 1988년 16.9%로 인하여 선진국 수준에 접근시켰다.

또 稅率分布를 보면 20%의 세율은 종래의 29.6%에서 1984년 42.5%, 1988년 62.1%로 확대하였고(〈表 Ⅲ-63〉 참조) 20% 이하도 종래의 61.9%에서 1984년 71.2%, 1988년 91.1%로 低稅率體系로 均衡화하고 있다.

〈表 Ⅲ-62〉 關稅率 調整 品目數(1984年)

(單位: 個, %)

	1984		1988	
	稅目數	構成比	稅目數	構成比
引上	300	13.1	302	13.2
引下	729	31.8	977	42.6
据置	1,265	55.1	1,015	44.2
計	2,294	100.0	2,294	100.0

〈表 Ⅲ-63〉 平均關稅率 水準(1983~1988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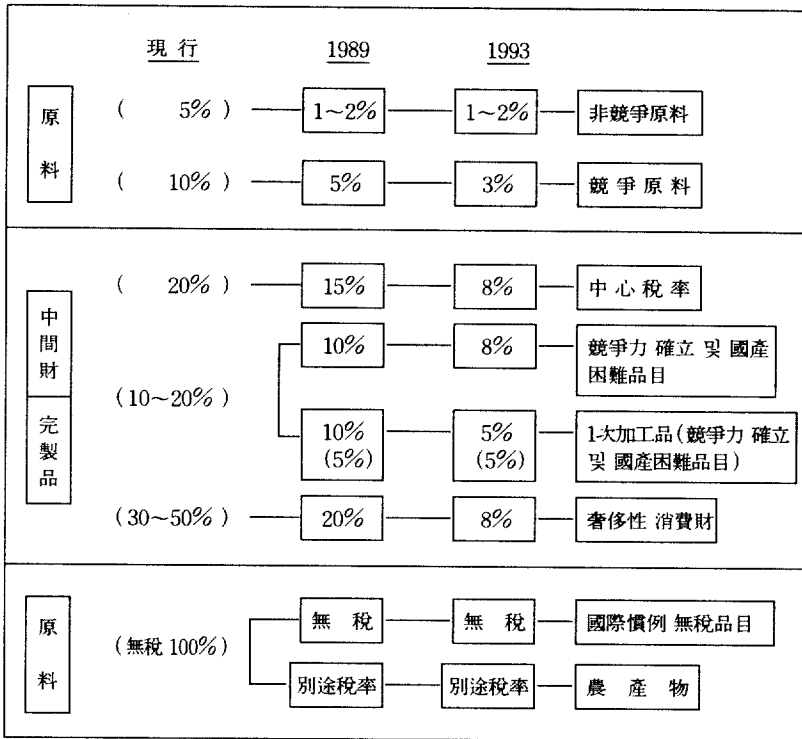
(單位: %)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全體	23.7	21.9	21.3	19.9	19.3	18.1
工產品	22.6	20.9	20.3	18.7	18.2	16.9
農產品	31.4	29.6	28.8	27.1	26.4	25.2

3) 1988年 12月의 關稅率 調整

1988년 關稅率 改編의 기본방향은 높은 세율은 대폭 인하고 낮은 세율은 소폭 인하하되 低稅率의 원료를 사용하는 일차가공품의 관세율은 대폭 인하하는 데 있었으며 관세율예시제를 導入하여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년간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관세정책방향을 뚜렷

[圖 III - 5] 關稅率 改編 原則(1989~1993年)



이 제시함과 아울러 國內産業에 대하여 産業조정 적응기간을 부여하였다.

세부적인 關稅率 改編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圖 III - 5] 참조).

가) 國內産業의 價格競爭力을 높이기 위하여 基礎原料의 關稅率을 引下함.

① 액화천연가스·천연봉산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그 물량이 절대부족한 原資材의 稅率을 5%로 引下함.

② 황인·메탄올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原資材의 稅率을 10%로 引下함.

③ 원피·생모피 등 수출물품의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의 稅率을 引下함.

나) 産業間·品目間 公正競爭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高稅率體系에 의한 過保護 및 差等稅率體系에 의한 稅率隔差를 縮小함.

① 직물류·신발류 등 지금까지 높은 保護關稅率을 적용받던 품목의 세율을 1984년에 40%로 引下한 후 1988년까지 점진적으로 20%로 引下함.

② 다른 産業의 투입재 및 생산재로 사용되는 물품을 경쟁력이 있는 물품과 경쟁력이 약한 물품으로 구분하여 경쟁력이 있는 물품은 1984년부터 세율을 20%로 引下하고 경쟁력이 약한 물품은 1984년부터 30%로 引下한 후 1988년까지 점진적으로 引下함.

다) 其他 物品에 대하여는 適正關稅率을 設定함.

① 선진국에서도 높은 稅率을 적용하고 있는 주류·담배 등은 계속하여 높은 關稅率을 적용함.

② 항공산업 등 국제경쟁산업이나 국방목적상 필요한 품목 등은 현행과 같이 無稅를 계속 적용함.

③ 기계류 등과 같이 産業의 발전단계에 따라 稅率을 引上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稅率을 上향조정함.

④ 채소류·과실류·낙농제품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입을 抑制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은 현행 稅率을 1988년까지 계속 적용하거나 上향조정함.

⑤ 消費財는 關稅率을 점진적으로 引下하여 1988년까지 30%로 引下함.

工產品은 상기 개편원칙에 충실하게 調整되었기 때문에 세부 부연설명은 생략하되 농·축·수산물, 특별고려품목 및 관세율 대폭 인하에 따르는 補完措置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農·畜·水産物 關稅率構造 改編要旨

全體 農·畜·水産物 中 158개 품목(36%)의 關稅率은 据置하되, 278개 품목(64%)의 關稅率은 引下 調整하였던바 우루과이 라운드 등 國際協商 등을 통해 수입개방이 될 경우 國內農家를 적정히 보호하기 위

하여 農家所得作物에 대하여는 現行의 높은 보호관세율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한편 農家所得作物의 생산에 필요한 投入財의 관세율은 대폭 인하하여 농가의 關稅負擔 緩和를 도모하였다. 다만 일반농산물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기타 사치기호성 高關稅品目과 國產不可 및 絶對不足原料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農家保護와 대외통상마찰을 조화 있게 보호하도록 하였다(〈表 Ⅲ-64〉 참조).

部門別 改編 內容은 다음과 같다(〈表 Ⅲ-65〉 및 〈表 Ⅲ-66〉 참조).

〈表 Ⅲ-64〉 農·畜·水産物 關稅率 調整 現況

(單位: 個, %)

	區 分	稅目數	比率
現行 實行稅率 維持	○ 農家所得作物	101	23.1
	○ 農家所得作物의 代替品 및 이들을 原料로 한 加工品	44	10.1
	○ 안정적 割當關稅 및 暫定 稅率品目	13	3.0
	(小 計)	158	36.2
關稅率 大幅 引下調整	○ 農·畜·水産物 生産用 基礎投入財	72	16.5
	○ 國產不可 및 絶對不足原料	30	6.9
	○ 사치기호성 高關稅品目	14	3.2
	○ 低稅率이 적용되는 輸入原料로 製造한 加工食品	20	4.6
	○ 一般 農産物(農家所得作物 除外)	142	32.6
	(小 計)	278	63.8
全 體		436	100.0

나) 特別考慮品目

國際的 無稅品目 등 특별고려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國際慣例에 따라 例外稅率을 책정(〈表 Ⅲ-67〉 참조)하였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굴된 有望 幼稚物品에 대하여는 限時的(2년간)으로 보호하기로 하였다. 그 세부내용은 〈表 Ⅲ-68〉과 같다.

〈表 Ⅲ-65〉 農·畜·水産物 關稅率 調整(農家保護 部門)

(單位: %)

	現 行	調 整		備 考
		1989	1993	
쇠고기·닭고기 우유 돼지고기	30 40 50	30 40 50	30 40 50	農 産 物
참깨·들기름	40	40	40	
마늘·양파·고추	50	50	50	
사과·배·귤 과일통조림	50 50	50 50	50 50	과 실 류
감자 종자 종계	30 20	무 세 무 세	무 세 무 세	

〈表 Ⅲ-66〉 農·畜·水産物 關稅率 調整(消費者保護 部門)

(單位: %)

	現 行	調 整		備 考
		1989	1993	
대 두 류	20	15	8	消費者 厚生 증대
후 추	20	15	8	
설 당	20	15	8	
초 콜	30	20	8	
케 릿	30	20	8	
척 칩	30	20	8	

〈表 Ⅲ-67〉 國際慣例 無稅物品

	現 行	調 整		備 考
		1989	1993	
書 籍 放 射 性 原 素 電 動 車 골 동 품 정 액 , 종 자	無 稅 ↓	無 稅 ↓	無 稅 ↓	UNESCO 協定 原子力協定 國防目的 國際慣例 品種改良

〈表 Ⅲ-68〉有望 幼稚物品 保護

(單位: %)

	現行	調 整			備 考
		1989	1990	1993	
볼베어링	20	15	15	8	· 1988년 4월 輸入自由化 · 新規工場竣工計劃 (1989년중 2개)
自動車排氣가스 淨化用 觸媒	20	15	15	8	· 生産初期(1988년 1월 生産) · 國產品 選好도가 낮아 稼動率 低調(20% 수준)
젤라틴	20	20	15	8	· 生産初期(1988년 3월 生産) · 有望中小企業物品
合 板	20	20	15	8	· 國際的 不公正去來에 對處
活 魚	20	20	15	10	· 沿近海漁民保護

다) 關稅率 大幅 引下에 따르는 補完措置

(1) 調整關稅制度의 新設

輸入自動承認品目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으로서 수입의 抑制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관세율표상의 최고세율인 100%(기본세율 포함)까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調整關稅制度를 신설했다. 이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자유화 및 관세율 개편을 적극적으로 推進하되 輸入自由化에 따른 불요불급한 물품의 수입급증을 防止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호의 한시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 덤핑防止關稅制度의 補完

선진국들의 신보호무역주의에 對應하고 輸入 自由化, 關稅率 引下에 따른 외국물품의 덤핑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GATT의 반덤핑협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운용절차를 마련했다.

나. 産業의 自力成長基盤 마련을 위한 政府支援의 一般化·最少化에 副應하는 關稅支援制度의 改編

1) 機能別 一般支援制度의 確立(1984年 1月 1日 시행)

특정산업에 대한 無時限的·偏重支援制度를 폐지하고 기능별 일반지원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技術開發主導産業 施設材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減免支援토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의 파급효과가 크고 전 산업에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는 산업을 지원하되 지원기간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수혜의 기득권화·만성화를 배제하고 모든 산업에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施設材 減免의 경우 기계공업 중 一般機械 제조업, 機械部分品 제조업과 電子工業 중 電子機器部分品 및 原資材 제조업, 産業用電子機器 제조업만을 지원대상산업으로 하였으며, 原料品 감면에 있어서도 외국과의 직접경쟁상태에 있는 산업에 대하여는 외국의 지원수준만큼은 우리도 지원하여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므로 外航船舶(원양어선 포함) 및 外航航空機에 대하여는 감면을 계속 허용하는 한편, 學術研究 支援 및 人力開發 支援 등 산업전반에 그 영향이 미치는 부문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감면을 계속 유지하였다.

2) 産業別 差等支援의 縮小 廢止(1984月 1月 1日 施行)

公正競爭基盤 구축을 위하여 산업별 差等支援을 폐지하였다. 特定産業差等支援의 폐지로 현행 중요산업의 경우 化學工業, 제1차 金屬製造業, 전기기기제조업, 운송기계제조업, 化學計測 및 조정기기제조업, 전기철도운수업이 삭제되고 資源開發産業 감면의 경우 配合飼料 원료인 옥수수, 수수, 타피오키는 飼料用 곡물의 低關稅率 均등화 원칙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호밀, 귀리와 함께 기본세율 10%로 관세율을 인하·적용토록 하되 감면제도 폐지에 따른 稅負擔의 과중을 우려하여 일정기간 잠정세율을 7%로 통일하였다. 다만 특정산업 감면의 대폭적

인 축소·폐지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한 선량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附則에서 經過規定으로 2년간 지원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토록 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경과규정 지원대상 산업으로 석유정제업, 제철 제강업, 조선업 및 자동차제조업, 발·송전업, 광업 및 LNG 저장업, 농업, 선박 및 내연기관만을 선정하였다.

3) 差等分納制度에서 均等分納制度로 轉換(1984年 1月 1日 施行)

산업별로 분납대상물품을 선정하여 2~5년의 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하던 것을 분납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산업별 차등 없이 동일기간 분납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산업에 최소한의 정부지원이 均等化되도록 노력하였다.

4) 社會福祉·政府重點施策·國際慣例 等 支援 繼續(1984年 1月 1日 施行)

國家安保·社會福祉·政府重點施策事業 지원을 다소 확대하고 국제 관례·협정 등에 의한 감면은 계속 유지하였다.

國家安保 지원으로 防衛産業用 시설재에 대하여는 감면제도 개편원칙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되 防衛産業 원료품 및 연구개발용품에 대해서는 계속 감면하며, 社會福祉 支援인 가족계획 및 身體障礙者用品에 대해서는 지원대상물품을 현행보다 확대하였고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용품에 대한 減免을 계속하며, 政府重點施策事業인 地下鐵 건설 및 올림픽용품에 대한 감면을 계속 유지하였다. 또한 국제관례·협정 등에 의한 外交官用品·移徙物品 등에 대한 감면은 계속함으로써 국제간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편익을 제공토록 하였다.

5) 其他 關稅減免制度 補完(1984年 1月 1日 施行)

현행 關稅減免制度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관행정 및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면물품에 대하여 輸入免許日로부터 5년간 일률적으로 사후관리하던 것을 물품의 성질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 동안만 사후관리토록 하였고, 재수출 감면규정을 개정 貸貸借契約 등과 관련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감면토록 하여 임대수입 사용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船舶의 海外事故에 의한 수리의 경우에도 외국의 가해자 및 賣渡人負擔分에 한정하여 감면토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였고, 財務部令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재수출면세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여 기계류 등 외국에서 加工·修理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다. 輸出促進을 위한 輸出企業의 資金負擔 緩和과 還給書類 및 節次의 簡素化

1) 概算額 還給後 後精算制度의 導入(1985년부터 施行)

輸出後 還給申請書類를 작성하여 환급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輸出業界에 자금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制度이다. 수출업자는 전년도 수출과 還給額의 실적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平均 還給額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환급받고, 3개월 이내에 정산토록 하고 있다.

2) 記帳相計制度(1985년부터 施行)

記帳相計業體(수입원자재 제조가공시설을 보유한 者나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업에 종사하고 있는 者 중에서 指定)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동안 그 關稅의 납세고지 의무를 유예하다

가 수출되면 상계함으로써 수출용원재료 수입에 따른 관세부담을 면제 해 주는 制度이다. 국내에서 多段階 Local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계가능하나 최종 제품수출이 수출용원재료 수입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 副材料定額還給制度(1985년부터 施行)

平均還給額을 기준으로 전체의 20% 미만을 초과한 원재료는 副材料로 분류하여 이들 부재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액환급만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들 副材料들은 환급금액은 적으나 품목수가 많으므로 개별 환급을 할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게 되므로 정액환급만을 허용하여 關稅還給制度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인 행정절차의 簡素化를 도모하자는 데 同 制度의 도입취지가 있다 하겠다.

4) 輸出品 檢査制度의 改善(1988年 1月 1日 施行)

종전에는 검사생략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은 모두 檢査했으나 금번 개선에 따라 檢査對象으로 지정된 물품이 아니면 검사를 생략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검사생략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不規則檢査方法을 과학화하여 무작위 抽出方法에 의해 추출된 5% 상당의 물품을 Spot Check하는 方式을 도입하였다.

불규칙검사방법도 輸出檢査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출절차를 위반하는 불성실업체는 불규칙검사비율을 높여 나가고, 수출질서를 성실히 지키는 건진기업에 대하여는 檢査比率를 하향 조정하는, 「업체의 責任」을 전제로 한 간편한 輸出管理를 그 근본으로 삼았다.

5) 輸出免許時期의 豫約制 新設(1988年 1月 1日 施行)

內陸地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수출규모의 대형화 및 판매형태의 다양화로 적기선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면, 京仁地域內的 수출업체는 물품을 제조한 후 세관의 通關節次

를 거쳐 야간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물품이 운송되어야 제때에 船積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내륙지의 모든 수출업체는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야 대부분의 物品製造가 완료되며, 물품제조를 완료한 후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稅關檢査 및 輸出申告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낭비로 수출자가 원하는 시기에 면허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輸出業體가 원하는 시기에 면허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물품 제조중에 輸出申告를 하게 되는 허위신고사례가 있었으며, 稅關檢査過程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수출자가 원하는 특정시기에 수출면허를 받지 않으면 信用狀이 취소되어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소량 다 품종의 물품과 같이 物品製造가 완료된 이후에도 물품포장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포장되는 과정에서 輸出申告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출자가 원하는 시기에 선적이 될 수 없는 경우와, 자동차 등의 물품과 같이 船積 確認이 용이한 물품이면서도 제조완료와 동시에 운송·선적 등의 일관 작업이 필요하여 공장 내의 특정장소에 全量藏置가 곤란한 물품 등의 경우에는 수출면허를 받을 시기를 미리 신청하고 稅關長이 이를 승인하면 예약된 시기에 輸出免許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수출면허시기의 예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輸出申告에 필요한 서류·사유서·信用狀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제출하면 적기에 輸出免許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500달러 以下 少額輸出無換託送航空貨物 通關節次 簡素化(1988年 1月 1日 施行)

모든 輸出物品은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 輸出申告書·송품장·포장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소액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일일이 관세사에게 通關業務를 의뢰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FOB 기준 100달러 미만의 소액물품은 전산입력과정에서 수출실적에 계상되지 않으면서 일반 輸出物品과 동일한 수출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수출금액을 다소 확대하더라도 소량다품종화되는 일반적인 수출 경향에 부합하기 위해 FOB기준 500달러 미만의 少額無換託送航空貨物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送品狀 제출만으로 수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실물검사를 함에 있어서도 X-Ray 투시기 등 科學裝備에 의한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航空貨物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통관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데 그 역점을 두었다.

7) 輸出物品의 他所裝置制度 改善(1988年 1月 1日 施行)

이 당시 50% 이상의 輸出物品이 내륙지에서 통관되고 있는 유통체계 하에서의 타소장치허가제도는 수출통관에 필요한 稅關行政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타소장치허가를 받은 1건의 수출물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檢査公務員이 최장 150km 이상을 왕복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오히려 전체 수출물품의 通關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수출업계는 업계대로 수출물품의 生産體系가 다양화됨에 따라 여러 하청공장에 주문해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물품제조가 완료된 이후에도 각기의 물품을 한 장소로 집하해야 하는 불편으로 운송비용 등의 通關費用이 추가로 발생하고, 집하에 따른 시간소요로 그만큼 수출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輸出通關制度下에서는 여러 하청공장에 물품을 그대로 둔 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출업계의 費用節減을 도모하였으며, 同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여러 下請工場 중 1개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검사업무의 능률화를 기하였고 이를 他所裝置 許可를 받음에 있어서 1건으로 허가·처리토록 하여 수수료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稅關公務員의 藏置確認制度 改善(1988年 1月 1日 施行)

稅關檢査對象物品은 수출검사과정에서 물품의 장치여부가 확인이 되

지만 검사생략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제조에서 선적되는 과정까지 세관의 관리를 받는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기초적인 通關管理 차원에서 부정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 수출용원자재는 시중에 유출하고 전혀 상이한 물품을 수출하는 不正行爲 등 — 監視課에 소속된 감시공무원이 물품의 반입신고시 장치확인을 해 왔으나, 수출업체의 성실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된 상황에서 1970년대의 輸出物品 관리기법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輸出節次의 여러 단계 중에서 최소한 수출할 물품의 존재여부만큼은 업계에 그 확인을 일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물품제조후 수출이 급박한 상태에서 輸出免許 목적이 아닌 장치상태 확인 목적만으로 세관공무원이 이를 확인한다는 것은 同 확인에 따른 時間所要로 수출이 지연되는 등 업계의 수출애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稅關公務員의 장치확인제를 폐지하고 물품의 장치여부에 관한 사항은 화주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을 하였다.

라. 國際關稅協約의 受容을 통한 通關管理制度의 國際化·效率化

1) 國際統一商品名 및 符號體系方式

1988년 關稅率表上의 관세품목 분류체계를 관세협력이사회 분류방식인 CCCN에서 국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방식인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약칭 Harmonized System)로 전환하였다. HS는 종래 관세품목 분류체계였던 CCCN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새로 마련된 關稅率表상의 상품 분류체계이다. CCCN은 관세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국제적 통일품목분류표인 데 비하여 HS는 관세, 통계, 운송 등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통일된 多目的 共通品目分類表이다.

한국은 1985년 HS 협약에 가입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관세율표상의 關稅品目分類體系를 이 HS 분류방식으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HS 分類方式은 각국간의 무역통계의 수집,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去來品目이 이 하나의 상품분류표에 포괄적으로 기재되기 어려우므로 이 HS 방식에서도 CCCN의 基本原則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 新評價協定の 導入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종래의 관념적인 정상가격에 의하지 않고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價格을 기준으로 決定하도록 했다. 또한 課稅價格 決定方法의 적용순서를 명기했다. 다만 新評價協定에 따른 새로운 평가 제도는 198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두었다.

마. 通關管理節次의 簡素化

1) 通關節次의 簡素化(1988年 1月 1日 施行)

가) 簡易稅率制度의 改善

간이세율제도는 관세 이외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특별소비세·주세 및 부가가치세 등 內國稅를 합하여 하나의 稅率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신속·간편한 통관을 도모하고 전산화를 促進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휴대품·우편물 및 외국에서 수리 또는 개체된 선박에 대해서만 간이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1984 CCC 서울총회, 1986 아시안게임, 1988 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가 빈번해지게 됨에 따라, 입국자 및 無換輸入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탁송품 및 별송품에 대해서도 간이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船舶과 같은 운수기관인 항공기의 해외수리(개체)에도 간이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선박 및 항공기의 수리(개체) 부분에 대한 간이세율의 산정기준이 수리(개체)에 주로 使用되는 부분품의 관세율 및 關稅減免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수입면세(관세법 제34조)

와의 불균형 문제가 있었으므로, 당해 선박 및 항공기의 稅率을 기초로 정하도록 했다.

나) 合意稅率 適用要件의 緩和

일괄하여 輸入申告된 物품 중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合意稅率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物품별로 稅率이 다르고 과세가격이 분할되지 않아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세율이 상이하지만 하면 課稅價格이 분할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류 부분품, 시약류 등 소액다종품목의 신속통관을 도모하도록 했다.

다) 關稅事後納付制度의 實施根據 마련

여행자가 입국할 때 關稅를 납부할 수 없어 휴대품을 稅關에 유치하고 나중에 찾아가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신용 있는 자로서 關稅廳長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物品을 검사현장에서 인도하고 관세를 후불할 수 있도록 했다.

라) 郵便物通關 節次 簡素化

서신 이외의 모든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전량 목록작성 및 검사토록 되어 있어 매일 수천건에 달하는 국제우편물 가운데 과세상 불필요한 郵便物에 대해서도 목록을 작성하고 檢査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인력의 낭비 및 송달지연 등 불편을 초래해 왔는데 關稅廳長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목록작성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規程을 合理的으로 조정했다.

마) 其他

輸入申告前에도 가격신고만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課稅換率의 결정도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에 고시된 외국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미리 정하도록 하여 세액산정의 지연에 따른 통관지연을 防止하도록 했다.

2) 徵收制度의 改善(1988年 1月 1日 施行)

가) 納稅義務者의 範圍擴大

체납된 關稅를 확보하기 위해 納稅를 보증한 자에 대해 보증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제2차 납세의무도 법인의 체납시 無限責任社員 및 寡占株主에 한정하던 것을 법인의 해산시에는 그 청산인, 출자자의 체납시에는 그 법인, 사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 등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담보가 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도 物的納稅義務를 부여했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關稅法에 수용함으로써 納稅義務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정수가능한 관세의 脫漏를 방지하고 관세채권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나) 滯納加算金制度 改善

關稅를 滯納한 경우에는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 그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 및 벌과금 성격으로서의 가산금을 徵收하는데 현행 가산금률은 과거의 고금리·고물가체계를 기준으로 策定하고 벌과금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 납세자의 부담이 過重하였다. 따라서 물가안정 및 저금리체계에 맞추어 負擔을 덜어 주기 위해 국세징수법과 같이 개정했다.

〈表 III-69〉 加算金率 引下

	현	행	개	정
기본가산금	납기경과 즉시: 10%		납기경과 즉시: 5%	
증가산금	납기 30일 경과시: 5% 추가 납기 60일 경과시: 5% 추가		납기후 매 1월 경과시마다 2%씩 추가 ※ 추가산금은 체납된 세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함.	

또한 關稅 등 체납된 제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다) 過誤納還給加算金 支給

滯納關稅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정수하면서 과오납부된 關稅를 환급

또는 충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로서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過誤納付한 날로부터 환급 또는 충당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 또는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還給加算金率은 국세기본법상의 환급가산금률(1일당 100원에 3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還給加算金은 과오납환급에만 적용되며 違約還給이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納付期限 調整

關稅의 납부기한을 신고납부서교부 또는 납부고지후 20일 이내로 하던 것을 15일로 단축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납부기한(15일)과 상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法適用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稅關長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뿐만 아니라 각종 內國稅도 징수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의 상이는 징세행정에 의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

마) 不服制度의 補完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期間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처분청 이외의 稅關長 또는 關稅廳長에게 이의신청 또는 審査請求(訴願)를 제기하여도 반송하지 않고 정당한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며 불복제도상의 용어를 국세기본법과 일치시켜(예 : 소원 → 심사청구) 不服制度에 의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바) 輸入物品에 대한 內國稅徵收體系의 明瞭化

稅關長이 징수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內國稅의 체납정리 및 결손처분 등을 稅關長이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규정의 불비로 인한 분쟁 소지를 없앴다.

3) 物品管理의 效率化(1988年 1月 1日 施行)

가) 藏置期間의 단력적 운용

지정장치장 및 보세장치장의 장치기간을 6개월의 범위내에서 財務部 令으로 정하던 것(財務部令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4개월)을 關稅廳長이 정하도록 했다. 이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장치기간을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체화누증으로 인한 물품관리의 혼잡을 해소하고 通關이 불가능하거나 화주가 포기한 물품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의 시장에 따른 가치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조·가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關稅廳長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공장장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稅關長이 특별한 경우에 인정하는 1년을 합하면 최장 3년까지 장치할 수 있게 되었다.

나) 保稅倉庫藏置期間의 特例

정부비축물품으로서 財務部令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장치기간(2년)의 제한없이 그 비축기간을 장치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장치기간의 特例를 인정한 것은 1983년 4월 18일부터 원유에 5%의 關稅가 부과됨에 따라 원유비축에 막대한 자금부담이 발생하므로 정부의 원유비축을 支援하기 위하여 보세창고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비축원유의 사용시까지 그 關稅負擔을 유예해 주기 위함이다.

다) 公賣物品의 課稅價格算定 基準 變更(1988年 1月 1日 施行)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공매한 경우에 關稅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매각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豫定價格遞減制度를 악용하여 正常輸入通關時보다 관세를 적게 납부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감된 가격으로 공매된 경우에도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라) 滯貨物品 등의 賣却方法 改善(1988年 1月 1日 施行)

留置(預置)된 휴대품은 유치(예치)기간이 경과하면 일반체화물품과 같이 搬出通告後 1개월이 경과해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예치)품의 장기 사장에 따른 가치감소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휴대품의 유치(예치)시 유치(예치)중의 교부와 함께 기간경과 즉시 매각한다는 뜻을 통지하여 유치(예치)품의 장기 사장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關稅廳長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 장치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체화누증을 방지하고 화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치성 외래품 등 시중유출로 密輸團束에 지장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 등 공매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공익단체 등과 수익계약 또는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公賣브로커의 介入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바. 關稅刑罰制度의 合理化

1) 無免許搬出罪 緩和

보세구역에 장치중 면허를 받지 않고 搬出하는 경우에 물품원가가 1백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해 관세포탈죄나 무면허수출입죄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처하도록 하는 보세구역 물품의 무면허반출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을 개정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아 보세장치장에 장치중 면허를 받지 않고 반출한 때 물품원가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罰金에 처하는 보세장치장무면허반출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즉 유환물품으로서 보세장치장에 藏置되었던 물품에 대해서만 무면허반출죄를 적용하도록 한정하는 한편, 물품원가의 고저에 따라 적용법규를 달리하는 모순을 시정하고 무세품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도 보완했다.

2) 關稅士의 秘密漏泄罪 新設(1984年 1月 1日 施行)

關稅士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關稅士의 秘密漏泄禁止義務(관세법 제166조의 2)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 沒收規定의 緩和(1984年 1月 1日 施行)

關稅를 일부 포탈한 경우에도 범칙물품 전부를 沒收하도록 되어 있어 그 처벌이 가혹하였기 때문에 일부 포탈시에는 납부할 전체금액 중 포탈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물품만을 沒收토록 완화하였고 不可分物이어서 일부 물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환급범의 경우에는 沒收對象이 불분명하여 법집행이 곤란하였던 점을 시정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과 같이 부정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도록 했다.

4) 報告不服履行罪 補強(1984年 1月 1日 施行)

原料品 減免을 받은 자가 제조완료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2백만원 이상의 罰金에 처하도록 했다.

3. 關稅政策 變化의 效果分析

가. 差等關稅率體系의 均等關稅體系로의 轉換

1) 肯定的 效果

關稅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명목관세구조보다는 제품에 대한 관세에서 生産要素에 대한 관세를 제외한 實效保護率을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1970年代 이래 크게 대두되었다. 한국의 實效保護率

을 실증적으로 추정한 연구는 南宗鉉(1981), 金光錫·洪性德(1982), 朴成浩(1988), 柳京得(1989)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들간의 算出結果의 비교를 통해 연도별·加工段階別 名目保護率 및 實效保護率 推移를 보면 <表 III-70>과 같다.

<表 III-70> 年度別·加工段階別 名目保護率 및 實效保護率 對比表

(單位: %)

	명 목 보 호 율				실 효 보 호 율			
	1978	1982	1985	1988	1978	1982	1985	1988
농림수산물	47.1	66.3	13.1	3.8	67.5	74.3	13.4	7.5
광업 및 에너지	-30.9	0.3	8.9	6.4	-39.7	-1.7	9.7	-91.8
가공식품	32.0	19.8	46.0	1.2	-15.1	-48.8	53.4	2.6
음료 및 연초	20.9	12.2	39.5	31.9	31.4	15.0	82.4	18.6
건설자재	-10.3	26.3	17.2	10.6	-17.9	51.1	20.9	9.5
제1중간재	-4.9	14.6	23.5	7.3	-30.3	61.9	26.9	3.3
제2중간재	-2.5	19.2	18.3	7.2	2.9	39.6	20.5	12.9
비내구소비재	15.6	21.3	18.4	9.5	53.3	42.4	23.1	4.5
내구소비재	41.2	26.1	5.2	55.3	156.9	52.5	5.5	-38.7
기계	15.5	22.6	14.4	6.8	39.1	31.3	17.0	12.8
수송장비	20.7	33.0	19.0	3.8	109.9	123.9	22.2	5.1
전산업상품	12.7	31.7	15.1	7.2	26.0	48.9	17.1	1.5
1차산업상품	34.3	60.5	10.2	-	49.4	66.7	10.8	-
제조업제품	6.6	19.4	17.4	-	7.5	28.2	20.2	-

註: 1. 實效保護率은 Balassa 方法에 의해 산출된 것임.

2. 제조업제품에는 가공식품이 포함됨.

3. 1988년의 名目保護率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4. 1988년의 實效保護率은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資料: 1988년은 韓國銀行의 IO Table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1978년, 1982년, 1985년은 각각 아래 資料를 참조함.

남중현, 『韓國의 産業誘引政策과 産業別 保護構造 分析』, 1981.

한국개발연구원, 『産業政策의 基本課題와 支援施策의 改編方案』, 1982.

유경득, 『實效保護率測定에 의한 關稅率調整에 관한 연구』, 1989.

최낙균·신현수, 『UR이후 저관세율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방향』, 산업연구원, 1992. 10, p. 38.

물론 각 研究는 調査對象品目 및 그 수 그리고 名目保護率 등에 차이가 있고 技術水準의 변화나 産業構造의 변동으로 投入算出係數가 달라지므로 단순한 대비는 큰 의미가 없으나 대체적인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전품목 평균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이 1978년의 각각 12.7%, 26.0%에서 1982년에는 31.7%, 48.9%로 높아졌다가 1985년에는 15.1%, 17.1%로 다시 낮아졌으며 1988년에는 각각 7.2%, 1.5%로 크게 낮아진 것은 관세율 인하예시제의 실시 및 美國 등 交易相對國과의 通商摩擦로 輸入自由화와 關稅引下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實效保護率의 수준이 계속 낮아지는 것과 함께 1988년을 기준으로 볼 때 鑛業 및 에너지와 내구소비재를 제외하고는 산업간의 實效保護率의 수준이 5~15% 내외로 均等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산업간에 격차가 심한 名目關稅率을 均등한 名目關稅率으로 이행함에 따라 차등 관세율 체제하의 實效保護率이 산업간에 차이가 컸던 것이 均등관세율 체제하에서는 산업간에 實效保護率의 격차가 많이 완화된 결과로 평가된다.

2) 否定的 效果

우리나라가 관세인하예시제에 따라 均等關稅를 부과하는 것은 내수산업에 대한 과잉보호철폐로 수출지향적 産業基盤을 확립하는 한편 조립 가공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사 1984년부터 均等關稅率體系로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1980년 초반까지 시행되었던 差等關稅率體系의 영향으로 완제품 조립·가공부문은 크게 발전하였으나 일반기계 등 생산재부문과 부품소재 등 중간재부문은 아직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계·부품·소재산업의 낙후는 산업의 경쟁력을 全般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주로 일본으로부터의 輸入에 의존함으로써 우리나라 조립업체들의 輸出增大에 따른 산업간 파급효과가 일본의 기업으로 누출되고 이에 따라 대일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1990년 우리나라 重化學工業製品 수출의 48.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對日貿易收支 적자의 40.3%를 기록하고 있는 전기·전자산업에 대해 살펴보자. 이 産業은 조립 위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核心 및 高價部品の 海外依存度가 높아서 생산 및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設備와 部品の 수입을 늘려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表 III-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전자제품 수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部品の 수입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증대 되어도 산업간 波及效果가 국내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선진국, 주로 日本으로 누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表 III-71> 電氣·電子製品 輸出 및 電子部品 輸入 現況(1988~1992年)

(單位:百萬元, %)

	1988	1989	1990	1991	1992
전기·전자제품수출	16,255	17,087	17,816	20,157	21,573
		(5.1)	(4.3)	(13.1)	(7.0)
전자부품수입	5,414	5,824	6,188	6,973	7,668
		(7.6)	(6.3)	(12.7)	(10.0)

註: () 안은 前年 對比 증가율임.
 資料: 상공자원부, 『수출통계』, 각 연도.
 ———, 『수입통계』, 각 연도.

나. 關稅率의 持續的 引下에 따른 效果

1) 物價引下 效果

1984년에 導入된 均等關稅率體系 시행에 따라 1982년 기준 물가인하 효과는 도매물가 기준 0.004%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物價引下率: -0.004%

$$\left[\frac{243\text{億달러(輸入規模)}}{600\text{億달러(GNP)}} \times \frac{-0.00011(\text{實效徵收減少率})}{1+0.057(\text{實效徵收率})} \right]$$

〈表 Ⅲ-72〉 部門別 關稅率 引下效果

	관세인하 품목	관련물품 가격인하
化學産業	암모니아(30% → 10%)	아크릴섬유(-5%) 나일론섬유(-5%)
鐵鋼産業	鐵鋼의 핫코일(15% → 10%) 線材(15% → 10%)	鐵板(-3%) 鐵筋(-3%)
纖維産業	原毛(30% → 20%) 化纖絲(30% → 20%)	毛絲(-5%) 毛織物(-3%) 化纖織物類(-6%)
皮革産業	原皮(20% → 10%)	皮革原緞(-5%) 구두(-2%)
製紙産業	펄프(10% → 5%)	紙類(-3%)
고무産業	천연고무(13% → 10%)	타이어(-0.9%) 운동화(-0.6%)

한편 제2차 관세율인하예시계획에 따른 物價引下效果는 1989년과 1993년에 각각 도매물가기준 0.54%, 1.02%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73〉 物價引下效果 總量分析(都賣物價 基準)

(單位: %)

	관세 10% 인하시 물가효과 ¹⁾	1989		1993	
		관세인하율	물가인하효과	관세인하율	물가인하효과
전 체	0.18	29.8	0.54	56.3	1.02
공 산 품	0.16	33.7	0.53	63.3	1.01
농 산 품	0.02	18.2	0.04	34.1	0.07

註: 1) 관세인하에 따른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 하락 및 관련산업 제품가격에의 파급효과(1985년 I/O Table 기준).

資料: 韓國銀行

〈表 Ⅲ-74〉 部門別 引下效果 例示(1989年 基準)

	관세인하 품목	관련물품 가격인하
화학산업	암모니아(10 → 2%)	비료(-4.3%)
섬유산업	원모(10 → 2%)	모직물(-4.2%)
고무산업	천연고무(10 → 2%)	승용차 타이어(-2.0%)
철강산업	철강의 슬립(10 → 5%)	중후판(-4.3%)
비철금속산업	전기동(20 → 10%)	동파이프(-6.0%) 전선(-7.0%)
공구산업	코발트파우더(20 → 5%)	초경공구(-2.3%)

2) 輸入需要 效果

1984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개편 關稅率에 따라 1982년 기준시 150~200만달러의 수입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輸入需要 效果分析(算出根據)

※ 產出根據

方法 I : 輸入需要의 關稅彈力性 model

○算式 : $m = n \left(t - t \frac{f_1}{1 - f_2 g} \right)$

- | | |
|-------------------------------|--|
| m : 輸入增減率
(0.0084%) | f ₁ : 輸入物價의 國內價格 彈力性值
(0.4789) |
| n : 輸入需要 價格彈力性值
(-0.4609%) | f ₂ : 名目貨金의 國內價格 彈力性值
(0.7130) |
| t : 實效關稅 變動率
(-0.0379%) | g : 國內物價의 貨金 彈力性值
(0.1685) |

○輸入展望 : 200萬달러 增加

[1982 輸入實績 × 豫想輸入增加率]
 [(242億 5,100萬 (0.0084%))]
 달러)

方法 II : 換率變動이 輸入需要에 미치는 效率分析 model

○算式 : 換率 10% 引上時 輸入需要 1.6% 減少

$$\begin{aligned} \cdot \text{輸入增減率} &= \frac{-1.6\%}{10\%} \times -0.0379\% (\text{實效稅率 引下率}) \\ &= 0.0061\% \end{aligned}$$

○輸入展望 : 150萬달러 增加

$$\cdot \{1982 \text{ 輸入實績}(242 \text{億 } 5,100 \text{萬달러}) \times \text{豫想輸入 增加率}(0.0061\%) \}$$

資料 : 韓國銀行

3) 關稅收入 減少 效果

1983년의 관세율 전면개편에 있어서의 관세 세수효과는 가급적 세수 결함이 없도록 調整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1984년에 새로운 關稅率 시행에 따라 1982년 기준시 65억원의 減少를, 관세감면 축소나 분할납부확대에 따라 59억원의 增加를,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감소에 따른 內國稅 13억원 감소를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1982년 기준으로 19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1988년의 관세율 전면개편에 있어서 관세 세수효과는 關稅率을 과감히 인하하였기 때문에 1988년 기준시 징수추정액 기준으로 1989년에 징수추정액의 27.7%에 달하는 538억원, 1993년에 징수추정액의 53.6%인 866억원으로 추정되었고 關稅稅收 변동에 따르는 內國稅 감소(1989년 기준 899억원)를 감안한다면 關稅 등 세수 감소효과는 1983년의 관세개편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表 Ⅲ-75〉 關稅率 改編에 따른 關稅 稅收效果

(單位 : %, 10億원)

	현 행 (1988)	조 정	
		1989	1993
실 효 세 율	6.48	4.69	2.93
징 수 추 정 액	2,483	1,945	1,617
〈예 산 액〉	〈2,181〉		
세 수 감	-	-538 (-236)	-866 (-564)

- 註 : 1. () 안은 예산액 대비 세수감입.
 2. ① 수입규모 : 1988년(525억달러), 1989년(610억달러), 1993년(920억달러)
 ② 환 율 : 1988년(730원), 1989년(680원), 1993년(600원)
 ③ 원유관세 : 1988년(10%), 1989~1993년(5%)
 3. 실효세율은 1988년 1~5월 수입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4. 關稅 稅收變動에 따른 內國稅 減少 : 553억원(1989년).

〈表 Ⅲ-76〉 財政寄與率 및 關稅負擔率 變化

(單位 : %)

	현 행 (1988)	조 정		외 국 (1986)		
		1989	1993	대 만	일 본	미 국
재 정 기 여 율	13.1	9.1	4.2	16.9	1.9	1.4
관 세 부 담 륜	2.3	1.6	0.9	2.2	0.14	0.27

[圖 III-6] 關稅 關聯制度 改編 結果 比較 (1982年 基準)

(單位：億圓)

		現行 1982	調 整		
			1984	1988	
關稅率 構造改編 -65億圓	稅率引下	基礎原料	1,702	-165	-401
		投入財・生産財	6,867	-268	-998
		一般消費財	401	-43	-194
	合 計	8,970	-476	-1,593	
稅率引上	機 械 類	784	193	107	
	鑛 物 類	-	134	134	
	農 產 物	372	84	84	
	小 計	1,156	411	325	
總 計		10,126	-65	-1,268	

	減 免 額		稅 收 增 減	
	1982	1984		
關稅支援 制度改編 59億圓	減 免 縮 小	1,311	1,077	+234
	分 割 納 付 擴 大	-	-175	-175
	總 計	-	-	+59

內國稅變動 -13億圓	附加價值稅減少：-1億圓
	特別消費稅減少：-12億圓

다. 産業別·高關稅·高減免 方式에서 機能別·低關稅·低減免 方向
으로 關稅減免 運營方向 轉換

1) 肯定的 效果

産業別 關稅減免제도가 關稅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점을 감안하여 重要産業에 對한 減免지원제도는 점진적으로 縮小·廢止하는 반면 生産성 향상과 技術의 研究·개발 物품, 環境보전 및 산재예방 관련物품에 對한 減免範圍는 확대하여 왔다. 이의 結果 産業別 關稅減免은 점진적으로 縮小되었고 機能別 減免은 점진적으로 增加하는 추세를 보였다(〈表 Ⅲ-77〉참조).

〈表 Ⅲ-77〉 關稅減免額 推移

(單位: 億圓, %)

	1980	1985	1990
關稅徵收額(A)	7,661	15,661	27,654
關稅減免額(B)	1,853	2,982	2,776
(B/A+B)	(19.5)	(16.0)	(9.1)
기업減免(C)	1,210	1,543	1,284
(C/B)	(65.3)	(51.7)	(46.3)
산업減免(D)	1,210	1,500	1,107
(D/C)	(100.0)	(97.2)	(86.2)
기능減免(E)	0	43	177
(E/C)	(0)	(2.8)	(13.8)

資料: 財政經濟院

2) 否定的 效果

가) 關稅收入의 減少

그동안 關稅減免制度를 關稅 수입 減少의 觀點에서 살펴보면 1983년 12월 31일 關稅法 개정으로 重要산업 減免세폭을 대폭 축소하였고 1989년 1월 1일 關稅法 개정시에 同法 제28조 ‘기술개발주도산업임시감세’와

제28조의 3 방위산업용품감면세 중 제1항 제1호의 '防衛産業製品の製造・加工・修理・整備用施設機械類 및 基礎設備品' 減免을 삭제함으로써 減免稅의 폭이 또다시 대폭 축소되었다. 이의 결과로 관세감면액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총징수 가능액의 10~20%를 關稅減免으로 세금경감을 하였다(〈表 Ⅲ-78〉 참조).

〈表 Ⅲ-78〉 關稅徵收額 및 減免額 推移

(單位: 億圓, %)

	1980	1988	1990
관세징수액(A)	7,661	15,661	27,654
관세감면액(B)	1,853	2,982	2,776
(B/A+B)	(19.5)	(16.0)	(9.1)

資料: 財政經濟院.

나) 産業間・品目間 均等關稅率 策定原則을 크게 沮害

우리나라는 1983년, 1988년 두차례에 걸쳐 전례없는 대폭적인 關稅政策의 改編을 단행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품의 가공도에 따라 다른 關稅率을 적용하는 差等關稅率制度에서 탈피하여 均等關稅率制度로 이행한 것과 平均關稅率의 대폭적인 引下라고 할 수 있다. 均等關稅率制度로의 이행은 정부 주도형의 보호와 支援政策에서 파생된 問題點을 조속한 시일내에 불식하고 대내외 競爭體制를 정착시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민간주도형 經濟體制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1980년대의 산업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며 平均關稅率의 引下는 그동안 국내산업 발전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8% 중심세율이 책정되어 거의 대부분의 세율을 8%로 책정한 바 있으나 關稅減免制度를 통하여 현행 關稅率을 경감 내지 면세하게 되면 對産業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해 8% 중심세율로 수렴한 기본방향을 품목별로 깨뜨리는 결과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均

等關稅率制度라는 기본정신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고 하겠다.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이 對産業 중립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립된 이상 각 정책수단은 그러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運營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일부 유지되고 있는 特定産業別 關稅減免制度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다) 産業別 關稅減免의 特定性 問題, 大企業 集中 및 中小企業 疎外

産業減免의 경우 支援對象物品이나 업종을 지정하고 對象品目 및 규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정보력면에서나 투자계획 준비성이 앞서는 대기업 위주로 運營될 수밖에 없다는 면이 있다. 1990~1993년 4個年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減免規模가 큰 순위별로 놓아 보면 상위 10개 기업이 産業別 減免의 68~85%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이들 기업이 다른 많은 업체에 비하여 當該年度에 施設投資 規模가 컸다고도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製造業 총수 8만여개(5인 이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關稅減免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투자시 사전에 투자규모·도입설비나아가 구체적인 규격을 알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정성이 있는 産業減免支援 規模는 미미하게 된다.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의 『중소기업의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1992. 12)에 따르면 매출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기업의 95%가 내국세 등 支援制度에 대하여 정보도 없고 利用實績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關稅減免을 시행함에 있어 品目別 指定方式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품목별 輸入實績이나 減免支援額 및 당해품목의 산업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품목지정 여부도 단순히 국산화 여부, 통관상 마찰여부 등 피상적인 기준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품목별 지정방식은 자연히 특정 신청기업의 도입계획중인 규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 여타 기업이 類似物品을 수입하는 경우 減免規格과 달라 적용을 못 받게 되는 排他性의 問題를 안고 있다 하겠다.

라. 關稅減免에 따른 事後管理 負擔 加重

일반적으로 政策的 필요에 따른 免稅에는 일정한 조건이 붙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일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것, 특정한 업체에서만 사용할 것 등의 조건이 붙게 되면서 行政機關은 그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確認節次는 그 對象이 커짐에 따라서 확인기관으로서도 커다란 부담이 되며, 免稅를 받는 者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事後管理 과정에서 조건 불이행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關稅犯으로 處罰 또는 關稅를 추징하게 되지만 이 또한 行政的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關稅率 引下豫示計劃이 종결됨에 따라 關稅率이 낮아지고 면세율도 낮아져 실제감면에 따른 혜택(예를 들어 關稅 8% 품목에 대하여 35% 減免 받는 경우 減免效果는 수입액 대비 2.8% 불과)이 줄어들었음에도 事後管理의 강조(사후 관리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는 종전과 같아 기업의 불만도 크고 규제완화 등 간소화 요구도 큰 실정이다.

第 6 節 關稅政策의 第 2 次 變革期(1990年代)

1. 興件

가. 對外興件

世界는 구소련의 붕괴, 독일 통일 등으로 동서간의 냉전이 종식되고 국가간 經濟優先主意가 팽배해지면서 인접국가간 경제결속을 강화하는 지역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深化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후 世界經濟를 주도해 온 GATT체제가 최근 공식해체되고 WTO가 그 임무를 교대하게 되었다. WTO의 출범으로 세계의 貿易秩序가 근

본적으로 재편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貿易環境이 조성되게 되었다. 즉 UR협상의 타결로 工產品 및 農·水·畜產品에 대한 관세가 앞으로 4~9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되고, 통관관련 知的財產權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며, 조달시장 및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등 세계 경제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새로운 국면 속으로 가고 있다

세계적인 産業化·都市化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규제를 위해 先進國과 UNEP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협의가 활발히 진행중이고 최근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環境問題를 고려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질서 형성에 대한 논의(Green Round)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市場開放의 확대로 세계는 국경 없는 무역(Borderless Trade)이 이루어지고 지구촌 경제권(Globalization)이 형성됨으로써 세계각국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先進工業國들이 첨단핵심기술의 이전을 기피하는 기술보호주의, 기술패권주의를 強化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나. 産業政策의 基調

1980년대초에 정립한 産業政策의 기본기조 곧 대내의 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산업의 競爭을 강화하여야만 치열한 國際競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경제체질 배양이 계속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재벌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政府는 1991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재벌에 대한 업종전문화 시책을 시행하였다. 業種專門化 시책의 기본취지는 재벌이 과다하게 여러 업종에 참여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재벌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주력업체 혹은 업종에 집중함으로써 기업을 대형화하여 國際

競争力を 강화하자는 것이다. 業種專門化 시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1년부터 시행된 첫번째 시책은 주력업체제도로써 여신관리제도 내에서 업종전문화를 추진하려는 것이었고, 1993년 10월에 발표되어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두번째 시책은 주력업종제도로써 여신관리 등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두 시책의 차이점은, 첫번째 시책은 정부의 市場介入이 주로 여신관리 등 金融 次元에서 이루어졌던 반면에 두번째 시책은 본격적인 産業政策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설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業種專門化 시책의 시행으로 自由競争市場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198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시행되어 온 산업조직정책의 목표와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貿易政策의 基調

1990년대의 貿易政策의 기본방향은 수출경쟁력 보강을 통한 수출신장 도모, 무역확대기반 확충 및 무역구조의 고도화, 수입개방의 효율적 추진, 무역제도의 선진화 등에 두었다.

1990년대의 輸出振興政策의 특징은 수출신장을 위하여 수출경쟁력을 보강하고 수출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이 시행되었는바 유망 수출상품의 세계 일류화 추진, 수출자율규제 등 輸出秩序 確立 등이 추진되었다(〈表 Ⅲ-79〉 참조).

1990년대에는 수입개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입자율화, 개별법에 의한 수입관리제도 정비, 수입선다변화품목 조정, 무역전산화 등이 실시되었다.

〈表 Ⅲ-79〉 輸入自由化 推移(1990年代)

(單位:個, %)

	총 수 입 품 목 수	수 입 금 지 품 목 수	수 입 제 한 품 목 수	수 입 자 동 승인 품목수	수 입 자 유 화 율
1991	10,241	-	283	9,991	97.2
1992	10,274	-	240	10,034	97.7
1993	10,417	-	199	10,220	98.1
1994	10,502	-	150	10,352	98.6
1995	10,502	-	101	10,401	99.0
1996	10,859	-	76	10,783	99.3

資料: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93.

라. 換率政策의 基調

1990년 3월 2일부터 종래 10여년 동안 시행돼 온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폐지되고 市場平均換率制度가 채택되었다. 市場平均換率制度下에서 외국환은행간의 원화의 대미달러환율 1일변동 허용범위는 상하 각각 1%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同 制度가 도입된 것은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마. 密輸의 推移

1990년대에는 密輸品目으로 사치품목인 골프채, 대형 TV, 냉장고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삿짐을 가장한 密輸入 手法이 빈발하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을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행위가 나타나 그 처벌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다국적기업의 등장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우회수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輸出 및 輸入기업 간의 담합에 의한 원산지조작, 품목 허위신고 등의 고도의 지능적 수법이 기업밀수의 대중을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 농산물가격이 급상승하자 중국으로부터의 가격차이를 노린 참깨, 인삼, 순록뿔 등 농림수산물의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

2. 關稅政策의 變化 內容

가. 物流促進을 위한 輸出入通關制度的 劃期的 改選

1) 輸出入免許制를 輸出入申告制로 轉換(1996年 7月 1日부터)

物品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稅關長은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物品이 保稅裝置場에 搬入된 후 輸入申告를 하도록 하던 것을 入港前 後부터 許容(1996年 7月 1日 施行)

保稅區域에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도 수입신고하여 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 搬入하지 아니하고 부두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의 흐름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특히 신속한 通關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입항전에 輸入申告하고 특별한 사유(검사대상 등)가 없는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하여 즉시 물품을 반출하도록 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하고 업계를 지원토록 하였다.

3) 輸出物品에 대한 保稅運送 省略(1996年 7月 1日 施行)

輸出申告後 보세운송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운송하고 수출자가 30일 이내에 輸出物品을 보세구역에 搬入·船積하도록 하였다.

4) 輸出物品의 保稅區域藏置義務制 廢止(1994年 1月 1日 施行)

輸出物品의 保稅區域藏置義務制를 폐지하여 제조된 장소에서 곧바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5) 關稅納付節次·方法 등의 改善(1991年 1月 1日 施行)

가) 納稅者가 신고납부한 관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稅額 納付 전에는 보정의 방법으로 간이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납세자가 스스로 과소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追加納付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나) 輸入物品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와 납세신고를 위하여 납세자의 청구에 따라 사전회시된 品目分類를 종전에는 당해 納稅者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과세가격의 산정이 곤란한 물품은 關稅廳長에게 사전에 이를 심사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빈번하게 수출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수출시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의 輸出分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輸出入申告時 경미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제출서류의 미비시에도 먼저 수출입면허를 하고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속한 通關을 위하여 關稅廳長은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關稅의 事後納付制 導入(1996年 7月 1日 施行)

物品搬出後 관세를 납부하게 하여 輸入節次와 納稅節次를 분리시킴으로써 신속 통관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物品搬出前 담보제공은 신용도에 따라 대폭 생략하여 담보제공 없는 완전한 사후납부제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7) 輸出申告를 할 수 있는 者의 範圍를 擴大(1996年 7月 1日 施行)

完製品 공급자는 수출물품을 선적할 때까지 업무처리를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완제품 공급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로 중소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나. 輸出入者 便宜 中心의 關稅行政 確立을 위한 保稅制度 및 減免制度의 改善

1) 保稅區域 搬入 및 保稅運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1996年 7月 1日 施行)

保稅區域 搬入 및 保稅運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도록 하고 보세운송발송보고를 생략하여 보세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였다.

2) 品目分類 變更으로 인한 善意의 輸入者 被害救濟(1996年 7月 1日 施行)

品目分類 變更時 수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일 이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변경전 品目分類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3) 컨테이너에 대한 無關稅 措置(1996年 1月 1日 施行)

輸出·輸入이 반복되며 대부분 재수출면세를 받는 컨테이너의 關稅率을 無稅로 하여 면세에 따른 사후관리절차를 폐지하였다.

4) 減免物品을 系列中小企業에 貸貸하는 경우에도 減免承繼를 許容(1996年 1月 1日 施行)

5) 申告納付書交付制度 廢止(1994年 1月 1日 施行)

申告納付書交付制을 폐지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편리한 시점과 장소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國內産業被害救濟制度를 國際法에 맞게 補完

- 1) 덤핑防止關稅賦課對象을 수출자 및 수출국으로 하던 것을 생산자 및 생산국도 포함한 개념인 供給者 또는 供給國으로 하여 우회덤핑수입을 방지하는 등 국내 관련법규를 세계무역기구의 덤핑防止關稅協約과 일치시켰다(1996年 1月 1日 施行).
- 2) 緊急關稅의 부과수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중단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緊急關稅規程을 보완하였다(1996年 1月 1日 施行).
- 3) 덤핑防止關稅 등 탄력관세의 부과대상 및 세율 등을 財務部令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산업피해가 신속히 구제되도록 하였다(1994年 1月 1日 施行).
- 4) UR협상에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를 關稅法에 마련하여 저가 농·림·축산물의 일시적 수입증대로 인한 국내 농·림·축산물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였다(1995年 1月 1日 施行).
- 5) 輸入自由化에 따른 농·림·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수산물 수입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을 가산하여 關稅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였다(1991年 1月 1日 施行).

라. 市場開放 擴大 對備 및 公正貿易 誘導(1994年 1月 1日 施行)

GATT 제5위 貿易國에 걸맞는 공정무역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보호 및 원산지표시 확인제도의 도입 등 稅關監視機能을 強化하였다. 즉 상표권·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단속 근거를 마련하였

으며 세관이 통관심사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함으로써 국내소비자·생산자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通關된 물품이라도 관세법 위반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세구역 안으로 반입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하였으며, 특정용도로 수입된 물품이 반출 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시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마. 關稅減免 制度의 整備

- 1) 첨단기술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關稅減免對象을 현재 일부에 한정하던 것을 첨단기술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그 적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으나 이를 다시 1997년까지 연장하되 그 감면율을 1994년 50%, 1995년 40%, 1996년 30%, 1997년 20%로 매년 10%씩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고도기술이 수록된 産業用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輸入하는 경우 그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였다(1991年 1月 1日 施行).
- 2) 生産性 向上을 위하여 사용될 공장자동화기기 및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그 關稅를 감면하도록 하였다(1991年 1月 1日 施行).
- 3) 國民生活環境 改選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설립한 법인이 환경오염측정·분석용기기와 상수도 수질측정, 보전·향상 및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 그 關稅를 減免하도록 하였다(1991年 1月 1日 施行).
- 4) 동일한 物品의 재수입 또는 재수출의 경우 關稅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재수출기간을 3월 내지 1년에서 6월 내지 2년으로 연장하여 輸出業體 등의 부담을 완화하였다(1991年 1月 1日 施行).

- 5) 中小企業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關稅를 분할하여 納付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관세분할납부대상이 되는 研究機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1991年 1月 1日 施行).
- 6) 特定產業에 대한 감면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반면, 공장자동화기계의 핵심부품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機能別 關稅減免制度를 보강하였다(1994年 1月 1日 施行).
- 7) 關稅減免物品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장기간의 사후관리로 인한 업계의 負擔을 완화하도록 하였다(1994年 1月 1日 施行).

바. 保稅制度의 補完

- 1) 增加하는 수출입물동량에 대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공항 또는 항만시설을 稅關當國이 해당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保稅區域 외의 지역에 장치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모든 수출물품으로 擴大하는 한편,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부적당한 수입물품으로까지 확대하되, 보세화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特定物品에 대하여는 이들 물품의 적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物品管理에 관한 경험을 가진 자를 고용하고 있는 設營人에 대하여는

물품반출입에 대한 신고, 稅關公務員의 참여 등의 절차를 생략하여 그가 운영하고 있는 보세구역이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설명인은 반출입 상황을 정기적으로 서면보고하도록 하였다.

사. 關稅行政의 電算化

- 1) 輸出申告 등을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 또는 통지 등은 전산처리설비에 갖추어진 파일에 등록되었을 때 稅關 또는 輸出入業者에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통지 등이 등록된 후 통상적으로 出力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당해 통지 등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 2) 電算處理設備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關稅士法 制定

기존 관세법 중 關稅士 관련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關稅士法으로 제정함으로써 關稅士의 책임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원활한 關稅士制度의 운용을 도모하였다.

자. 輸出入貨物의 不法流通 防止

- 1) 不正外來品の 시증유통단속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常設營業場에 대하여는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된 물품임을 판매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行政秩序犯則 中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벌의 형평을 유지하며, 또한 법적 罰金額을 상향 조정하여 20만원을

50만원으로, 30만원은 100만원으로, 50만원은 150만원으로 하였다(1991年 1月 1日 施行).

- 2) 通關後 違法事實이 발견된 物品을 保稅區域에 반입시킬 수 있도록 하여 通關節次의 간소화에 따른 不法物品의 반출과 國內流通의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하였다(1994年 1月 1日 施行).
- 3) 知的財産權 侵害物品을 通關段階에서 稅關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知的財産權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1994年 1月 1日 施行).

차. 國民의 權利救濟 機會의 擴大(1995年 1月 1日 施行)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하급심 결정이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國民의 權利救濟 기회를 확대하였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심사청구를 법정기간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내에 請求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 關稅率引下豫示制 1年 順延

1) 背景

1990년 12월로 防衛稅法이 폐지됨에 따른 재정수입 보전대책(1990년 예산기준 : 총재정수입 27조원, 방위세 3조 5천억원, 輸入分 방위세 7,500억원)의 일환으로 시한만료 輸入分 방위세를 關稅로 일부 한시적으로 흡수·조정하고자 關稅率引下 5개년 예시제를 1년씩 순연시킨 것이다.

즉 그동안 수입물품에는 關稅 이외에 防衛稅 2.5%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는 防衛稅法의 폐지로 방위세가 없어지고 관세만 부과됨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稅負擔이 크게 감소하여 재정수입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예상되고 關稅率 측면에서 방위세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초원료 저세율, 완제품 고세율의 關稅率體系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수입도 일부 확보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를 1년씩 순연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內國稅의 경우에는 防衛稅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방위세가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본세의 稅率을 인상조정하거나 교육세로 전환하여 재정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고자 법인세·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율·소득세율을 인상 조정하고(대폭 인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방위세 폐지를 감안하여 소폭 인하조정),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경우에는 현행 防衛稅를 教育稅로 전환하여 징수하기로 하였다.

2) 主要内容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율 인하 5개년(1989~1993년) 예시제를 1991년부터 1년씩 순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도에 1990년도 관세율표 계속 적용, 1992년도에 1991년도 관세율표 적용, 1993년도에 1992년도 관세율표 적용, 1994년 이후에는 1993년 이후 관세율표 적용으로 종전의 경우보다 사실상 稅負擔이 0.5% 줄어들게 되었다.

사치성 소비재의 경우 종전에는 1991년도 關稅 13%, 防衛稅 2.5% 합산 15.5%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었으나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관세만 16%를 負擔하게 되어 종전의 경우보다 사실상 稅負擔이 0.5% 늘어나게 되었다(〈表 Ⅲ-80〉 참조).

3) 效果

關稅率이 낮은 기초원료의 경우 1991년도부터 防衛稅 2.5%가 없어지는 데 반하여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가 1년 순연되어도 關稅率이 당초와 동일하거나 1% 정도 높아지므로 실제적인 稅負擔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에 소비재의 경우 관세율인하 5개년 예시제가 1년 순연되면 關稅率

〈表 Ⅲ-80〉 關稅率 引下 5個年 豫示制 1年 順延 內容

(單位：百萬元)

	종 전				개 정				
	1990	1991	1992	1993 이후	1990	1991	1992	1993	1994 이후
비경쟁 원료	1 (3.5)	1 (3.5)	1 (3.5)	1 (3.5)	1 (3.5)	1 (1)	1 (1)	1 (1)	1 (1)
	2 (4.5)	2 (4.5)	2 (4.5)	2 (4.5)	2 (4.5)	2 (2)	2 (2)	2 (2)	2 (2)
경원료	5 (7.5)	4 (6.5)	4 (6.5)	3 (5.5)	5 (7.5)	5 (5)	4 (4)	4 (4)	3 (3)
1가 공 품	10 (12.5)	9 (11.5)	7 (9.5)	5 (7.5)	10 (12.5)	10 (10)	9 (9)	7 (7)	5 (5)
중완재 및 소비재	13 (15.5)	11 (13.5)	9 (11.5)	8 (10.5)	13 (15.5)	13 (13)	11 (11)	9 (9)	8 (8)
사치 소비재	16 (18.5)	13 (15.5)	10 (12.5)	8 (10.5)	16 (18.5)	16 (16)	13 (13)	10 (10)	8 (8)

註：() 안은 방위세를 포함하였을 경우의 세율이며, 「종전」란은 방위세가 계속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의 세율임.

이 당초보다 2~3% 높아져 실제적인 稅負擔이 0.5%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므로 기초원료 저세율, 완제품 고세율의 關稅率 體系가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輸入分 방위세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분(약 9천억원) 중 일부(약 5천억원)를 보전할 수 있다.

3. 關稅政策 變化의 效果分析

가. 輸出入申告制 導入 등 物流促進을 위한 輸出入通關制度의 劃期的 改善

通關節次의 일대전환으로 輸入通關 소요시간은 入港에서 輸入申告受理까지 종전 약 14일 소요되던 것이 2~3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종전 약 14일 소요되던 輸入通關 소요시간이 그 4분의 1인 2~3일로 단축될 경우 대부분의 輸入通關은 수입신고 즉시 수리되어 輸入貨物 入港後 荷役과 동시에 工場으로 이송할 수 있는 制度的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表 Ⅲ-81〉, [圖 Ⅲ-8] 및 [圖 Ⅲ-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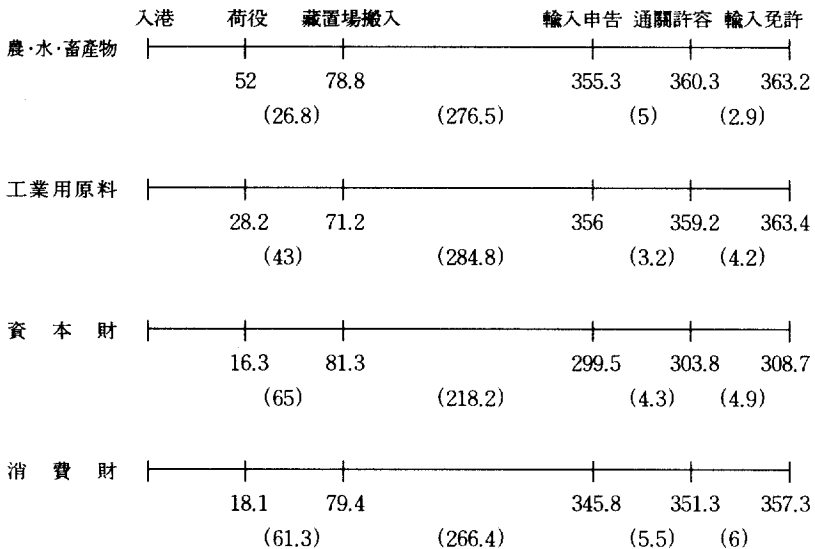
〈表 Ⅲ-81〉 制度改善 以後 輸入通關 所要時間 比較

從	前	改	善
관 련 제 도	소요시간	관 련 제 도	소 요 시 간
免許制度 · 入港 → 輸入免許 · 輸入申告 → 輸入免許	13일 9시간 8.3시간	輸出申告制 · 入港 → 輸入申告受理 · 輸入申告 → 輸入申告 受理	2~3일 즉시(수입검사 품목은 제외)
檢査比率	30%	檢査比率 ¹⁾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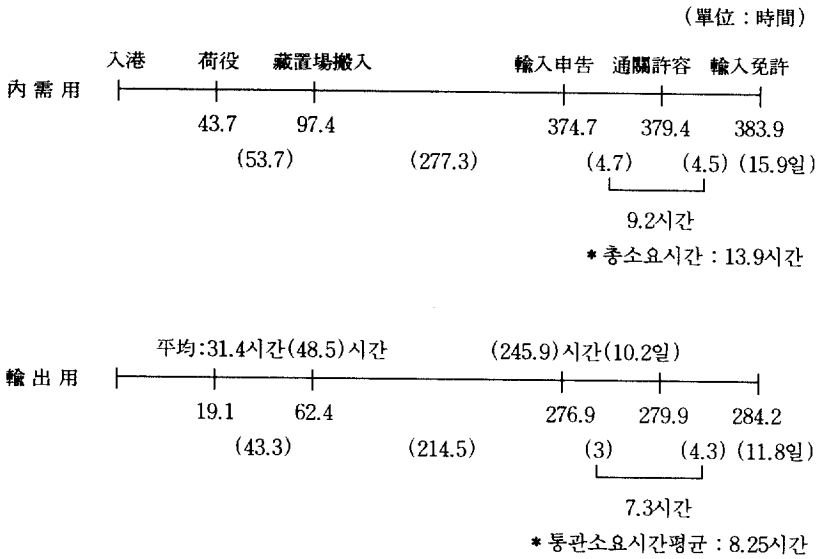
註：1) 1995년 기준 검사비율은 20% 수준이나 앞으로 10% 수준으로 인하 전망.

[圖 Ⅲ-7] 輸入免許制下에서의 品目別 通關所要時間

(單位：時間)



[圖 III-8] 輸入免許制下에서의 用途別 通關所要時間



1996년 7월 1일부터 輸入申告制 導入에 따른 신고서 처리 소요시간을 1996년 8월 28일에서 30일까지의 기간에 수입신고된 총건수를 대상으로 陽山稅關과 光州稅關에서 실제조사한 결과 심사대상과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陽山稅關 및 光州稅關 공히 1건 처리에 24분이 소요되어 輸入申告 즉시 수리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表 Ⅲ-82〉 輸入申告制에 따른 申告書 處理所要時間 比較

○ 陽山稅關

번호	처리구분	건 수	총 소요시간 ¹⁾	1건당 평균 소요시간	비 고
1	즉시수리	207	83시간	24분	
2	심사대상	34	121시간 15분	3시간 34분	
3	검사대상	11	69시간 40분	6시간 20분	
4	처리시간 (1+2+3)	252	273시간 55분	1시간 05분	

註: 1) 서류접수시부터 완료시까지 소요시간임.

○ 光州稅關

번호	처리구분	건 수	총 소요시간	1건당 평균 소요시간	비 고
1	즉시수리	107	42시간 30분	24분	
2	심사대상	2	1시간 05분	33분	
3	검사대상	13	34시간	2시간 37분	※
4	처리시간 (1+2+3)	122	77시간 35분	38분	

註: ※ 원거리에 있는 영광원자력 발전소의 감면(10건), 시설재(3건)임.

第 4 章 綜合評價와 向後 政策方向

第 1 節 綜合評價

1. 時代區分에 따르는 評價

우리나라의 關稅法은 해방 후 1949년에 처음 제정된 이래 1990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개편되어 왔다.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변천을 먼저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政府 樹立~1950年代 : 財政關稅政策의 強力推進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까지의 關稅政策의 증점은 재정관세로서 전쟁 수행과 인플레이 수습을 위한 戰費調達 및 戰後復舊資金 조달에 주력하는 한편 전쟁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파괴되고 물자가 귀하게 됨에 따라 密輸가 성행하게 되자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세행정력이 총동원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나. 1960年代

1960年代 우리나라 產業政策은 대외지향적 공업화(수출주도형 공업화)를 기본 개발전략으로 삼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계·조선·전자 공업진흥법 등 特別法을 제정하여 특정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1960년대 전반기 : 소비재의 수입대체산업 육성, 후반기 : 소비재산업

을 포함한 수출전략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취하여 왔는바 이러한 産業政策에 부응하여 關稅政策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사전면세(主)·관세환급제도(從)·대치면세제도(從)·수출자유지역설치(從)·보세공장설영특허확대(從) 등을 통하여 관세상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4차례에 걸친 關稅率 調整을 통하여 가공단계별 차등관세율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 輸入代替産業 育成을 위한 고율보호관세(40% 내외)를 책정하는 한편 1967년 이후 개방체제로의 이행에 부응하기 위하여 彈力關稅制度를 도입하였고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특정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밀수근절 노력강화 등을 통하여 國內産業을 적극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수입수요의 억제를 통한 국제수지의 균형을 기하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팽창하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1차 및 제2차 특별관세법을 제정·시행하였고 환율의 과대평가에 따라 수입관세 遺漏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역산제에 의한 關稅評價를 하였다.

다. 1970年代

1970年代 우리나라의 産業政策은 대내지향적 공업화(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의 중점개발)를 기본개발전략으로 삼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1960年代에 이어 1970年代에도 석유화학·비철금속·섬유공업 등의 特別法을 제정하여 특정산업을 집중적 육성하는 방식을 계속 사용하여 왔는바, 이러한 産業政策 방향에 부응하여 關稅政策은 1960년대처럼 差等關稅率體系를 계속 견지하면서 중화학공업 및 관련중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경공업은 보호도를 낮추는 방향에서 關稅率 調整이 이루어졌으나 平均關稅率은 1960년대보다 평균 10% 포인트가 낮은 30.6% 수준을 견지하였다. 한편, 이 당시 기계 등 설비류에 대하여는 보편적으로는 20% 중심관세율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비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중요사업 및 국민경제 긴요물품 등

에 대하여 관세징수액의 20% 수준에서 3배에 달하는 關稅減免 支援을 하였다.

또한 産業構造의 고도화를 통하여 수출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래 조건부사전면세제도, 대치면세제도, 환급제도 중 수출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제도가 적용되던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197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還給制度를 시행하였고, 수출업계의 관세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징수유예제도를 함께 도입·운영하였다.

아울러 물자수급의 원활화를 통한 국내물가수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금기시되어 왔던 彈力關稅制度를 1974년 1월 1일부터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할당·할칙·계절관세제도 등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수출입물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1970년 8월 21일에 관세조직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하였으며 임시특별관세법 폐지 등 각종 법령을 정비·확충하고 GATT/도쿄 라운드, CCC, ESCAP, UNCTAD 등과의 關稅協力を 강화하고 관세법상 국제관세협력의 장을 신설하여 國際關稅協力を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1980年代

1980年代 우리나라의 産業政策은 그 목표를 내수산업에 대한 과잉보호를 축소하고 대내외 공정한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경제체질 배양에 두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1980년 발전설비·건설중장비·자동차·증전기기 등 중화학공업 투자조정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산업정책은 산업구조형성정책과 산업구조유지정책에서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으로 轉換되었고 기업의 대형화·독점화 현상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을 제정하면서 산업조직정책도 중요한 産業政策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産業政策方向에 부응하여 政府는 1983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전례없는 대폭적인 關稅政策의 개편을 감행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품의 가공도에 따라 다른 關稅率을 적용하는 差等關稅率制度에서 탈피하여 모든 품목에 균등한 세율을 책정하는 均等關稅率制度로 이행하였고 내수산업에 대한 과잉보호를 축소하기 위하여 관세를 대폭 인하(단순평균세율 1981년 : 23.7% → 1990년 : 11.4%)하였으며 이러한 關稅率 대폭 인하에 따르는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彈力關稅의 일종인 조정관세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關稅減免에 있어서도 산업의 자력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특정산업에 대한 무시한적·편중·차별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기능별 일반·균등지원제도로 전환하여 정부의 지원은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나 사회복지·정부중점시책·국제관례 등 지원은 계속하도록 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도 수출촉진을 기하기 위해 개산액환급 후 정산제도·기장상계제도·부재료정액환급제도·수출면허예약제신설·500달러 이하 소액수출무환탁송항공화물 통관절차 간소화·수출물품의 타소장치제도개선·세관공무원의 장치확인제도개선 등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환급서류 및 절차를 簡素化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通關制度의 國際化·效率化를 위하여 1988년에 관세율표상의 관세품목 분류체계를 관세협력이사회 분류방식인 CCCN에서 국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방식인 HS로 轉換하였고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종래의 관련적인 정상적인 가격에서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신평가협정을 도입하였다.

한편 납세의무자의 범위확대, 체납가산금제도개선, 과오납환급가산금 지급 등 통관관리절차를 개선하고 관세사비밀누설죄 신설, 보고불이행죄 보강 등 관세형벌제도도 合理的으로 보강하였다.

마. 1990年代

1990年代 우리나라의 產業政策은 1980년대초에 정립한 產業政策의 기본기조 곧 대내외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산업간의 경쟁을 강화하여야만 치열한 國際競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경제체질 배양이 계속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의 1995년 交易規模가 2,603억달러에 달해 표면적으로는 2,809억달러를 달성한 중국에 이어 세계 제12위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交易量이 많은 홍콩, 벨기에, 네덜란드 등 3개국은 중계무역항을 가지고 있는바 總交易의 각각 70%, 25%, 60%가 자국교역량이 아닌 단순 통과물동량인 것으로 밝혀져 실질적인 교역규모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9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제 通關制度에 있어서도 우리의 交易規模에 걸맞게 명실공히 선진국과 견주어보아 손색없는 제도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에 발맞추어 199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통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수출입면허제를 신고제로 轉換하였고, 물품이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후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입항후부터 허용하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항전에도 허용하였으며 輸出物品에 대한 보세운송을 생략하는 등 보세운송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關稅의 사후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세구역반입 및 보세운송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稅關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效率的으로 보호하도록 하였고 통관후 원산지표시 등이 부적정하여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Recall제도를 활용(통관후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관세법 중 관세사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관세사법으로 제정함으로써 관세사의 책임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원활한 관세사 제도의 운용을 도모하였다. 또한 關稅行政의 전산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 전산처리설비 등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하도록 하였다.

2. 分野別 評價

가. 關稅의 財政收入 確保 機能에 대한 評價

1949년에 關稅法이 제정된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財政收入의 확보는 우리나라 關稅政策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다. 1950년대에는 전쟁 피해의 복구,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수행 등을 위해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로는 貿易政策 또는 産業政策으로서의 관세의 기능이 증시되는 반면 재정수입확보 수단으로서의 관세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총조세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였던 관세수입의 비중이 1970년대에는 13%, 1980년대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8%대가 되었다(〈表 IV-1〉 참조).

〈表 IV-1〉 關稅收入의 推移

(單位: 億원(환)¹⁾, %)

	세입(A)	조세(B)	관세(C)	B/A	C/A	C/B
1949~1960	3,196	1,215	143	38	4	12
1961~1970	18,515	11,831	2,158	64	12	18
1971~1980	262,040	255,411	33,075	97	13	13
1981~1990	1,159,460	1,459,970	120,955	126	10	8
1991~1995	2,024,525	2,088,350	183,458	103	9	9

註: 1) 1949~1960년은 億환, 1961년 이후는 億원.

우리나라의 현행 關稅率 수준이 재정수입 확보의 측면에서 적절한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만약 정부가 內國稅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關稅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후진국일수록 內國稅 체계 및 유통구조의 후진성 등으로 인해 財政收入의 일부를 비교적 사회적 저항이 적고 과세가 용이한 關稅收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財政收入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關稅率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關稅負擔 能力을 추정하였다. 먼저 각국의 關稅負擔率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關稅負擔 能力을 추정(김진수·안종석,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 구조의 개편방향』, 1994. 5)하였다.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表 IV-2〉 참조).

$$R = f(X_1, X_2, X_3)$$

R = 관세부담률

X₁ = 내국세 부과에 대한 제약적 조건

X₂ = 관세부과에 대한 제약적 조건

X₃ = 수입규모

이렇게 하여 추정한 우리나라의 關稅收入 대GDP비중의 적절한 수준은 1990년 기준으로 2.39%로 나타났으나 동년 우리나라의 실제 關稅負擔率은 2.13%였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부담능력에 비해 關稅依存率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수준, 수입 및 수출비중, 내국세 부담률이 유사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關稅負擔率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부문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교역재의 關稅率을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工業發展 전략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주로 價格競爭力을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輸出市場에서의 마찰이 비교적 심하였고

〈表 IV - 2〉 關稅負擔率 推定 結果

	손 광 락 (1993)		김진수·안종석 (1994)	
	계 수	t 값	계 수	t 값
상수항	0.031288	4.641	2.86143	5.302
GDPPC	-0.001885	-4.442	-0.09051	-3.042
TAXG			-0.02929	-4.519
DOMTR	-0.127124	-2.154		
EXPG			-0.08396	-3.391
IMPG	0.040868	2.444	0.09656	1.581
R ²	0.4215		0.48688	
F	11.901		13.04733	
표본수	53		60	

註 : TARIFFG = 관세수입/GNP (종속변수)

GDPPC = 1인당 GDP

TAXG = 내국세 수입/GNP(%)

DOMTR = 내국세부담세 수입/GDP(%)

EXPG = 수출/GDP(%)

IMPG = 수입/GDP(%)

따라서 관세인하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유사한 다른 나라에 비해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 內國稅 賦課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관세부담률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제약이 상기 추정식에 잘 반영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는 관세부과에 대한 內部的 및 外部的 제약조건에 비추어 지나치게 內國稅에 의존하고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關稅率 調整을 통해 관세부담률을 더 낮추는 것은 우리나라의 능력에 비해 지나친 내국세부담을 초래하거나 재정수입의 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關稅의 産業保護 機能에 대한 評價

1) 基本關稅率의 中心體系에 대한 評價

우선 基本關稅率의 중심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1983년까지는 차등관세율체계를 採擇하였으나, 1983년 이후부터 均等關稅率체계로 전환하였는바, 우리나라가 1983년 이전까지 차등관세율체계를 유지하여 온 것은 輸出産業 및 輸入代替産業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이었으나 완제품에 대한 과다보호, 원자재 및 생산재에 대한 과소보호로 조립가공형 산업구조를 발전시켰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1980년 초에 이르러 정부주도형의 보호와 지원정책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단시일 내에 불식하고 대내외 경쟁체제를 정착시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산업간 경쟁촉진과 공정경쟁 기반조성을 토대로 민간 주도형의 經濟體制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1980년대의 산업정책방향에 따라 관세의 대산업 증립화로 산업간 競爭條件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수입물품에 원칙적으로 均等關稅率을 책정하는 均등관세율체계를 채택하였다(〈表 IV-3〉 참조).

均等關稅率制度의 기본취지는 관세를 産業間·品目間에 均등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율을 均等化하고 이를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의 效率性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實效保護率 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보다 우월한 제도로 간주될 수 있으나 均等關稅率制度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가 않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均等關稅率制度의 현실적인 한계에 관한 것으로 差等關稅率制度가 추구하는 실효보호율의 均등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원료 및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품목간 均일하지 않으며 각 산업의 수입원료 및 수입중간재의 투입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완제품에 均등한 關稅率을 적용하더라도 실효보호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둘째, 환율이나 내국세제상의 보호 등 모든 보호구조가 동일하지 않는 한 각 산업에 均등한 稅率을 적용하더라도 반

〈表 IV-3〉 韓國의 關稅率政策 變遷 推移

(單位: 個, %)

	1945	1950	1957	1958	1961		1963	1967	1968	1973	1976	1978	1981	1983	1988	1990	1995
					1차	2차											
조정방법	신규 제정	무세품에 대해 입시관세 부과 (143개)	전면 개정	전면 개정	전면 개정	품목 분류 체계 개편	전면 개정	전면 개정	전면 개정	전면 조정	전면 조정	전면 조정	부분적· 점진적 조정	전면 조정	전면 조정	전면 조정	소폭 조정 (2개품목)
세빈수	756	-	726	726	722	1,097		1,097	1,097	1,097	1,097	1,010	1,010	1,241	1,241	1,241	1,241
세율수	1,706	-	1,229	726	722	1,982		3,174	3,019	3,985	2,251	2,209	2,280	2,604	2,709	2,718	2,718
평균세율변동	20.6	-	30.3	35.1	47.7	39.4		38.8	38.7	31.3	35.7	24.9	23.7	22.5	18.1	11.4	7.9
특징	← 차등관세율체계 →								← 차등관세율체계 →								
0~100% 간 세율 책정	6·25동란 이후 제정 수요에 부응 (관세입시 증정법 제정)	보호 관세 강화	보호 관세 강화	보호 관세 강화	BTN 방식 도입	수출 촉진 도모	단력 관세 제도 도입	수모및 모직물 관세율 개선 금지 관세율 인하	차등관세율 체계, 잠정 세율제도 도입	20% 균일 세율체계, 잠정 세율 확대, 예시 제도입	잠정세율의 기본세율화	고세율의 일률 인하 방식 도입	균등관세율 체계 20% 중심 세율로 수렴 (30-30-25- 25-20%의 5개년 예시제)	균등관세율 체계 8% 중심 세율로 수렴 (15-13-11- 9-8%의 5개년 예시제)	5개년 예시 제의 1년 순연 (1989~1993 년 까지를 1989~1994년 까지로 변경)	컨테이너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세율 무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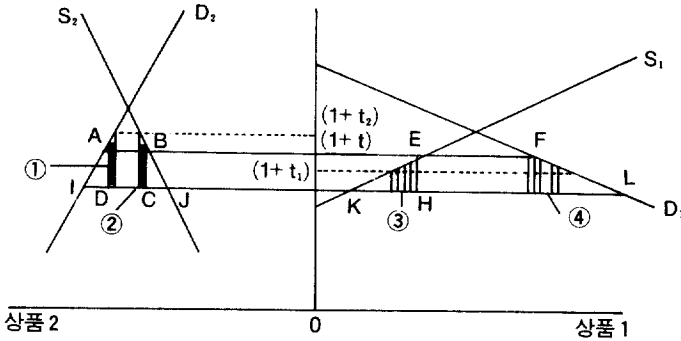
드시 實效保護率이 균등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여 均等關稅率制度에 대한 경제이론상의 비판을 자세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均等關稅는 보호의 비용을 최소화하지도, 부문간 실효보호율을 반드시 같게 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 이미 30년전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관세의 부과목적에 따라 재정수입과 산업보호의 두 경우로 나누어 검토해 보자. 먼저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재정수입에 있다고 가정할 때 均等關稅率制度는 최적이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일반적으로 Ramsey(1927)이론을 따른다면 최적 관세수입은 각 부문의 關稅率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여 부과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즉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면 관세율은 높아야 한다. 이를 Panagariya(1990)의 도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圖 IV-1]의 1사분면에는 상품 1에 대한 수요와 공급곡선이 그려져 있고, 2사분면에는 상품 2에 대한 수요와 供給曲線이 원점에서부터 왼쪽으로 그려져 있다. 각 상품의 가격이 1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수평축은 각 상품의 수량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가치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自由貿易下에서 각 상품의 소비량과 생산량 국내수요 및 국내 공급곡선과 무한대의 공급탄력성을 지니는 세계공급곡선 IL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상품 1의 수요 및 공급곡선은 상품 2의 그것들보다 더 탄력적이다. 財政收入은 사각형 ABCD와 EFGH의 합이 되는데, 關稅政策이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할 때 이 목적은 두 상품에 t의 均等關稅率을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상품에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같은 수준의 재정수입을 유지하면서도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수요의 탄력성이 높은 상품 1에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요의 彈力性이 낮은 상품 2에 高率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같은 수준의 재정수입을 유지하면서도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均等關稅率下에서 후생손실 삼각형 AID, BJC, EKH, FLG의 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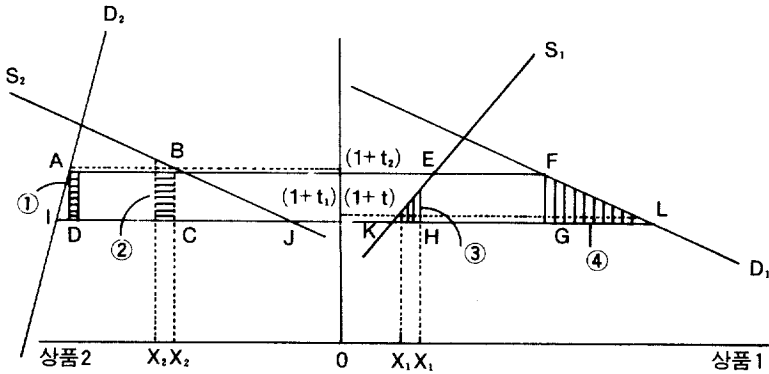
[圖 IV-1] 關稅政策의 目的이 財政收入일 境遇



상품 1에 關稅率 t_1 만큼을 부과하면 t 의 關稅율을 적용할 때보다 ③과 ④의 합만큼 후생손실이 줄어들게 되고, 상품 2에 關稅率 t_2 만큼을 부과하면 t 의 關稅率을 적용할 때보다 ①과 ②의 합만큼 후생손실이 늘어나게 된다. ③과 ④를 합친 면적이 ①과 ②를 합친 면적보다 넓기 때문에 關稅율에 차등을 줌으로써 均等關稅率下에서 보다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關稅를 부과하는 목적이 産業保護에 있다고 할 때 關稅만을 부과하는 것은 최선의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關稅의 부과는 후생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産業保護를 위해서는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關稅만을 부과하는 경우에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보다 반드시 效率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圖 IV-2]에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상품 1에 대한 수요가 상품 2에 대한 수요보다 더 탄력적인 반면 상품 1에 대한 공급이 상품 2에 대한 공급보다 덜 탄력적인 경우를 가정한다. [圖 IV-1]의 경우와 같이 상품 1의 수요 및 공급곡선이 상품 2의 그것들보다 더 탄력적이면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이다. 두 상품의 생산액은 OX_1 과 OX_2 의 합이 되는데, 關稅政策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 이 목적

[圖 IV-2] 關稅政策의 目的의 産業保護의 境遇



은 두 상품에 t 의 균등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상품에 高率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상품에 低率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OX_1 과 OX_2 의 합만큼의 생산액을 유지하면서도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수요의 탄력성이 높은 상품 1에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상품 2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均等關稅率下에서 후생손실은 삼각형 AID , BJC , EKH , FLG 의 합이다. 상품 1에 t 보다 낮은 t_1 만큼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③과 ④의 합만큼 후생손실이 줄어들게 되고, 상품 2에 t 보다 높은 t_2 만큼의 關稅率을 적용하면 ①과 ②의 합만큼 후생손실이 늘어나게 된다. ③과 ④를 합친 면적이 ①과 ②를 합친 면적보다 넓기 때문에 차등적인 관세율의 설정이 균등관세율하에서보다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상에서 경제이론상으로 균등관세율제도가 반드시 차등관세율제도보다 效率的인 制度라고 말할 수 없다는 논의를 하였다. 이 모델도 어디까지나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이고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모델로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均等關稅率制度를 택할 것인가 差等關稅率制度를 택할 것인가는 정책결정자의 선택의 문제라 하겠다.

우리나라 현행 産業構造의 문제점으로 加工·組立産業과 기계·부

품·소재산업간의 불균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는바, 이 중 첫번째의 문제점은 관련 산업 이외에도 이에 의거한 關稅政策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되고 있다. 1960~1970년대에 채택된 차등관세를 체계하에서는 단순조립형산업이 생산의 우회도가 큰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보호되고 이에 따라 단순조립형산업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4년부터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均等關稅率制度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關稅率 체계의 전환 과정에서 관세의 재정수입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으로서의 기능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첫째, 國際化·開放化에 따라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수입규제나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관세정책의 수립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둘째, 우리나라의 平均關稅率은 제1차 관세인하예시제가 시작된 1984년에 21.9%였으나 제2차 관세인하예시제가 끝난 1984년에는 7.9%(1995년도 동일)에 불과하며 관세가 산업정책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셋째, 產業政策의 방향이 특정산업을 선별지원하는 정책에서 기능별 지원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정책에서도 대산업 중립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제Ⅲ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關稅率 構造를 1984년부터 차등관세율체계에서 균등관세율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1960, 1970년대에 격차가 심화되었던 산업간 실효보호율이 1980년에 들어와서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산업간에 인위적인 보호의 차등을 없애 모든 산업에 均等한 보호를 제공하여 경제원리에 의한 市場經濟를 창달하고 기업의 자력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수출의 지속적 증대를 통한 경제의 안정성장을 도모하려는 1980년초의 產業政策의 기본방향에 부응한 관세율체계의 개편이었다고 평가된다.

2) 8% 中心 關稅率 適正性 與否에 대한 評價

1988년에 마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關稅率 構造는 1987년 韓國産業銀行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을 근거로 한 것이다. 同 分析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 교역재의 내외가격차는 평균 13%였다. 이는 5년 전인 1983년의 22%에서 4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2차 관세인하 예시제가 끝나는 시점인 1993년 교역재의 내외가격차는 평균 8%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전망을 근거로 하여 1993년의 中心稅率이 8%가 되었다.

이와 같이 현행 中心稅率은 1988년 당시의 비교적 단순한 예측에 기초한 것으로서 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국내외의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1992년에 발표된 韓國銀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역재의 실질가격차 평균은 1982~1987년의 기간에 40% 하락한 데 반하여 1988년부터 1991년까지 4년 동안에는 오히려 40% 악화되어 18.8%로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가격차가 동 기간중에 대폭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2.4%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명목가격차는 1987년의 -5.3%에서 1991년 6.4%로 11.7% 포인트나 상승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명목가격차가 크게 악화된 이유는 1987년 이후 임금 및 원료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表 IV-4〉 참조).

産業銀行이 내외가격차를 조사한 1991년 이후 貿易收支가 점차 개선되어 가다가 1995년에 더욱 악화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의 교역재 내외가격차 평균은 1991년의 그것보다 오히려 높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중심세율은 이러한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하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재 교역재의 내외가격차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表 IV-5〉 참조).

〈表 IV-4〉 交易材의 業種別 内外價格差

(單位: 個, %)

	조 사 수		실질 가격 차		명목 가격 차		비 가격 차	
	1987	1991	1987	1991	1987	1991	1987	1991
섬유	21	29	4.5	6.9	-1.8	3.2	6.3	3.7
제지·목재	9	15	9.3	16.3	-2.9	19.6	12.2	-3.2
고무·가죽·신발	7	5	5.2	9.5	-8.8	2.5	14.0	7.0
요업	9	8	12.1	11.5	-6.0	1.5	18.1	10.0
석유화학	26	37	15.6	21.4	7.2	18.4	8.4	3.0
정밀화학	7	13	21.4	38.1	8.4	29.9	13.0	8.2
철강	19	19	13.3	5.9	4.5	6.3	8.8	-0.4
비철금속	11	15	25.4	13.9	20.2	2.8	5.2	11.1
기계	37	65	14.7	14.4	-12.9	-6.8	27.6	21.2
전기·전자	49	65	12.7	26.5	-9.4	9.0	22.1	17.6
수송용기계	14	15	13.3	16.1	-26.2	-5.0	39.5	21.1
유제품	14	8	8.8	46.1	-18.5	18.3	27.3	27.9
교역재 전체	223	294	13.0	18.8	-5.3	-6.4	18.3	12.4

註: 1. 명목가격차(가격경쟁력) = (국내가격 - 수입가격) / 수입가격 × 100

2. 비가격차(비가격경쟁력) = (수입가격 - 수출가격) / 수입가격 × 100

3. 실질가격차(종합경쟁력) = 명목가격차 + 비가격차

4.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은 FOB가격 기준임.

資料: 한국산업은행,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1992.

〈表 IV-5〉 調査品目の 綜合競爭力 分析

(單位: 個, %)

실질가격차	물 품 수		실질 가격 차 평균			실질 가격 차 평균		
	1987	1991	1987	명 목 가격차	비 가격차	1991	명 목 가격차	비 가격차
0% 미만	36 (16.1)	37 (12.6)	-11.4	-17.2	5.8	-7.1	-17.7	10.5
0~10% 미만	56 (25.1)	99 (33.7)	6.0	-16.8	22.8	2.9	-9.4	12.3
10~20% 미만	77 (34.5)	62 (21.1)	15.3	-8.7	24.0	14.4	-0.3	14.7
20~30% 미만	37 (16.6)	36 (12.2)	25.4	6.4	19.0	24.8	12.1	12.7
30% 이상	17 (7.6)	60 (20.4)	49.6	47.4	2.2	62.1	50.8	11.3
합 계	223 (100)	294 (100)	13.0	-5.3	18.3	18.8	6.4	12.4

註: 1. 명목가격차(가격경쟁력) = (국내가격 - 수입가격) / 수입가격 × 100

2. 비가격차(비가격경쟁력) = (수입가격 - 수출가격) / 수입가격 × 100

3. 실질가격차(종합경쟁력) = 명목가격차 + 비가격차

4.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은 FOB가격 기준임.

資料: 한국산업은행,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1992.

3) 關稅引下豫示制度(第1次:1984~1988年, 第2次:1989~1993年)에 대한 評價

관세인하예시제는 그동안 關稅率을 급격히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갑작스런 關稅率의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산업계의 사전대비를 촉진시켰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었다. 셋째, 예시제에 의해 단계적으로 關稅를 인하함으로써 일시적인 관세인하에 대한 저항을 緩和시킬 수 있다. 넷째, 政府는 단기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關稅率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관세인하예시제에 의한 關稅引下의 속도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바,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다음 항인 우리나라 平均 關稅率의 적정성 여부 평가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경쟁력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인하되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關稅率을 현행 관세인하예시제보다 훨씬 느리게 인하해 왔다면 1986년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수입액 가중평균의 33%를 인하해야 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의해 일시적인 관세율의 인하가 불가피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계는 갑작스런 관세율의 변동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관세인하예시제를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관세인하의 속도면에서 관세인하예시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海外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國際化·開放化時代를 맞이하여 독자적으로 關稅政策을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관세인하예시제에 의한 관세인하 속도에 대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 關稅支援制度에 대한 評價

1) 總括

1995년도의 수입실적에 기초한 加重平均稅率은 6.89%이나 전수입물품 수입액 대비 실제 세입 징수액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4.43%였다. 6.89% 중에서 관세감면 0.45% 포인트(4,757억원), 관세환급 1.17% 포인트(1조 2,197억원), 보세 0.52% 포인트(5,399억원), 할당관세 0.32% 포인트(3,345억원)가 각각 지원되었다.

關稅還給이나 保稅制度는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예가 있으나 할당관세 지원, 관세감면은 그 규모면에서나 빈도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원규모가 큰 편이다.

關稅減免制度는 여러 관세지원수단 중에서 환급·보세·할당관세 다음으로 중요한 수단이다.

還給制度나 保稅制度는 수출품 모두를 대상으로 하거나 보세공장·보세판매장 등 일반적인 특정성이 없이 지원되는 제도이나, 할당관세 지원이나 관세감면은 특정물품을 지정하여(할당관세의 경우에는 수량까지 지정)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낮은 관세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원의 특정성 내지 선별성·정책적 탄력성이 큰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84년 이후의 감면제도와 여타 관세상 지원제도의 推移 및 比重을 보면 <表 IV-6>과 같다. 1984~1995년 기간 중 실효세율이 6.4%에서 4.43%로 줄어들었으나 관세상 지원은 7.2%에서 2.46%로 보다 크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자재의 관세 인하폭이 크고 국산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환급지원과 보세지원이 크게 줄었다.

특정성이 큰 지원제도인 할당지원과 감면을 보면 감면은 크게 縮小되었으나 물가안정 및 물자수급 원활화, 1~2차 원유파동에 따른 원유 할당관세적용 등의 요인에 따라 할당지원은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바, 이는 전반적으로 관세상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역행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IV-6〉 關稅上 支援制度 推移 및 比重

(單位: %)

	1984	1986	1988	1990	1992	1993	1994	1995
실효세율	6.4	7.0	6.8	5.6	4.9	4.3	4.18	4.43
관세상지원	7.2	8.3	7.8	4.2	3.6	3.1	2.64	2.46
감면지원	1.0	1.1	1.0	0.6	0.6	0.5	0.47	0.45
환금지원	4.0	4.2	4.2	2.0	1.5	1.4	1.2	1.17
보세지원	2.2	1.8	1.3	0.8	0.8	0.6	0.57	0.52
할당지원	0.1	0.3	0.8	0.8	0.7	0.6	0.39	0.32
가중평균세율	13.6	15.3	14.6	9.8	8.5	7.4	6.84	6.89

註: 1. 총수입금액(달러표시 수입액을 과세환율을 적용 환산한 금액)에 대한 각각의 징수액·지원액의 비율임.

2. 실효세율과 관세상 지원의 합계가 가중평균세율(trade weighted average tariff)임.

資料: 재정경제원

2) 關稅減免支援制度 運營評價

그동안 우리의 關稅減免은 산업별·고관세·고감면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기능별·저관세·저감면 내지 무감면으로 운영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다. 이는 關稅率의 전반적인 인하 등 관세행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특정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각 부문간 均衡發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국민경제를 운영하며, 낮은 관세율하에서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주요시설·기자재의 국산화를 조기에 촉진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정책전환이라 하겠다.

그동안 關稅減免支援制度의 추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관세감면지원에 있어 특정부문 또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은 관세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그 결과 자원 배분의 왜곡과 시장경제원리의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1983년 이후 산업지원에 대한 감면은 단계적으로 縮小·廢止하면서 기능별 감면제도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감면지원

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산업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산업 무차별적인 기능별 감면지원제도의 활성화가 산업에 대한 관세의 중립성 유지와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관세지원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 동 방향으로 감면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간 생산성 향상과 기술의 研究·開發을 통한 기업의 체질개선과 競爭力 強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연구·개발관련 관세감면 대상기관 및 대상물품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대상 학술연구 관련 기관도 확대하여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진흥하고자 노력해 왔다. 또한 환경보전 및 산재예방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오염물질배출방지, 산재예방 및 직업병예방에 필요한 國內生産이 곤란한 수입기자재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아울러 1983년 이후 産業別 關稅減免制度가 관세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지원제도는 점진적으로 縮小·廢止하여 왔다. 그러나 1989년부터 199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감면지원은 경기부진 등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의 성격상 초기단계에 재정금융지원의 필요성이 큰 첨단부문에 대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지원대상업종 및 물품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산업구조의 조정, 기술연구·개발의 촉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90년 12월 關稅法 개정을 통하여 關稅支援制度가 대폭 정비·보완되었다

첨단지원산업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연장하는 한편, 기업의 원가절감과 생산능력의 증대를 위한 생산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감면지원제도도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용 기기, 환경오염측정·분석 및 상수도수질측정기기 등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원제도도 대폭 강화하였다.

그러나 1993년말에 이르러서는 關稅減免制度는 국내산업 발전이나 국가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부문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히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특정한 산업이나 수입자에 대한 특혜부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과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필요하면 關稅率 자체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현행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 감면은 특정한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크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縮小하여 1998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關稅法 본조에서 삭제하고 부칙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즉 현재의 첨단기술산업 감면은 減免率을 매년 5%씩 인하하여 1994년 35%에서 1997년에는 20%로 하고, 방위산업제품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부분품과 원재료는 減免率을 1994년 100%에서 매년 10%씩 인하하여 1997년에는 70%로 조정하였다. 다만 현재 방위산업감면 대상 중 방위산업제품 연구개발용·시험분석용품 및 견품은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계속 존속하도록 하였다.

한편 항공기 제조용 원료품 및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하여서도 그 감면율을 1994년 50%, 1995년 40%, 1996년 30%, 1997년 20%로 매년 10%씩 인하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關稅減免制度의 운영은 과세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특정한 산업부문에 대한 감면을 축소해 나가야 하겠으나,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보호 등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기기, 폐기물처리용 기구, 산업용마크네티테이프,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등은 별도로 규정하여 계속 감면대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의 핵심 부분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

였는바, 이는 핵심부분품을 구별하는 문제와 통관심사시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공장자동화기계·기구 자체는 減免을 받으면서 이를 구성하는 부분품은 감면을 받지 못할 경우 역관세현상이 발생하여 공장자동화기계의 수입을 촉진하여 기계의 國產化 促進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새로이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다만 감면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의 부분품으로 확대하지 않은 것은 부분품 감면 자체가 갖게 되는 위와 같은 난점을 예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나가면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점 때문이다.

關稅減免支援制度의 推移를 살펴보면 <表 IV-7>과 같다.

<表 IV-7> 關稅減免支援制度 運營 推移

	1983년 이전	1984~1988년	1989~1990년	1991년 이후	
산업별	-중요산업 감면제도 (화학공업, 일반기계 제조업 등 14개산업)	(1983. 12) 화학공업, 전기철도운수업 광업· (1985. 12) 송전업 계철제강업· (1987. 12) 조선업 등 7개 산업 기술개발주도산업 (기계·전자공업) (1988. 12)	-첨단기술산업 한시적 감면 신설 ○기계·전자 공업 중 첨단 기술산업에 속하는 68개 업종 (1989~1991)	-첨단기술산업 관세감면제도 확대 ○7개첨단 기술산업 (147업종) (첨단산업발전 심의회 확정) (1991~1993) ○1998년부터 패지를 전제로 감면율의 축소 조정(1994.11) 1995:30% 1996:25% 1997:20%	-방위산업제품 제도·가공· 수리용부분품 및 원재료 감면율 축소 (1994.1) 1994:100% 1995: 90% 1996: 80% 1997: 70% -원료품 감면율 의 조정 1995: 80% 1996: 30% 1997: 20%
기능별 감면	-학술연구 용품감면	-과학계측 및 조정기기 관세감면(1984. 1) -심신장애자용품 관세 감면(1984.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용품 관세감면(1968. 12)	-기업부설 연구소 · 산업기술 연구소의 수입물품 관세감면 (1989. 1)	-고도기술소프트 웨어 관세감면 (1991. 1) -공장자동화기계 과세감면 (1991. 1) -패기물처리용 -공장자동화 기기 감면율 의 축소조정 (1994. 12) 1995:40% 1996:30% 1997:20%	

減免制度를 성질별로 구분하면 기계류 등 기업의 설비도입 부담을 경감하는 기업감면제도와 비엔나협약·교토협약 등 국제협약·관례에 따라 지원하는 협약감면제도로 대별할 수 있고 근거법률은 관세법 외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외화도입법, SOFA협정 등이 있으나 關稅法 이외의 여타 법에 근거한 감면은 그 지원규모로 보아 미미하다.

1980년대 이후 관세감면 실적을 살펴보면 <表 IV-8>과 같다.

1995년도의 企業減免과 協約減免의 비중은 각각 50.5%와 49.5%로서 1980년 이후 기업감면 비중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企業減免 중에서도 보다 특정성이 큰 産業減免의 비중이 크게 줄고 (1980 : 100%→1990 : 86.2%→1995 : 28.9%) 공장자동화기계·환경 관련 물품·과학기술연구개발용품 등에 대한 기능별 감면 비중이 점차 높아짐(1980 : 0%→1990 : 13.8%→1995 : 71.1%)을 알 수 있다.

3) 彈力關稅制度 運營 評價

우리나라의 彈力關稅制度는 199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1990년 이전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關稅率을 내리는 割當關稅制度和 國內産業 保護를 위한 緊急關稅制度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외에 關稅率을 올리는 調整關稅制度는 1980년대초에 우리 산업의 대외 개방화 노력의 일환으로 貿易去來關係法令 등에 의하여 새로이 輸入自動承認品目으로 지정된 물품 중에 輸入 增大로 인하여 야기되는 國內産業 被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일부 운영된 바 있으며 物價平衡關稅制度는 1984년 1회에 한하여 운영된 바 있다.

1990년 이후에는 物價安定을 위해 關稅率을 내리는 割當關稅制度和 공정 및 불공정무역거래로 인한 産業被害救濟를 위해 마련된 덤핑防止 關稅制度, 調整關稅 및 關稅率을 올리는 割當關稅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외에 UR협상 결과 새로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1995년부터 特別緊急關稅制度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

〈表 IV-8〉 關稅減免類 推移(1980~1995年)

(單位: 億圓, %)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 관세징수액(A)	7,661	15,661	27,654	34,352	31,582	28,859	34,489	46,332
- 관세감면(B)	1,853	2,982	2,776	3,711	3,898	3,538	3,872	4,757
(B/A+B)	(19.5)	(16.0)	(9.1)	(9.7)	(11.0)	(10.9)	(10.1)	(9.3)
< 기업감면 >(C)	1,210	1,543	1,284	2,136	2,269	1,868	2,178	2,401
(C/B)	(65.3)	(51.7)	(46.3)	(57.6)	(58.2)	(52.8)	(56.3)	(50.5)
o 산업감면(D)	1,210	1,500	1,107	1,391	1,136	867	758	693
(D/C)	(100.0)	(97.2)	(86.2)	(65.1)	(50.1)	(46.4)	(34.8)	(28.9)
첨단·방위산업	1,184	1,162	912	1,089	888	618	613	585
선박·항공기	-	190	178	212	159	151	52	52
지하철·농기계	26	117	17	91	80	98	93	56
o 기능감면(E)	0	43	177	748	1,133	1,001	1,420	1,708
(E/C)	(0)	(2.8)	(13.8)	(34.9)	(49.9)	(53.6)	(65.2)	(71.1)
공장자동화	-	-	-	444	906	779	1,074	1,348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	-	-	30	23	29	27	10
오염방지·폐기물처리	-	-	7	120	31	23	47	33
산업재해예방	-	-	-	1	7	1	-	-
기술연구·개발	-	43	170	150	167	169	272	317
< 협약감면 >(F)	643	1,439	1,492	1,575	1,629	1,670	1,694	2,356
(F/B)	(34.7)	(48.3)	(63.7)	(42.4)	(41.8)	(47.2)	(43.7)	(49.5)
학술연구	-	81	190	250	198	210	164	179
외교관·정부용품 등	236	412	560	664	705	689	826	1,127
재수출·입	132	277	451	437	568	618	582	857
자선·구호 등	134	47	93	129	118	83	100	147
SOPA 등 협약	100	420	124	23	22	18	21	27
조감법 등 타법령	41	195	74	72	20	52	1	19

資料: 財政經濟院

〈表 IV-9〉 彈力關稅制度 運營現況(品目數 基準)

		할당관세	물가평형 관세	덤핑방지 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특별긴급 관세
1978	上	52	-	-	1	-	-
	下	9	-	-	-	-	-
1979	上	72	-	-	3	-	-
	下	20	-	-	1	-	-
1980	上	69	-	-	2	-	-
	下	66	-	-	2	-	-
1981	上	64	-	-	88	-	-
	下	62	-	-	7	-	-
1982	上	32	-	-	7	-	-
	下	29	-	-	13	-	-
1983	上	32	-	-	11	-	-
	下	30	-	-	104	-	-
1984	上	9	1	-	38	14	-
	下	1	-	-	10	10	-
1985	上	19	-	-	8	8	-
	下	2	-	-	6	2	-
1986	上	28	-	-	5	5	-
	下	23	-	-	2	5	-
1987	上	91	-	-	8	-	-
	下	23	-	-	2	-	-
1988	上	203	-	-	3	-	-
	下	446	-	-	3	-	-
1989	上	212	-	-	-	-	-
	下	28	-	-	-	-	-
1990		109	-	-	2	-	-
1991		108	-	-	2	1	-
1992		79	-	-	2	39	-
1993		40	-	4	2	45	-
1994		39	-	5	-	42	-
1995	上	46	-	5	-	38	76
	下	47	-	4	-	34	
1996		43	-	4	-	35	61

4) 關稅還給制度的 運營에 대한 評價

WTO체제하에서도 輸出支援制度로서 허용되고 있는 關稅還給制度는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負擔을 제거함으로써 국산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輸出을 확대하고 原資材의 國產化를 촉진하며, 關稅行政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同 制度는 關稅減免制度和 함께 關稅率 政策의 補助手段으로서 우리나라 輸出支援을 위한 關稅政策의 주요수단 가운데 하나로 1975년 7월 1일 도입된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70년에 8억달러 수출에서 1995년에는 1,251억달러를 수출하여 156배가 늘어났고 輸出免許 건수도 1995년 기준으로 236만 2천건에 이르렀다. 200만건을 상회하는 수출에 대해 還給業務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新經濟 100일 계획과 그 이후 경제활성화—投資促進, 輸出增大를 위하여 수립된 新經濟 5개년계획 및 行政規制緩和 작업의 일환으로 관세환급제도는 많은 제도 개선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貿易業界에서는 原材料에 대한 關稅納付後 환급금을 수령하는 데 약 100여일이 소요되고 있고 총관세환급액 대비 還給所要費用은 약 4%(1995년 기준 총관세환급액은 1조 2,197억원)의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關稅還給의 획기적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表 IV-10〉 참조).

5) 保稅制度的 運營에 대한 評價

政府는 1993년 12월과 1994년 12월에 각각 關稅法을 개정하여 ①의 무적인 保稅區域藏置制度를 폐지하여 부두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긴급한 물품의 경우 物品入港前에도 輸入申告를 허용하고 특별한 사유(검사대상 등)가 없는 한 하역 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② 물품반출후에 關稅를 납부하게 하여 輸入節次와 納稅節次를 분리함으로써 迅速通關 및 納稅者의 資金負擔을

〈表 IV - 10〉 遞給申請 所要日數(1995年)

(單位：日)

	관세납부→환급금수령			환급신청서 작성기간		환급신청→환급금수령
	개 별	정 액	평 균	개 별	정 액	
평 균	102	86	98	8.3	3	5.8
경 공 업	103	86	96.5	8.3	3	5.5
중 공 업	100	-	100	8.2	3	6
대 기 업	113.2	82.2	106.6	7.4	1.6	5.4
중 소기업	90	89.8	90	9.2	4.4	6.2

資料：關稅廳

완화하였고(다만, 關稅債權 확보를 위하여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반출전에 담보를 제공함) ③ 保稅區域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稅關長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반입하게 하고 ④ 輸出保稅運送制度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운송하도록 하고 수입물품 保稅運送의 경우는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여 하역 즉시 부두에서 화주 창고 등 목적지로 직반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輸入申告受理時까지 물품반출이 불가하던 것을 입항 즉시 반출가능 체제, 바꾸어 말하면 입항 즉시 생산현장 투입가능체제로 일대전환을 하여 물류흐름의 신속화를 도모하였는바, 이를 〈表 IV - 11〉에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은 制度改善에 부응하여 제기되는 정책과제는 어떻게 하면 1995년의 保稅制度에 관한 關稅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물류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출입화물 물류 관리절차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처리하는 시대인데 현재 保稅區域의 貨物搬出入業務 및 在庫管理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保稅區域 전산망 구축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화물흐름의 전과정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화되어 있지 않아 물류흐름의 지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EDI가

〈表 IV-11〉 保稅制度的改善

종 전	개 선
<p>「수입신고수리시까지 물품반출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생략물품, 검사완료물품 등이 물류흐름이 중지된 상태로 통관심사, 관세납부, 수입면허 절차완료후 반출됨에 따라 공항, 항만, 보세구역 등의 화물적체 ○ 수입면허시까지 물품반출 보류로 적기 생산지원 곤란 및 추가재고 부담 	<p>「입항 즉시 반출가능체제 → 입항 즉시 생산현장 투입가능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항 즉시 반출로 물류흐름의 신속화 ○ 공·항만 보세구역의 화물적체 해소 ○ 수입화물 입항 즉시 생산현장 투입가능으로 원활한 생산지원 및 재고부담 경감가능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입화물이 늘어남에 따라(1995년 기준 4억 2천만톤) 保稅區域 시설이 부족하나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保稅區域 설치 수요를 줄여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制度改善이 요구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總輸出額의 약 23% 비중을 차지하고 保稅工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支援措置를 강구하여 保稅工場을 통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保稅藏置場 등의 集團化·大型化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그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保稅區域別로 특성이 맞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라. 輸出入 通關節次에 대한 評價

物流難은 누구보다도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物流問題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統合效率을 높이는 일이며 이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生産코스트의 하나로서만 接近돼 왔던 물류를 이제는 하나의 서비스상품으로까지 인식해야 할 시대가 왔다. 이는 특히 物流問題의 해결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같은 하드웨어적 시각에서 보지 않고 陸運, 海運과 航空運輸 등 물류를 함께 처리

하는 운영시스템의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시각에서 봤을 때 납득이 가는 얘기다. 빠르고 싸고 편리한 物流서비스가 개발되어 우리의 2차산품과 결합됐을 때 輸出品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물류 중심기지로써 부수적 이익도 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經濟活動의 중요비용 요소인 물류 및 유통비용의 최소화는 國家競爭力 제고의 최고 관건으로서 그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물류비용의 최소화는 도로·항만 등의 사회자본(Infrastructure)의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억제하는 제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改善은 큰 비용의 투자 없이 물류비용을 최소화하여 國家競爭力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그동안의 關稅行政은 다른 行政分野에 비하여 國際化·先進化의 필요성이 컸고 關稅行政 당국도 이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고 본다.

關稅行政이 국가간에 이동되는 사람과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라는 특성 때문에 국가별로 關稅制度和 通關節次가 다른 경우 무역피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通關制度·品目分類·關稅評價 등 제반 관세행정제도가 WCO, GATT 등을 통한 國際關稅協力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통일화되고 있다. 이러한 關稅行政의 국제성 때문에 미국·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은 끊임없이 우리나라 通關節次에 대한 개선요구를 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그간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通關所要時間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길고 또 관련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關稅廳에서 표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輸入通關 所要時間을 입항에서부터 물품반출까지의 기간으로 보면 1994년 3월 기준시 선진국들보다 4~6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류비용 측면에서 볼 때 輸出額 대비 우리나라의 物流費가 17%(미국 7%, 일본 1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러한 비용은 運送·保

관·荷役·船積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모습은 그동안 汎政府的으로 法令과 制度를 광범위하게 개선하여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緩和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불편 없이 기업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5년 12월 關稅法을 개정하여 수출입 면허제를 수출입신고제로 전면 전환하고 保稅運送制度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入港 즉시 生産現場 투입가능체제로 전환([圖 IV-3] 참조)되었고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성실한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보세운송 및 검사생략으로 원활한 물류흐름을 통한 早期輸出船積이 가능하게 되었다([圖 IV-4]). 이렇게 행정절차 簡素化를 통한 물류흐름의 원활화로 통관소요시간이 종전 평균 15일에서 2~3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制度만 바꾼다고 해서 당초 목표대로 通關節次가 저절로 간소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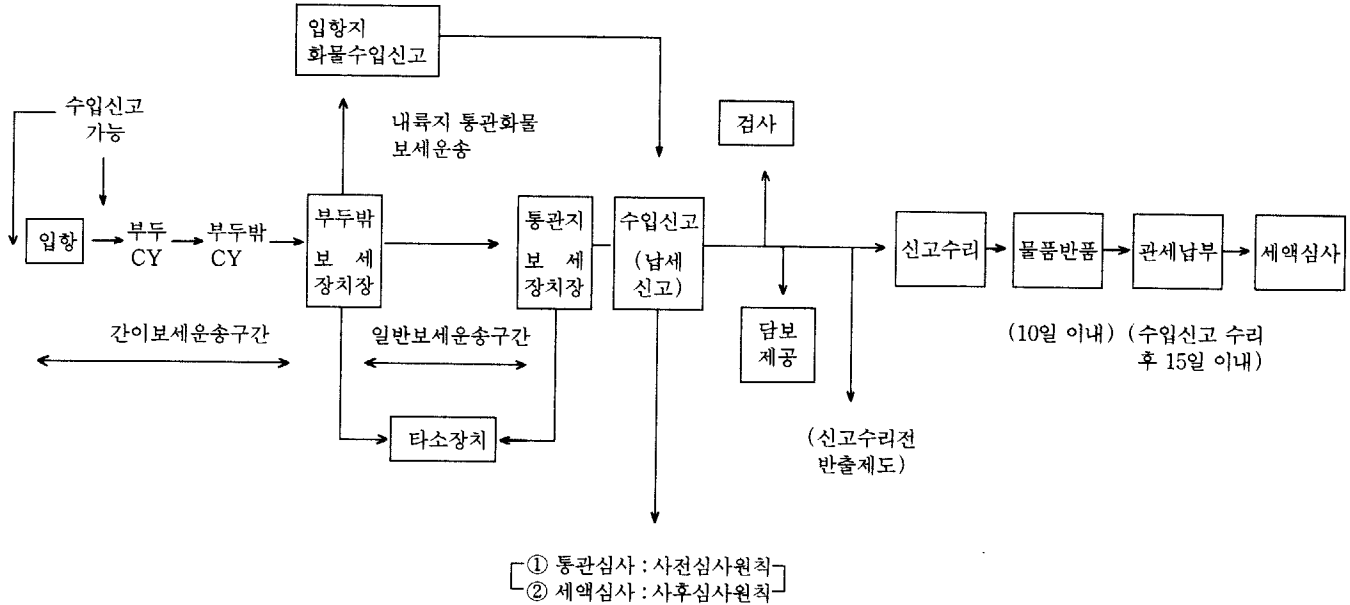
通關節次에 따르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출입물품의 흐름을 촉진하고자 하는 政策目標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輸出入을 하는 업체에서도 同 制度 변화를 인식하여야 하고 이에 부응하여 통관 관련 사회조직의 재편성이 필요하며 절차 간소화에 따른 納稅道義의 수준 또한 크게 제고되어야 할 것이고 관세행정당국에서도 물류흐름의 원활화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실현 의지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國際關稅協力制度 運營에 대한 評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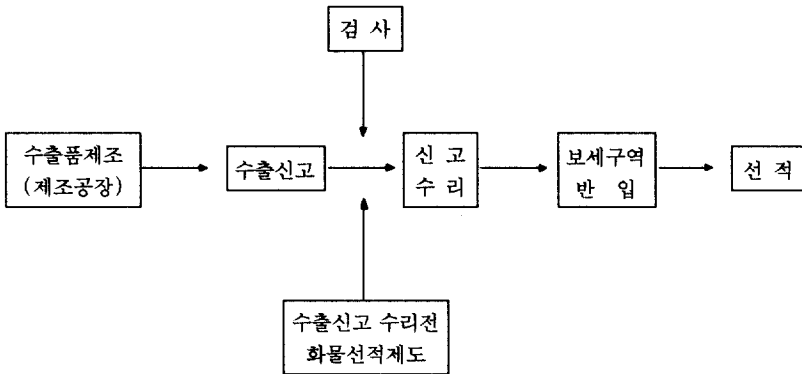
UR의 타결로 세계는 국경 없는 無限競爭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關稅行政도 무역의 최일선에서 國際競爭에 노출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대외관세협력은 GATT/WTO와 WC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韓美, 韓日 등 양자간 關稅協力도 꾸준히 추진돼 왔으나

[圖 IV-3] 輸入通關節次圖



[圖 IV-4] 輸出通關節次圖



앞으로 國際競爭力 있는 관세행정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는 양자간 (Bilateral) 협력과 다자간 (Multilateral)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선진제도를 우리 관세제도에 수용하는 등의 노력이 가일층 요구된다(〈表 IV-12〉 참조).

특히 우리나라가 GNP 규모나 총교역량에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으며 造船, 半導體, 自動車 등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상태이므로 이에 따라 미국 및 EU는 한국을 개도국으로 간주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수년 안에 한국은 객관적으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도국 입장에서 關稅協力 활동을 전개해 왔던 분야에 대한 우리의 향후 입장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WTO 關稅協商 결과가 시행 초기에 있는 상태에서 APEC 내에서는 UR 협상 결과의 자발적인 조기시행 등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 또한 전향적으로 정해야 할 입장에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우 우리 기업들이 수많은 나라로 수출시 직면하는 관세상의 障壁 내지는 隘路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보다 능동적인 雙務間 關稅協力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表 IV-13〉 참조).

〈表 IV-12〉 關稅關聯 主要 國際機構 및 協定現況

(單位: 個)

	기능/목적	설립/체결일	가입국	아국가입일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TO관련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장벽제거로 자유무역실현	1995. 1. 1	110	1995. 1. 1
2.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각국 관세제도의 조화와 통일 및 관세기술의 발전과 증진도모	1952. 11. 4	138	1968. 7. 2
3.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방콕협정)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PNG, 한국	아·태지역의 경제 재건, 개발촉진, 경제활동 증대 및 경제협력 강화	1947. 3	58 (정:48 준:10)	1949. 3. (준회원국) 1954. 10. (정회원국)
4.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관련협정)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범개도국간 무역특혜협정	무역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개방 및 남북협력 도모	1964. 3.	186	1964. 3.
5.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태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	1989	18	1989

<表 IV - 12>의 계속

	기능/목적	설립/체결일	가입국	아국가입일
6. Asia EDIFA(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Board	EDI Message의 국제표준화	1990. 11	7	1992. 6
7. HONLEA(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y): 아·태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회의	불법마약거래 단속	1976 (아·태지역 회의)	25	1993
8. CCAP(Conference of Customs Administrators in the Pacific Basin): 환태평양 세관행정 최고책임자회의	세관행정발전 방안 논의	1989. 5	14 (고정되어 있지 않음)	1989. 5

<表 IV - 13> 雙務間 國際關稅協力 運營 現況

(單位 : 個)

	구 분	품목수	주 요 품 목	내 용
1987. 7. 1	한·미 농산물협상	9	레몬, 아보카도, 버찌	농산물 관세인하
1990. 7. 1	한·미 통신협상	51	텔레프린터, 교환기 등	관세인하계획 1년 조기시행
1991. 1. 1	한·미 포도주관세협상	20	포도주 및 관련제품	1991년 25%, 1992년 20%
	한·형가리관세협상	31	필름, 철강, 알루미늄 제품	평균관세율 15.2~10.2%
	한·영 위스키협상	4	위스키류	1991~1993년중 40-40-30%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2	팜핵유(조유·중제유)	야자유 관세율 수준으로 인하
1995. 1	한·미	129	농산물	UR협상시 미국측과 쌍무협상결과 양허
1995. 1	한·미	59	자동차	10%→8%로 인하
1996. 1	한·EU	11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리큐르 및 포도주류주 이외의 브랜드	30%→20%로 인하

바. 關稅評價制度的 運營에 대한 評價

關稅評價에 관한 國際協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68년 7월 CCC 關稅評價協約에 가입한 이래로 16년간 同 CCC 關稅評價協約(BDV)을 關稅法令에 구체화하여 운영하여 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 캐나다 등이 주도한 GATT 관세평가협약에 의한 신관세평가제도가 시행되게 되자 1981년 1월 6일 5년간의 시행유보 조건으로(同 協約 제6조는 8년간 유보) 同 協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CCC 關稅評價協約으로부터 GATT 新關稅評價體系로 전환하는 데에 따르는 制度 變更의 충격을 당초의 협약상의 의무시행시기보다 앞당기기 위하여 1984년 7월 1일부터 신관세평가제도의 내용을 미리 시행하여 오다가 1986년 2월 5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나아가서 1989년 2월 5일부터는 同 協約 제6조의 규정마저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WTO 관세평가협약에는 1994년 12월 30일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동 협약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종전의 CCC 關稅評價協約으로부터 1982년 4월에 탈퇴한 바 있다.

현행 關稅法 및 WTO 關稅評價協約은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제1평가 方法에 의존하고 있는바, 제2~제6방법에 의한 평가가 적은 것이 정보의 부재나 세관직원의 평가에 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表 IV-14〉 참조).

또한 關稅評價는 1993년 1월 1일부터 일정기간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를 사후에 기업별로 확인 조사하는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1996년 상반기 현재의 사후기업조사 대상업체는 3,358개 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사후평가로 인한 증수실적을 보면 꾸준히 增加하고는 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評價된다(〈表 IV-15〉 및 〈表 IV-16〉 참조).

〈表 IV - 14〉 關稅評價方法別 運營現況

(單位：%)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제 1 방 법 (당해물품 거래가격)	18.7	72.6	77.9	99.5	99.4	91.4
제 2 방 법 (동종동질 품목가격)	-	-	-	-	-	3
제 3 방 법 (유사물품 가격)	-	-	-	-	-	-
제 4 방 법 (국내 판매 가격)	-	-	-	-	-	1.8
제 5 방 법 (국내 판매 가격)	-	-	-	-	-	-
제 6 방 법 (국내 판매 가격)	41.3	27.4	22.1	0.5	0.6	3.2

註：1991년 이후 자료의 신빙성에 다소의 문제가 있어 공식적으로 추정하지 아니함.
 資料：關稅廳, 『關稅行政 動向分析』, 1987~1992.

〈表 IV - 15〉 事後評價로 인한 增收 實績

(單位：百萬元, %)

	1991		1992		1993		1994		1995	
	증수액	구성비	증수액	구성비	증수액	구성비	증수액	구성비	증수액	구성비
특허권 등 사용료	18,839	63	12,919	51.3	13,699	66.8	7,892	34.2	11,244	35.5
특수관계자	3,514	11.8	3,578	14.2	975	4.8	1,505	6.5	2,261	7.1
생산지원비	4,638	15.5	5,912	23.5	3,369	16.4	2,335	10.1	4,897	15.25
운임·보험료	1,714	5.7	758	3.0	407	2.0	1,343	5.8	459	1.4
수수료	339	1.1	165	0.6	411	2.0	1,589	6.9	1,103	3.5
기타	851	2.2	1,865	7.4	1,654	8.1	8,426	36.5	11,714	37.0
계	29,895	100	25,197	100	20,516	100	23,090	100	31,678	100

資料：關稅廳

〈表 IV - 16〉 不誠實業體 指定現況(1991~1995年)

(單位：個)

	1991	1992	1993	1994	1995
가격신고 허위기재	130	103	65	43	34
부정확한 기재	5	24	1	2	3
요구자료 파괴·거부	35	71	20	5	5
기 타	2	6	0	0	0
계	172	204	86	50	42

資料：關稅廳

사. 關稅分割納付制度의 運營에 대한 評價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대외지향, 전방위 그리고 다각화의 세 가지 기초 — ‘대외지향’은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기회를 발굴해 내자는 것이고, ‘전방위’는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전방위의 대외정책을 추진 하자는 것이며, ‘다각화’는 그동안은 제품 위주였지만 이제는 우리 인력이 우수하므로 서비스쪽도 관심을 갖자는 기초이다 — 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이러한 경제정책 기초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각종 支援政策에 힘입어 우리의 수출 및 제조업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이제 WTO체제가 출범된 시점에서는 特定性(specificity)이 있다고 판단되는 支援(補助金, 減免支援 등)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하에서 수출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政府의 直接的 支援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은 政府次元的 直接的 支援을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아니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증대나 업종전문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민간부문의 자구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政府의 直接 支援이 크게 제약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없는 支援은 WTO체

제하에서도 유지가 가능한데 關稅側面에서 계속 支援이 가능한 수단은 關稅還給, 機能別 關稅減免, 彈力關稅制度, 關稅分割納付制度 등이 있으나, 특히 관세분할납부제도는 특정성이 없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면에 있어서 또 그 업계의 활용면에 있어서 가장 뒤처지는 制度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關稅分割納付制度의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극히 적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表 IV-17〉 참조).

따라서 WTO체제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制度의 하나인 分割納付制度를 보다 보완·발전시켜 우리의 수출 및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表 IV-17〉 關稅分割納付 承認 實績

(單位: 件, 百萬元)

	1990			1993			1995		
	건수	감정 가격	분 납 승인액	건수	감정 가격	분 납 승인액	건수	감정 가격	분 납 승인액
36조1항1호 (일반수입자)	3,468	1,090,255	144,407	360	478,837	22,103	686	1,242,636	61,355
36조1항2호 (정부·지방 자치단체)									
36조1항3호 (학교 등 비영리법인)	2	1,707	222	3	479	33	3	1,751	140
36조1항4호 (의료기관)	1	14	2	108	3,396	298	44	2,317	186
36조1항5호 (기업부설 연구소 등)				1	170	15			
36조1항6호 (중소제조업체)				407	161,437	13,852	564	512,548	29,050
36조1항7호 (직업훈련원)									
누 계	3,471	1,088,562	144,631	879	644,319	36,301	1,297	1,759,253	90,731

資料: 財政經濟院

아. 産業被害救濟制度의 運營에 대한 評價

우리나라는 經濟의 國際化·開放化를 위하여 1988년 IMF 8조국에 가입하여 外환시장을 개방하였으며, 1990년에는 GATT 18조국에서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여 貿易自由化를 실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른 貿易自由化의 실행정도를 살펴보면 輸入自由化率은 1984년 84.8%에서 1996년 98.5%(공산품 99.9%)로 높아졌고, 平均關稅率은 1984년 21.9%에서 1996년 7.9%로 낮아져 우리나라도 거의 선진국 수준의 貿易自由化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간 GATT 제18조 B항의 개도국조항에 의하여 사전적 貿易管理政策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貿易自由化에 따르는 보완대책으로서 GATT 등 國際規範이 인정하는 사후적 보완조치인 産業被害救濟制度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바, 1986년 對外貿易法의 制定으로 同 制度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表 IV-18〉 참조).

이와 같이 産業被害救濟制度는 貿易自由化에 따르는 産業被害를 사후적으로 救濟하기 위한 제도이고 國際的인 통제를 강하게 받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 國內産業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내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외국정부나 기업에 의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외적 신뢰성도 확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産業被害救濟制度를 잘못 이해하여 貿易自由化가 진행되어 기존과 같은 사전적 수입제한조치에 의하여 국내산업이 보호를 받지 못하자 그 대안으로 도입한 새로운 保護貿易手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최근 대량 수입되고 있는 農産物이나 輕工業製品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특히 심한데,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輸入增加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덤핑防止關稅制度나 緊急輸入關稅制度(safeguard)로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産業被害救濟制度를 잘못 활용하면 국제규범에 위배되어 타국과

의 심한 통상마찰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表 IV-18〉 産業被害 提訴・處理 現況

(單位:件)

	총신청수	판정결과		조사종결·중지		기각	조사중
		긍정	부정	신청철회	약속수락		
반덤핑	14	6	4	2	2	-	-
세이프가드	26	16	1	7	-	1	1
합계	40	22	5	9	2	1	1

註: 1995년 11월말 현재 기준임.

資料: 貿易委員會

사. 關稅審判制度的 運營에 대한 評價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권익이 신장됨에 따라 關稅法上 不服申請인 異議申請, 審査請求, 審判請求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表 IV-19〉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年度別 異議申請 件數는 1988년의 7건에서 1993년에는 11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審査 및 審判請求 件數는 1988년에 각각 57건 및 38건에서 1992년을 예외로 하고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이러한 不服申請件數에 대하여 稅關이나 關稅廳 또는 國稅審判所의 認容率은 10~20%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최근 국민의 권리 의식이 나날이 신장되어 租稅賦課의 적법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國稅審判制度的 법적인 측면이나 運營上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보다 높은 權利救濟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表 IV-20〉 참조).

〈表 IV-19〉 不服申請 提起 趨勢

(單位：件, 百萬원)

	이 의 신 청				심 사 청 구				심 판 청 구			
	이월 건수	접수 건수	계	금 액	이월 건수	접수 건수	계	금 액	이월 건수	접수 건수	계	금 액
1988	-	7	7	129	5	52	57	2,239	19	19	38	2,651
1989	-	6	6	174	5	75	80	3,381	8	19	27	1,697
1990	-	19	19	1,525	19	94	113	4,899	10	62	72	4,765
1991	8	18	26	336	30	100	130	8,058	5	73	78	5,533
1992	-	17	17	449	13	82	95	7,837	25	50	75	7,072
1993	1	117	118	1,704	9	211	220	6,089	19	82	101	7,698
1994	10	51	61	2,817	35	180	215	10,614	34	125	159	6,047
1995	1	30	31	3,596	13	195	208	21,327	81	119	200	13,499

資料：關稅廳

〈表 IV-20〉 不服請求 認容率 趨勢

(單位：%)

	이 의 신 청		심 사 신 청		심 판 청 구	
	건수기준	금액기준	건수기준	금액기준	건수기준	금액기준
1991	8	3	9	1	36	20
1992	31	6	26	14	38	32
1993	3	8	5	10	12	37
1994	10	3	7	5	15	17
1995	13	3	27	43	18	40

資料：關稅廳

자. 關稅士 制度의 運營에 대한 評價

關稅士 업무 분야에도 무한경쟁의 바람은 곧 불어닥칠 것 같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확대로 輸出入物量이 계속 증가하여 經濟環境이 物的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이 계속 개발되고

새로운 國際運送方式의 이용에 따른 貿易慣行이 도입되며, 全世界貿易業界는 EDI에 의한 서류 없는 貿易節次를 실현하는 등 世界貿易의 관행과 절차는 크게 변모하고 있다.

최근 수출입 화주들은 화물의 荷役, 運送, 保管, 通關 등 일련의 貿易 관련 절차에서 일관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1995년 1월부터 우리나라는 通關서비스業種이 시장개방되었고 1996년부터 陸上運送業이 개방(運送業은 1995년에 倉庫業은 1993년에 각각 개방)되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의 陸上運送業體가 通關法人을 설립하여 通關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들 外國通關法人이 外國行商 運送業體와 연계하여 海上運送되는 物品通關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 通關業 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한경쟁시대에서 물류비용의 절감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큰 動因이 되고 있는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EDI 運營 등 通關節次가 크게 간소화됨에 따라 關稅士 無用論이 제기되고 있다.

貿易이 특수한 분야이고 通關節次가 까다로웠을 때에는 關稅士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나 通關節次가 간소화되고 稅番分類, 評價, 기타 通關節次에 관하여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직접 안내함에 따라 관세사 가치가 저하되고 있고 1980년대 이전에는 세관의 통관여부가 사업의 손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므로 關稅士의 업무영역이 무역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았으나 최근에는 運送·保管 등이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通關節次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關稅士는 關稅窓口의 통관만 업무범위로 하는 데 비하여 운송업자는 운송·보관·통관에까지 貨主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세사의 업무는 운송·보관과정의 일부로 축소·격하되고 있다(〈表 IV-21〉 및 〈表 IV-22〉 참조).

〈表 IV-21〉 關稅士 開業 現況 (1990~1995年)

(單位: 名,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자격소지자(A)						981
개업자수(B)	357	364	376	374	430	445
개업비율(B/A)						45.5

註: 1995년 10월말 현재임.
 資料: 關稅廳.

〈表 IV-22〉 關稅士 年齡別 開業 現況

(單位: 名, %)

	34세 이하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세 이상	계
인원	9	15	36	42	50	93	85	62	39	14	445
비율	2.0	3.4	8.1	9.4	11.2	20.9	19.1	13.9	8.8	3.1	100.0

註: 1995년 10월말 현재임.
 資料: 關稅廳

차. 關稅行政罰制度的 運營에 대한 評價

關稅行政의 기본업무는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부정 수출입의 방지이다. 최근 關稅廳은 輸出通關의 EDI와 수입물품 통관의 간소화·자율화를 추진함에 따라 자칫 밀수의 사각지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수출 EDI가 시행됨에 따라 전산조작을 통한 허위수출과 외화의 밀반출이 예상되는 등 전산을 이용한 밀수출입사범이 점증할 우려가 있다.
- ② 통신망이 발달되어 기업의 國際化가 진전됨에 따라 본 지점간의 虛僞輸出入, 가격조작, 외환조작 등 국제거래를 통한 밀수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③ 國際競爭力이 취약한 農·水·畜産物의 불법유입이 예상된다.
- ④ 국가통일정책과 남북교류 확대 측면에서 북한물자가 無關稅化됨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하여 위장 반입될 소지가 크다.
- ⑤ 貿易規模의 증가로 검사생략 물품이 확대되고 通關이 간소화된 점을 악용하여 過多搬入, 低價申告, 書類變造 등 偽裝搬入 사례가 늘고 있다.
- ⑥ 생활수준의 향상과 무역규모의 증대로 입출국 인원이 급증하고 旅具檢査制度가 혁신되어 旅具檢査 비율의 대폭적인 감소를 틈탄 공항밀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 ⑦ 남서해안의 지리적 특성상 밀수선박에 대한 감시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내국선박을 이용한 공해상에서의 분선밀수가 예상된다.
- ⑧ 외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경향이 잔존하고 있고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 主産團地에 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국산품과 혼합판매되는 등 국내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
- ⑨ 1990년 이후 국민소득 향상과 향락추구 계층의 증가로 마약밀수가 늘어나 마약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轉換되었고, 마약류 운반수단, 은닉수법, 마약출처국 등이 매우 다양화되고 갈수록 기묘화·지능화되고 있다.
- ⑩ 최근 총기류의 밀반입이 늘어나고 있다. 밀반입된 총기류가 테러 등 폭력조직에 의한 사회적 범죄목적에 이용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이다.
- ⑪ 국가간 公正貿易의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위조 상품 등 知的財産權 침해 물품의 교역은 점차 조직화·대형화되어 이제는 전세계 교역의 8%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 關稅行政의 간소화·자율화 추세를 악용한 범죄 및 밀수행위를 척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행 關稅行政罰의 수준은 부분적으로는 너무 과중하거나 과소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表 IV-23〉 및 〈表 IV-24〉 참조).

〈表 IV-23〉 最近의 密輸 類型

	유 형	수 법	주 요 품 목
무역편승 밀수	일반무역편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의 세율 및 가격조작 ○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조작으로 수입제한물품 위장 수입 ○ 정상신고 화물 속에 은닉 	식료품, 기계, 의약품
	탁송품 및 이사 화물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화물로 가장 밀반입 ○ 타 화물 속에 은닉 및 초과반입 	골프채, 금괴, 가전제품, 모피, 의류, 녹용 등
항공편 밀수	여행자 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은닉: 허리품, 발바닥, 항문 등의 신체의 은밀한 부분 ○ 여행용구 이용: 가방, 이중장치 ○ 휴대품 이용: 술병 속, 통조림 속, 골프채 속 ○ 신변품으로 변형: 목걸이, 버클 등 	금괴, 보석, 시계, 장 식용품 등
	항공사 직원 가담 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하목록 조작에 의한 밀수 	한약재 등
선박편 밀수	외항선원(냉동물 운반선박, 일반 외 항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내 은닉: 기름탱크 속, 선실내 비창설치 은닉 등 ○ 신변은닉: 옷 속, 항문 등 ○ 공·영해상에서 분선인수, 인계 ○ 휴대품 가장 	금괴, 시계, 전자계산 기, 식료품 등
	부관페리 여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은닉: 옷 속, 발바닥 등 ○ 여행용구 이용: 가방, 이중장치 등 ○ 부관페리 반입승용차 이용 은닉: 문짝, 의자 및 트렁크 속, 기름탱크 속 	금괴, 시계, 전자계산 기, 식료품 등
SOFA 관련 밀수	면세물품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인, 군속이 한국인과 결탁 매입유출 ○ PX종업원이 판매가장 부정 유출 ○ 기지촌 위안부가 미국인으로 부터 용역 대가로 받은 물품 판매 	VTR 등 가전제품, 커피 등 식료품

〈表 IV-23〉의 계속

	유 형	수 법	주 요 품 목
SOFA 관련 밀수	미군우편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인, 군속이 자가용품 가장 반입유출 ○ 한국인이 미군인 명의 이용 반입유출 	핑크코트, 고급의류, 의약품 등
	미군이사화물 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인, 정상신고 화물 속에 은닉 ○ 한국인이 미군인 명의 이용 가장 반입유출 	호화가구, 가전제품 등
외화 밀반출	여행자에 의한 밀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은닉(허리품, 발바닥 등) ○ 휴대폰 이용(도자기 속, 책갈피 속) ○ 여행도구 이용(가방, 이중장치 등) ○ 공항 상주업체 직원이 운반 	
	외항선원에 의한 밀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은닉 ○ 휴대폰 이용(옷 속 등)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에 의한 밀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대금 저가결제 차액 해외유출 ○ 수입물품대금 고가결제 차액 해외유출 	
	SOFA 대상자 이용 밀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인들이 출국이사화물 또는 휴대폰 속에 은닉반출후 전달 ○ 미군 등의 명의 이용 	
밀수품 시중유통	각종 수법으로 밀 반입된 물품 및 부 정유출된 면세품 시중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은 창고에 보관, 카탈로그 판매 ○ 부정유출된 통관필증 부착 ○ 불특정 수입면장 비치 	호화의류, 가전제품, 보석류, 일제가전제품, 오락기, 대만산 컴퓨터칩

資料 : 서울지방검찰청, 『關稅刑罰法』 참조.

〈表 IV-24〉 密輸事犯 檢舉 實績

(單位 : 件, 百萬元, %)

		1994년 누계		1995년 10월		1995년 누계		전년동기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밀 수 입	협의의 밀수입	656	22,181	64	2,229	521	30,801	92	200
	· 공항밀수	320	9,634	37	705	292	8,459	103	194
	· 해상밀수	336	12,547	27	1,524	229	22,342	80	203
	밀수품의 시중판매	1,516	8,726	84	179	1,053	4,812	85	60
	수입규제물품	95	32,194	9	4,140	73	60,149	96	196
	위장수입								
	가격조작 등에 의한 관세포탈	182	65,711	20	1,662	142	86,251	111	175
	관세 부정환급	8	459	0	0	3	3	38	1
소 계		2,457	129,171	177	8,210	1,792	182,016	88	175
밀 수 출	협의의 밀수출	51	1,780	3	1,091	22	11,103	48	721
	· 공항밀수	39	1,130	2	30	12	406	34	40
	· 해상밀수	12	650	1	1,061	10	10,697	91	2,058
	위조상표	1	772	0	0	5	256	500	33
	소 계	52	2,552	3	1,091	27	11,359	57	491
합 계		2,509	131,823	180	9,301	1,819	193,375	90	186
마 약 밀 수	밀수입	15	4,951	1	15	6	124	50	22
	밀수출	0	0	0	0	0	0	0	0
	소 계	15	4,951	1	15	6	124	50	22
합 계		2,524	136,774	181	9,316	1,825	193,499	88	181

註 : 1994년 밀수입 공항에 외화밀반입 실적 1건 1,600만원 포함.

資料 : 關稅廳

第 2 節 向後 關稅政策 方向

1. 與件

최근 國際交易의 질서는 多者主義, 地域主義 그리고 開放的 地域主義가 혼재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급변하고 있다. 1995년 WTO의 출범으로 多者主義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EU, NAFTA 등의 지역주의가 성행하고 있으며 APEC도 실질적인 經濟協力機構로의 확대 발전을 활발히 논의하는 등 開放的 地域主義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交易 秩序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國際化와 開放化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關稅障壁과 非關稅障壁의 철폐를 수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國內産業의 保護와 育成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입장만을 고려한 독자적인 關稅政策을 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2. 分野別 關稅政策 運營方向

세계는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으며, 이러한 環境變化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세계化'를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關稅行政의 방향은 소극적으로 고객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서 적극적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관세행정당국은 1996년 7월 1일부터 輸出入免許制의 申告制로의 전환, 관세사후납부제도의 도입, 보세구역장치제도의 폐지, 보세운송제도의 원칙적 폐지 등을 통해 稅關에서 물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제도개혁을 한바 있다. 그러나 制度만 바꾼다고 해서 당초 정책입안 당시의 생각대로 물류의 흐름이 신속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세행정당국에서 물

류흐름의 원활화라는 政策目標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政策 실현의지를 확고히 하고 새로이 도입된 制度 이외의 기타 다른 모든 관세관련제도가 총체적으로 개선되어 다함께 어루어짐으로써 보다 더 빨리 당초 의도한 政策目標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분야별 關稅政策의 개혁방향을 모색해 본다.

가. 輸出入通關制度 運營方向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물류촉진을 위한 輸出入通關制度 개혁 내용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① 輸出入免許制의 輸出入申告制로의 전환 ② 물품이 보세장치장에 搬入된 후 수입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입항 전후부터 허용 ③ 關稅의 사후납부제 도입 ④ 보세구역 반입 및 보세운송 허가제의 신고제로의 전환 등 실로 개혁적인 조치를 導入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輸出쪽은 수출 EDI 도입으로 즉시 通關體制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고 輸入쪽은 수입신고부터 수입신고수리까지 종전 약 15일 걸리던 통관소요시간이 약 2~3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연 輸入通關 소요시간이 당초 목표대로 2~3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輸入通關節次만 고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SOC 擴充, 陸運, 海運, 航空運輸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절차가 개선되고 시설이 확충되어야 당초의 정책목표가 원만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주변여건의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 는 한편 關稅行政執行 당국에서는 당초의 수입통관절차의 획기적 신속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 실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① 관세행정운영원칙의 일대전환 곧, 포지티브(positive)체계는 네거티브(negative)체계로, 대물관리체계는 대기업관리체계로, 사전관리체계는 사후관리체계로, 전수조사체계는 표본조사체계로, 물류정지상태에서의 통관체계는 물류흐름 상태로의 통관체

계로 일대전환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부분이 이행되어 왔으나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러한 方向으로 모든 稅關行政이 새롭게 짜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② 수출입통관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③ 제도개선 목표관리제를 導入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르는 통관 신속화 효과의 계량화를 도모하며 ④ 입항·반출 소요시간을 정기조사하고 ⑤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導入하며 ⑥ 輸出入檢査比率의 연차적 인하목표를 정하여 검사비율을 하향조정(輸出: 원칙적으로 검사생략, 특별히 우범물품 선별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1% 이내로 최소화하고 앞으로 검사제도 폐지를 지향, 輸入: 입항전 검사결정, 검사비율 10% 이내로 축소)하며 ⑦ 수입통관시 각종 특별법상의 구비요건에 대한 확인대상 및 그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심사방법을 강구하고 ⑧ 入港前 輸入申告制를 정착시켜 화물이 도착하면 물류흐름이 끊기지 않고 생산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迅速通關體制를 구축하며 ⑨ 虞犯貨物選別管理體系(cargo selectivity system)를 발전시켜 대부분이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하고 虞犯貨物만 집중 검사하여 檢査比率를 낮추되 적발률은 제고하고 ⑩ 旅行者 通關情報處理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검사장비를 현대화하여 대부분의 선량한 여행자는 稅關節次를 느끼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⑪ 世界關稅機構(WCO)에서 통관제도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제정한 國際關稅規範(Kyoto convention)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基本關稅率制度의 運營方向

우리나라의 基本關稅率 중심체계는 1984년을 기점으로 하여 차등관세율체계에서 균등관세율체계으로 전환하면서 1984~1988년 기간중에는 20%의 중심세율로 수렴시켰고 1989~1994 기간중에는 8%의 중심세율로 각각 5년 또는 6개년의 예시제(방위세 폐지에 따라 관세율인하예시

1년 순연)를 통하여 基本關稅率을 크게 인하하여 1996년 현재 우리나라의 平均關稅率은 선진국 수준인 7.9% 수준까지 인하됨으로써 상당히 낮고 공평한 관세율체계가 정립되어 시행중에 있다.

최근 政府는 WTO 출범 이후 신무역질서에 대응하고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하여 1996년도에 關稅率體系의 전면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의 基本關稅率政策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基本關稅率 정책운영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는바, ① 基本關稅率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에 있어 均等關稅率制度에 대하여서는 均等關稅率制度가 반드시 差等關稅率制度보다 효율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며, 다만 均等關稅率制度를 택할 것인가 差等關稅率制度를 택할 것인가는 정책결정자의 선택의 문제라 하겠다. ② 또한 중심관세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1988년에 마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율의 중심세율은 1987년 한국산업은행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을 근거로 한 것인바, 우리나라의 교역재의 내외가격차가 1983년의 약 22% 수준에서 1987년의 13%로 약 4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2차 관세인하예시제가 끝나는 시점인 1993년에는 교역재의 내외가격차가 평균 8%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 전망을 근거로 하여 1993년의 中心稅率이 8%로 책정되었으며 1990년 방위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緩和하기 위해 이의 시행을 1년씩 순연함으로써 1994년의 中心稅率이 8%가 되었다. 그러나 1992년도에 발표된 韓國銀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역재의 내외가격차가 1983~1987년이 기간 동안 약 40% 하락하였던 것이 1988~1991년기간 동안에 오히려 약 40% 인상되어 18.8%로 크게 높아져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중심세율은 이러한 최근의 經濟環境 變化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③ 한편 관세인하예시제도에 대하여는 업계의 충격완화, 미래세율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등 긍정적인 면과 우리의 競爭力 水準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인하되었다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海外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

라가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독자적으로 關稅政策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관세인하예시제에 의한 관세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④ 또한 현행 관세율 수준의 재정수입 확보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볼 때 內國稅 賦課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관세부담률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關稅賦課에 대한 내부적 및 외부적 제약조건에 비추어 지나치게 內國稅에 의존하고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향후 基本關稅率政策의 운영방향에 있어 우선 基本關稅率 體系面에서는 관세율체계의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均等關稅率體系를 장기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유치산업의 한시적 보호 등 약간의 차등적인 관세부과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 현행 관세율수준은 현재의 수준이 적정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이 사실이나 UR, APEC 등 國際經濟協力을 통한 관세율 인하추진 등을 감안할 때 관세율 인상은 곤란하다 할 것이며 일부 품목에서 현행 관세율에 큰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기본틀을 크게 헤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關稅率 調整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⑥ 아울러 관세인하예시제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이제는 더이상 인하할 關稅率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의 다자간 협상에 대처하기 위한 관세협상력 (bargaining power)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이상 동체도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⑦ 이상과 같은 基本關稅率體系의 골격 이외에 비경쟁원자재와 중간재의 무세화 논의에 대하여는 이들 품목에 대한 關稅引下에 따른 가격경쟁력 증대효과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은 데 비하여 關稅收入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차원에서 비경쟁원자재와 중간재의 무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⑧ 기타 UR의 무세화협상의 결과로 나타난 역관세현상의 시정과 후발개도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저가수입품에 대한 수입억제 차원에서의 종량세부과 논의는 종량세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등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신

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彈力關稅制度의 運營方向

우리나라의 關稅法上 彈力關稅制度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및 할당관세가 있다. 이러한 彈力關稅制度는 199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1990년 이전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關稅率을 내리는 할당관세제도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긴급관세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1990년 이후에는 關稅率을 내리는 할당관세제도는 계속 시행되었으며 공정 및 불공정무역거래로 인해 야기된 산업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덤핑방지관세제도, 조정관세 및 관세율을 올리는 할당관세제도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① 이러한 彈力關稅 운영시 제기되는 전반적인 문제는 탄력관세 운영의 명료성(transparency)과 객관성의 결여와 탄력관세가 어느날 갑자기 부과되는 데 따른 民願摩擦이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는 탄력관세 발동사전예고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탄력관세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동 세칙에 따라 탄력관세를 발동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② 한편 덤핑防止關稅制度의 운영에 있어서는 同 制度의 활용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바 同 制度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업피해판정시 경제학이론 및 고도의 통계기법 등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우리의 주요 수출국의 반덤핑관세제도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양국간에 분쟁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통상 외교노력의 강화방안 및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반덤핑관세제도를 效果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③ 緊急關稅 및 調整關稅制度의 운영에 있어서 緊急關稅는 양허세율을 초과하여 關稅率을 부과할 경우에, 調整關稅는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올리는 경우나 양허세율이 아닌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나 외국으로부터 양 제도의 구분이 애

매모호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양 제도의 명확한 구분과 세부운영기준 등이 앞서 제안한 운영세칙에 명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④ 할당관세제도는 그 운영의 만성화가 가장 문제인바 이는 호황기에는 국제가격 상승추세로 관세부처로부터 할당관세적용 대상품목의 확대적용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안정세를 견지하게 됨에 따라 할당세율 적용을 정지하고 基本關稅率로 환원하여 관세율의 彈力性을 회복하고자 하면 불황기에 직면하고 있는 관련 産業의 어려움 때문에 기본관세율의 환원이 어려워 탄력성 회복이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하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割當關稅制度의 기본운영방향, 대상품목, 세율책정 기준, 적용기간, 만성적인 할당관세 대상품목의 기본관세율로의 흡수여부 등에 대하여 탄력관세 운영세칙 속에 포함시켜 동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하면 만성화의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본다. ⑤ 아울러 특별긴급관세 운영에 있어서는 시행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제도속 지 미비 등으로 말미암아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에 대한 일선 세관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련단체를 통한 對業界 홍보 노력을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탄력관세제도로서의 제도적 장치만 되어 있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계관세제도, 활척관세제도, 차액관세제도와 계절관세제도의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운영시 경험 미숙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task force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國際關稅協力制度의 運營方向

그동안 우리의 대외관세협력은 GATT/WTO와 WC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한·미, 한·일 등 양자간 關稅協力도 꾸준히 추진해 왔는바, 앞으로 WTO와의 관세협력에 있어서는 UR 타결 결과가 우리 경

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효과를 제거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주요수출국의 관세양허 내용을 産業別·品目別로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의 관세협상자료로 활용하고 우리 관련업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직접투자 등 해외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② 수입국 세관과 contact point를 운영하여 사전에 우리 수출품에 대한 애매한 품목분류는 사전에 명확히 하고 ③ 關稅還給制度의 간소화 및 상계가능보조금에 대하여는 허용보조금으로의 전환추진 등을 통하여 관세상 수출지원을 극대화하고 또한 ④ 國際規範에 맞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긴급관세제도 등을 통한 구제조치의 적극 활용, 원산지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품질표시제도, 위생검역제도 등의 國際規範과의 일치 ⑤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保護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 및 통관후라도 국민보건 위해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반입명령제를 통한 사후관리 철저 ⑥ 관세관련 국제협약 중 미가입협약의 가입 적극 추진, 통관업 및 창고업 개방에 따른 대형화, 전문화, 전산화, 효율화 자율화 추진,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교역방지를 위한 효율적 통관관리, 국내원산지 규정의 정비, 보완 등 關稅行政의 국제화를 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⑦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됨에 따라 농산물·환경·서비스 및 공산품 중 한국이 취약한 일부 분야에 한해서만 개도국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선별적 정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경우 분야별로 개도국지위 졸업시기를 예시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⑧ 또한 CCC/WCO와의 關稅協力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관세관련협약 중 기가입협약의 관세법수용 여부 및 미가입협약의 가입추진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task force의 구성 운영, WCO를 關稅行政의 개선 및 국제적 창구로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WCO정책위원회 일원으로서의 진출추진 및 WCO내 간부직예의 진출 등을 통해 WCO 내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장치를 단계적으로 확충

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⑨ ESCAP / 방콕협정과 관련하여서는 동 협정이 출범한 지 어언 20여년이 지났으나 참가국수와 참가국간 양허품목수 및 동 양허품목의 교역면에서 지지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방콕협정의 목적을 貿易協力協定에 국한하던 것을 貿易 및 投資協力쪽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고 ASEAN과 같은 경제그룹이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ASEAN과 방콕협정간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렇게 하여 그 회원국의 범위가 넓어지면 중국 등 비회원국들의 가입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⑩ UNCTAD의 GSP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선발개도국에 대한 개도국 졸업론을 주장하는 한편 선발개도국이 GSP制度 導入을 통한 개도국 지원분담을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 GSP 도입시기, 특혜공여방법 등을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⑪ 또한 WTO 내에서 극히 소수의 개도국만이 참여하고 회원국의 관심도 낮아 협정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TNDC / GSTP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었으므로 멕시코의 경우와 같이 77그룹에서 탈퇴를 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면 同 協約規程上 77그룹의 회원국이 아니면 TNDC / GSTP의 회원국도 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언제 어떤 방법으로 TNDC / GSTP를 탈퇴할 것인가를 사전에 정리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⑫ APEC하에서의 關稅協力の 경우 통관절차간소화를 위한 공동행동계획에 대하여서는 우리나라가 수입통관 EDI 개발, 수출입화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段階的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APEC체제하에서 관세율 인하문제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되나 UR 결과의 시행초기라는 점과 우리나라 産業의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업계, 학계, 관련기관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우리 입장을 정립하여야 한다고 본다. ⑬ 아울러 세계통상규모 10위권 안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 規模에 걸맞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WTO법과 같은 통

상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많은 인제가 필요하므로 법과대학에서 통상법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⑭ 마지막으로 雙務間 關稅協力에 있어서는 그동안 주로 밀수정보교환의 활성화와 마약류 단속에 관한 사항, 세관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직원상호 교환방문, 양국 통계 차이로 인한 통상마찰 해소방안에만 치중하고 우리 수출업계의 관세상 수출애로 사항해결은 크게 未洽하였다. 예컨대 다른 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우리 관세율만 인하해 왔고 우리가 요구하여 인하하는 關稅率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994년 4월 1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해외 통관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이를 통하여 우리의 수출시 隘路로 등장하는 관세율 인하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것이 雙務間 關稅協력을 통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 關稅評價制度의 運營方向

우리나라의 關稅評價制度의 발달과정은 관세집행면의 특징을 중심으로 보면 시가역산시기(1949~1964년), 특관세시기(1965~1973년), 브뤼셀 평가협약시기(1973~1983년), GATT 신평가협약시기(1984년 이후에 GATT 신평가협약은 그 가입이 의무화되지 아니하였으나 UR타결 결과 탄생한 WTO 관세평가협약에는 가입이 의무화됨. 다만 GATT 평가협약이나 WTO평가협약이나 내용은 거의 동일함)로 구분하여 운영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친 關稅評價協約을 운영함에 있어서 ① 關稅評價協約에 대한 해석 및 참고자료(예 : 결정, 권고의견, 예해, 해설, 사례연구, 연구, 의정서 등)의 법적 지위가 애매모호하여 체약국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바 이들 참고자료가 체약국에 실질적으로는 법규 이상의 效力를 가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협약서상에 추가되거나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② 關稅評價協約에서는 관세평가에 관하여 근본적인 규정을 하면서도 시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결정, 권고의견 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이 대부분 예시성에 불과하거나 관념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향이 많아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협약시행에는 효과적인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종·동질 및 유사물품의 정의, 특수관계(being related)에 대한 규정, 로열티 및 라이선스로 과세기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이 설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앞으로는 協約에 대한 구성을 다단계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해석, 사례 등 일단계적 참고지침 등으로 단계를 축약시켜 관련규정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관념적인 단어들은 제한적이고도 명확하게 개념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③ WTO 關稅評價協約은 무역장벽의 완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서로 달라 國際協商에서 발원권이 약한 개도국에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 즉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관한 문제, 특수관계자(Related Party)의 범위에 관한 문제, 독점취급권자가 지급하는 광고선전비, 로열티, 특허사용료 등과 사후귀속이익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및 역산가격방법과 산정가격방법의 적용상 문제 등 개도국에 불리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WTO 관세평가협약에 가입한 이상 그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는 없고, 다만 인도·ASEAN 등 이해관계국과 WTO 관세평가협약의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分析하고 동시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WTO나 WCO에서 개도국 등 이해관계국들이 연대하여 공동 대처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④ WTO 관세평가협약의 대부분이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에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고시는 국민에 대하여 기속력 있는 法規命令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 고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과 동일법체계를 구성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격상시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⑤ 申告納付制度下에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가격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성실신고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 또는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법령상 적절한 보완규정들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⑥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의 적정성여부 및 로열티 등 조정요소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審査를 실시하여야 하나 평가담당직원의 대기업 관리를 위한 원가계산, 부기, 외환업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평가부재현상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세평가전문인력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을 통한 조사기법 습득, 평가업무의 전산화, 해외주재관 증원 및 해외연수 실시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바. 關稅減免制度의 運營方向

우리나라의 關稅減免制度는 산업별·고관세·고감면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기능별·저관세·저감면 내지 무감면 방식으로 그 운영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전환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세감면제도의 실제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보면 關稅減免制度 운영시 산업간·품목간 均等關稅率 책정원칙을 크게 저해하고 關稅輸入을 감소시키는 이외에도 관세감면혜택이 만성화되고 관세감면조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산업별 관세감면의 특정성문제와 대기업 집중 및 중소기업 소외문제, 관세감면 근거법규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점과 분야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관세감면을 수준, 관세감면에 따르는 사후 관리 부담 가중, 關稅法과 부가가치세법의 감면지원 방향 불일치, 관세감면 대상품목 미확정분야 상존 및 감면 필요성이 없는 기관이 관세법상 감면기관으로 계속 존속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특정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을 縮小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관세의 중립성이 저하되고 재정수입에도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산업 발전 수준에 걸맞는 관세감면제도의 운영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정산업에 대한 關稅減免은 계속 축소해 나가되

기능별 감면은 계속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관세감면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감면의 경우에는 關稅率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개별 지원제도로 일몰법(Sun-Set Law)체제로 轉換하여 관세감면지원의 한시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당초 폐지 계획대로 1998년에는 폐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능별 관세감면을 보다 더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과학·산업의 연구개발용품, 장애인용품 등 사회복지용 물품, 환경관련 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은 擴大되어야 하고 그동안 미루어 왔던 첨단의료용 기기 및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의 지정고시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운영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와 효율적인 관세감면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인바 ① 分野別로 다기화되어 있는 감면을 수준의 적정성 검토 ② 감면 필요성이 없음에도 계속 관세법상 감면기관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부 기관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정리 ③ 關稅와 附加價値稅의 감면제도간의 연계성 제고 ④ WCO, UN 등 국제기구가 채택하고 있는 각종 관세감면 협약의 가입범위 확대 및 관세감면관련 법령의 투명성·객관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⑤ 사후관리제도의 획기적 개선 ⑥ 관련법규에 산재해 있는 관세감면 조항을 關稅法으로 일원화 ⑦ 관세감면규정을 알기 쉽게 개정 ⑧ 관세감면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화 ⑧ 국산화 전망이 없는 첨단 資本財는 關稅減免을 철폐할 경우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므로 關稅減免의 철폐 대신 關稅率을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 ⑨ 사후관리, 추천 등 關稅減免 운용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본다.

사. 關稅還給制度의 運營方向

앞에서 설명한 현행 關稅還給制度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요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關稅負擔制度로

1949년도부터 시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사전면세제도는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기의 수출진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貿易의 규모가 확대되어 100억달러를 초과함에 따라 실물사후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고 제철·제강·석유화학 등의 소재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자 수출용원재료의 국산화를 위하여 1975년 7월 1일부터 關稅還給制度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關稅還給制度는 최근 들어 관세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1~5%)됨에 따라 關稅還給을 받는 데 드는 경비를 감안해 보았을 때 이제 더이상 관세환급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제도가 WTO협정상 허용되는 수출지원제도라는 점과 관세환급 폐지시 輸出企業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당연히 존치되어야 하는 제도로 판단된다.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① 환급신청 소요일수 과다 및 비용부담 과중(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원재료에 대한 관세납부후 還給金을 수령하는 데 약 100일이 소요되고 있고 총관세환급액 대비 환급소요비용은 4% 수준) ② 실제 부담한 관세보다 과다·과소 환급받는 문제가 있는 정액환급의 확대 곤란 ③ 민간자율화를 지향해 가는 경제기조에 역행하는 국가관리 소요량 관리체제 유지 ④ 還給을 받기 위한 첨부서류가 너무 많아 세관직원의 환급신청서 면밀 심사의 한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①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關稅 등을 납부했다가 다시 還給받는 체제에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수출후에 還給金을 신청하면 還給金을 지급하지 않고 원자재의 수입세액에 충당하되 환급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차액관세 등은 매분기 종료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의 導入 ② 기업 스스로 자사의 소요량 관리방안을 稅關長에게 신고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還給에 사용토록 하는 기업의 자율관리 소요량제도의 導入 ③ 還給節次의 복잡성 때문에 환급비용이 들고 이로 인해 결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건별로 서류심사를 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던 현 체계를 전산으로 환급신청하고 이를 전산 심사후

환급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轉換 ④ 중소기업이 還給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간이정액환급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절차를 보다 간소화 ⑤ 수출용비중이 높은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 關稅分割納付制度의 運營方向

WTO체제하에서 이제 우리 기업은 政府 차원의 직접적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아니되고 技術開發에 대한 투자증대나 업종전문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자구노력이 한층 強化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의 직접 지원이 크게 제약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없는 지원은 WTO체제하에서도 유지가능한데 관세측면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관세환급, 기능별 관세감면, 탄력관세제도, 관세분할납부제도 등이 있으나, 특히 관세분할납부제도는 특정성이 없는 좋은 制度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면에 있어서 또 관련업계의 활용면에 있어서 가장 뒤쳐지는 制度로 분석되고 있다. ① 關稅分割納付 활용이 주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체 활용이 상당히 저조하며 특히 關稅法 제36조 제1항 제2호(정부·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와 제7호(직업훈련원용품)는 관세분할납부 이용실적이 전혀 없고 동법 동조 제3호(학교 등 비영리법인 수입용품), 제4호(의료기관 수입물품) 및 제5호(기업부설연구소 등 수입용품)는 그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 중소기업체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들 중소기업체가 관세법상 關稅分割納付制度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세사 및 유관기관·협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② 관세분할납부 이용실적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정부·지방자치단체용품 등 5개 분야 대상항목은 關稅法上 관세감면도 할 수 있고 관세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 기능별 감면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③ 한편, 특정산업에 대한 關稅減免이 1997년까지 유지되다가 1998년 1월 1일부터 모두 폐지되도록 되어 있으나 關稅減免制度의 폐지가 가져오는 업계의 부담 때문에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특정산업 감면을 1998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부터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는 더이상 특정산업 감면은 許容되기 곤란함을 감안해 볼 때 관련부처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대안으로서 제1안은 관세감면제도 폐지에 따르는 업계의 부담을 다소라도 緩和해 주는 차원에서 일단 특정산업감면은 계획대로 폐지하되 관세분할납부제도로 轉換했다가 동 관세분할납부 혜택을 서서히 줄여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제2안으로서는 특정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계획대로 폐지함은 물론 關稅法 제36조 제1항에 의해 대부분 대기업이 적용받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장비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지원도 동시에 철폐하는 것이 關稅의 對産業 중립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되나 어떤 방향으로든 그 政策方向이 조만간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 保稅制度의 運營方向

현행 보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요지를 살펴보면 政府는 1993년 12월과 1994년 12월에 각각 關稅法을 개정하여 ① 의무적인 保稅區域藏置制度를 폐지하여 부두에서 직접 화물을 반출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신속한 通關이 필요한 긴급한 물품의 경우 물품입항전에도 수입신고를 허용하고 특별한 사유(검사대상 등)가 없는 한 하역 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② 保稅區域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稅關長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반입하게 하고 ③ 輸出保稅運送制度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운송하도록 하고 수입물품 보세운송의 경우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보세운송 발송보고제를 폐지하였고 ④ 입항전 보세운송신고를 허용하여 하역 즉시 부두에서 화주 창고 등 목적지로 직반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면 허가까지 물품반출이 불가하던 것이 입항 즉시 반출가능 체제, 곧 입항 즉시 생산현장 투입가능체제로 일대전환을 하여 물류흐름의 신속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保税區域에 장치함이 없이 물품입항 전후에 수입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보세운송 및 보세구역 반입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제기되는 政策課題는 어떻게 하면 이들 制度의 도입의 취지를 살려 물류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원활히 뒷받침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① 輸出入貨物 물류관리절차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처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세관당국에서는 1995년 4월부터 보세구역의 화물반출입업무 및 재고관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보세구역 전산망을 구축·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보다 더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화물 흐름의 전과정(입항·하역·보관·통관 등)의 EDI화를 적극 추진하여 선진물류체계를 조속히 確立해야 할 것이며 ② 稅關에서는 모든 제도가 선진형으로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荷役·運送 등 관련 화물취급업체가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물류의 흐름이 끊어질 것이므로 24시간 근무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協力해 나가야 할 것이고 화물관리의 자율화 확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효과적인 화물감시대책도 並行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③ 또한 수출입화물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1995년 기준 4억 2천만톤) 이를 처리할 보세구역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므로 앞으로 공·항만 등 주요 SOC시설(민자부두, 영종도 신공항 등)이 계속 擴充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 기존 1,400여 보세구역이 각 보세구역 특성에 맞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關稅上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④ 아울러 기존 보세구역의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미통관체화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分析하여 조기처분대책(공매,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반송 등)을 수립·추진하고 체화발생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등으로 체화발생을 사전

에 예방하여야 하며 기타 물수물품은 전량 한국보훈복지공단에 대한 위탁판매 등을 통하여 처분해야 할 것이다.

차. 産業被害救濟制度의 運營方向

우리나라는 經濟의 國際化·開放化를 위하여 1988년에 IMF 8조국에 가입하여 외환시장을 개방하였으며 1990년에는 GATT 18조국에서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여 貿易自由化를 실행(輸入自由化率: 1984년 84.8%, 1996년 98.5%(공산품 99.9%), 평균관세율 1984년 21.0%, 1996년 7.9%)하여 이제는 더 이상 사전적 貿易管理政策을 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貿易自由化에 따르는 보완대책으로서 GATT 등 국제규범이 인정하는 사후적 보완조치인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따라 1986년 대외무역법의 제정으로 무역위원회의를 설립하는 등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政府가 취한 산업피해 구제실적을 보면 1995년말 현재 총 40건의 제소에 긍정판정 22건, 부정판정 5건, 신청철회 9건, 약속수락 2건, 기각 1건, 조사중 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産業被害救濟措置를 취하는 과정에서 ① 효율성 차원의 문제, 곧 외국제품의 輸入으로 발생한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구제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를 금전적 부담 측면에서 보면 현 제도의 경우는 제소자에게 과중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므로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은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소요기간 측면에서는 덤핑防止關稅制度나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신청한 후 그 구제조치가 실행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팜콘옥수수과 돼지고기통조림의 경우는 제소에서 구제조치까지 385일(1990년 11월 16일제소)과 211일(1989년 7월 24일 제소)소요)되고 ② 구제조치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예컨대 폴리아세탈수지(1950년 5월 8일 제소)의 덤핑률이 20.6%까지 조사되었으나

실제 부과된 것은 4%였는바 4%로서는 구제조치로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소자로 하여금 자료제출의 負擔을 줄일 수 있도록 무역위원회의 조사기능을 強化하여야 하고 무역위원회의 직원을 늘려서라도 제소에서 구제조치까지의 소요기간을 줄여 나가야 하며 인력을 擴充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별채용방법을 이용하여 외부의 우수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救濟制度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예비판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措置에 대하여 외국 피제소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급기야는 GATT 패널(panel)에 제소한 사례도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대외적 신뢰성을 確保하는 것이 관건인바 실제적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確保하기 위하여서는 동종 상품의 정의, 덤핑 및 수입급증 여부, 산업피해, 인과관계에 관하여 세부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구제성과 명확성의 원칙하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절차적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구제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공청회를 활성화하여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擴大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통상산업부에서 독립시켜 준사법적인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가. 關稅審判制度의 運營方向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권익신장이 增大됨에 따라 關稅法上 불복신청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이의신청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이러한 불복신청 건수에 대하여 稅關이나 關稅廳 또는 國稅審判所의 이용률은 10~20% 내외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바,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나날이 신장되어 租稅賦課의 적법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관세심판제도의 법적 측면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높은 비율의 권리구제가 이루어

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이의 일환으로 먼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구제방법이 관세법상 명확하지 아니한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① 關稅法 제24조 제1항에 불복청구인이 과오납환급신청을 하고 동 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해 나가고 ② 關稅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부한 후 세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구제의 길을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③ 關稅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稅關長은 세액 심사 결과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직권경정방법에 추가하여 자진납세한 납세의무자가 경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경정신청을 받은 稅關長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④ 불복청구기간 관련 關稅法,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불복청구기간내에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있으나 監査院에 대한 審査請求에는 이와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고 關稅法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시 外國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제기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으나 지방세법상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어 관련세법 상호간에 법적 불일치가 있는바 관련법 개정으로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⑤ 關稅審判制度 법체계와 관련하여 위임입법은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별적·구체적 위임이어야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법에 근거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규칙(예 : 훈·고시 등)에 의존하는 예가 많은바 이런 사항들은 차기에 상위 및 하위법령 개정시 상위법령에 具體的으로 위

임받은 범위 내에서 재정비하고 그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⑥ 한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國稅 및 地方稅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關稅法이나 監査院法에는 공매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법 상호간의 형평차원에서 이들 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⑦ 또한 불복청구관련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 이외에도 감사원법에 의해 監査院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선택기회를 많이 준다는 의미는 있으나 직무감찰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감사원에 전문분야인 조세심판을 제결토록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존치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⑧ 관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세청 심사위원회보다 公務員의 참여비율(관세청 대 국세청 : 65% 대 42%)이 높아 관세심사결정에 있어서 처분청의 의견을 존중할 가능성이 크고 관세심사위원회가 부정기적으로 개최됨으로써 권리구제가 상당기간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먼저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무원보다 민간인을 더 많이 충원하도록 하고 매월 회의 개최일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일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⑨ 또한 부과고지 대상물품이거나 자진신고납부 대상물품 중 신고된 納付稅額을 수입신고수리 전에 심사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이 조정된 경우로서 稅關과 납세자간에 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지금은 조정된 세액을 일단 納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차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不服이 있는 경우에는 稅關長과 납세의무자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關稅를 납부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받고 세액납부연기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방안 강구시 세금납부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불복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또한 병행하여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⑩ 아울러 당초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국세심판소나 법원에서 밝혀진 때에는 당해

사건만을 구제해 주고 있는데 동일 또는 유사사안에 대해서도 그 판결이 전 또는 이후를 불문하고 전국세관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일괄 환급 처리해 주도록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인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稅關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타. 關稅士制度의 運營方向

최근에는 運送·保管 등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증대하고 通關節次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관세사는 세관창구의 통관만 업무범위로 하는 데 비하여 운송업자는 運送·保管·通關에까지 화주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세사의 업무는 운송·보관과정의 일부로 축소·격하되어 관세사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1995년 1월부터 우리나라는 통관서비스업종이 개방되었고 1996년부터 육상운송업이 개방되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의 육상운송업체가 통관법인을 설립하여 통관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추세에 對應하기 위하여서는 현행 관세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大幅 개선하여 대형화·전문화하고 대내외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① 현재 관세사의 영업구역이 15개지역으로 구분되어 신고된 지역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EDI형 輸出入通關制度의 시행에 따라 영업구역을 제한할 필요성이 점차 감소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EDI가 완성되는 1998년 1월부터는 동 영업지역 제한을 철폐하여야 할 것이며 ② 최근 수출입화주들이 화물의 하역·운송·보관·통관 등 종합적인 total service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관세사업이 보다 대형화되어야 할 것인바, 이의 일환으로 원거리 및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관세사 상호간에 관세사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형화를 점진적으로 誘導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1983년 이후 꾸준히 요구되어 온 복합운송 주선업의 통관업(통관법인 형태) 진출에 대하여서는 운송주선업이 運送·荷役·保管 등

을 겸하지 않고 단순히 주선만 하고 있고 복합운송 주선업체들의 법적지위나 책임 등에 관한 근거 규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영세한 복합운송 주선업체에까지 通關業을 허용할 경우, 통관질서 문란, 화주보호 측면의 안전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많다고 본다. ④ 관세사시험 응시자 중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이 저조(1995년 10월 현재 관세사 자격취득자 1,087명 중 일반응시자는 63명에 불과하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3.1%에 불과)함에 따라 세관출신이 관세사를 독점한다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는바 앞으로 시험출제의 난이도 등을 조정하여 일반응시자의 합격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면에서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⑤ 관세사업무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 동 자격에 있어 현재는 관세사와 관세사무원(직무보조자)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바 각각의 자격종 소지자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제도에는 사무원자격제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또한 자율경영시대에 副應하여 관세사 사무원자격증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사가 스스로 경험 있는 사무원을 자기 책임하에 쓰면 되는 것이지 政府가 기준을 정하여 꼭 자격증을 가진 자만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할 制度라고 본다. ⑥ 앞으로 關稅士制度는 화주가 필요로 하는 관세사, 세관의 행정능률의 向上에 기여하는 관세사, 업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관세사의 3가지 방향에서 보다 發展되어 가야 한다고 본다.

파. 關稅行政罰制度의 運營方向

관세행정 기본업무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부정 수출입의 방지이다. 최근 關稅廳은 수출통관의 EDI와 수입물품 통관의 簡素化·自律化를 추진함에 따라 자칫 密輸의 사각지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行政罰制度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바 ① 관세포탈죄와 무신고수입죄의 처벌

에 있어서 최근 판례는 실질적으로 무신고수입죄는 관세포탈죄에 吸收된다고 하여 관세포탈죄를 가장 중한 죄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 처벌에 있어서는 최근 關稅率의 계속적인 인하로 관세포탈죄가 무신고수입죄보다 낮게 처벌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관세포탈죄가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되기 위하여서는 무신고수출입죄의 처벌규정을 낮추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생각된다. ②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 등을 구비하여 불법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부정수출입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판례에 의하면 수출입신고의 수리가 된 내용과 실제로 수출입된 물품간의 사이에 동일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무신고수출입죄에 해당되기도 하고 부정수출입죄에 해당되기도 하는바, 평상인이 關稅法 제181조의(부정수출입죄)의 범조문을 살펴보아서는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양 죄목을 명백히 구분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③ 부정수출입죄는 법익침해에 있어서는 무신고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과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관세형벌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최근 수출입 대상물품 및 통관건수가 擴大되고 다기화된 수출입 관련규정의 수시변동 등으로 인한 이해부족으로 과실 등에 의한 關稅法 관련 규정 위반사태가 다수 발생할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대로 적용하면 너무 과중하게 처벌되므로 현행 처벌규정을 보다 緩和하고 또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여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든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서는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수출입물품 통관절차의 簡素化·自律化에 편승하여 자칫하면 관세행정 질서를 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고 또한 密輸를 조장할 소지가 있어 당분간은 통관절차의 간소화·자율화가 成熟段階에 이르기까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성숙단계에 진입하게 된 이후에는 과실범 처

벌수준을 크게 완화하든지 또는 罰金制度를 과태료제도로 轉換하든지 그 처벌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⑤ 앞으로 모든 수출입 절차를 보다 더 簡素化하고 自律化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관세법관련 규정들을 어기는 경우에는 一罰百戒로 다루어야 신속통관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關稅法 제179조부터 제192조까지의 모든 관세행정법 관련 법조문별 벌금형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⑥ 또한 최근 關稅犯이 날이 갈수록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신고 없이는 密輸犯을 검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 公務員인 경우 포상금이 사건당 1인 30만원, 민간인인 경우 사건당 600만원이 원칙이고 필요시 '국고수입금에 따르는 포상기준'에 의거 지급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너무 적어 동 포상금 수준으로는 密輸犯 신고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행의 포상금 수준을 일정수준까지 상향조정 하든가 아니면 종전의 상여금제도 부활을 재검토하는 것도 한 方案이라고 생각된다. ⑦ 최근 국내외 농산물 가격차를 노린 농산물밀수가 크게 增加함에 따라 몰수대상이 다량이고 거대하여 보관하는 데 세관창고가 협소하고 관리·처분 등에 따르는 경비 소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몰수를 하지 않고 추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보관관리 및 멸각 등에 따른 제반 관련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강만수, 『WTO체제하에서의 새로운 관세행정방향』, 관세청, 1996.
- 강석인, 『외자도입과 한국의 경제발전』, 장원출판사, 1994.
- 강정호, 「관세감면제도의 운용방향」, 『관세』, 1994.
- , 『관세정책과제의 이해』, 한국관세연구소, 1994.
- , 「중소기업수출지원을 위한 관세환급제도」, 『관세』, 1994.
- 곽 준, 「수입자유화에 따르는 관세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권성우, 「한국의 관세율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권영석, 「한국의 관세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경호, 「한국의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김기영, 「UR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행정상 대응방안」, 『관세』, 1994.
-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관세자료연구원, 1996.
- 김남진, 「보세구역설영특허의 법적 성질」, 『판폐월보』, 1989.
- 김명남,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범식,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상남, 「관세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완순, 「UR 이후 세계무역환경과 산업피해구제제도」, 『관세』, 1991.

- 김인철, 『UR 이후 세계 관세율 개편전망과 한국의 수출효과 분석』, 재
무부 관세국, 1992.
- 김종수, 「WTO체제하에서의 무역분쟁과 해결방안」, 『관세』, 1994.
- 김종환, 「국제화·개방화시대의 관세행정 - 2000년대를 향한 관세행정
의 좌표」, 『관세』, 1994.
- 김 진, 「관세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진수·안종석,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향』, 한국조
세연구원, 1994.
- 김철수, 「탄력관세제도 개선」, 『관세』, 1994.
- 김향기, 「행정심판제도연구 -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김호식, 「WTO시대의 대외경제정책」, 『관세』, 1994.
- 김홍오, 「관세평가업무의 선진화방향」, 『관세』, 1991.
- 김확곤,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노장우, 「WTO 출범 이후의 새로운 통상의제 논의동향」, 『관세』,
1994.
- 박광수, 「한국의 관세정책상 통관제도 운용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박귀훈, 「보세공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논문집』, 국립
세무대학, 1994.
- _____, 「관세법처벌에 있어서의 과태료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논문집』, 국립세무대학, 1996.
- 박상태, 『관세론』, 우아당, 1991.
- 박종룡, 「국세부과처분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89.
- 박준화, 「보세운송업계의 현실과 과제」, 『해양한국』, 1992.

- 방준석,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효과와 관세정책」, 한국의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서상훈, 「우리나라 보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의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서정협, 「탄력관세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서한창, 「방콕협정 확대협상」, 『관세』, 1990.
- 신광식, 「우리나라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신영섭 · 하병기, 『산업지원 강화를 위한 관세율구조개편』, 산업연구원, 1981.
- 신용대, 「EU에 대한 GSP 공여 중단논의와 우리의 대응」, 『관세』, 1994.
- 신유균,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적 전개방향」, 『관세』, 1994.
- 신 한, 「한국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신현중,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5.
- 신현중 · 김진삼, 「한국 관세율 추이에 관한 소고」, 『산경연구』, 영남대학교, 1993.
- _____, 「한국의 관세제도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영남대학교, 1993.
- 신현준, 「APEC의 현황과 향후 전망」, 『관세』, 1993.
- 양주백,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제도개선」, 『관세』, 1994.
- 유장희, 「국제경제환경의 최근 변화와 우리의 자세」, 『기업경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 유하상, 「탄력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윤승영, 「국제재송제도연구－위법한 국세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제

- 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이강호,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대회, 「관세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동호, 「국제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환가대금의 배분순위」, 국립세무대학 연구논문집, 1996.
- 이수웅, 「관세평가제도와 그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 「통관관리행정방향」, 『관세』, 1996.
- 이영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감면지원제도」, 『관세』, 1991.
- 이영진, 「한국의 관세환급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용우, 「대외통상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기업경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 이종진, 「우리나라 탄력관세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춘삼, 「개방경제시대에 대응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향」, 『국제상학』, 1993.
- , 『무역관계법』, 법문사, 1994.
- 임홍묵,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변화와 발전정책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장병철, 『관세법』, 무역경영사, 1987.
- ,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변천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장현덕,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조세연구논문집』, 국립세무대학, 1993.
- 정재완, 「재정관세사법해설」, 『관세』, 1995~1996.

- 조용만, 「관세납부·감면·평가제도개선」, 『관세』, 1994.
- 조용희, 「관세환급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차진석, 「GSTP의 현황과 향후 전망」, 『관세』, 1991.
- 최국진, 「국제관세협약의 현황과 향후계획」, 『관세』, 1994.
- 최낙균·신현수, 『UR 이후 저관세율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방향』, 산업연구원, 1992.
- 최일환, 『관세정책』, 한국관세협회, 1975.
- 최홍건, 「UR 협상 타결이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관세』, 1994.
- 한경동, 「위법한 국세부과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한인배, 「관세평가제도의 활성화방안」,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허문구, 『영업용 보세장치장의 보관요율체제 개선안 검토』, 하주, 1993.
- 홍정식, 「보세건설장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관세』, 1991.

關稅政策의 變遷과 評價

朴 相 泰

韓國이 日帝로부터 解放된 以後 오늘날의 經濟的 達成이 있기까지 각 時代에 따른 國家의 政策目標에 맞추어 關稅政策과 制度도 꾸준히 變遷·改編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關稅政策은 단순가공을 위주로 한 輕工業製品의 輸出 促進, 重化學工業化, 産業의 均衡발전, 民間주도형 競爭體制의 확립 순으로 展開되어 온 전반적인 産業政策의 展開와 같은 궤적을 따라 變遷해 왔다.

輸出增大가 國家의 지상 목표였던 1960年代에는 단순가공형의 輕工業 중심인 國內産業을 강력히 보호하였으며, 1970年代에는 당시 經濟開發計劃의 中점사업이었던 重化學工業에 높은 關稅率을 適用함으로써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도모하였다.

그후 1980年代에는 대내외 경쟁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民間주도형 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均等關稅率制度로의 이행을 도모하였으며 1990年代에는 輸出入免許制를 폐지하고 輸出入申告制를 導入하여 物品이 入港되는 즉시 生産現場 투입가능체제로 전환함으로써 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를 도모하였다.

앞으로 우리 産業의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다음과 같은 關稅政策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 物類費用 節減을 위한 지속적인 通關節次 簡素化
- 均等關稅率體系에 대한 반성 및 새로운 體系의 摸索
- 彈力關稅運營의 明瞭性 確保
- 第2의 關稅率로서의 關稅評價 強化
- 關稅減免制度運營의 最少化
- 關稅還給制度의 簡素化

<Abstract>

The Contents of Korea's Customs and Tariff Policy Switch at Each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ppraisal Thereof

Park, Sang Tae

Korea's customs and tariff policy has been amended, continually changing with the national economic policies over the last 50 years during which Korea has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for a country that suffered from abject poverty upon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The 1960s and 1970s were a period of economic growth. Korea shifted from light industry to heavy and chemical industry, thanks to the successful export-led industrialization policy. A series of customs and tariff policies taken in line with the systematical granting of guidelines to the government's favorable treatments toward talented and exported-oriented entrepreneurs.

In the 1980s, customs and tariff reforms eliminating restrictions on competition were made to open the domestic economy to external competition.

In th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abolished the import and export license system, and instead, introduced the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system so that foreign materials could be directly moved toward local factories as long as they were declared to a custom house upon their arrivals at Korean ports.

Listed below are future optimal customs and tariff policies focusing on customs satisfaction required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our local industries.

- Continuous simplification of customs duty collection procedures to reduce logistical costs.
- Review the existing uniform tariff rate system and search for a new system.
- Establishment of transparency upon the operation of flexible tariff system.
- Strengthening of customs valuation actually functioning as the second tariff rate.
- Minimization of customs exemption.
- Simplification of the customs drawback system.